



근로빈곤층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천영민

김태완

김문길

강금봉

박소희

KEIS



근로빈곤층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천영민

김태완

김문길

강금봉

박소희

KEIS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이론적 검토	10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0
제2절 해외 주요사례	31
제3장 근로빈곤 현황 분석	50
제1절 근로빈곤 구성의 특성	50
제2절 근로빈곤층 특성	59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5
제4장 근로빈곤 동태 분석	87
제1절 분석 개요	87
제2절 근로빈곤 빈곤 지위 동태 분석	91
제3절 근로빈곤층 노동시장 특성	113
제4절 빈곤 탈출 결정 요인 분석	129
제5절 소결	195

제5장 고용서비스와 근로빈곤 사례연구 -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199
제1절 고용서비스 제공자 인터뷰	199
제2절 근로빈곤층 심층인터뷰	22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32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36
참고 문헌	244
부록	252

[표 차례]

〈표 1-1〉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4
〈표 2-1〉 각 나라(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11
〈표 2-2〉 근로빈곤층 빈곤의 탈출에 관한 선행 연구 정리	25
〈표 2-3〉 jobactive 구직자 파악 주요 항목	38
〈표 2-4〉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개괄자료: Green, et all. 2015	48
〈표 3-1〉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 추이	51
〈표 3-2〉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성별)	53
〈표 3-3〉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연령별)	54
〈표 3-4〉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사업장 규모별)	56
〈표 3-5〉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경제활동 참여상태별)	57
〈표 3-6〉 근로빈곤 정의별 정부지원 프로그램 경험 여부	58
〈표 3-7〉 시간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	60
〈표 3-8〉 시간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성별)	60
〈표 3-9〉 시간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연령별)	61
〈표 3-10〉 시간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사업장 규모별)	63
〈표 3-11〉 시간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경제활동 참여상태별)	64
〈표 3-12〉 근로빈곤과 주거빈곤 동시 경험	66
〈표 3-13〉 근로빈곤 및 주거빈곤 동태적 변화(가처분소득 기준)	67
〈표 3-14〉 근로빈곤층 주거점유 형태(가처분소득 기준)	69
〈표 3-15〉 근로빈곤과 우울 동시 경험	70
〈표 3-16〉 근로빈곤 및 우울 동태적 변화(가처분소득 기준)	71
〈표 3-17〉 근로빈곤층 (중위)자산규모(가처분소득 기준)	72
〈표 3-18〉 (기간 구분에 따른) 근로빈곤층 자산규모(가처분소득 기준) ..	74
〈표 3-19〉 근로빈곤층 중 과다채무 지출 비중	75

<표 3-20> 근로빈곤층 중 과다채무 지출 가구의 동태 변화	76
<표 3-21> 코호트별 근로빈곤 변화 추이	78
<표 3-22> 코호트별 근로빈곤 추이(성별, 가처분소득)	82
<표 3-23> 코호트별 근로빈곤 추이(사업장 규모별, 가처분소득)	83
<표 3-24> 코호트별 근로빈곤 추이(경제활동참여상태별, 가처분소득) ...	84
<표 4-1> 분석대상 근로빈곤층 인적특성	90
<표 4-2> 한국노동패널 6~17차 빈곤 지위 이행률	91
<표 4-3> 한국노동패널 6~17차 빈곤탈출 이행률	93
<표 4-4> 빈곤탈출 상태 변화 Markov 이행확률	94
<표 4-5> 빈곤탈출에서 빈곤 재진입률	96
<표 4-6> 종사상 지위 변화	97
<표 4-7> 종사상 지위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	98
<표 4-8> 고용형태 변화	104
<표 4-9> 고용형태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	105
<표 4-10> 경제활동 상태 변화	108
<표 4-11> 경제활동 상태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	110
<표 4-12> 경제활동 상태 변화	113
<표 4-13> 경제활동 상태 변화 배열분석	114
<표 4-14> 직종별 현황	115
<표 4-15> 주요 업종별 특징	117
<표 4-16> 평균 구직기간	118
<표 4-17> 임금 평균	119
<표 4-18> 주당 근로시간별 임금현황	120
<표 4-19> 연도별 근로시간별 임금현황	121
<표 4-20> 주요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122
<표 4-21> 연도별 및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123
<표 4-22> 연도별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	124
<표 4-23> 연도별 직업훈련 참여 현황	125
<표 4-24> 연도별 및 연령별 직장규모	126
<표 4-25> 일 교육 적합도	127

<표 4-26> 일 기술(기능) 적합도	128
<표 4-27> 국내 빈곤이행 관련 주요 연구방법	132
<표 4-28> 빈곤 탈출 기준 선행 연구 요약표	133
<표 4-29> 빈곤탈출 결정 모형의 투입변수	136
<표 4-30> 빈곤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	143
<표 4-31> 빈곤 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	148
<표 4-32> 빈곤 재진입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	154
<표 4-33> 남성 빈곤 탈출 결정요인 추정 결과	161
<표 4-34> 여성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결과	166
<표 4-35> 18-49세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	172
<표 4-36> 50-70세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	178
<표 4-37> 빈곤주기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	184
<표 4-38> 빈곤 탈출 주기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	190
<표 5-1> FGI 차수별 개요	200
<표 5-2>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FGI 반구조화 설문지	200
<표 5-3> 주요 키워드와 의미단위 분류	203
<표 5-4> FGI 차수별 개요	221
<표 5-5> 주요 키워드와 의미단위 분류	222

[그림 차례]

[그림 1-1] 우리나라 고용률 추이	2
[그림 1-2] 우리나라 실업률 추이	2
[그림 1-3] OECD 국가별 2013년 상대적 빈곤률 비교	3
[그림 1-4]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추이	4
[그림 1-5] 생산가능인구 비중 변화	4
[그림 1-6] 2013년 기준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비교	5
[그림 1-7]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	6
[그림 3-1]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 추이	52
[그림 3-2] 청년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62
[그림 3-3]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자산 배율 추이	74
[그림 3-4]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추이	80
[그림 3-5]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대비 비정규직 비율 추이	80

요 약

최근에는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인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 또는 장애인 등과 같은 전통적 빈곤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서구 선진국은 20~30대 연령층이 주된 근로빈곤 대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60대의 장년이후 세대도 근로빈곤 규모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근로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청년층의 근로빈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빈곤 상황은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택보유빈곤층(house poor)이나 주택임대빈곤층(rent poor)과 같이 자산의 우선 순위를 주택으로 보고 투자하던 상황에서 오히려 주택마련으로 빈곤한 생활을 겪게 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범위를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을 통해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별히 고용서비스 실시 측면에서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전통적인 근로빈곤(working poor) 또는 근로능력빈곤(workable poor)에 대한 정의 탐색을 통해 정의를 확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각 정의별 국내의 현황도 파악하며 비교할 것이다. 빈곤과 관련한 정의 기준은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근로와 관련한 정의는 근로연령, 근로능력 유무,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기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통한 고용서비스 측면의

근로빈곤에 대한 상대적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와 관련된 정의에서 차용한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에 따른 연령별 코호트를 계층으로 구분하여 연도에 따른 특징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성별에 따른 각 코호트별 연도 추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현재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질적 분석을 위해 심층면접과 FGI(Focus Group Interviewing)를 실시한다. 서비스 공급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립지원센터, 근로빈곤층 대상 민간기업 등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서비스 수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인 ID(In-Depth Interviewing)을 실시하는데,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자 중심으로 연령 및 성별을 감안하여 약 20명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한다.

근로빈곤층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실시한 결과, 지난 10년간 근로빈곤 변화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황 분석에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근로빈곤율은 우려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로빈곤 현상은 단순히 소득빈곤만을 수반하지 않고 주거빈곤, 자산취득이 어려움, 정신적 문제를 함께 유발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성과 중의 하나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6차부터 17차까지 12년 동안의 자료를 연결하여 동태분석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시점에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동태분석을 위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균등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여 임금근로자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빈곤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빈곤지위 이행확률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빈곤 상태 유지자의 빈곤 유지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빈곤탈출에 성공한 이는 빈곤 탈출 상태 유지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일단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근로빈곤의 동태적 결정요인을 분석한 방법은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과 함께 최근에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과 초기상태(initial conditions)을 고려한 동태적 확률효과모형(the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s)이다.

빈곤탈출의 기준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균등화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상태에서 중위소득 80% 이상을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이행하는 것을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근로소득 증가, 가구 내 취업자수 증가, 자산 증가, 임금 증가, 근로계약서 수령이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기준 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상황 개선과 더불어 근로조건 보호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근로계약서 수령은 빈곤탈출에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근로계약서 수령은 고용기간과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조건 보호에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은 최저임금제 준수,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근로조건 보호 등의 정책과 함께, 취업자에서 실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이행한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취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현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질적 분석을 위해 심층면접과 FGI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공급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서비스 수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성별, 지역, 경황상태, 학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인터뷰를 통해 취성패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서비스가 근로빈곤층에 의미 있는 대응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물량위주의 정책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취성패와 여타 제도와의 유기적이고 유연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 창출과 더불어 고용유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넷째, 기초보장제도 잔류 유인과 근로참여 유인의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예산에 따라 각종 지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취약계층을 복지에서 고용으로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여덟째, 고용서비스 담당자들의 직업안정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외국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통해 국내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시

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을 단일한 정책적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세부 집단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호주, 영국 등을 중심으로 상호의무를 강조하면서 활성화(activation)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직업훈련이 강조되고 있다.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현장의 필요한 숙련을 고용주가 직접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경력개발 상담사가 필요한 경력 및 직업훈련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넷째, 고용-복지-사회서비스 등을 윈스톱 서비스 등의 체계를 갖추면서도 서비스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각종 연금 및 현금급여(Pension and benefits)의 결합과 함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교육, 가족 지원 및 건강 등이 지원되도록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근로빈곤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횡단분석과 기간을 고려한 분석 모두에서 여성으로 연령이 높고, 사업장 규모가 작고 불안정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계층이 근로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번 근로빈곤을 경험한 여성, 고연령, 불안정 고용상태의 근로자는 빈곤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근로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재취업, 취업지원 및 알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도 완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근로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고려하면서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직업을 발굴하고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정부의 몫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근로빈곤층 대상의 각종 통계 및 조사들이 갖는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세분화된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의 다양한 개념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어떤 통계로도 이런 목적에 부응한 조사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빈곤층 현황 파악 조사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근로능력, 가구 내 취업자수, 가구원별 소득 규모, 공적 소득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복지, 고용, 고용복지연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발하여 근로빈곤층 지원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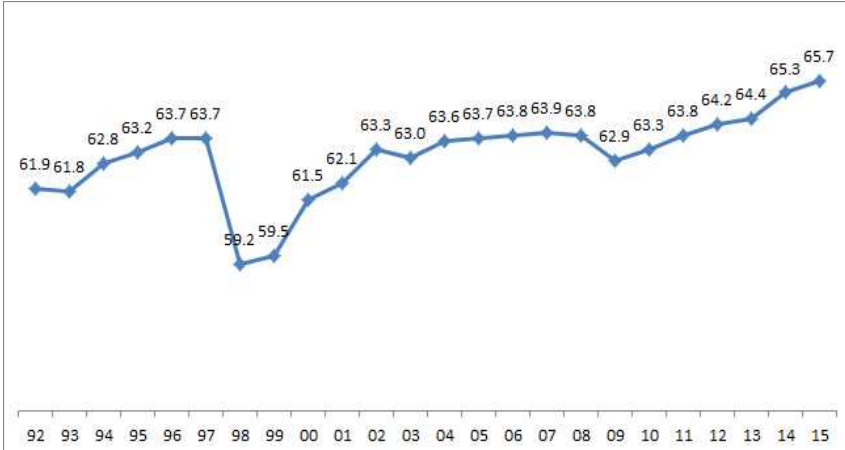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번 정부의 국정목표였던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상 요원해졌지만 고용률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1). 고용률 지표의 호조 속에도 여전히 실업률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공식실업률을 산출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다(그림 1-2). 이런 가운데 통계청(2015)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청년 실업자 39만7천명, 시간관련 추가취업 희망자 6만9천명, 잠재구직자 62만3천명 등 취업애로계층이 무려 108만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 사이에 간극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취업한 이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빈곤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존재하게 하며, 이런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 우리나라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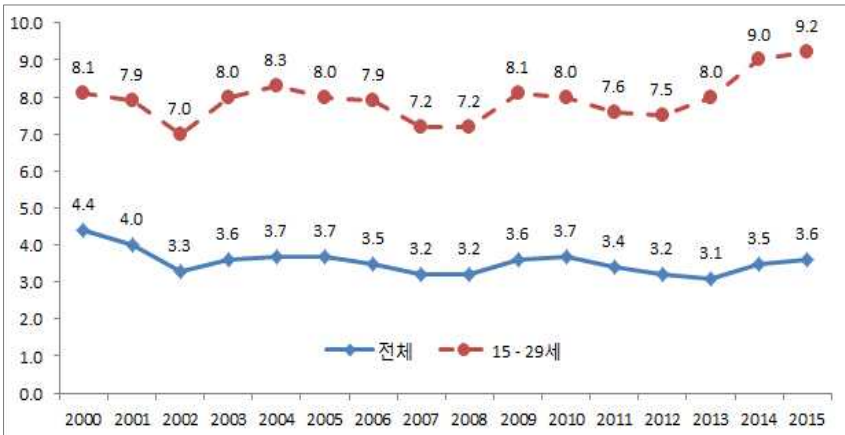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통계청)

[그림 1-2] 우리나라 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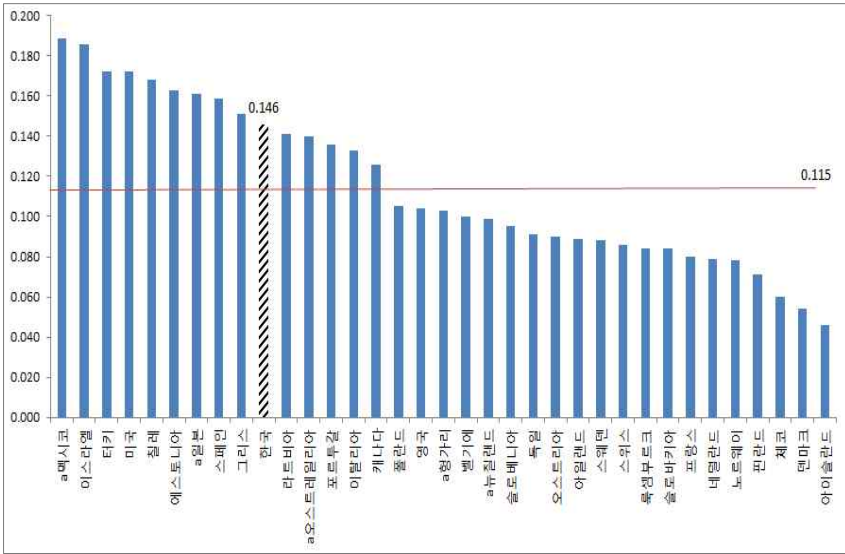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통계청)

OECD 국가별 2013년 상대적빈곤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0.146으로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3). 전체 평균 0.115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국가 중에서 10위이다. 실업문제와 빈곤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서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라는 악재에 직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1971년 출생인구가 약 102만5천명으로 정점을 나타낸 이후 2015년에는 43만8천명으로 약 4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은 향후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야기시켜 노령인구 부양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림 1-3] OECD 국가별 2013년 상대적 빈곤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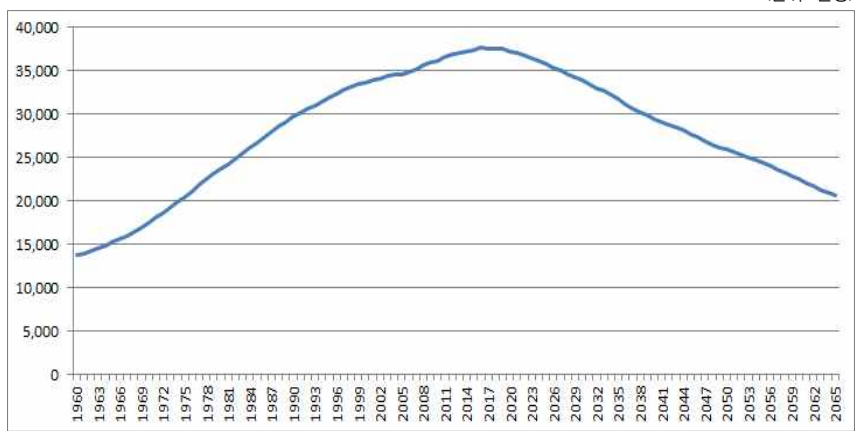
자료: OECD
 주 : a 표시 국가는 2012년 기준

[그림 1-4]와 <표 1-1>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생산가능인구를 중위추계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파악된 1960년에 1,369만8천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2016년에 3,762만7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년(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65년 생산가능인구는 2,062만명으로 2016년 대비 54.8%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2016년 기준 전체 인구(5,124만5천명) 중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3.42% 였던 것이 2065년 전체인구 4,302만4천명의 47.93%인 2,062만명으로 줄어들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3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을 부양하던 상황에서 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다른 1명을 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그림 1-5]).

4 근로빈곤층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그림 1-4]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천명)



자료: 장래인구추계(통계청)

<표 1-1>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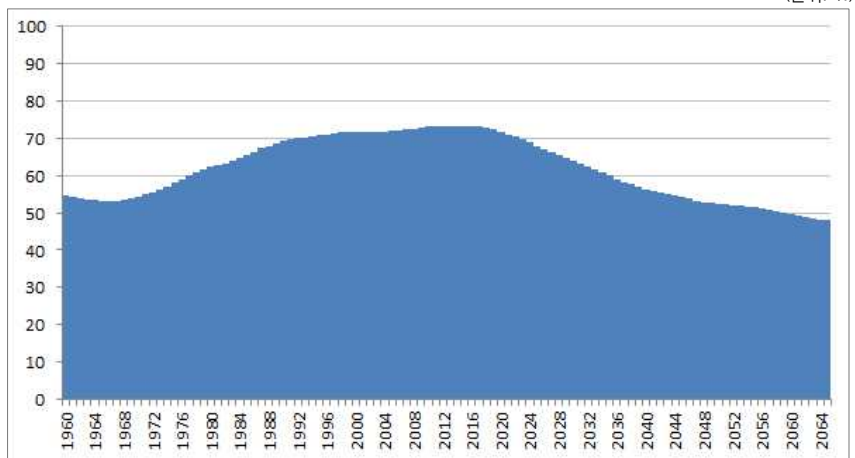
(단위: 천명)

연도	1960	2015	2016	2017	2030	2040	2050	2060
생산가능인구	13,698	37,444	37,627	37,620	33,878	29,431	25,905	22,444

자료: 장래인구추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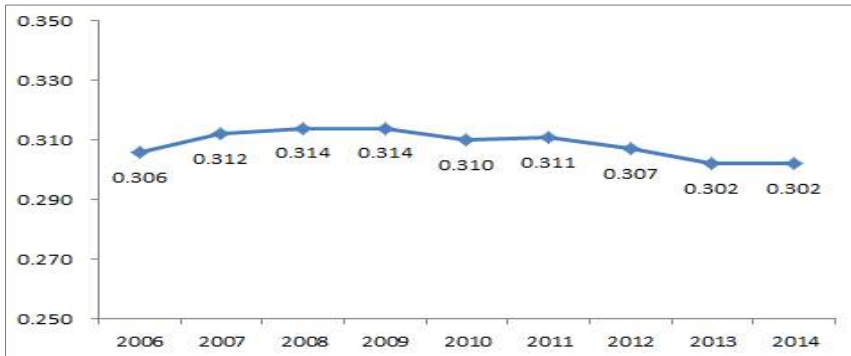
[그림 1-5] 생산가능인구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장래인구추계(통계청)

[그림 1-7]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



자료: 국제통계연감(통계청)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한 소득을 갖게 되지만,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소득 부재로 인한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었다. 복지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생활비 지원이나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방식을 통해 국민 각자가 놓여진 상황에 맞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노동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일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는 계층이 생겨났는데, 이를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 상태에 놓인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 또는 장애인 등과 같은 전통적 빈곤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서구 선진국은 20~30대 연령층이 주된 근로빈곤 대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60대의 장년 이후 세대도 근로빈곤 규모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근로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청년층의 근로빈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근로빈곤층 확대의 문제는 또한 국가적으로 중산층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마름모 형태의 소득계층 형태에서 중산층 가구가 저소득층으로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빈곤 상황은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택보유빈곤층(house poor)³⁾이나 주택임대빈곤층(rent poor)⁴⁾과 같이 자산의 우선순위를 주택으로 보고 투자하던 상황에서 오히려 주택마련으로 빈곤한 생활을 겪게 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범위를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을 통해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 3) 주택 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의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여 대출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빈곤하게 사는 계층
 - 4) 주택을 임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소득의 상당 수준을 차지하여 저축이나 노후대비 보다는 현재의 생활이 어려워 빈곤하게 사는 계층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특별히 고용서비스 실시 측면에서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전통적인 근로빈곤(working poor) 또는 근로능력빈곤(workable poor)에 대한 정의 탐색을 통해 정의를 확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각 정의별 국내의 현황도 파악하며 비교할 것이다. 빈곤과 관련한 정의의 기준은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근로와 관련한 정의는 근로연령, 근로능력 유무,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기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통한 고용서비스 측면의 근로빈곤에 대한 상대적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와 관련한 정의에서 차용한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에 따른 연령별 코호트를 계층으로 구분하여 연도에 따른 특징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성별에 따른 각 코호트별 연도 추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주요 선진국의 근로빈곤 지원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지원정책을 비교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근로빈곤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빈곤층 규모를 다양한 정의에 맞춰 추정해보고, 지원 정책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돕고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빈곤층의 유지 및 탈출에 대한 원인 검토, 근로빈곤층 지원에 대한 수혜자와 공급자간 서비스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심층 분석, 근로빈곤층 규모 파악을 위한 기존 자료 분석 등 다양한 양적,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국내의 사용 가능한 자료를 검토를 통해 주요 특성별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청년, 중장년, 고령자와 같은 각 연령대별에 대한 근로빈곤 특성을 비교하거나, 성별 등 주요 원인별 근로빈곤 특성도 비교할 것이다. 한국노동패널(노동연), 한국복지패널(보사연) 등과 같은 패널자료를 이용해 근로빈곤층 유지 및 탈출에 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여, 근로빈곤 탈출 요인, 근로빈곤 진입 요인, 근로빈곤 재진입 요인 등과 같은 분석을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질적 분석을 위해 심층면접과 FGI(Focus Group Interviewing)를 실시한다. 서비스 공급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인

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립지원센터, 근로빈곤층 대상 민간기업 등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서비스 수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인 ID(In-Depth Interviewing)을 실시하는데,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자 중심으로 연령 및 성별을 감안하여 약 20명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근로빈곤층 대상의 각종 통계 및 조사들이 갖는 구조적 문제점을 토대로 근로빈곤층의 현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확하고 개선된 형태로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정확한 규모 파악과 더불어 고용서비스 측면에서 효율적 지원 마련을 위한 조사 필요성을 확인함과 함께 국내 근로빈곤층 규모 및 실태 파악을 통한 각 서비스 영역별 대상 파악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고용, 고용복지연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발하여 근로빈곤층 지원의 방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토대로 제안할 것이다.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1. 근로빈곤 정의

1.1.1 근로빈곤 정의 관련 선행연구

외국의 경우,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별 정책적 목적과 방향, 국가의 복지 및 생활 수준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소속 기관의 방향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기준은 대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2-1>을 보면, 각 국가에서 각 기관별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개인 단위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이 취업자인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준에서는 취업자이거나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표 2-1〉 각 나라(연구)의 근로빈곤층 개념

국가	기관/자료	노동에 대한 정의	빈곤에 대한 정의
EU	- Eurostat	- 주당 15시간 이상 취업자 - 연간 7월 이상 취업자 ¹⁾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프랑스	- 통계청(INSEE) - 일반 연구자 -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SI)	- 연간 6월 이상 취업/구직자 - 연간 6월 이상 취업 - 연간 1월 이상 취업 경험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소득의 50% 미만(때로 60~70%)(상대소득빈곤)
벨기에	-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SI)	- 연간 6월 이상 취업/구직자	- 저소득기준선: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상대소득빈곤)
스위스	- 연방통계청 - 일반 연구자	- 근로시간과 무관한 전경활인구 - 전일제 근로자 - 주당 40시간 이상 영리활동자	- 행정적 빈곤선*
미국	- 통계국(CB)	- 가구의 연간 노동시간이 1,750시간(44주) 이상	- 연방빈곤선(FPL)(절대빈곤선)
	- 노동통계국(BLS)	- 연간 6월(27주) 이상 취업/구직자	
	- 일반 연구자	- 연간 1000시간 이상 일한 성인 - 통계청/노동통계청 기준	- 연방 빈곤선의 125~150% - 200%** 미만(절대소득빈곤)
캐나다	- 복지평의회(NCW)	- 임금이나 자영소득이 총가구소득의 50% 이상	- 통계청의 저소득기준선(절대소득빈곤)
	- 사회발전위원회(CCSD)	- 연간 49주 이상 전일제(30시간 이상) 또는 시간제로 일한 성인	- CCSD의 상대적 저소득기준선(상대소득빈곤)
	- 정책연구네트워크(CPRN)	- 연간 12개월 전일제 근로자	- 상대저소득기준선: 연간 2만불 미만(상대소득빈곤)
호주	- 사회정책연구센터	- 근로시간과 무관한 전경활인구	- enderson 절대빈곤선*** (절대소득빈곤)

주: * 스위스 사회복지기관연합(Confédération Suisse des Institutions d'Action Sociale)이 정한 최저생계비(vital minimum)에 기초주거비와 건강보험료를 추가한 기준선

** 연방빈곤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 따라 대안적 빈곤선을 활용

*** Henderson 빈곤선은 70년 헨더슨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다양한 규모의 개인과 가구가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비를 산출

자료: Pena-Casas and Latta(2004), 김문길 외(2011) 재인용

국내에서는 근로빈곤에 대해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합의 수준에 이르는 정의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전병유, 2011). 그러나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가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근로빈곤 정의와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은 빈곤 단위를 가구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소득이나 수입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지출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을 단위로 할 경우에 개인 자체는 빈곤 상태가 아니지만 가구 구성원의 수 만큼으로 소득을 나누었을 경우에 모든 가구원이 빈곤한 상태인 것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 즉, 근로빈곤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로와 빈곤의 합성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는 개인 단위, 빈곤은 가구 단위로 접근해야 하는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수단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그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근로빈곤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병희, 2011).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가구단위로 근로빈곤을 정의한 연구는 금재호(2005), 이병희(2010), 윤희숙(2011)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단위로 근로빈곤을 정의한 연구는 노대명 외(2007), 이병희 외(2008), 홍경준(200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빈곤 연구에서 빈곤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 중에서 그나마 빈곤에 대한 정의는 합의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좁혀진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상대적 빈곤기준선을 활용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김태완 외, 2016). 그런데, 상대적 빈곤선 설정과 관련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노대명(2007)과 이병희(2010)는 중위 소득 대비 50% 미만으로 기준을 정한 반면에, 홍경준(2005), 강신욱(2008), 이병희 외(2009)는 중위 소득 대비 60% 미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근로연령 빈곤층, 근로능력 빈곤층, 경제활동기간 고려 근로빈곤층으로 구분할 것인데,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분석하는 경제활동 기간을 고려한 빈곤층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작은 범주의 분석기준이 될 것이다(이병희, 2011; 김태완 외, 2016).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는 노대명 외(2004, 2007), 홍경준(2005), 최옥금(2008), 이병희(2012), 김태완 외(2015)의 연구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서 국내의 통계 및 현실에 맞는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정의는 근로(노

동시장) 측면과 빈곤(소득) 측면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근로빈곤 정의에 대한 대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득 측면에서는 대부분 중위소득 50% 미만 또는 60% 미만을 기준선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적 빈곤선은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상대적 소득에 따른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정의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런 정의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상당수가 근로빈곤층에서 제외된다. 즉, 근로빈곤 정의에 있어서 청년은 경제활동이 없는 연령대가 포함되기도 하고, 단순 소득 수준으로만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같은 경우에 근로빈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청년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를 설정할 때, 소득 기준의 적용 여부 자체도 정의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노동시장) 측면에서 근로빈곤 정의는 다양하게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청년에 대한 근로빈곤의 경우, 소득 수준 외에도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단순 아르바이트 일자리 여부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의 차원을 넘어서는 특성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완 외(2016)가 지적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이나 다차원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의 문제와 같은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노동빈곤(labour poverty)과 같은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적용도 고려할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강우진(2014)의 근로빈곤 위험집단과 같은 신호를 통해 정책적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1.1.2. 근로빈곤 정의 및 유형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는 크게 근로와 빈곤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먼저 빈곤은 기존 연구들과 동일하게 상대적 빈곤기준을 활용하고자 한다. 일부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절대적 방식의 빈곤선을 통해 빈곤을 측정하고 있지만, 동 기준이 오래전에 설정된 것으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단점이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상대적 방식의 빈곤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김태완 외, 2016). 상대적 빈곤선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

기 위해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방식을 적용하였다. 빈곤선은 균등화된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구분한 이유는 최근 노동시장내 비정규직 증가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근로빈곤에 대한 관련 정책이 지원에 비해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이러한 현상이 자료상에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제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시장소득과 정부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 등이 포함된 이후의 가처분소득 간의 차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간접적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근로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근로빈곤을 측정해보고자 한다. ① ‘근로연령 빈곤층’으로 순수하게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근로빈곤 측정이다. 선행연구의 경우 근로연령을 1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15세는 대부분 학령기 연령이며 동 연령대는 근로빈곤의 영역이기보다는 아동빈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연령을 좀 더 상향조정한 18세 이상 65세 미만(18-64세)으로 정의해 분석하였다. ② ‘근로능력 빈곤층’으로 근로자가 장애, 노령,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분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 빈곤층의 범주를 우선 근로연령 빈곤층의 정의 하에 비경제활동 사유 중 근로무능력(장애), 군복무, 학업을 제외한 경우가 근로능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③ ‘경제활동기간 고려 근로빈곤층’으로 조사기준 연도에 연간 6개월 이상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빈곤율을 산출하게 된다. 연중 절반 이상을 노동시장에 참여했음에도 근로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게 된다. 동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측정단위에서는 가장 작은 범주의 분석기준이 된다(이병희, 2011; 김태완 외, 2016).

1.3 동태분석 선행연구

1.3.1. 빈곤 탈출의 동태성

구인회(2005)는 노동패널 1998-2003년 빈곤의 동태적 양상, 특히 빈곤 탈피와 빈곤 진입의 빈곤 이행(poverty transition)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빈곤 지속기간

(poverty duration)에 관련된 요인으로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의 4분의 3 정도가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하는 정도로 매우 활발한 빈곤 탈출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 시점에서의 빈곤층을 볼 경우에는 장기빈곤층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하는 빈곤층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5년 이상 장기 빈곤층이 50%를 차지하며 10년 이상의 최장기 빈곤층도 25%를 넘어선다.

강신욱(2009)은 노동패널 1~8차를 이용하여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일시 빈곤, 지속 빈곤, 반복 빈곤 가구로 유형화하였다. 빈곤 경험 가구 가운데 일시빈곤과 반복빈곤, 지속빈곤의 비율은 각각 46.1%, 23.9%, 30%였다. 이러한 유형별 빈곤 진입과 빈곤 탈출의 소득 10분위 변동에 따라 분석해 보면 빈곤 탈출 후에 분위 변동이 없거나 1단계 상승하는 비율, 즉 2, 3분위에 머무르게 되는 비율은 일시빈곤의 경우 21%, 반복빈곤은 36.5%, 지속빈곤은 45.7%이다.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얼마나 빈곤선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대명·최병두·조명래·류정순(2006)은 2002년에서 2005년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패널 자료에서 빈곤 탈출 가구만을 분석한 자료로 빈곤 탈출의 과정을 보면 단절적 빈곤 탈출 가구는 58.4%, 점진적 빈곤 탈출 가구 23.3%, 반복적 빈곤 탈출 가구는 18.2%로 분석하였다.

김교성·노혜진(2009)은 노동패널 1~10차로 빈곤의 진입과 탈출의 지속기간에 관한 분석에서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60% 이상이 1년 이내에 빈곤 상태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병희(2010)는 노동패널 2002-2006년을 분석하여 빈곤이력에 대한 동태적 분석으로 빈곤주기에 따른 유형별 분석에서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으로 유형화 하였을 때, 상대적 수준에서 보면, 일시적인 빈곤은 소득 위험이 크지 않은 반면, 반복빈곤과 지속빈곤은 소득 하락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활동상태도 규칙적으로 일한 지속 취업자는 일시빈곤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부분 취업자와 실업자는 지속적인 빈곤과 반복적인 빈곤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소득 수준도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빈곤을 경험하더라도 일시적인 빈곤에 머무르는 비중이 높은 반면, 저소득 취업자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 취업자라도 5년 동안 근로하게 되면 빈곤무경험 비율은 39.3%, 일시빈곤은 15.2%, 반복빈곤은 20.2%, 지속빈곤은 25.3%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하여 분석한 이병희(2008)처럼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활동성이 높다는 점과

동일하다.

이병희(2013)는 한국복지패널 2005-2011년 자료를 빈곤이력에 따라 빈곤계층을 유형화하였는데, 7년 동안 빈곤경험률은 30%에 이르러, 빈곤 위험에 노출된 가구는 한 시점의 빈곤율을 크게 상회한다. 절반 내외의 빈곤층이 빈곤 진입과 탈출을 매년 거듭하지만, 빈곤경험가구 가운데 2회 이상의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가 34.4%에 이르며, 한 시점에서 빈곤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가구로 나타나, 빈곤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크게 나타난다. 빈곤경험 가구는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지출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빈곤층의 높은 실직 위험과 낮은 근로소득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직하더라도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활발하며,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주로 빈곤선 주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 빈곤화하는 비중이 높다(황덕순, 2001; 이병희·정재호, 2002; 홍경준, 2004; 금재호, 2005; 이병희·이승렬 외, 2006).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 빈곤의 동태성은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김교성·반정호, 2004; 남춘호 외, 2006; 장세훈, 2006; 조막래·이순아, 2012). 특히 근로빈곤층의 빈곤주기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도 이러한 반복빈곤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병희, 2010a; 이주환, 2012). 근로빈곤의 주된 원인은 적은 근로시간보다는 낮은 근로소득과 빈번한 고용단절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결국,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과 진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취업이다. 그러나 취업 그 자체만으로 빈곤 탈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빈곤한 주요 요인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동조건이 열악한 질 낮은 일자리, 높은 실직위험에 의한 고용의 단절과 불규칙성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에 있다는 것이다.

1.3.2.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1) 인적자본 특성

성별은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차이를 가지게 하는데, 여성일 때 빈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경준·김대일, 2003; 구인회, 2002; 금재호·김승

택, 2001; 황덕순, 2001). 또한, 여성 가구주의 낮은 직업지위로 인해 빈곤 가능성이 크고, 이들의 가구 빈곤은 다음 세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이다.

박효진(2009)은 여성 가구주 근로빈곤층의 경우에 미취학 자녀수가 빈곤 탈출의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이며, 노동시장 특성과 관련한 어떤 변수도 빈곤 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남성 가구주 근로빈곤층의 경우에는 취업 여부와 무급 가족종사자 여부가 빈곤 탈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하(2009a)는 한국노동패널 2-8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근로빈곤층의 남성과 여성의 빈곤 탈출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여성은 경력 연수가 남성과 달리 빈곤 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아동 유무나 결혼 지위가 여성은 빈곤 탈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남성은 아동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규칙적인 일자리에 속할 경우 빈곤 탈출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일자리의 규칙성이 빈곤 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직업훈련과 교육수준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빈곤 탈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고(금재호, 2004; 이병희, 2005; 이병희, 2008; 지은정, 2009; 김교성·노혜진, 2009; 박효진, 2010), 교육수준이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다(김교성·반정호, 2004; 임세희, 2006; 지은정, 2007; 조막래·이순아, 2012). 기준 학력에 따라 분석도 다양한데, 고졸보다 중졸이 빈곤 탈출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거나(강신욱, 2009; 금재호, 2009), 고졸 미만은 빈곤 탈출 확률이 낮다(윤정운·박나량, 2004)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지은정(2009)은 초등학교 졸업보다 중학교 학력과 전문대 이상 학력만 빈곤 탈출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변금선(2012)은 전문대졸보다 고졸은 빈곤 탈출에 음(-)의 관계이지만, 고졸 미만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윤진성·허원제(2014)는 대졸과 석사 이상 일지라도 빈곤 탈출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김은하(2009)는 근로빈곤층의 여성에게 있어 교육수준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연령 차이에 따라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친다. 고연령일수록 빈곤 가능성이 큰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가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령이 많을수록 단순 노동직, 낮은 임금의 일자리,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등에 종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러한 결과로 개인과 가구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빈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석재은·김태완, 2000; 구인희,

2002; 윤정윤·박나량, 2004; 이병희, 2005; 김기승·조용수, 2007; 지은정, 2009; 변금선, 2012; 윤진성·허원재, 2014).

신현구·부가청·이혜정(2010)은 총 일자리 수가 많은 중고령자일수록 빈곤 가능성이 크나 생애 근로기간이 긴 중고령자일수록 빈곤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하였다.

석상훈·김현수(2012)는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 퇴직한 후 재취업을 통해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는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낮지만, 김재호(2014)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완전 은퇴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생애 주된 일자리가 상용 임금 근로자인 경우만을 살펴봤을 경우 상용 임금 근로에 계속 근무할수록 완전 은퇴보다 빈곤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일지라도 빈곤에 취약하다는 연구도 있다. 변금선(2012) 한국복지패널의 3차(2007년)-5차(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고용특성과 고용 불안정이 빈곤이행(빈곤 진입과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하였다.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 탈출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고졸자나 저학력층은 더욱 빈곤에 취약하다고 분석하였다. 김혜련(2009)은 29세 미만은 빈곤 탈출 확률이 낮다고 분석하였다. 이병희(2005)도 50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빈곤 탈출에서 힘든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변금선(2013)은 노동패널 자료를 통하여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만 17세 시점 빈곤했던 청소년은 비빈곤 청소년보다 청년기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여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이 성인으로의 이행기인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에서 낮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빈곤 탈출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이동영, 2005; 유태균·박효진, 2009; 윤성원, 2009)가 있는 반면에, 건강상태가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김교성·반정호, 2004; 김은하, 2009).

2) 가구 특성

배우자가 있으면 빈곤 탈출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였다(김교성·반성호, 2004; 김은하, 2009; 유태균·박효진, 2009; 정준수, 2013). 그러나 결혼 상태는 빈곤 탈출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임세희, 2006)가 있지만, 미혼인 경우는 빈곤 탈출 확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김혜련, 2009).

가구원 수와 빈곤 탈출에 관한 연구에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 탈출 확률이 높다는 연구(강순화, 2004; 노대명 외, 2005; 이현욱, 2009; 김재호, 2009)가 있지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김재호, 2009)도 있다.

특히 가구 내에 미취학 자녀수는 빈곤 탈출 확률에 부(-)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박효진, 2009). 그러나 김은하(2009)는 가구 내 아동 유무는 빈곤 탈출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고, 가구 내의 노인 등의 가구원 존재는 빈곤 탈출에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이병희, 2008; 이석환, 2010; 조막래·이순아, 2012).

이병희·이승렬(2006)은 빈곤의 탈출과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근로소득 증감으로 나타났다. 이병희·반정호(2008)는 복지패널 1차년도에 빈곤 상태에 있다가 2차년도에 빈곤을 벗어난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 탈출 요인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빈곤층의 소득 상황 이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구 소득의 원천 별로 보면 22.7%가 비근로소득액의 증가로 인한 빈곤 탈출인 반면 73.1%가 근로소득액의 증가와 관련한 빈곤 탈출이다. 근로소득액의 증가를 다시 취업으로 인한 변화와 그 외의 요인으로 인한 변화로 구분하면,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과 관련된 빈곤 탈출 보다 근로소득액 자체의 증가로 인한 빈곤 탈출의 비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3) 노동시장 특성

이병희·반정호(2008)는 한국복지패널 1~2차 자료를 이용해 빈곤이행과 취업 지위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비취업에서 취업해도 빈곤유입률은 9.8%, 빈곤 탈출률은 59.2%, 취업에서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빈곤 유입률은 5.7%, 빈곤 탈출률은 53.7%로 분석하였다.

노대명 외(2009)는 복지패널을 통한 분석에서는 근로 능력이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할 때 빈곤 탈출률은 64.3%, 취업에서 취업을 50.4%로 노동이동을 통한 빈곤 탈출이 계속 취업상태에서 머무는 경우보다 빈곤 탈출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병희(2010a)는 가계조사 패널을 통하여 가구주의 취업 상태 변화에 따라 가구

빈곤상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취업에서 실직하게 될 때 빈곤 유입률이 52.9%이고, 비취업에서 취업이나 취업에서 취업으로 유지하는 경우에 빈곤 탈출률이 각각 38.2%, 30%로 나타났다.

이병희(2010b)는 노동패널 2002~2006년을 분석하여 저소득 취업자라도 5년 동안 근로하게 되면 빈곤 무경험 비율은 39.3%, 일시빈곤은 15.2%, 반복빈곤은 20.2%, 지속빈곤은 25.3%이다. 이러한 저소득 취업자는 5년 동안 평균 2.2년의 내 취업과 2.2년의 부분취업, 0.6년의 비취업을 경험하고 있어 고용의 단절과 불규칙성이 높으나 노동시장 이탈성향이 낮다. 근로빈곤의 주된 원인은 적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낮은 소득과 높은 실직위험에 의한 고용의 단절과 불규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근로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빈곤 탈출이 어렵다고 분석되었다(노대명 외, 2003; 노대명 외 2004; 김교성, 2006; 구인회·백학영, 2010 ; 김교성·최영, 2010; 이병희·반정호, 2009; 변금선, 2012).

그러나 정규직 가운데도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백학영·구인회(2010)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의 4배의 빈곤 위험을 보이며, 정규직의 취약근로자(정규직 임시·일용직) 빈곤층 규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하였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중 상당 부분은 일자리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이 아주 적거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성, 노동조합 가입 여부, 기업규모, 산업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존재하는 연구도 있다(이인재·김태기, 2009; 박기성·김용민, 2007; 송일호, 2005; 백학영·구인회, 2010).

중사상지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근로빈곤의 결정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 근로빈곤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반정호, 2012; 지은정, 2013).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일용직일 경우에 특히 빈곤의 위험성이 높다(황덕순, 2001; 구인회, 2002; 노대명 외, 2003; 유경준·김대일, 2003; 노대명 외 2004; 김교성, 2006; 이병희·반정호, 2009; 구인회·백학영, 2010; 김교성·최영 2010; 석상훈, 2010, 2011).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빈곤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자영업자가 훨씬 더 빈곤에 취약하다는 연구도 있다(금재호, 2005; 김은하, 2009; 지은정, 2012; 반정호,

2012). 지은정(2012)은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 근로자보다 평균 3.2배 높다(2005~2009년)고 하였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임시 일용직의 빈곤율도 높지만,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더 심각하다고 분석하였고, 윤희숙(2012)도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유지하지만,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도 근로빈곤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다(구인회·백학영, 2010; 김교성·최영, 2010; 금재호, 2006; 이병희·반정호, 2009). 그러나 연구자마다 분류상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송호근(2002)은 서비스직, 생산직 59%,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은 22.9%, 자영업자 13.4%로 근로빈곤층의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단순 노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순으로 근로빈곤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구인회·백학영, 2010; 김교성·최영 2010).

홍경준(2005)은 판매 서비스직, 농어업, 기능직, 단순 노무직의 순으로 근로빈곤의 위험이 있고, 박경숙 외(2005)와 장원봉·정수남(2005)은 직종으로 보면 단순 노무직과 단순 서비스, 금재호(2006)는 단순 노무직을 기준으로 직업이 관리자이거나,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직종일 경우에 빈곤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성별의 차이에 따라 직종에도 차이가 있는데 김은하(2009)는 남성은 직종과 업종에서 빈곤 탈출에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은 단순 노무직 대비 서비스 및 판매직에 속한 경우 빈곤 탈출의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연령대로는 청년의 경우 변금선(2012)은 사무직이 기계직 보다 빈곤 탈출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하였다.

공통으로 단순 노무직, 서비스직, 생산직이 빈곤 탈출 확률이 낮다. 그러나 사무직과 관리직, 전문직에서도 근로빈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음을 선행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고,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업종의 경우 직종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마다 분류상의 차이가 존재하여 다양한 분석이 있다. 빈곤의 위험성 효과가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국내의 연구결과가 있다(정진호 외, 2002; 금재호, 2006 ; 김교성·최영, 2006). 송호근(2002)은 노동패널 1~3차 분석을 통해서 산업은 도소매, 숙박, 음식점 서비스업이 34.9%, 제조업, 건설업이 32.3%, 공공행정, 사회 서비스업이 14.0% 순으로 근로빈곤 위험 업종이라고 분석하였다. 노대명(2005)은 근로빈곤층이 주로 제조업, 건설업, 단순 서비스업에 70% 정도 종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대명 외(2006)는 근로빈곤층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업·임업, 서비스업, 건설업일 경우 근로빈곤 위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금재호, 2006; 석재은, 2004; 김교성·최영, 2006; 김환준, 2011; 김태환, 2012).

홍경준(2005)은 기타 서비스업, 농림 수산업, 도소매, 광업 및 제조업 순으로 근로빈곤 위험이 크고, 박경숙 외(2005)와 장원봉·정수남(2005)의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은 업종으로 볼 때 제조업, 서비스업, 금재호(2006)는 산업별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때 빈곤에 속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남성과 여성의 빈곤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업종의 영향은 달라진다. 김은하(2009)는 남성은 업종에서 빈곤 탈출에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은 농어업 숙련직과 생산직에 속한 경우 빈곤 탈출의 가능성이 감소하였고, 제조업 대비 도매 및 숙박업에 속한 경우도 빈곤 탈출의 가능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석재은(2004)은 남성의 경우 제조업 대비 도소매 및 판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속하였다면 빈곤 진입의 확률이 증가하고, 여성은 제조업 대비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속했을 때 빈곤 진입의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또한, 남성은 특정 업종이 빈곤 지위 변화의 확률을 증가시키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일의 종류에 따라 성별 빈곤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해당 사회 또는 해당 지역의 고용률이 높고, 좋은 일자리가 많을수록 빈곤은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빈곤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간 체계적인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다.

금재호(2005)는 서울을 포함한 경인지역 및 부산·경남·울산지역에 거주할 때, 빈곤의 위험성도 적고, 빈곤에 빠져도 쉽게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학영(2007)은 한국복지패널의 가구 특성 자료와 시·군·구의 지역 특성 자료를 결합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미시적 요인과 지역 특성 요인들이 빈곤 결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가구의 연령과 학력, 경제활동 상태, 가구 내 취업자 수와 아동의 유무 등과 같은 미시적 요인들과 지역의 노동이동성과 재정자립도 등의 거시적 요인들이 가구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록·백학영(2009)은 노동패널 1-9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곤 진입과 탈

출, 빈곤 유지율의 지역 간 편차분석에서 빈곤 진입률과 빈곤 유지율은 지방이, 빈곤 탈출률은 수도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빈곤주기 및 빈곤지속 기간 분석에서는 지방이 상대적으로 반복빈곤과 장기빈곤이 높은 편임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빈곤 탈출 및 빈곤 재진입 확률 분포 분석에서는 지방에서 빈곤진입 후 단기간에 빈곤을 탈출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간이 지날수록 빈곤 재진입 확률은 높은 추세를 보여 빈곤 탈출 및 재진입 구조에서도 격차가 확인되었다.

김교성·노혜진(2009)은 한국노동패널과 광역지자체의 지역 자료들을 결합하여 가구의 빈곤 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 및 거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빈곤 탈피 가능성 및 빈곤 지속 기간 등에 가구주의 성별(여성 가구주), 연령(고연령), 학력(저학력), 고용상태(실업) 등의 미시적 요인들과 지역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수준,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 실업률 등의 지역사회 수준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임찬우(2013)는 지역적 요인 중에서 제조업 비율, 인적자본 수준, 복지지출 규모에 따라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병희(2011)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공식과 비공식, 비취업의 변화에 따른 빈곤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빈곤 탈출률이 가장 높은 경로는 공식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전환하였을 때이다. 빈곤 탈출률은 공식일 자리를 유지하였을 때 76.8%, 비공식 취업자가 공식일자리로 전환하였을 때 76.4%, 비취업자가 공식 일자리를 획득하였을 때 66.4% 순으로 나타나 비공식 근로의 이력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빈곤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전병유·이상혁(2011)은 근로빈곤층은 높은 실직위험과 낮은 근로소득과 함께 소득의 변동성이 높는데, 빈곤 탈출의 주요한 경로는 취업상태로의 전환이지만, 빈곤 탈출률이 가장 높은 경로는 공식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전환하였을 때이다. 빈곤 무경험층,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등의 4가지로 빈곤을 유형화하여 각 범주에 들어가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공식 근로 경험 기간이 1년 증가할 때, 빈곤 무경험보다 일시빈곤 위험이 1.3배, 반복빈곤이 1.4배, 지속빈곤이 1.8배 증가하나, 비취업 경험 기간이 1년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시빈곤의 상대적 위험이 1.4배, 반복빈곤이 1.7배, 지속빈곤이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병희(2010)는 근로빈곤층의 빈곤한 이유가 근로시간이 짧아서 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취업을 경험하는 빈곤층의 주당 근로시간은 54시간 이상은

32.1%, 36-53시간은 33.7%로서 65.8%는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주요 원인은 적은 근로시간 보다 낮은 근로소득과 빈번한 고용단절에 있음을 분석하였다(강금봉, 2016에서 재인용).

4) 정부정책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 빈곤 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하고 있다(전영준, 2008; 송헌재·전영준, 2011; 전영준·남재량, 2011; 박능후, 2011; 윤희숙, 2012; 김재호, 2014). 김재호(2014)는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에 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윤희숙(2012)은 근로장려세제 수급자가 원래 제도가 목표했던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비율과 근로빈곤층의 실제 수급 비율이 모두 매우 낮아 빈곤 감소 효과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저임금의 빈곤 탈출 효과에 대해 이시균(2012)은 최저임금의 수혜자들이 기간이 지날수록 비수혜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근로빈곤 탈출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2005년 근로빈곤층 중 최저임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의 근로빈곤 5년 후 탈출률은 6% 상승했지만, 최저임금 혜택을 보는 이들은 같은 기간 8.1%나 올랐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김현경(2015)은 빈곤 탈출의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하였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주당 62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버텨야 기초수급자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낮은 자활탈출확률로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시 되어 왔다(한국개발연구원, 2006; 유태균·윤성원, 2012; 류만희, 2015). 자활사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 분석 연구에 의하며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를 고용보험DB와 연동시켜 분석한 결과 IAP 수립 후 30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일자리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거의 80%에 가깝게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고용보험 일자리 취업 빈도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일자리 근속기간 및 평균 근속기간도 짧아 취업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이 불안한 것으로 분석하였다(최형재·이시균, 2013).

근로빈곤층 빈곤 탈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개인의 빈곤 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 인적자본 특성으로는 성, 연령, 학력수준, 건강상태이다. 가구적 특성으로는 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 아동과 노인 유무, 부채 유무이다.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고용 지위,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직업이나 업종, 거주 지역, 공식 일자리가 중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표 2-2> 근로빈곤층 빈곤의 탈출에 관한 선행 연구 정리

연구자	분석자료	독립변수	분석 결과 (정적영향: +, 영향없음: 0, 부적영향:-)
윤정운·박나량 (2004)	복지패널 5-8차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계채무적 특성, 인적자본요인, 가족의지지, 심리적 복지	연령, 농어촌거주, 한부모, 조손가구, 부채, 고졸미만, 실업 및 비경제활동
이병희 (2005)	노동패널 1-6차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빈곤경험주기, 횡수, 가구 특성, 개인 특성(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 빈곤경험주기 횡수, 학력, 연령
임세희 (2006)	노동패널 1-5차	경제활동(취업자의 수 변화, 비근로소득의 변화, 정규직/비정규직 변화, 근로시간변화), 통제변수(빈곤기간, 실업율, 성별, 연령, 교육수준, 아동 수 변화, 성인 수 변화, 가구 유형의 변화)	빈곤기간, 취업자수, 정규직, 완전취업가구(40시간), 성별(0)
김기승·조용수 (2007)	노동패널 3-7차	인구학적변수, 노동시장 특성, 가구 특성	남성, 취업자수, 제조업, 학력은 빈곤상태에서 탈출은 직접 도움 없다(40대 가구), 연령, 취업상태, 취업기간(30대 이하-)
지은정 (2007)	노동패널 3-7차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	중고령층(-), 중학, 전문대(+초등), 근로빈곤노동시장 지속기간 투입하면 효과 없음
이병희 (2008)	복지패널 1-2차	인구학적 변화, 가구소득액 취업상태	학력, 가구내노인 유무, 취업 여부, 소득증가 변화

(표 계속)

<표 2-2> 근로빈곤층 빈곤의 탈출에 관한 선행 연구 정리(계속)

연구자	분석자료	독립변수	분석 결과 (정적영향: +, 영향없음: 0, 부적영향:-)
김은하 (2009)	노동패널 2-8차	인적자본(경력, 교육, 직업훈련, 건강상태), 가구 특성(부양아동, 결혼지위, 가구원수, 기타 근로소득, 공사적 이전액), 노동시장 지위(주당근로시간, 일자리규칙성, 종사상지위, 직종, 업종)	경력년수(남성+, 여성0), 교육수준(+), 직업훈련(0), 여성: 아동유무나 결혼지위(0), 남성: 아동, 배우지않는 경우(-), 일자리규칙성(남성+, 여성0), 자영업(상용자대비-)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은 차이없음, 가구원수,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 제조업(도매 및 숙박업-), 타근로소득, 이전소득(+)
김재호 (2009)	노동패널 1-9차	연령, 성별, 학력, 지역, 가구원수, 주거형태, 근로소득유무, 사회보험수급유무, 직업훈련경험여부	상용근로자보다는 자영주(+), 직업훈련경험여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월세거주(+), 사회보험수급(+), 고졸 이상(+)
박효진 (2009)	노동패널 4차-9차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참여특성, 경제적 특성	여성가구주(-), 미취학자녀수(-), (120%기준) 취업여부, 임시직여부, 무급종사자 여부 (120+2년) 남성가구주 가구에서 취업여부, 무급가족종사자 여부
조막래 · 이순아 (2012)	노동패널 2-10차	학력, 연령, 6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생계부양형태, 빈곤지속기간	생계부양형태(0), 가구내 65세 노인유(-)
변금선 (2012)	복지패널 3-5차	인구사회학적 변수, 소득변수, 빈곤경험, 고용불안	성별, 연령(0), 고졸(전문대비해-), 고졸미만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음, 관리자, 전문가, 기능기계직, 사무직 (사무직이 기능, 기계직보다 빈곤 탈출가능성이 낮음)

(표 계속)

〈표 2-2〉 근로빈곤층 빈곤의 탈출에 관한 선행 연구 정리(계속)

연구자	분석자료	독립변수	분석 결과 (정적영향: +, 영향없음: 0, 부적영향: -)
정준수 (2013)	노동패널 6-13차	가구특성, 인적자본특성, 노동시장 특성	절대빈곤: 교육수준(+), 건 강상태(+) 상대적빈곤: 기혼(+), 취업 가구원수(+)
유진성· 허원재 (2014)	복지패널 1-8차	가구 특성, 인적자본특성, 노동시장특성	빈곤기간(-), 정부지원금수 혜금액(-), 연령, 가구내 취 업자(+), 대도시거주(+), 전 체샘플가구주 교육수준 (대졸, 석박사일자라도영향 없음: 근로가능자만 할 때 는 탈출(+), 가구주결혼(+)
최승아 최재성 (2014)	노동패널 1-13	가구주 특성, 가구내 특성, 가 구외적 특성	사회보험 수급여부(+), 이 전소득(+), 가구내 취업자 수(+), 거주지역(+), 빈곤진 입시점(+)

1.4. 사례분석 선행연구

1.4.1. 고용서비스 제공자 FGI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방안을 다룬 류기락 외(2014)는 지역자활센터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전단계 운영에 대한 의견, 희망리본사업의 고용노동부 기관 문제, 취업지원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된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윈스톱 센터에 관한 문제, 근로빈곤층에 대한 현재의 직업훈련 정책 등을 논의하였다.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자활센터의 수급자들 대상의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병희 외(2015)는 근로빈곤 관련 연구 중에서 고용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FGI를 진행하였다. 담당자들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기에 앞서 개별 면담을

통해 FGI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FGI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면담과 FGI를 진행하였다. 저소득층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시군구 및 고용센터의 자립지원상담사, 그리고 읍면동 복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시군구 자활고용지원팀 담당자에 대해서는 사례의 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통보를 받는 방식과 장애, 고용센터의 사례배치 등에 대한 의견, 고용센터의 사례관리, 이관과정, 자립지원상담사와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과정 등을 질문하였고, 시군구 자립지원상담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소속으로 상담사의 역할변화와 정체성, 지자체 복지서비스 및 복지담당 팀과의 관계 변화, 읍면동과의 관계 변화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고용센터 담당자에 대해서는 사례의 이관, 종료, 통보 등의 절차와 장애, 사례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활동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면담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시군구 자립지원상담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FGI를 실시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중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 담당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발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정 중 복지영역, 기타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과 연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시군구 자립지원상담사를 대상으로 수급자 및 비수급 참여자의 발굴과 발굴된 사례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정 중에서 복지영역, 기타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과 연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1.4.2. 근로빈곤층 사례분석 선행연구

근로빈곤층을 다룬 질적연구의 선행연구는 크게 근로빈곤층 그 자체의 특성을 탐구한 연구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탐구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다룬 연구로 이은주(2008)와 이현주(2012)를 들 수 있다. 이은주(2008)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6명의 근로빈곤층을 심층인터뷰하고 근거이론 분석에 기초해 이들의 삶을 다양한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개방코딩에서 ‘미래가 없음’, ‘제한된 삶의 기회’, ‘노동에서 배제’, ‘불운한 성장’, ‘외부관계 단절’ 등의 주제어를 도출하고, 선택코딩 과정에서 ‘미래가 아득한 갇힌

삶의 중심범주와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빈곤의 경로로 (1단계) 불우한 출신 배경, 제한된 삶의 기회, (2단계) 이른 사회진출, 불행한 결혼, (3단계) 노동에서 배제, (4단계) 가난의 대물림을 주제로 도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16명 중 4명은 배우자가 같이 참여한 것이 특징적이다. 참여자는 33세에서 58세까지, 고졸 이하부터 대졸까지, 기혼, 이혼, 사별의 결혼지위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현주(2012)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를 근로가치와 근로동기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근로가치나 근로동기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26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층은 보장되지 않는 소득이나 안정보다 사회적 존재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도움 되는 일자리를 선호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낮은 기회비용 때문에 일의 포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빈곤층의 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이들의 불신과 통제력 상실, 그리고 무기력 극복이 제 정책 작동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제안하고 있다. 26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연령분포는 20대 2명, 30대 4명, 40대 9명, 50대 4명, 60대 3명, 그리고 70대 4명으로, 성별분포는 남성 9명, 여성 17명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의 고용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질적 연구로 신명호·황덕순(2012)과 김철희 외(2013)가 있다. 먼저, 신명호·황덕순(2012)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다수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만족하지만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자력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사람도 성과에 포함될 가능성,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운 요인들이 취업률에 반영, 직업훈련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 등을 찾아냈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노동시장 정보가 직종과 훈련선택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는 것, 참여자 특성에 맞는 유연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등의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심층면접을 하는 과정에 필요에 따라 고용센터의 기록을 참조하였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화면접을 추가로 실시했다. 그리고 주제별 코딩 후 유사한 내용을 범주화하고, 분석에 있어서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병행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 고용센터로부터 추천받은 39명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연구참여자로 확보했다. 취업지원경로별로 구성하였고, 조건부 수급자도 일정비율로 안배하였다.

김철희 외(2013)는 근로빈곤층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한 양적연구와 더불어 질적연구를 병행하였다. 매장 판매종사자, 운수서비스 종사자(택시기사) 중 근로빈곤층을 선별해서, 각각 3명과 5명씩 FGI를 실시하였다. 근로빈곤층의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 주제로 하였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다른 질적연구들과 달리 연구참여자들을 집단으로 묶어 FGI를 실시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해외 주요사례

2.1. 해외동향 개요

유럽연합에서는 「Europe 2020」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처해 있는 20만 명을 줄이는 전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을⁵⁾ 마련하고 유럽 반 빈곤 네트워크(European Anti Poverty Network: EAPN)를 통하여 정책적 실행에 대한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근로빈곤⁶⁾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저임금, 불충분한 근로, 가구 원 구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세 가지 원인에 미치는 개인과 가구 특성에는 기술 수준(교육), 성별, 연령, 가구 규모 및 노동 가능 시간, 가구 내 아동 유무, 전일제 또는 시간제 고용 등의 고용 형태이다. 이외 외적인 특성에는 임금 조정, 최저임금제도⁷⁾, 고용보호 규제, 세계 구조 및 지원, 직업훈련 및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 접근성이다. 정책 전망에서 근로빈곤 증가는 노동시장 정책(임금 결정 메커니즘, 단체교섭, 최저임금 정책), 가구소득 지원(세제지원, 아동양육 수당 등)과 사회안전망 등이 주요한 정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EU 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14).

그러므로 근로빈곤층 감소 정책은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
- 5) 이 전략에는 다섯 가지의 주요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통합적 정책의 범위에서 행동을 취하도록 하자. 노동시장, 최저임금지원, 건강지원, 교육, 주택, 은행 계좌 개설 등. 둘째,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지원하기 위한 EU 사회기금(EU Social Fund)의 20% 사용. 셋째, 실행하기 전에 사회정책 혁신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제시. 넷째,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다섯째, EU 국가들의 정책적 협력과 조정 강화
 - 6) 유럽연합에서는 근로 빈곤을 대신에 근로빈곤 위험률로 통계를 산출한다. 근로빈곤 위험률의 기준은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이다. 2014년 기준을 살펴볼 때 EU 28개국 근로빈곤 위험률은 9.5%이다. 2015년 기준으로 EU 국가 중 루마니아가 18.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그리스 13.4%, 스페인 13.1%, 포르투갈 10.9% 순이다. 낮은 국가는 핀란드가 3.5%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각각 5.5%로 낮은 순이다.
 - 7) 영국에서는 저임금 관련 정책으로 국가생활임금을 도입하였다. 국가생활임금은 25세 이상 근로자에게 2016년 4월부터 적용되는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NMW)’ 요율로 정의될 수 있다. 국가생활임금은 중위근로소득의 55% 수준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요율 산정은 국가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가 맡게 된다.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는 직접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지원을 하게 되는 조치(최저임금, 사회부조, 세제지원)와 간접적 지원으로는 잠재적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직업훈련 및 교육, 아동양육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거시적 조치로는 노동 수요를 증대하는 정책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 임금보조 고용, 고용비용 보조 지원 등의 정책과 성(gender)평등 정책과 역량 강화(empowerment), 재정개혁(fiscal reforms) 등의 노동 공급 정책 등이 진행됐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정책은 고용중심정책(employment-oriented policies)으로 가구 단위의 저임금 근로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고용정책에는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개인의 맞춤형으로 숙련향상(up-skilling)을 위한 현장훈련(on-the-job-training) 등의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조지원 제도를 결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OECD에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경제의 글로벌화 및 기술진보, 노동과 자본 간 소득분배 격차 확대, 비정규직 비중 상승, 재분배 정책의 약화 등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등으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증가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회원국에서 생겨난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임시, 시간제이거나 자영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하여 열악한 일자리와 연관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빈곤 대응책이므로 취업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우호적인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취업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청년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감소를 도모할 것을 정책적 권고하였다(keely, 2015).

선진국의 경우, 근로빈곤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영국에서는 사회보장 급여업무와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센터(Jobcentre Plus)를 설치하여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을 ‘연방정부·주 정부·기초 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간의 지역 파트너십에 기초한 컨소시엄’ 형태의 원스톱 통합 서비스센터(One-stop Career Center)로 전환하여 고용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여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중앙

부처가 제공하는 고용·복지 현금 급여 통합 서비스 전담 부처(Centrelink)를 설치하여 고용과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운영됐다. 그러나 국가마다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서비스 분절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더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면서 상호 의무를 강조하는 활성화(activation)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05년 독일의 하르츠 개혁(Hartz IV)은 소득보장제도와 취업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였고, 2009년 프랑스의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e Active: RSA)은 소득보장제도와 취업지원제도 그리고 취업촉진급여를 결합하였다. 2012년 영국은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 보편적 급여(Universal Credit)를⁸⁾ 통해 소득보장제도와 취업지원제도 그리고 취업촉진급여(in-work benefit)를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영국, 프랑스, 독일이 실업부조제도와 생계급여제도를 통합하고 있다. 이는 소득보장제도(생계급여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근로장려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근로빈곤층의 취업촉진과 고용유지 그리고 탈수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제도의 초기관문(Gateway)으로 설정하고, 이 두 제도를 근로장려세제와 결합하는 제도적 융합을 하고 있다(노대명, 2013).

이러한 제도적 결합과 함께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상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수급자⁹⁾, 고용 및 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수급자, 소득보조 및 노동능력상실급여(Income support and Incapacity benefits) 수급자별로 의무 노동연계 프로그램 참여가 강조되고, 호주에

8)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높은 한계공제율로 인하여 근로의욕 박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에서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가 신설되었다. 과거 영국에서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던 6개의 주요 기초보장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한계공제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니버설 크레딧은 향후 소득보조(Income Support), 소득 기반 구직자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소득연계 고용지원수당(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아동 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를 대체하는 핵심적인 비사회보험형 급여(core non-insurance based benefit)가 될 것이다(이현주, 2015).

9) 실업자이거나 주당 16시간 이하를 일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구직수당 수급자: Jobseeker's allowance)들은 연령에 따라 수당을 받은 지 9-12개월 후에 고용센터 상담원을 통해 이 프로그램 참여를 의뢰받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조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일정 기간 구직수당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서도 2015년 7월 새롭게 시작된 jobactive 고용서비스 체계에서도 각종 수급의 조건으로 대상별 매달 구직활동 횟수 등의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 노동시장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중에서 고용정책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외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2. 주요 국가별 고용-복지 연계 취업 프로그램

2.2.1. 영국 The Work Programme¹⁰⁾

The Work Programme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주의 인구비중이 EU에서 가장 높은 영국의 상황에서 공공, 민간,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경기 침체에 빈곤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500만의 근로 연령대 중 각종 실업 관련 수급자들의 수급의존을 줄이고, 장기 실업의 위험에 놓인 대상들을 돕기 위하여 영국 연립정부의 복지개혁 일환으로 2011년 6월에 영국 전 지역에 도입된 성과형(payment-for-results) 고용-복지연계 프로그램(welfare-to-work programme)이다.

영국의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인 Jobcentre Plus는 급여 관련 업무와 고객 상담, 급여 신청 초기의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며,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취업상담원들에게도 재량권을 확대하여 구직자들의 개인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급여 종류와 근로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이후에 Jobcentre Plus을 통해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민간으로 위탁되어 Work Programme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

Work Programme의 주요 대상자들은 장기 실업의 위험에 놓여있는 대상자, 장애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구직자,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대상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포괄하고 있다. 과거 영국의 고용·복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뉴딜 프로그램과 같이 연령, 장애, 미혼모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분

10) 영국 하원 결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4개월 동안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가운데 안정적인 고용상태로 전환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수치(11.9%)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 공급자별로 실적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낮게는 2%에서 높게는 5% 수준으로 그 폭이 크지 않았다(이정희, 2013).

화 되었는데, Work Programme은 이러한 인위적인 장벽을 없애고 과거 다양한 그룹별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ork Programme은 장기 실업의 위험에 놓여 있는 대상자, 장애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구직자,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대상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영국의 고용·복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뉴딜 프로그램과 같이 연령, 장애, 미혼모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세분화 되었는데, Work Programme은 이러한 인위적인 장벽을 없애고 개인과 개인의 특성에 맞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Work Programme 수행 기관인 인지어스(Ingeus)에서는 복합적인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백 개의 소규모, 지역 NGO 단체, 전문가 집단들을 통하여 주택문제, 채무 해결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는 장애인 단체(Action for Blind People), NGO 단체(Volunteer Centre Edinburgh), 정신 건강 지원 기관(Hammer smith and Fulham Mind, Scottish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등이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인 취업 관련 고용서비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건강, 가정 문제 등의 복지서비스 등 통합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¹⁾

2.2.2. 호주 Jobactive

호주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호주 고용서비스의 평가를 통해 노동시장을 돕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제기하였다. 기존의 호주 고용서비스에 관한 문제점을¹²⁾ 토대

11) 민간위탁 기관이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Work Programme은 주계약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18개 지역에서 두 개의 주계약자들이 선정되면, 각 주계약자는 지역 내 소규모 직업소개기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특수서비스 제공기관(심리치료,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하부계약자(sub-contractors)를 통한 체인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주계약자와 하부계약자 간의 계약이 공정하도록 고용연금부에서는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Jobcentre Plus로부터 이관되는 위탁 기관에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자격증, 직업번호, 직업력, 근무 선호시간, 급여 종류, 질병 상태, Jobcentre Plus 서비스 기록, 가족사항, 요구 스타일, 취약 정도 등 30여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2)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8), The Future of Employment Service in Australia: A discussion paper, Commonwealth of Australia, Canberra.

로 하여 2009년 7월 1일에 새로운 고용서비스인 ‘Job Services Australia’ 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체계의 도입 배경에는 기존의 고용서비스로는 증가하는 실업률과 기술부족의 확대, 취약계층과 장기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성장 둔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호주 정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Job Services Australia는 기존의 잡 네트워크의 연속적 지원을 대체하여 4가지 서비스 유형을 단계적으로 노동시장지원과 견습제도, 직업교육, 훈련, 주 및 지역 정부의 고용과 훈련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특히, Job Services Australia는 가장 취약계층 구직자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술이 부족한 영역에 대처하고, 고용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Job Services Australia를 대체하는 새로운 고용서비스 체계인 ‘jobactive’가 시작되었다. 이 고용서비스는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취업 후 장기적으로 고용 유지하여 각종 사회부조 및 급여에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obactive 모델은 구직자가 취업 장애 요인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고용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에는 일자리 찾기, 이력서 쓰기 및 면담 준비, 해당 지역의 일자리 소개, 해당 지역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적합한 훈련 안내와 제공,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도록 준비시켜주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Work for Dole과 같은 공공근로 혹은 기타 취업 준비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Job Services Australia 체계 아래에서 고용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존의 고용 경로계획(Employment Pathway Plan)을 지속해서 활동하나, 새로운 기관으로 연계되거나 신규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 경로계획 대신에 Job Plan을 마련해야 한다. 이 Job Plan은 상호의무 요건을 강조하면서 매달 최대 20번까지 구직 활동 수를 수행해야 하며, 담당 Jobactive 기관은 구직자가 적절한 직업유형에 정해진 횟수만큼 입사지원을 하는지 점검하며, 구직자는 www.jobsearch.gov.au 및 JobSearch 앱을 통해 자신이 구직활동을 관리 할 수 있다.

jobactive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는 위탁 기관에서 최상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보증(Service Guarantee)을

요구하고 있다.¹³⁾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위탁 기관과 함께 서비스를 받기 전에 취업계획(Job Plan)을 작성해야 한다. 이 취업계획에는 구직자가 받을 서비스와 소득 기준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구직활동 요건을 명시하도록 한다. 위탁기관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적 서비스에는 구직자의 장점과 당면한 문제점을 확인하여 취업준비도(Job-readiness) 향상, 구직자에게 알맞은 일자리 알선, 공공근로(Work for Dole) 일자리 소개, 구직자에게 임금 보조금이나 다른 지역 이주 지원, 취업 후 당사자 및 고용주와 연락 유지 등의 고용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Service Delivery Plan)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 문화적으로 세심한 방식으로 구직자를 공정하고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 등이다¹⁴⁾. 또한, 위탁 기관에서는 <표 2-4>와 같이 구직자유형분류체계(JSCI: Job Seeker Classification Instrument)를¹⁵⁾ 활용한 자료와 세부항목을 통해 개인의 필요와 취업 장애물을 파악하고, 지역의 고용률, 소득 지원(Income Support) 수혜자 비율, 저숙련 일자리 구인률, 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 13) jobactive 고용서비스 기관의 질적인 측면을 관리하기 위해 star rat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량지표로 구직자의 취업성도가 26주(일부 대상별 차이) 고용유지기간, 정성지표로는 질적 평가 기준에는 ISO9001, 호주 고용서비스 협회(National Employment Services Association; NESA)에서 마련된 고용서비스 산업기준(Employment Services industry Standards; ESIS), 장애인서비스 기준(National Standards for Disability Services; NSDS)으로 평가하고 있다.;
- 14) 반대로 참여자의 의무는 취업계획에서 하기로 동의한 일을 모두 수행, 적합한 일자리 수락, 구직활동과 일자리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 취업 계획에서 요구하는 횟수 만큼 일자리 검색 활동, 공공근로 참여와 같이 취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활동 요건 충족, 계획된 일정에 참석할 수 없거나 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당 jobactive 제공기관에 연락, 이 모든 상황 변화를 jobactive 제공기관에 통지이다.
- 15) 호주의 구직자유형분류시스템(JSCI)은 2009년 7월에 취약계층의 취약한 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맞게 가중치 및 세부기준들을 개정하였다. 2009년에 개정된 JSCI는 초기 상담 시에 구직자들의 상황에 대한 개인적 이력을 보다 더 평가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필요와 장애적 요소를 더 효율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18개의 평가 항목 중 비교적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성과 연령, 구직자 직업력, 원주민 지역, 건강상태, 거주 지역으로 이 중에서 성과 연령의 가중치를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항목의 세부기준이 22가지이다. 세부기준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16점에는 60대 이상의 여성, 15점에는 60대 이상의 남성, 12점에는 55-59세 여성으로 상대적으로 고령과 여성이 취약요인을 많이 가진 것으로 가중치를 주고 있다.

〈표 2-3〉 jobactive 구직자 파악 주요 항목

구직자 특성	세부기준
교통수단	구직자 분류시스템(JSCI) 기준
연령	구직자의 연령
양육 아동의 연령	구직자의 막내 아동의 연령
연락처	구직자 분류시스템(JSCI) 기준에 의한 전화 등 상시 연락처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	출생국가
서비스 가능 날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날
장애	구직자 분류시스템(JSCI) 기준에 의한 장애 유형
기초학력 이탈 여부	학교 중퇴 여부
교육수준	학력 및 교육 정도
범죄경력	법적 형량 기준
구직활동 흐름	구직활동 과정
성	성별
다문화	다문화 인증
구직자 분류시스템(JSCI) 점수	구직자 분류시스템(JSCI)의 점수로 취약 정도
장기 소득지원	10년 동안 소득지원의 이력
고령자 활동	55세 이상의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
재소 및 재활 프로그램	출소 후 프로그램 참여
이전 직업력	구직자 분류시스템(JSCI) 인터뷰로 2년 이상의 일 자리 경험
실업기간	프로그램 참여 시점까지의 실업기간
불안정한 주택	주택의 안정성에 관해서 확인
자격증 확인	유용한 자격증
근로 가능 시간	고용서비스평가(Employment Services Assessment)에 기초한 주당 근로가능 시간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jobactive Performance Framework Guideline, 2016

2.2.3. 미국 CareerOneStop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state) 단위로 진로지도사(Career Navigator) 운영을 위한 자원 제공을 제안하였다. 진로지도사는 실직 후에 성공적으로 경력을 계속 발전하기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진로지도사는 장기실업자, 구직 단념자, 고령 근로자, 기타 실직 후 스스로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미 있는 재취업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통계적 자료를 활용하는 ‘근로자 프로파일링(Worker Profiling)’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대상자들을 파악하게 된다. 진로 지도사는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연방 지원 서비스와 연계한다(Eberts, 2016).

고용서비스 기관인 CareerOneStop 에서는 개인의 관심과 경력을 연결하기 위해 직업 흥미 검사와 유사하게 온라인으로 자기의 흥미와 관심사를 통하여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검사를 제공하고 있고, 900여 개 이상의 직업 프로 파일 (Occupation Profile), 임금정보, 노동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기평가(Self-assessments)에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흥미평가(interests assessment), 기술평가(skills assessment), 직업가치(Work values)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평가에는 고용 가능성에 필요한 항목으로 적극적 경청, 적극적 학습, 문제 해결능력, 협력, 비판적 사고, 지도, 개인 자원 관리, 조정능력, 질적 통제 분석, 시스템 평가, 인터넷,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등의 컴퓨터 사용 능력 등을 평가하여 능력 단위에서 세부 직종으로 자기에게 맞는 직업유형을 찾는 시스템이다. 흥미 평가(interests assessment)는 O*NET interest profiler을 활용해 60가지 질문을 통해 자기의 흥미와 적성을 평가하여 직업경력과 어떻게 연계시킬지를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구직(Job Finder) 지원하기 위한 미국 구직사이트(US.jobs, America's Job Exchange, indeed, Career Builder)와 직업훈련기관 정보(WIOA Eligible Training Provider finder)를 통하여 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2.2.4. 북아일랜드 Steps 2 Success program(S2S)

Steps 2 Success program은 북아일랜드 고용학습부(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에서 운영하는 실업자를 위한 성인 고용 프로그램(adult employment programme)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직자들의 일자리의 질이 발전하도록 돕도록 경험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민간위탁 기관을 통하여 직업을 준비하고, 구직, 직업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직업준비 단계(Prepare for work)로 직업상담사와 함께 고용향상계획(Progress to Employment Plan)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구직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1인의 상담사 외에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단계는 구직단계(Get that Job)이다. 첫째 단계를 거치고 나서는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한다.

셋째 단계는 발전단계(Progress in work)이다. 이 단계에서는 취업 후에 언제든지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계속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3.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2.3.1. 영국

영국에서는 다양한 대상에게 맞는 맞춤형 고용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nterprise Programme(스코틀랜드 지역 제외)은 18-30세 중 창업을 원하는 실업자와 주중 16 시간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The Prince's Scottish Youth Business Trust(PSYBT)는 18-25세(장애인은 26-30세) 중 창업을 하거나 창업 사업장을 확장하기 원하나 자금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Get into Programme은 16-25세의 실업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직업훈련 후에 부동산, 건설, 병원 관련 업종 등의 특정 업종의 일자리에 연계된다.

Team Programm은 16-25세의 실업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JSA(Job Seeker Allowance) 자격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직업훈련, 경

력상담, 국가공인자격 취득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Get Started는 16~25세 실업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취업 동기가 약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취업의지 및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적 또는 사회적 기술 향상으로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교육, 훈련, 고용 중 하나의 방향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Fair bridge Access Course는 JSA(Job Seeker Allowance)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 상담사와 상담 후 제공되는 직업훈련과 전일제 고용이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이 참여자들은 52주 기간에 한 과정별 2주간 참여할 수 있다. Fairbridge Follow Course는 JSA 수급권자들이 시간제 근로나 주중 16시간 이하의 근로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Substance Misuse Treatment services는 지속적인 약물, 알코올 등의 오용자와 중독자 중에게 육체건강 및 정신건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Wheels to Work Scheme(W2W)은 교통수단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교육 및 훈련, 고용에 취약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3.2. 호주 jobactive restart programme

jobactive restart program은 중장년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해당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주가 취약계층 구직자를 2년 동안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하게 되면 최대 \$10,000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만약 고용주가 구직자를 주당 15~29시간 고용하면, 실제 고용 시간에 비례하는 ‘리스트ार्ट 임금 보조금’ 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50세 이상인 구직자가 구직수당(New start Allowance), 양육지급금(Parenting Payment), 장애인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Allowance), 사별 보조금(Bereavement Allowance), 한 부모 수당(Widow Allowance), 돌봄 지원금(Carer Payment), 배우자서비스 연금(Partner Service Pension), 전쟁미망인연금(War Widows Pension), 노령연금(Age Pension), 장년 배우자 수당(Mature Age Partner Allowance), 부인연금(Wife Pension), 한 부모 B 연금(Widows B Pension), 학비 보조금(Austudy) 중에 하나라도 6개월 이상 수급자이다.

2.3.3. 미국 WorkAdvance

WorkAdvance는 뉴욕시와 경제기회센터(the Center for Economic Opportunity)에서 운영하는 증거기반 프로그램(evidence-based programs) 중의 하나로 2010년에 사회혁신기금(Social Innovation Fund: SIF) 지원으로 실행되었다. 이 사회혁신기금(SIF)은 혁신적인 지역 기반 문제해결(community-based solutions)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는데,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Work Advance는 실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경력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소득이 상승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준비(prepare), 훈련(trains), 배치(places)의 경력개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취업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은 지속해서 경력개발 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WorkAdvance는 작업장(sector-base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에 기반을 둔 장기적인 경력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WorkAdvance는 현재 뉴욕시(New York City), 클리블랜드(Cleveland), 영스타운(Youngstown), 툴사(Tulsa)에 있다. 각 도시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이 프로그램의 공급기관은 Per Scholas (New York City, NY), St. Nicks Alliance (New York City, NY), Towards Employment (Cleveland & Youngstown, OH), Madison Strategies Group (Tulsa, OK)이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는 직업훈련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직업 준비(work readiness)를 하도록 지원 받는다. 이 기관은 참여자와 구인자를 함께 협력체계를 맺고서 질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중 맞춤형 접근(dual customer approach)으로 구직자인 참가자와 구인자인 기업의 인적자원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10월 말에 903명이 참여하여 318명이 취업을 하였고, WorkAdvance은 275개의 사업주가 새로운 인력 채용을 돕고 있다.

지속해서 근로자와 산업 수요의 기술격차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훈련을 개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MDRS 무작위 통제집단과 비교를 통해서 저임금 근로자에 대비하여 그 평가를 하고 있다. 연구 평가결과에서도 WorkAdvance 통제집단보다 참여자들의 임금이 상승과 장기실업자의 고용이 증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3.4. 독일 맞춤형 서비스

독일에서는 고용-복지 복합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전달기관인 고용센터(Job center)를 설치하였다. 고용센터에서는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모델로 고용센터에서는 프로파일링으로 내담자를 6개 집단으로 구분한다. ‘노동시장’, ‘활성화’, ‘능력향상’, ‘개발’, ‘안정화’, ‘지원’이다. ‘노동시장’으로 프로파일링이 된 집단은 6개월 이내 단기에 고용주와 연결될 수 있는 집단이고, ‘활성화’로 프로파일링이 된 집단은 6개월 이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이 가능한 집단이지만 노동시장으로 구분된 집단이지만 노동시장으로 구분된 집단보다는 조금 동기가 약한 집단, ‘능력향상’으로 구분된 집단은 12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집단이다. 이 세 집단은 취업이 쉽고 필요한 지원이 비교적 단순한 집단이다. 반면 뒤에 세 집단은 문제가 복잡적이고 노동시장으로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집단이다. ‘개발’로 구분된 집단은 통합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집단, ‘안정화’는 1년 안에 노동시장이 아니라 대안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 ‘지원’은 대안적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소요될 집단이다(이현주, 2014a).

2.4. 직업훈련 프로그램

2.4.1. 영국의 기업주 중심 직업훈련

영국에서도 저임금과 근로빈곤의 해결책이 취업 그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복지개혁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숙련 향상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였다(DIUS and DWP, 2007). 이러한 숙련 중심적 정책의 배경에는 2006년 말에서 발표된 ‘라이츠 보고서(Leitch Review of Skills)’에 의한 것이다. 이후 영국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마련되었는데, 일례로 Wales 주에서는 ‘A skill and employment strategy and action plan’이 만들어졌고, Kent 주에서는 ‘Adult Learning, Skills and Employment Strategy 2015-2018’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 또한, 특정 대상에게 맞는 정책들이 만들어졌는데 일례로 재소자를 위한 ‘Prisoner skills and employment strategy 2009-2012’ 등이다. 최근 영국에서도 숙련 정책의 변화 중의 하나로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숙련 수요자 주도형 훈련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Mayhew and Keep, 2014; 강금봉, 2016에서 재인용). 이를 위하여

구체적이 방안으로 ‘Evaluation of the Employer Ownership OF Skills pilot 1’을 2012년 시작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강금봉, 2016). 1기 3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훈련 주체는 단일 회사, 기업 간의 파트너십, 고용주와 협력 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세 가지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강금봉, 2016). 프로젝트의 훈련 유형으로는 도제식 23개, 기업주 프로그램 4, QCF 자격 과정 17개, Non-QCF 과정 29개로 구성되어 있다(DBIS, 2015; 강금봉, 2016에서 재인용).

2.4.2. 영국 National Careers Service(NCS)

The Advice/National Careers service(NCS)는 영국에서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을 통해서 직업훈련, 학습 및 고용에 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점적인 서비스는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점검하여 경력개발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기술을 습득하거나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필요한 기초 기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도록 하고, 구직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는 경력개발 도구(Career Tools)에는 경력개발(Action Plan Tool), 기술 건강체크(skill Health Check Tools), 이력서 관리(CV Builder), 학습이력 관리(Learning Record), 자금관리(My Funding Information) 등의 활용서비스가 제공된다.

훈련에 관해서는 평생학습계좌(Lifelong Learning Account), 과정 검색, 학습유형, 훈련 자금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 프로 파일(Job profiles)을 통해서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근로 가능 시간, 임금 조건, 입직에 필요한 자격, 고용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직 지원(Job hunting advice)에서는 빈 일자리 정보, 지원양식, 이력서 작성, 인터뷰 요령 등을 제공한다.

경력 설계에는 경력 변화를 위한 준비, 통용 가능한 기술, 직업 만족도 높이기, 경력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등, 개인 상황에서는 연령, 자녀 유무, 범죄경력, 질병 경력, 장애경력, 직업력 및 생애 과정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참여자가 경력 상담(careers advice)이 필요하거나, 지역 내 훈련정보 및 자

격정보 훈련참여와 고용에 관하여 집중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접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외에 지역에서는 NCS와 유사한 서비스를 스코틀랜드에서는 ‘Skills Development Scotland’, 웨일스에서는 ‘Careers Wales’,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NI Direct’라는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2.4.3. 스코틀랜드 Training for Work 프로그램

스코틀랜드에서는 ‘Training for Work’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대상에 맞게 세분화하여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Work Choice 프로그램은 우선하여 복합적인 취약한 취업요인을 가진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코칭 프로그램(job-coaching) 및 멘토링으로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력개발 계획(Tailored Development Plan)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다.

Skill Funding Agency(SFA)는 대학 및 훈련기관, 고용주 등에 성인 직업훈련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개인의 필요와 지역 산업 등의 특성에 맞도록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sidential Training College 프로그램은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9개의 전문적인 기관과 연계되어 직업훈련, 자격취득, 현장학습, 일 체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Residential Training College를 통하여 심리상담 지원, 학습지원, 의료 및 치료지원, 기술 지원, 직업능력 평가 및 진로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고용주와 연계되어 현장훈련뿐만 아니라 기술향상을 위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Learndirect Scotland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적절한 훈련을 통해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지역의 500개의 학습센터와 연계되어 있고, Work Programme 참여자 중에서도 저숙련자 등 훈련과 학습이 필요할 때 이곳에 연계되어 무료 이-러닝(e-learning)을 받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경력개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역의 Careers Scotland를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훈련정보 및 자격정보 등과 자금지원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4. 미국 WIOA

2014년 7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인력 법안인 ‘인력 혁신 및 기회 법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을 제정하여 2015년 7월 1일에 효력이 개시되었다. 이 법안은 1998년에 제정되어 2003년 9월 법령의 효력이 만료 될 때까지 운용되었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이 WIOA는 미국의 공공인력개발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성인, 실직자, 청년 프로그램, 성인교육 및 문명퇴치 프로그램, ‘와그너 페이셔 고용 서비스(Wagner-Peyser Employment Service)’ 등의 핵심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 계획 수립이다.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와그너-페이셔 고용서비스’와 ‘취약계층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성인, 실직자, 청년 프로그램과 같은 기타 의무 프로그램과 같은 장소에서 제동될 수 있도록 한다.

‘Ready to Work Partnership’ 프로그램은 2014년 처음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장기 실직자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치로 발표되어 2014년 10월 미국 노동부에서 20개 주의 23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1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이유로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구하거나 주어진 일자리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정 정도 숙련된 경력 구직자들을 대상이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집단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해서 성장하는 업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도록 평가, 훈련, 취업 알선 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하고 장기 실직자 개인의 필요와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취업알선 서비스, 집중 코칭 서비스, 숙성 기술훈련 및 향상훈련을 시행하며, 실무 경험, 유급 인턴십, 수습제를 결합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취업 후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외에도 ‘Ready to Work’ 안에는 커뮤니티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산학연계를 맺어 구직자들에게 경력 사다리 상승을 통해 노동 수요가 높은 부문의 고임금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턴십, 수습제, 직업 관련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Eberts, 2015).

2.5. 시사점

첫째는 근로빈곤층을 단일한 정책적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세부 집단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근로빈곤층 정책을 아동 가구 근로빈곤층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 5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¹⁶⁾ 미국 노동통계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도 2013년부터 근로빈곤층의 항목으로 통계 분석하지 않고 대신에 직업력과 직업선택, 임금을 조합하여 6개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1 집단: 실업 없이,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 저임금, 2 집단: 실업 중, 3 집단: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 4 집단: 저임금, 5 집단: 실업과 저임금, 6 집단: 실업과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

국내 근로빈곤층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을 가구 단위로만 접근하든지, 가구 내 구성원으로만 분석하였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을 가구와 개인적 접근을 동시에 적용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도 근로빈곤층에는 저소득자, 고령자, 경력 단절여성, 청년층 등 다양한 집단이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정책들과 중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을 단일한 정책적 집단으로 규정하기보다 더 세밀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 우선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겠다.

둘째는 호주, 영국 등을 중심으로 상호의무를 강조하면서 활성화(activation)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jobactive로 고용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면서 의무적인 구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서구 등의 사회보장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 등에서 복지 의존성을 낮추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도록 강화하려는 조치들이다. 그러므로 근로 가능한 집단에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근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 집단에는 소득지원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는 근로 무능력자들에게는 소득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는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증가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술발전과 기술변화로 인해 숙련 편향적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와 숙련·비숙련 노동간 임

16) 5가지 유형은 첫 번째는 시간제 근로 한 부모(lane parent working part time), 두 번째는 전일제 근로 한 부모(lane parent working full time), 세 번째는 부모 중 1인은 전일제, 1인은 시간제(couple, one working full time, one part time), 네 번째는 부모 중 1인은 전일제, 1인은 실업, 다섯 번째는 시간제 근무만 하는 구성원(couple, one or more working part time only)

금 격차 확대,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산업구조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외 국가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으로 직업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현장의 필요한 숙련을 고용주가 직접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경력개발 상담사가 필요한 경력 및 직업 훈련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등이 그것이다.

넷째는 고용-복지-사회서비스 등 윈스톱 서비스의 체계를 갖추면서도 서비스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각종 연금 및 현금급여(Pension and benefits)의 결합과 함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교육, 가족 지원 및 건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은 다양한 취업 장애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표 2-4>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에 대한 단계별 지원 체계의 예로서 고용 준비단계, 고용 진입단계, 고용 유지단계, 발전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상담 및 지도, 훈련 및 교육, 고용주 지원, 자금지원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된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서비스도 분절되지 않고, 통합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Green, et al., 2015; 장금봉,2016에서 재인용).

<표 2-4>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개괄자료: Green, et al. 2015

고용 준비단계→	고용 진입단계→	재직단계→	발전단계
정보, 상담 및 지도			
직업준비 - 서비스 접근 - 개인 상담 - 경력개발 상담 - 재정 및 부채 상담 - 사례별 지원	구직 지원 - 고용정보 제공 - 구직 - 취업알선 - 채용 경로 - 사례별 지원	고용유지 지원 - 사례별 지원	경력개발 상담 - 전직지원을 위한 직업정보 제공 - 직업전환 능력
훈련 및 교육			
고용 가능성 기본 교육 - 고용준비 교육 - 2단계 직업교육 (secondary level VET) - 노동시장 이해 - 지역별 교육 참여	직업훈련 - 도제 - 섹터별 훈련 - 기업 특수적 훈련 - 직종 자격	- 직무 훈련(기업 특수적 및 비특수적 훈련) - 현장학습 - 도제	- 향상 훈련(기업 특수적 및 비특수적 훈련) - 도제 - 평생학습 및 현장학습

(표 계속)

〈표 2-4〉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개괄자료: Green, et al. 2015

고용 준비단계→	고용 진입단계→	재직단계→	발전단계
고용주			
기회제공 - 근로 테스트 및 배치 - 근로 경험 - 현장훈련	- 고용 유연성 및 근무 설계 - 훈련 설계	- 멘토링 - 고용 유연성 및 근무설계 - 근무 리뷰	- 경력 설계 - 직업 리뷰 - 고용 유연성 및 근무설계
재정지원			
참여 유도 및 강제 단계 - 급여 취득 - 훈련 지원금 - 조건 및 제재	- 최저임금 - 생활임금 - 임금 보조(고용주) - 임금 급여 (wage top-ups)	- 최저임금 - 생활임금 - 임금 급여(wage top-ups)	임금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복지 관련 지원			
- 육아 및 케어 지원 - 건강관리 지원 - 주택지원 - 교통수단 지원 - 통신 수단 지원	- 육아 및 케어 지원 - 건강관리 지원 - 주택지원 - 교통수단 지원 - 통신 수단 지원	- 육아 및 케어 지원 - 건강관리 지원 - 주택지원 - 교통수단 지원 - 통신 수단 지원	- 육아 및 케어 지원 - 건강관리 지원 - 주택지원 - 교통수단 지원 - 통신 수단 지원

제3장

근로빈곤 현황 분석

제1절 근로빈곤 구성의 특성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방법을 통해 정의 내리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수단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그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근로빈곤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병희, 2011). 이 절에서는 근로빈곤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에 기초하여 현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그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연령 빈곤층’은 연령 기준을 기존의 1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그 기준폭을 국내의 현실에 맞게 범위를 축소한 개념이며, ‘근로능력 빈곤층’은 ‘근로연령 빈곤층’의 기준인 18세 이상이면서 장애, 노령, 만성질환 등의 근로무능력 뿐만 아니라 학업과 군복무를 제외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이며, 마지막으로 ‘근로기간 빈곤층’은 조사 기준 연도에 연간 6개월 이상 노동시장에 참여했음에도 빈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추가적 분석으로 근로빈곤층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위협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주거문제 및 가계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근

로빈곤층의 위험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3-1>과 [그림 3-1]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본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변화추이이다. 먼저 근로빈곤 정의별로 나타난 근로빈곤 현황을 보면 근로빈곤율의 크기는 근로연령, 근로능력 및 근로기간의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근로빈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다. 근로연령에 해당되면서 전년에 연간 6개월 이상 노동시장에 참여했음에도 빈곤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5년 3.7%, 2014년에는 3.0%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정부의 공적지원이 들어간 이후의 변화를 보면 동기간 3.2%에서 2.1%로 시장소득에 비해서는 빈곤감소폭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14년에도 정부가 공적이전을 해줌에도 2.1%의 근로자가 빈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연령과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볼 경우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근로빈곤층이 정부의 공적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표 3-1>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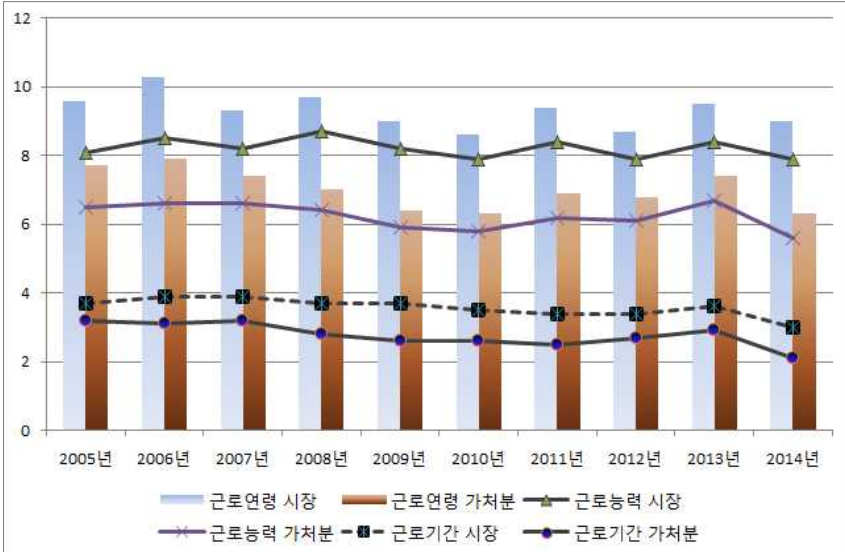
(단위: %)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2005년	9.6	8.1	3.7	7.7	6.5	3.2
2006년	10.3	8.5	3.9	7.9	6.6	3.1
2007년	9.3	8.2	3.9	7.4	6.6	3.2
2008년	9.7	8.7	3.7	7.0	6.4	2.8
2009년	9.0	8.2	3.7	6.4	5.9	2.6
2010년	8.6	7.9	3.5	6.3	5.8	2.6
2011년	9.4	8.4	3.4	6.9	6.2	2.5
2012년	8.7	7.9	3.4	6.8	6.1	2.7
2013년	9.5	8.4	3.6	7.4	6.7	2.9
2014년	9.0	7.9	3.0	6.3	5.6	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그림 3-1]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 추이

(단위: %)



인구학적 기준 중 하나인 성별특성에 따라 남녀 간 근로빈곤율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전체적인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좀 더 근로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⁷⁾.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연령, 근로능력 및 근로기간의 순으로 근로빈곤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빈곤율 수준은 2005년에 비해 2014년에도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고 일정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세계 경제위기를 경험하거나 그 직후인 2008년과 2011년에는 근로빈곤율 역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분석에서는 정부의 공적이전 지원이 근로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 공적이전 효과에서는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의 근로빈곤율이 좀 더 줄어들고 있어 여성에게 공적이전이 좀 더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

17) 국내에서 여성은 소수자, 약자로서 사회적 위치 혹은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 여러 불이익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에서도 동시에 나타나 빈곤을 분석시 상시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빈곤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고 부르고 있다(노혜진, 2013).

〈표 3-2〉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성별)

(단위: %)

시장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남	여	남	여	남	여
2005년	8.7	10.5	6.9	9.1	3.6	3.7
2006년	9.6	10.9	7.6	9.4	4.0	3.8
2007년	8.9	9.7	7.5	8.9	3.9	4.0
2008년	9.4	10.0	8.2	9.3	3.5	3.8
2009년	8.5	9.5	7.5	8.8	3.5	3.9
2010년	7.9	9.4	7.0	8.7	3.0	3.9
2011년	8.8	10.0	7.6	9.2	3.4	3.5
2012년	7.9	9.5	7.0	8.8	3.3	3.5
2013년	9.0	10.1	7.6	9.3	3.5	3.7
2014년	8.3	9.7	7.0	8.8	2.5	3.4
가처분 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남	여	남	여	남	여
2005년	7.1	8.3	5.8	7.2	3.2	3.1
2006년	7.5	8.3	6.1	7.2	3.3	3.0
2007년	7.2	7.5	6.2	7.0	3.3	3.1
2008년	7.0	7.1	6.2	6.6	2.8	2.8
2009년	6.3	6.5	5.7	6.2	2.6	2.6
2010년	6.0	6.6	5.4	6.1	2.4	2.8
2011년	6.8	7.0	5.9	6.5	2.6	2.4
2012년	6.3	7.2	5.6	6.6	2.7	2.7
2013년	7.3	7.6	6.4	7.0	3.1	2.8
2014년	6.2	6.5	5.3	6.0	2.0	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두 번째로 근로빈곤 정의별, 연령별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보면, 〈표 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령별로 근로빈곤 규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세 가지 정의가 공통적으로 18~34세가 가장 낮은 근로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령이 가장 높은 55~64세의 경우에는 근로빈곤율이 정의별로 크게는 30%대에서 작게는 10%대 초반까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55~64세의 연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시기이다. 하지만 생애주기 특성상 동 연령대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기로 지속적으로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높은 연령과 충분한 은퇴 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정적 일자리 보다는 좋지 않은 그리고 급여가 낮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을 해도 빈곤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세대라 볼 수 있다.

<표 3-3>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연령별)

(단위: %)

시장소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근로 연령	18-34	9.3	10.3	9.2	9.6	8.3	8.5	9.8	8.0	9.5	9.7
	35-44	11.8	11.8	10.8	12.0	10.3	9.2	9.7	9.4	9.0	8.3
	45-54	15.1	16.8	15.7	14.3	14.3	13.1	12.9	12.5	13.5	12.8
	55-64	36.7	33.4	29.2	31.0	28.9	27.2	29.5	27.2	29.2	25.7
근로 능력	18-34	6.6	6.4	6.5	6.5	6.0	6.0	6.7	5.6	6.4	6.4
	35-44	10.5	11.3	10.3	11.8	10.0	9.1	9.5	8.9	8.3	7.6
	45-54	12.9	15.1	14.6	14.1	13.8	13.1	12.6	12.2	13.1	12.2
	55-64	32.1	29.1	27.6	29.8	27.9	26.1	28.7	26.5	28.2	24.8
근로 기간	18-34	2.7	2.2	2.6	2.4	2.4	2.1	2.6	2.1	2.1	1.9
	35-44	6.1	6.3	5.6	5.4	5.0	4.6	4.6	4.6	3.6	2.9
	45-54	7.1	7.8	8.0	6.8	7.0	6.8	5.6	6.2	6.7	5.7
	55-64	11.5	11.8	11.6	11.0	10.8	10.1	10.2	9.5	12.0	8.8
가치분소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근로 연령	18-34	7.9	7.5	7.1	6.9	5.7	6.4	6.8	6.5	7.4	6.7
	35-44	9.8	9.5	9.1	9.7	8.9	7.2	7.8	7.2	7.1	6.6
	45-54	12.9	14.0	13.4	11.4	10.3	10.0	10.3	10.2	11.7	9.2
	55-64	26.7	24.2	20.6	19.2	18.5	17.9	19.9	19.9	21.1	17.1
근로 능력	18-34	5.9	5.0	5.2	5.0	4.3	4.7	4.4	4.4	5.2	4.6
	35-44	8.8	9.0	8.8	9.5	8.6	7.1	7.6	6.9	6.6	6.0
	45-54	11.2	12.8	12.7	11.3	10.0	9.9	10.2	9.9	11.5	9.1
	55-64	22.8	20.9	19.4	18.4	17.7	17.1	19.6	19.7	20.5	16.4
근로 기간	18-34	2.4	1.7	1.9	2.0	1.8	1.7	1.3	1.7	1.5	1.5
	35-44	5.1	4.8	4.8	4.5	4.3	3.7	3.7	3.4	2.6	2.1
	45-54	6.3	6.7	6.9	5.1	4.8	5.2	4.5	5.2	6.2	3.9
	55-64	9.8	9.5	9.0	6.9	6.5	7.2	7.2	7.4	9.3	6.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무엇보다는 정부의 공식적 은퇴시기와 실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은퇴 연령의 차이를 극복하고 고령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장치 마련이 중요한 세대라 볼 수 있다. 특히 향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연령대 근로자의 노동시장 조기 은퇴는 국내 생산활동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55-64세의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근로빈곤이 그렇다면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다음은 노동시장의 형태 즉 사업장 규모와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 근로빈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종사자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근로빈곤에 취약하였다. 시장소득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빈곤율은 2005년 14.1%에서 2014년 9.6%이었으며,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동 기간 13.0%에서 8.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2.6%에서 1.7%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장 규모가 근로빈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빈곤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의 근로빈곤 감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저소득층, 불안정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그 지원효과가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¹⁸⁾. 하지만 여전히 정부지원 이후에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빈곤층이 많다는 점은 좀 더 강화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 최저임금 수준을 시간당 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로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상향은 근로빈곤층 지원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 대표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140만원 미만(2016년 기준)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 역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근로빈곤층 지원사업이라 볼 수 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표 3-4〉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사업장 규모별)

(단위: %)

시장소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10인미만	14.1	15.0	13.9	12.4	12.2	11.1	11.0	10.9	12.0	9.6
	10~49인	7.9	6.5	7.3	7.0	6.5	6.8	8.0	6.8	7.8	6.6
	50~99인	3.4	7.0	4.8	2.2	8.8	4.6	4.9	6.2	4.5	5.1
	100인이상	2.9	2.0	1.8	3.2	2.3	1.6	1.6	2.0	2.2	1.9
근로 기간	10인미만	13.0	13.6	12.9	11.6	11.4	10.4	10.3	9.9	11.1	8.9
	10~49인	7.3	5.7	6.7	6.6	5.2	6.1	7.0	6.1	6.7	5.4
	50~99인	3.1	6.2	3.7	2.0	8.5	4.4	4.8	6.0	3.3	5.0
	100인이상	2.6	1.8	1.8	2.9	1.5	1.3	1.4	1.9	1.8	1.7
가처분소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10인미만	12.1	12.2	11.5	9.3	8.6	8.6	8.0	8.6	9.6	6.9
	10~49인	6.8	5.8	5.1	5.3	4.9	4.8	5.5	5.4	6.6	4.4
	50~99인	2.3	5.6	3.7	1.4	6.7	3.2	3.9	5.2	4.3	3.6
	100인이상	3.1	1.8	1.7	2.4	1.9	1.2	1.3	1.5	1.8	1.6
근로 기간	10인미만	11.2	11.0	10.8	8.7	8.0	8.1	7.4	7.8	8.9	6.3
	10~49인	6.0	5.0	4.6	5.0	3.8	4.4	4.8	4.7	5.6	3.8
	50~99인	2.0	4.8	2.7	1.3	6.4	3.0	3.8	5.1	3.3	3.4
	100인이상	2.8	1.5	1.6	2.3	1.2	1.0	1.1	1.4	1.3	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두 번째는 비정형, 불안정 고용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가 근로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표 3-5>에서 보듯이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지위는 근로빈곤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1~2%대의 낮은 근로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임시·일용, 자영, 실업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높은 근로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상용직과의 근로빈곤에서의 큰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개별 근로자가 장기간 임시·일용직 혹은 실업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근로빈곤의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소득과 더불어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의 근로빈곤율 감소격차를 보면 상용직에 비해서는 임시·일용, 실업 상태의 근로자들이 좀 더 높은 근로빈곤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근로연령 및 능력을 기준으로 상용직은 1.7%에서 1.3%로 0.4%p의 빈곤감소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임시·일용직은 11.7%에서 7.9%로 3.8%p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역시 실업자의 경우에도 다소 높은 빈곤감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공·사적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 변화(경제활동 참여상태별)

(단위: %)

시장소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상용	2.2	3.1	2.8	2.9	2.0	2.3	2.2	1.8	2.6	1.7
	임시·일용	15.5	19.4	18.0	14.5	15.7	12.3	13.7	13.0	13.2	11.7
	자영업	14.3	15.0	13.2	10.8	9.8	9.8	8.8	9.7	11.6	9.6
	실업	28.3	32.6	30.3	28.2	22.5	32.1	29.5	30.1	21.1	29.0
근로 기간	상용	2.1	2.9	2.5	2.7	2.0	2.0	2.0	1.6	2.2	1.5
	임시·일용	13.5	16.3	16.2	13.0	13.2	11.2	12.4	11.5	11.4	10.1
	자영업	13.6	14.3	12.8	10.7	9.6	9.7	8.5	9.5	11.1	9.3
가처분소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상용	2.1	2.5	2.1	2.1	1.6	1.9	1.2	1.4	2.2	1.3
	임시·일용	12.8	14.6	13.5	10.3	11.3	8.8	9.4	9.6	10.1	7.9
	자영업	12.8	13.3	12.2	8.6	7.0	8.1	8.1	8.6	10.3	7.4
	실업	25.0	24.4	26.4	23.0	18.4	24.4	29.1	21.0	15.6	23.9
근로 기간	상용	2.0	2.4	2.0	2.0	1.6	1.6	1.0	1.3	1.7	1.1
	임시·일용	11.0	11.7	12.0	9.4	9.2	7.9	8.4	8.3	8.7	6.9
	자영업	12.1	12.6	11.8	8.5	6.9	8.0	7.8	8.4	9.9	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근로빈곤 특성 분석 중 하나로 근로빈곤 정의별로 근로빈곤 경험자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¹⁹⁾. 최근

19) 2000년대 들어 정부가 노동시장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기초 분석자료인 한국복지패널이 모든 지원정책을 조사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사 자료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연도 3개년을 중심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근로빈곤층이 정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대부분이 1% 미만이었으며 단지 자활근로 사업에의 참여가 다른 정부지원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다. 정부가 여러 근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도는 빈곤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의 참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빈곤층은 우선 생계유지가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사업 참여보다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활동을 벌이는 것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6> 근로빈곤 정의별 정부지원 프로그램 경험 여부

(단위: %)

시장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공공근로	1.3	1.1	1.1	1.3	1.1	1.2	2.1	1.5	1.8
자활근로	1.9	1.9	1.9	2.0	2.0	2.0	4.0	3.5	4.8
사회적일자리	0.2	0.3	-	0.2	0.3	-	0.2	0.5	-
실업자훈련	0.7	0.4	0.7	0.8	0.4	0.7	0.6	0.3	0.4
창업지원	0.2	0.1	-	0.2	0.1	-	0.1	0.3	-
희망근로	0.2	0.3	0.1	0.2	0.3	0.1	0.1	0.7	0.3
근로자능력개발	0.4	0.4	0.1	0.4	0.4	0.1	0.3	0.8	-
가처분 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공공근로	1.1	1.1	1.1	1.2	1.2	1.2	1.5	1.5	2.2
자활근로	1.7	2.4	1.7	1.7	2.5	1.7	3.5	4.1	4.0
사회적일자리	0.2	0.2	-	0.2	0.2	-	-	0.3	-
실업자훈련	0.4	0.4	0.2	0.4	0.5	0.2	0.5	0.4	-
창업지원	-	0.2	-	-	0.2	-	-	0.4	-
희망근로	0.2	0.3	0.1	0.3	0.3	0.1	0.2	0.7	0.2
근로자능력개발	0.3	0.3	0.1	0.3	0.3	0.1	0.3	0.6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제2절 근로빈곤층 특성

2.1. 근로빈곤층의 빈곤 지속성

지금까지의 분석이 주로 해당연도 만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라는 시간 변화에 따라 근로빈곤층이 어떻게 생활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근로빈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기준은 패널의 분석기간이 10년이라는 점에서 10년의 중간인 5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경우, 2~4년을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경우, 10년 중 1년만 일시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은 빈곤의 지속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김환준, 2013; 김태완·윤상용, 2015).

<표 3-7>를 통해 보면 5년 이상 장기간 근로빈곤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비율이 높게는 근로연령 기준으로 6.2%(시장소득), 4.0%(가처분소득)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해도 그 급여가 오랜 기간 빈곤선 이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빈곤을 경험시 빈곤을 경험하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역시 함께 빈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칫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경우에는 빈곤의 함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다. 장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등을 통해 안정적 기술습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소득지원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장기빈곤이 아닌 2~4년의 단기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낮은 경우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7%(시장소득), 1.0%(가처분소득)이었다. 지난 10년 중에 1년만을 단기적으로 근로빈곤에 처하는 경우가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근로빈곤 정책이 단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를 거두느냐 아니면 장기빈곤에 방치하느냐를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7> 시간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

(단위: %)

구 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5년 이상	6.2	5.5	1.7	4.0	3.5	1.0
2-4년	10.5	9.4	5.2	9.4	8.3	4.5
1년	10.7	10.1	7.1	10.6	10.0	7.0
미경험	72.6	75.1	86.0	76.0	78.2	8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의 근로빈곤 경험정도가 높았으며, 오랜 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여전히 노동 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으며, 빈곤을 벗어나는 경우도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장기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여성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반면에 2~4년의 단기빈곤과 1년만을 경험한 일시빈곤에 있어서는 남녀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단기적 빈곤에서는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장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여성과 다음으로 장기간 빈곤을 경험한 남성이라 볼 수 있다.

<표 3-8> 시간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성별)

(단위: %)

성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남성	5년 이상	5.4	4.4	1.3	3.7	3.1	1.0
	2-4년	10.3	8.8	5.0	9.0	7.7	4.2
	1년	10.6	10.2	8.0	10.5	9.9	7.9
	미경험	73.7	76.5	85.7	76.8	79.4	86.9
여성	5년 이상	7.0	6.5	2.0	4.3	4.0	1.1
	2-4년	10.8	9.9	5.4	9.7	9.0	4.8
	1년	10.7	9.9	6.3	10.7	10.0	6.1
	미경험	71.5	73.7	86.3	75.2	76.7	8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55~64세의 경우가 가장 높은 장기 근로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연도별 분석에서와 동일한 결과이다. 설명한 것과 같이 조기는 퇴, 조기에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²⁰⁾. 이들 고령층은 18~34세의 청년층에 비해서도 6배 이상의 높은 빈곤율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의 세 가지 정의를 기준으로 보아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기근로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3-9> 시간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연령별)

(단위: %)

연령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18~34	5년 이상	3.2	1.7	0.3	1.8	1.1	0.1
	2-4년	10.3	6.3	1.9	8.0	4.4	1.5
	1년	14.3	11.0	6.1	13.7	10.4	5.3
	미경험	72.2	80.9	91.7	76.6	84.2	93.1
35~44	5년 이상	5.7	4.7	1.5	4.0	3.0	0.8
	2-4년	10.2	10.1	5.4	9.4	9.3	4.2
	1년	11.1	11.2	7.1	11.8	12.2	7.4
	미경험	73.0	74.0	86.1	74.9	75.6	87.6
45~54	5년 이상	9.2	8.9	3.6	6.3	6.0	2.4
	2-4년	13.4	13.0	9.6	14.9	14.6	8.8
	1년	14.3	14.7	12.3	14.4	14.6	13.5
	미경험	63.2	63.4	74.5	64.4	64.8	75.4
55~64	5년 이상	16.8	16.1	4.8	11.6	11.0	3.1
	2-4년	18.5	18.3	11.7	16.8	16.8	11.0
	1년	15.1	15.5	13.5	15.3	15.5	12.5
	미경험	49.6	50.1	69.9	56.3	56.7	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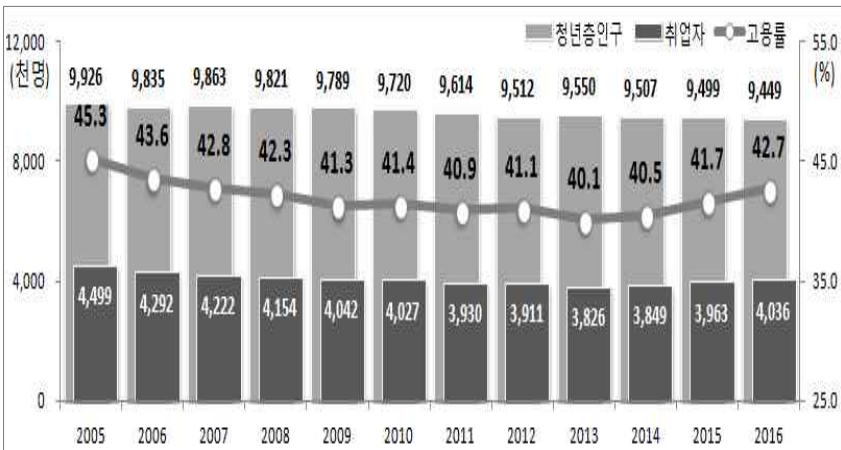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20) 통계청의 경제활동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연령”에서 2016년 5월 기준으로 전체는 49.1세, 남자는 51.6세, 여성은 47.0세로 나타나 많은 근로자들이 조기 은퇴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16).

가장 낮은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연령대는 18~34세의 청년층으로 현세대 청년층은 부모세대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안정적 일자리 보다는 알바 혹은 단기 일자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혹은 다소 높은 수준을 받고 있어 빈곤에서는 벗어나지만 일자리에 대한 희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림 3-2]에서 보듯이 고용률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청년실업률도 10%대를 지속하고 있다. 학교 졸업 후 첫일자리 경험에 있어서도 안정적 일자리 보다는 1년 이하의 단기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도 21.3%, 일시적 일자리도 10.7%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6).

비록 보기에 청년층의 근로빈곤 현상이 고령층에 비해 낮다고 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여건이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불안정과 빈곤경험은 본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결혼, 자녀출산 등의 과정에서 청년이 속한 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3-2] 청년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6),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재인용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빈곤층의 변화를 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은 물론 장기간 근로빈곤(5년 이상)을 경험하는 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 간의 장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빈곤의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비록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적지만, 5년 이상 근로빈곤을 경험한 빈곤층이 1~3%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사업장 내의 임금격차, 일을 통한 차별 등이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사업장 규모가 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좋지 않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등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3-10> 시간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사업장 규모별)

(단위: %)

사업장 규모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10인 미만	5년 이상	7.7	7.4	4.3	5.0	4.8	2.9
	2-4년	15.9	15.1	12.2	14.7	13.6	10.3
	1년	16.4	16.3	15.2	17.4	17.5	15.8
	미경험	59.9	11.1	68.3	63.0	64.1	71.0
10~49인	5년 이상	6.3	5.9	3.2	3.9	3.7	1.6
	2-4년	12.7	11.4	7.0	12.0	11.0	7.3
	1년	14.3	13.4	10.9	14.0	12.5	10.6
	미경험	66.7	69.4	78.9	70.2	72.8	80.5
50~99인	5년 이상	2.7	2.0	1.1	2.0	1.5	0.4
	2-4년	11.8	9.2	7.2	9.2	7.1	6.6
	1년	10.7	10.8	6.1	11.0	10.6	5.1
	미경험	74.8	78.0	85.6	77.7	80.8	87.9
100인 이상	5년 이상	1.3	0.9	0.5	0.5	0.5	0.3
	2-4년	5.3	4.8	2.1	5.0	4.2	2.2
	1년	9.3	7.9	6.1	9.3	7.9	6.2
	미경험	84.1	86.4	91.3	85.2	87.3	9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 분석하게 되면, 노동시장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서는 불안정 고용 혹은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근로자의 근로빈곤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자영업, 실업자에 비해 임시·일용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근로자가 장기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불안정 고용상태의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본래 목적과 달리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많은 수의 근로자가 불안정 고용상태를 유지하며, 낮은 소득을 지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신과 그 가족의 빈곤화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노동시장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효과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3-11> 시간변화와 근로빈곤 정의별 근로빈곤 변화(경제활동 참여상태별)

(단위: %)

경제활동 참여상태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상용	5년 이상	1.8	1.5	0.8	1.0	0.9	0.5
	2-4년	7.2	6.0	3.4	6.3	5.4	3.2
	1년	11.0	9.8	7.4	11.2	9.7	7.3
	미경험	80.0	82.8	88.4	81.5	84.1	89.0
임시· 일용	5년 이상	8.9	8.2	3.9	5.3	5.0	2.1
	2-4년	17.8	15.6	11.8	17.0	15.4	10.3
	1년	15.7	15.7	13.4	15.5	15.5	13.5
	미경험	57.6	59.5	70.9	62.2	64.2	74.2
자영업	5년 이상	7.7	7.6	5.5	5.6	5.5	4.0
	2-4년	14.5	14.3	12.6	12.9	12.4	11.6
	1년	16.3	16.4	16.2	18.2	18.4	17.0
	미경험	61.4	61.7	65.7	63.4	63.6	67.4
실업	5년 이상	7.1	6.5	1.4	5.2	4.0	1.4
	2-4년	21.4	17.4	5.4	19.9	18.9	4.9
	1년	20.3	23.2	10.5	16.2	17.4	8.7
	미경험	51.1	52.9	82.7	58.7	59.7	8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2.2. 근로빈곤층의 주거빈곤

근로빈곤층에 대한 두 번째 특성으로 주거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거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의식주이자 재충전을 위한 휴식공간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주거현실은 어떨까. 여기서는 주거빈곤 측정방법 중 하나인 월소득 대비 임대료(혹은 주거비: Rent-to-Income Ratio) 부담을 기준으로 하였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임대료 혹은 주거비 등으로 소득의 20%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본 장에서는 이를 주거빈곤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진미윤, 2013).

분석결과를 보면 <표 3-12>에서 보듯이 근로빈곤과 주거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연령 빈곤 개념으로 보면 시장소득 근로빈곤율은 2005년 9.2%에서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근로와 주거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봐도 2005년 10.7%에서 2014년에는 17.3%로 역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빈곤과 주거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비중은 다른 근로빈곤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주택문제가 근로빈곤층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자가 소유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근로빈곤층의 주거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여러 주거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빈곤층에게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

〈표 3-12〉 근로빈곤과 주거빈곤 동시 경험

(단위: %)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2005년	9.2	8.5	7.9	10.7	9.8	8.4
2006년	7.8	7.7	7.2	9.6	9.2	8.3
2007년	12.0	11.9	9.8	13.9	13.7	11.5
2008년	13.2	14.0	13.3	16.7	17.5	16.1
2009년	11.2	11.4	10.4	15.0	15.3	14.2
2010년	9.1	9.3	9.4	11.1	11.5	11.5
2011년	10.9	11.5	9.0	13.0	14.1	11.0
2012년	12.6	12.6	11.3	14.8	14.7	12.8
2013년	13.1	14.0	10.5	16.0	17.0	13.1
2014년	13.3	14.0	11.3	17.3	17.7	1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표 3-12〉가 횡단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면 시간 변화에 따른 종단분석을 통해 근로빈곤과 주거빈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근로연령을 정의로 한 근로빈곤층 중 5년 이상 장기근로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중 7.7%는 동시에 주거빈곤을 5년 이상 장기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빈곤계층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5년 이상 장기 근로빈곤을 경험한 사람의 41.0%가 어떠한 상태이든 주거빈곤을 1년 이상은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율은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한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근로기간을 정의로 한 근로빈곤에서만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6.7%의 사람은 근로와 주거빈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 역시 근로빈곤층의 7~8%는 오랜 기간 장기빈곤과 주거빈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근로빈곤을 단기간 경험해도 역시 주거빈곤을 경험한 비중이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미경험자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빈곤의 정의를 다른 것으로 적용해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3〉 근로빈곤 및 주거빈곤 동태적 변화(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구분		주거빈곤			
		5년 이상	2-4년	1년	미경험
근로연령	5년 이상	7.7	14.8	18.6	58.9
	2-4년	1.7	10.7	17.3	70.3
	1년	1.3	6.0	19.0	73.8
	미경험	0.4	2.8	8.9	88.0
근로능력	5년 이상	7.9	15.4	18.5	58.3
	2-4년	1.7	11.3	18.2	68.8
	1년	1.3	6.0	19.2	73.5
	미경험	0.4	2.9	9.0	87.7
근로기간	5년 이상	6.7	11.7	10.3	71.4
	2-4년	2.8	13.0	17.7	66.6
	1년	0.8	7.5	19.9	71.8
	미경험	0.7	3.6	10.1	85.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근로빈곤과 주거빈곤의 관계를 횡단 및 종단분석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를 통해 보면 빈곤현상은 단순히 소득빈곤 하나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득이 낮아서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가 불안정하기에 소득 역시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인지를 인과관계는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소득과 주거빈곤과의 상관성이 높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빈곤현상이 어떤 특정한 요인으로 인해 단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통해 여러 요인과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분석에 있어 다차원빈곤(Multinomial Poverty) 혹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가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다(서병수, 2007; 김태완·이주미·정진욱, 2015; 김태완·최민정, 2016). 학문적 분류에 있어서는 다차원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다차원빈곤은 소득중심 빈곤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면, 사회적 배제는 난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주류 속에 포함되지 않고 외부로 밀려나는 배제 현상에 주목하여 사회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다. 비록 서로 근원과 배경은 다르다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빈곤이 어느 특정 현상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대책도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근로빈곤층을 위한 방안은 주로 노동시장 중심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주거,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과 연계된 근로빈곤층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거빈곤 측정의 기준은 월 임대료 혹은 주거비가 소득대비 20%를 초과하느냐 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주거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의 주거 점유 형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장기, 단기, 일시 및 근로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표 3-14>에서 보듯이 전체적 규모에서는 자가보유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5년 이상 장기근로빈곤을 경험시에는 근로기간을 정의로 한 경우 이외는 50% 미만의 자가보유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근로빈곤을 장기간 경험할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연령 기준으로 2~4년 단기빈곤을 경험한 근로빈곤층의 20.4%가, 1년의 일시빈곤을 경험한 근로빈곤층의 19.7%가 월세를 지불하는 주거유형에 거주하고 있었다. 근로빈곤의 다른 정의에서도 약 20%의 근로빈곤층이 역시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경우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근로빈곤층의 삶을 피폐하고 궁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빈곤과 주거빈곤을 동시 경험하는 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자가보유자보다는 월세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의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등이 구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향후 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저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전세 거주자의 일정비율이 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비에 부담을 가지는 근로빈곤층이 현재보다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혹은 주거비 지원제도 등이 활성화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²¹⁾.

21) 정부는 2015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전환하며 기존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하여 시행하며 그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이 확대되어도 부양의무자 기

〈표 3-14〉 근로빈곤층 주거점유 형태(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근로연령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기타
5년 이상	45.0	17.4	22.4	5.5	9.7
2-4년	56.6	15.7	17.6	2.8	7.3
1년	53.5	22.0	17.6	2.1	4.9
미경험	60.7	19.0	11.1	1.6	7.3
근로능력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기타
5년 이상	44.6	18.8	21.5	5.9	9.2
2-4년	56.4	15.4	17.1	3.0	8.1
1년	53.0	22.7	17.3	2.1	4.9
미경험	60.7	18.8	11.6	1.7	7.3
근로기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기타
5년 이상	54.5	15.4	16.1	5.7	8.4
2-4년	55.0	17.0	16.9	3.5	7.6
1년	51.3	22.5	17.7	1.7	6.9
미경험	59.8	18.8	12.4	1.9	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2.3. 근로빈곤층과 우울

세 번째로 이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정신건강 분야의 하나인 우울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우울을 지적하고 있다. 우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빈곤으로 인한 요인을 들고 있다. 즉 빈곤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우울을 가지고 있고 이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²⁾.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을 측정할 수 있는 11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우울 측정의 기준이 된 척도는 CES-D (Center

준 등 별도기준 운영으로 인해 많은 주거불안정 계층이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주거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근로빈곤층을 주거급여에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 22) 빈곤과 우울사이의 관계는 사회적 원인론(Social Causation)과 사회적 선택론(Social Selection)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원인은 빈곤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우울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며, 사회적 선택은 우울이 빈곤을 유발한다는 것이다(Hudson, 2005; 엄태완, 2008; 김태완·윤상용, 2015)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이며, 동 척도는 1977년 Radloff(1977)가 20개 설문으로 처음 제안된 것이다. 이후 이를 11개로 축소한 문항(Kohout, Berkman, Evans & Cornoni-Huntley, 1993)을 복지패널조사에서 이용하고 있다(김태완·윤상용, 2015). 11개 조사 결과의 합은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과의 비교를 위해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 16점 미만이면 우울하지 않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소득으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빈곤과 우울을 동시에 경험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자의 2~3%는 근로빈곤과 우울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빈곤 정의를 볼 때 낮은 근로빈곤과 우울을 동시 경험하는 것은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로 약 1% 이하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분석시에는 시장소득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2~3%의 근로자가 근로빈곤과 우울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생활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만약 우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빈곤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3-15> 근로빈곤과 우울 동시 경험

(단위: %)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2005년	4.5	3.8	1.5	3.8	3.2	1.3
2006년	4.5	3.9	1.8	3.6	3.2	1.5
2007년	3.7	3.5	1.6	3.1	2.9	1.3
2008년	3.6	3.4	1.3	2.8	2.7	1.0
2009년	3.0	2.8	1.1	2.1	2.0	0.7
2010년	2.4	2.3	0.8	1.9	1.8	0.6
2011년	2.6	2.5	0.7	2.0	1.9	0.6
2012년	2.3	2.2	0.8	1.9	1.8	0.6
2013년	2.7	2.5	0.9	2.2	2.1	0.8
2014년	2.5	2.4	0.6	2.0	1.9	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장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경우와 같이 장기간 시간 변화에 우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주거빈곤을 분석한 것과 동일하게 근로빈곤 및 우울을 시간변화에 따른 흐름을 살펴보면, <표 3-16>과 같이 근로빈곤과 우울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그 시간이 장기간 유지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근로연령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로빈곤을 경험시 우울도 5년 이상 장기간 경험하는 비율은 36.2%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장기 근로빈곤을 경험시 정신적 문제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단지 15.6%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장기근로빈곤 경험자는 우울도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근로빈곤을 단기간 경험해도 우울을 경험한 비율은 60~70% 정도라는 점에서 많은 근로빈곤 경험자가 정신적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 등이 주로 소득보장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동시에 지닌 빈곤층은 우울을 해결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빈곤경험과 함께 찾아오는 우울 즉 정신건강 문제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정책방안 혹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16> 근로빈곤 및 우울 동태적 변화(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구분		우울			
		5년 이상	2-4년	1년	미경험
근로연령	5년 이상	36.2	32.6	15.3	15.9
	2-4년	12.4	33.6	23.0	31.0
	1년	6.6	23.8	23.4	46.2
	미경험	4.9	18.8	19.9	56.4
근로능력	5년 이상	35.1	32.8	16.0	16.1
	2-4년	12.7	33.6	22.7	31.0
	1년	7.4	24.0	23.1	45.5
	미경험	5.0	18.8	20.0	56.2
근로기간	5년 이상	22.7	32.4	18.5	26.4
	2-4년	12.8	35.7	22.0	29.5
	1년	9.3	24.3	24.4	42.1
	미경험	7.0	20.4	19.9	5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2.4. 근로빈곤층의 자산 및 부채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의 자산 및 부채 변화를 보고자 한다. 비교대상으로서 비빈곤층과의 차이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자산의 구성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으로 구분되며, 저소득층에게 있어 이중 부동산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주거를 구성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필요시 혹은 응급한 상황이 발생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자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산 및 부채의 경우 소득과 달리 규모가 크다는 점, 가구 혹은 개인별로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평균값을 비교하기 보다는 중위자산 및 중위부채를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도 중위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자산 및 부채 변화를 보면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자산규모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연령 및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빈곤층의 자산은 지난 10년 간 큰 변화 없이 약 5000~7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비빈곤층은 동기간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15백만원(근로연령)에서 2014년에는 235백만원으로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근로빈곤 정의를 통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7> 근로빈곤층 (중위)자산규모(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만원)

근로빈곤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2005년	5,110	500	3,990	5,530	500	4,423	5,400	500	4,150
2006년	4,550	500	3,410	4,680	500	3,430	5,150	600	3,820
2007년	4,450	500	3,380	4,648	500	3,600	6,000	600	4,660
2008년	5,835	512	4,200	6,000	500	4,200	7,300	800	4,906
2009년	5,010	300	3,990	5,030	300	4,020	6,200	350	4,760
2010년	6,030	300	5,000	6,030	300	5,000	6,030	400	4,920
2011년	5,550	500	4,350	5,330	400	4,350	7,080	1000	5,100
2012년	6,060	500	3,826	6,088	500	4,000	7,100	750	4,980
2013년	6,770	350	5,036	6,540	300	5,020	9,320	1000	6,220
2014년	5,300	235	3,750	5,200	204	3,600	7,720	500	5,080

(표 계속)

〈표 3-17〉 근로빈곤층(중위)자산규모(가처분소득 기준)(계속)

(단위: 만원)

비 빈 곤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2005년	11,500	700	9,700	11,430	600	9,550	11,220	600	9,308
2006년	13,360	1,000	10,800	13,297	1,000	10,660	12,770	1,000	10,210
2007년	14,798	1,000	12,490	14,620	1,000	12,420	14,260	1,000	12,032
2008년	16,574	1,320	13,680	16,530	1,300	13,642	16,100	1,250	13,325
2009년	17,856	1,200	14,640	17,680	1,200	14,536	17,308	1,100	13,903
2010년	19,860	1,200	16,242	19,750	1,200	16,200	19,260	1,122	15,850
2011년	20,200	1,350	16,730	20,160	1,305	16,635	19,400	1,219	16,102
2012년	21,340	1,500	17,316	21,220	1,500	17,230	20,614	1,450	16,695
2013년	21,890	880	18,320	21,788	873	18,266	21,250	762	17,651
2014년	23,524	1,176	19,180	23,287	1,170	19,000	22,520	1,000	18,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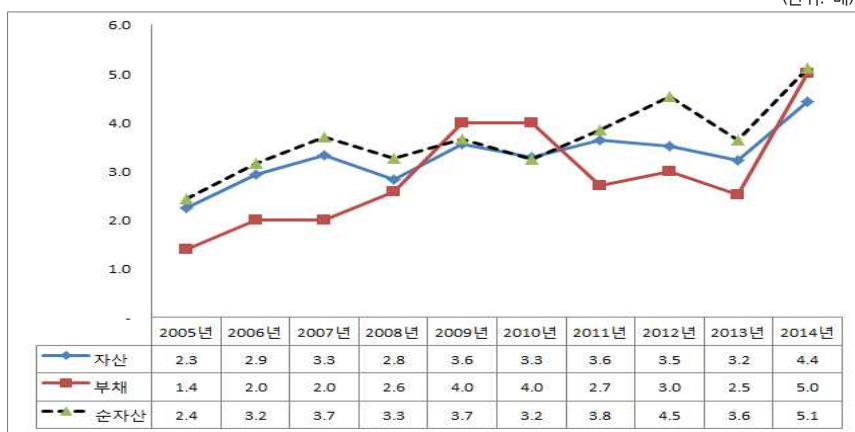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그림 3-3]은 근로연령 정의를 기준으로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배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비빈곤층이 근로빈곤층에 비해 얼마나 많은 자산(부채 및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림 3-3]에서 보듯이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2000년 들어 개인신용이 중요해지면서 빈곤층에 비해서는 비빈곤층의 자산획득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산의 주요한 구성원인 부동산 가격 변동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자산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빈곤층과 비빈곤층 자산 격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계층 간 위화감 및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3-3]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 간 자산 배율 추이

(단위: 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기간 구분에 따른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자산 규모를 보면,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기간에 따라서도 자산규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년 이상 장기근로빈곤을 경험한 계층과 근로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계층 간의 자산차이는 중위기준으로 5배에 이르고 있으며, 순자산의 규모는 더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근로빈곤 정의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자산축적에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3-18> (기간 구분에 따른) 근로빈곤층 자산규모(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만원)

중위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5년이상	4,200	-	3,000	4,040	0	2,880	5,500	200	4,655
2-4년	9,550	500	7,680	9,950	470	7,800	9,200	300	7,120
1년	17,070	1,000	13,000	16,807	1,000	12,975	14,762	1,000	11,100
미경험	25,182	1,500	20,656	24,900	1,481	20,408	23,842	1,140	19,460
평균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5년이상	13,562	2,504	11,057	13,413	2,202	11,211	16,685	2,910	13,774
2-4년	24,018	5,582	18,435	22,989	4,990	18,000	22,931	5,334	17,597
1년	34,366	5,069	29,296	34,239	5,801	28,438	31,673	6,038	25,635
미경험	37,569	5,673	31,896	37,344	5,630	31,714	36,098	5,466	30,63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여기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가 근로빈곤층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과도한 부채와 채무상환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해보도록 하겠다. 기준은 부채로 인해 발생한 원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부담의 비중이 (가처분)소득대비 20% 이상을 부담하는 근로빈곤층을 과다채무 가구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소득대비 20% 이상의 기준은 앞에서 설명한 주거빈곤층 측정시 활용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과중한 가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이용하였다. <표 3-19>를 통해 보면 해마다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5~10%의 근로빈곤층이 주택원금 혹은 이자상환으로 인해 월소득 대비 20%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점은 채무로 과도한 지출부담을 가진 근로빈곤층의 대부분이 원금상환보다는 이자상환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표 3-19>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출하고 있는 비중과 이자만을 지출하고 있는 경우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근로연령을 기준으로 2010년 근로빈곤층 중 원금과 이자 부담이 20% 이상인 비율이 8.5%, 이자 부담만이 20% 이상인 경우는 7.7%로 0.8%p 차이가 있다. 강한 가정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층중 0.8%p의 가구만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근로빈곤층은 이자만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은 금리 상승과 같은 외부충격, 원금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채무상환에 대한 강한 압박과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표 3-19> 근로빈곤층 중 과다채무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원금과 이자	이자	원금과 이자	이자	원금과 이자	이자
2006년	11.4	10.2	11.0	9.8	11.6	10.1
2007년	10.8	9.6	11.3	10.0	10.8	8.7
2008년	9.5	8.6	9.8	8.9	10.7	9.9
2009년	11.9	9.9	12.0	9.9	14.1	11.0
2010년	8.5	7.7	8.5	7.6	8.6	7.5
2011년	10.3	9.5	9.4	8.6	11.5	10.5
2012년	9.1	6.7	8.8	6.6	9.7	7.6
2013년	11.2	9.8	11.2	9.9	14.4	13.3
2014년	5.7	5.3	5.5	5.0	6.7	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과다채무가 가구의 채무 부담에 대한 동태적 변화를 보면, 근로빈곤층중 소득대비 20% 이상의 상환부담을 5년 이상 가진 근로빈곤층은 약 1~2% 수준이었다. 반면에 중기라 할 수 있는 2~4년의 기간 동안 상환부담을 가진 근로빈곤층은 8~10% 수준으로 높았다. 1년이라는 단기간 상환부담을 가진 경우도 10% 내외의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보면 근로빈곤층중 약 10% 내외의 사람들이 부채에 대한 상환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설명한 것과 같이 대부분이 원금보다는 이자지출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으로 채무로 인해 상환부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 혹은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표 3-20> 근로빈곤층 중 과다채무 지출 가구의 동태 변화

(단위: %)

구분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	
	원금과 이자	이자	원금과 이자	이자	원금과 이자	이자
5년이상	1.4	1.1	1.4	1.0	2.4	1.8
2-4년	11.0	9.0	10.8	8.6	9.9	8.5
1년	13.2	9.7	13.0	9.5	13.0	10.0
미경험	74.4	80.1	74.9	80.9	74.6	7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2.5. 근로빈곤층 코호트 특성

지금까지 근로빈곤의 현황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면, 여기서는 코호트(cohort)별로 근로빈곤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코호트에 관심을 둔 이유는 앞의 실태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점은 첫째, 근로빈곤 현황이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근로빈곤의 주요 특성분석에서 보듯이 근로빈곤이 주로 불안정하고 비정형적인 노동조건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정형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코호트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이 근로빈곤을 좀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 근로빈곤 현상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과 1998년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는 2000년대 들어서이다. 과거에도 비정규직의 형태는 있었지만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국내에 대두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비정형적 노동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가 궁극적으로 근로빈곤층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현상도 점진적으로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빈곤을 경험한 빈곤계층이 근로빈곤 경험이후 어떻게 변화해 갔을까. 계속해서 빈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탈빈곤하여 빈곤에서 벗어났을까. 앞의 분석이 기간을 고려하여 근로빈곤을 장기간, 단기간, 일시적으로 경험한 현상을 분석했다면, 여기서는 코호트 분석을 통해 동일 세대에서 근로빈곤을 경험한 계층이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즉 패널조사가 시작된 2005년을 기준으로 동년에 연령구분을 통해 코호트를 구분하고 동 코호트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2005년 기준 연령으로 이전 근로빈곤 연령별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후 변화를 보면 2005년 기준 18~34세의 경우 (시장소득)근로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근로능력, 근로기간은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다른 연령대는 2005년 이후 모두 근로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1941~1950년생의 고령층의 근로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세대는 장년기에는 근로빈곤의 문제가, 노년기에는 다시 노인빈곤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세대의 심각한 빈곤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3-21〉 코호트별 근로빈곤 변화 추이

(단위: %)

시장소득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1971~1987년생	18~34세	9.3	8.1	7.5	7.7	7.7
	1961~1970년생	35~44세	11.8	12.5	12.2	11.4	12.2
	1951~1960년생	45~54세	15.1	16.2	17.5	20.7	23.4
	1941~1950년생	55~64세	36.7	32.2	33.7	37.9	41.2
근로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6.6	6.6	6.7	7.0	7.2
	1961~1970년생	35~44세	10.5	11.9	11.9	11.0	11.5
	1951~1960년생	45~54세	12.9	15.1	16.8	20.1	22.6
	1941~1950년생	55~64세	32.1	30.4	32.4	37.2	39.2
근로 기간	1971~1987년생	18~34세	2.7	2.7	2.9	3.3	2.6
	1961~1970년생	35~44세	6.1	7.0	6.3	5.9	5.5
	1951~1960년생	45~54세	7.1	7.6	7.9	7.9	8.0
	1941~1950년생	55~64세	11.5	12.8	11.2	12.6	14.2
가처분 소득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1971~1987년생	18~34세	7.9	6.4	5.9	6.0	5.9
	1961~1970년생	35~44세	9.8	10.8	9.8	9.5	9.2
	1951~1960년생	45~54세	12.9	13.4	12.8	15.9	15.7
	1941~1950년생	55~64세	26.7	22.6	19.9	24.9	26.0
근로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5.9	5.3	5.4	5.4	5.5
	1961~1970년생	35~44세	8.8	10.4	9.6	9.2	8.9
	1951~1960년생	45~54세	11.2	12.6	12.3	15.7	15.1
	1941~1950년생	55~64세	22.8	21.4	18.9	24.7	24.1
근로 기간	1971~1987년생	18~34세	2.4	2.1	2.4	2.5	1.9
	1961~1970년생	35~44세	5.1	6.2	4.6	4.9	4.1
	1951~1960년생	45~54세	6.3	6.3	5.7	6.2	5.5
	1941~1950년생	55~64세	9.8	9.8	6.3	9.1	1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직전세대인 1951~1960년생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동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로 동 세대 역시 고령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65세 이후에는 노인빈곤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장기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코호트별 분석을 통해 보면 근로빈곤 현상이 줄어들기 보다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

로 해도 일부 코호트에서는 근로빈곤율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근로빈곤 현상이 정체되거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공적이전 현상이 근로빈곤을 완화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표 3-1>, <표 3-3>의 횡단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으로나 연령별로 근로빈곤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코호트별 분석에서는 동일 코호트 내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근로빈곤율 감소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첫째 횡단분석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연령에서는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이 전세대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어 전반적인 근로빈곤율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둘째, 동일코호트에서는 한번 근로빈곤을 경험하게 되면 쉽게 근로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근로빈곤 경험이라는 한 번의 낙인이 빈곤을 벗어나는데 큰 어려움을 미치며, 정부가 그동안 수행한 근로빈곤 정책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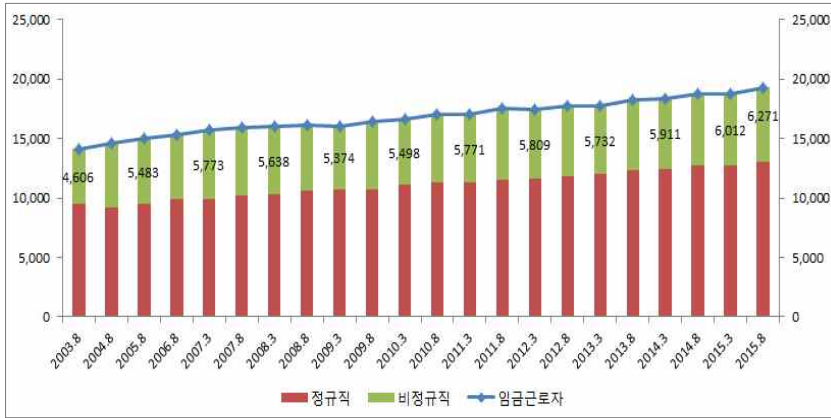
코호트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연령이 증가한다는 점은 가족을 형성하고 배우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호트가 변화해도 근로빈곤 현상이 완화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은 개인과 그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자칫 그 자녀에게 까지 빈곤의 대물림, 빈곤 함정을 경험할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현상이 근로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전 분석에서 강조해 온 것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그림 3-4]에서 보듯이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32.6%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5년에도 32.5%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근로빈곤 현황분석에서 보듯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빈곤 경험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 혹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빈곤율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질을 높이는 방안이 동시에 만들어지거나 제공되지 않는다면 코호트 분석에서 보듯이 근로빈곤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4]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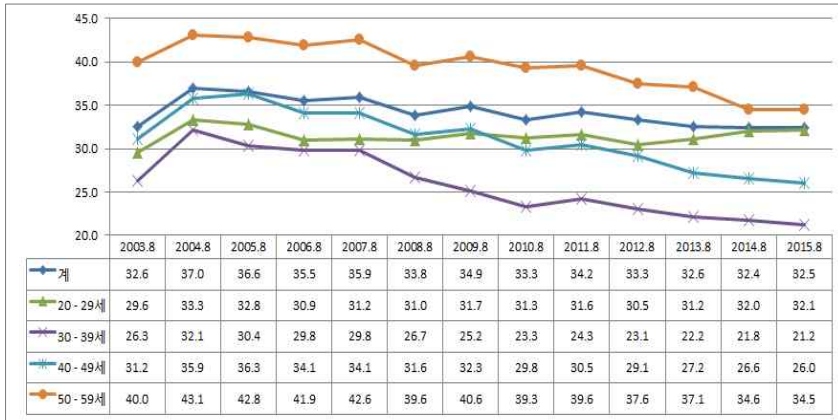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그림 3-5]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대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근로빈곤 현상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 있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환분석과 코호트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여기서는 노동시장 문제가 코호트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분석과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와 경제활동참여상태를 기초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학적 특성인 남녀 성별을 기준(소득은 가처분소득)으로 보면 2005년 기준 18~34세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좀 더 높은 근로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 정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의 근로빈곤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근로연령 및 근로능력 기준 근로빈곤율에서는 빈곤율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에게 비해 여성 근로자가 근로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으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도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기존 분석과 동일하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근로빈곤 추이에 있어서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빈곤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 근무할 때 탈빈곤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업장 규모가 큰 곳에서 근무할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탈빈곤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탈빈곤율이 현저히 낮았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근로빈곤을 경험할 확률과 탈출할 가능성에 있어서 사업장 규모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 근로빈곤의 변화를 보면, 사업장규모에서 본 것과 같이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따라서도 근로빈곤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처음부터 혹은 장기간 상용직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빈곤을 경험하거나 탈출할 확률이 높은 반면에, 임시일용직, 자영, 실업 등을 경험시에는 근로빈곤을 경험할 확률은 높이고 탈출할 확률은 낮추는 것을 볼 수 있다. 코호트를 기준으로 한 번 불안정 노동시장 지위에 놓이게 되면 근로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표 3-22〉 코호트별 근로빈곤 추이(성별, 가처분소득)

(단위: %)

남성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1971~1987년생	18~34세	8.8	6.9	6.1	6.2	6.0
	1961~1970년생	35~44세	9.7	10.5	10.2	9.5	9.3
	1951~1960년생	45~54세	12.0	13.5	11.9	13.2	12.9
	1941~1950년생	55~64세	23.0	18.3	15.8	21.5	27.3
근로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6.4	5.3	5.0	5.5	5.3
	1961~1970년생	35~44세	7.8	10.0	10.0	9.0	9.1
	1951~1960년생	45~54세	10.0	12.4	11.3	12.8	12.1
	1941~1950년생	55~64세	18.1	16.9	15.0	21.2	24.5
근로 기간	1971~1987년생	18~34세	3.1	2.4	2.5	2.8	2.1
	1961~1970년생	35~44세	5.1	6.4	4.4	5.1	4.0
	1951~1960년생	45~54세	6.5	6.8	5.5	5.5	4.3
	1941~1950년생	55~64세	8.1	7.9	5.5	6.7	6.6
여성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1971~1987년생	18~34세	7.2	6.0	5.8	5.9	5.8
	1961~1970년생	35~44세	10.9	11.1	9.3	9.6	9.0
	1951~1960년생	45~54세	13.8	13.4	13.6	18.8	18.4
	1941~1950년생	55~64세	29.8	26.5	23.4	27.2	25.1
근로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5.5	5.3	5.7	5.4	5.7
	1961~1970년생	35~44세	10.0	10.8	9.1	9.5	8.8
	1951~1960년생	45~54세	12.4	12.9	13.4	18.6	18.1
	1941~1950년생	55~64세	26.7	25.3	22.2	27.1	23.7
근로 기간	1971~1987년생	18~34세	1.8	1.8	2.2	2.2	1.7
	1961~1970년생	35~44세	5.1	6.0	4.8	4.7	4.2
	1951~1960년생	45~54세	6.0	5.7	5.9	6.8	6.7
	1941~1950년생	55~64세	11.2	11.4	7.1	10.7	13.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표 3-23〉 코호트별 근로빈곤 추이(사업장 규모별, 가처분소득)

(단위: %)

10인 미만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7.1	7.1	6.1	6.3	5.2
	1961~1970년생	35~44세	11.5	13.6	10.0	10.1	8.2
	1951~1960년생	45~54세	13.9	13.3	11.3	12.1	10.7
	1941~1950년생	55~64세	26.5	23.4	15.7	23.3	27.3
근로 기간	1971~1987년생	18~34세	6.1	6.3	5.9	6.0	4.8
	1961~1970년생	35~44세	11.0	13.0	8.9	9.1	7.4
	1951~1960년생	45~54세	12.5	12.7	10.9	11.4	10.1
	1941~1950년생	55~64세	24.7	21.4	15.1	22.2	25.0
10~49인이하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4.5	4.3	4.7	3.8	2.5
	1961~1970년생	35~44세	7.4	4.7	4.5	6.1	5.6
	1951~1960년생	45~54세	7.6	5.0	6.2	10.3	9.1
	1941~1950년생	55~64세	15.8	14.9	9.0	9.5	16.4
근로 기간	1971~1987년생	18~34세	4.2	3.5	3.5	3.0	2.3
	1961~1970년생	35~44세	5.9	4.1	3.7	5.8	5.1
	1951~1960년생	45~54세	7.6	5.0	4.7	8.7	7.5
	1941~1950년생	55~64세	13.6	14.9	9.0	9.5	16.4
50~99인이하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3.2	2.8	6.5	4.2	1.2
	1961~1970년생	35~44세	2.3	3.9	8.1	5.5	6.9
	1951~1960년생	45~54세	1.4	5.9	7.8	6.4	4.8
	1941~1950년생	55~64세	1.3	5.9	2.2	11.0	15.5
근로 기간	1971~1987년생	18~34세	2.9	1.1	6.5	4.2	1.2
	1961~1970년생	35~44세	1.8	3.9	7.0	5.5	6.9
	1951~1960년생	45~54세	1.4	5.0	7.8	6.4	4.8
	1941~1950년생	55~64세	1.3	5.9	2.2	11.0	15.5
100인 이상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3.7	0.7	1.0	1.3	0.7
	1961~1970년생	35~44세	2.4	2.2	1.6	1.4	1.1
	1951~1960년생	45~54세	1.8	2.6	3.7	2.3	4.4
	1941~1950년생	55~64세	10.5	4.4	4.7	11.6	-
근로 기간	1971~1987년생	18~34세	3.3	0.6	0.6	1.1	0.6
	1961~1970년생	35~44세	2.0	2.2	1.0	1.4	1.1
	1951~1960년생	45~54세	1.6	2.6	2.8	2.3	4.4
	1941~1950년생	55~64세	9.4	4.4	0.2	11.6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표 3-24〉 코호트별 근로빈곤 추이(경제활동참여상태별, 가처분소득)

(단위: %)

상용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2.7	1.5	1.3	1.5	0.8
	1961~1970년생	35~44세	1.7	2.5	2.0	1.3	2.2
	1951~1960년생	45~54세	1.1	2.4	1.5	0.7	1.4
	1941~1950년생	55~64세	2.6	4.7	0.7	0.9	17.5
근로 기간	1971~1987년생	18~34세	2.6	1.2	1.3	1.2	0.8
	1961~1970년생	35~44세	1.5	2.5	2.0	1.3	1.8
	1951~1960년생	45~54세	1.1	2.4	1.5	0.6	1.4
	1941~1950년생	55~64세	2.6	4.7	0.7	0.9	17.5
임시일용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7.8	7.4	8.1	8.0	5.4
	1961~1970년생	35~44세	13.7	17.1	13.7	12.5	10.1
	1951~1960년생	45~54세	15.8	17.7	16.5	13.5	11.9
	1941~1950년생	55~64세	24.2	26.1	18.8	18.9	18.0
근로 기간	1971~1987년생	18~34세	6.0	6.4	6.6	7.4	4.7
	1961~1970년생	35~44세	12.1	15.5	10.7	11.0	9.3
	1951~1960년생	45~54세	13.9	16.6	14.3	11.7	10.8
	1941~1950년생	55~64세	20.9	22.5	16.8	17.2	16.1
자영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10.6	11.6	7.1	6.4	7.1
	1961~1970년생	35~44세	10.7	14.0	7.1	9.0	7.0
	1951~1960년생	45~54세	12.7	11.4	8.5	12.1	11.1
	1941~1950년생	55~64세	28.8	25.0	12.3	25.4	28.9
근로 기간	1971~1987년생	18~34세	10.4	10.6	7.1	6.1	7.1
	1961~1970년생	35~44세	10.1	13.6	6.8	8.6	6.9
	1951~1960년생	45~54세	11.5	11.2	8.4	12.1	10.6
	1941~1950년생	55~64세	27.5	24.1	12.3	25.4	26.9
실업	코호트 기준	2005년기준	2005	2007	2009	2012	2014
근로 연령 및 능력	1971~1987년생	18~34세	22.1	22.0	11.4	14.5	22.1
	1961~1970년생	35~44세	30.0	35.0	33.0	31.7	32.9
	1951~1960년생	45~54세	26.5	30.2	44.6	23.2	22.3
	1941~1950년생	55~64세	35.7	29.2	39.7	84.5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절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 이후 가장 최근인 2014년까지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횡단 및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근로빈곤에 대한 정의는 선행연구에서 본 것과 같이 연구자와 국가별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근로빈곤의 정의를 근로연령, 근로능력, 근로기간의 세 가지로 두고 근로빈곤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근로빈곤 변화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근로연령 정의 하의 근로빈곤율은 2005년 9.6%에서 2014년 9.0%로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다른 정의를 통한 근로빈곤율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가처분소득에서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6.3%(2014년, 근로연령)의 근로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현황에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고,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불안정할수록 근로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기존 근로빈곤 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근로빈곤 현상이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근로빈곤 현상이 단순히 소득 및 노동시장만의 문제로 야기될까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했다. 근로빈곤의 시간 혹은 기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상당히 장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경우가 5-6%(시장소득, 근로연령 및 근로능력)대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특히 장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경향은 여성, 나이가 많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고,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을 때 장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다. 근로빈곤 현상은 단순히 소득빈곤만을 수반하지 않고 주거빈곤, 자산취득이 어려움, 정신적 문제를 함께 유발하고 있었다. 근로빈곤과 주거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는 비율이 10%대에 이르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 않았다.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는 우울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록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2~3%의 근로빈곤층이 우울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근로빈곤층의 열악한 소득구조는 이들의 자산취득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비빈곤층에 비해 근로빈곤을 경험한 계층의 자산 보유 규모가 현저히 낮아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 향후 소득빈곤의 문제와 더불어 자산불평등, 자산빈곤의 문제 역시 함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산 불평등의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그 격차

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며 본 연구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근로빈곤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횡단분석과 기간을 고려한 분석 모두에서 여성으로 연령이 높고, 사업장 규모가 작고 불안정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계층이 근로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호트 분석을 통해서도 한번 근로빈곤을 경험한 여성, 고연령, 불안정 고용상태의 근로자는 코호트가 동일하게 증가해도 빈곤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근로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재취업, 취업지원 및 알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도 완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근로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코호트 분석에서 보듯이 사업장 규모가 작고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근로빈곤상태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근로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간노동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을 고려하면서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직업을 발굴하고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정부의 몫이라 하겠다.

제4장

근로빈곤 동태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특성은 높은 실직 위험과 낮은 근로소득을 경험하는데, 비록 실직하더라도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활발하지만,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주로 빈곤선 주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 빈곤화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황덕순, 2001; 이병희·정재호, 2002; 홍경준, 2004; 금재호, 2005; 이병희·이승렬 외, 2006). 결국,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김교성·반정호, 2004; 남춘호 외, 2006; 장세훈, 2006; 조막래·이순아, 2012). 특히 근로빈곤층의 빈곤주기를 연구한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반복빈곤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병희, 2010a; 이주환, 2012).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는 한 해의 기준만으로 빈곤층을 구분하여 분석할 때는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지위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6차부터 17차까지 총 12

년 동안 자료를 사용하여 시장소득과 가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균등화 중위소득²³⁾ 60%를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였다. 총 12년 동안 가구의 빈곤 횟수를 계산하여 이 기간에 한번도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와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를 제외하여 빈곤가구 데이터와 개인데이터를 결합하여 빈곤가구의 구성원을²⁴⁾ 분석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소득 정보는 조사 시점에서 작년 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가구 및 고용 관련 정보는 당해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소득 정보와 가구 및 고용 관련 정보 간에 시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강금봉, 2016). 그러므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할 때 가구 및 고용 관련 자료와 다음 연도의 소득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분석대상 측면에서 빈곤은 가구 단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가구 단위로 분석할 때 가구주의 특성만을 분석할 수 있고, 취업자가 생기면 취업에 따른 빈곤 탈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²⁵⁾ 또한, 한 명의 성인만 일하는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많으면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개인 단위의 접근(individual-based approach)은 근로빈곤층이 겪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경험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병희, 2008).

23) 균등화 중위소득 추정 방법은 LIS(Luxembourg Income Study)는 균등화 방식으로 가구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또는 지출)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24) 빈곤가구 구성원 중 분석 기간 중 비경활 대상자이거나 정규 학생 등은 제외하였고, 근로빈곤층의 취업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으로 근로소득이 6-17차 중 4회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비경활대상자도 5회 이상인 대상자도 제외하였다. 본 분석에서 엄밀히 말하면 임금 근로빈곤층이 중심이기 때문에 분석 기간 중 비임금 근로자가 6년 이상인 대상자도 제외하였다. 또한 근로빈곤 연구에서 가구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 개인 근로소득이 저임금과 취약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노대명 외, 2004). 그러므로 개인소득이 월 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대상은 제외하였다.

25) 홍경준(2009)은 가구 내의 취업자 수의 증가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근로자 개인의 임금은 하락하더라도 해당 가구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가구 차원의 문제인 빈곤은 해소될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이 성공한다면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근로빈곤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공급의 확대를 초래하여 임금의 추가적인 하락을 유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빈곤가구의 구성원들의²⁶⁾ 근로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에는 다양한 고용형태나, 연령 및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서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게 된다.²⁷⁾

특히 근로빈곤층 세부 집단 중에서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를 전체 근로빈곤층으로 분석할 때는 자영업자의 소득 추정 등에 임금근로자와 차이가 있고, 한국노동패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의 과소 소득보고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추정은 소비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분석방법이 보편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빈곤 동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금근로자의 특성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취업 근로자를 고용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연구 대상을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근로빈곤의 탈출, 재진입, 진입 등의 확률에 미치는 가구 특성, 개인적 특성 분석. 특히, 노동시장 요인의 직종 및 산업 등의 세부적 요인 분석으로 빈곤탈출 방안 및 빈곤 고착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표 4-1>을 통해 살펴보면 총 739명 중 남성은 42.3%이고, 여성이 57%이다. 연령대별로는 18-34세가 6.15%이고, 35-44세가 21.1%, 45-54세가 38.87%, 55-70세가 34.33%이다.²⁸⁾ 학력 수준은 고졸이 43.85%로 가장 많고 중졸 이하가 45.22%로서 전체 93%가 고졸 이하의 학력 수준이다.

26) 저임금 근로자와 근로빈곤층의 가장 큰 차이는 가구 내의 빈곤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근로빈곤층 중에는 가구 내 수의 증가로 인하여 저임금과 취약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27) 근로빈곤층은 때로는 취업빈곤층(빈곤가구의 취업자)으로, 때로는 경활 빈곤층(빈곤가구의 취업자와 실업자)으로, 때로는 근로능력을 갖춘 빈곤층을 지칭하기도 한다. 취업빈곤층을 취업상태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가장 큰 범주에서 경활 빈곤층(active poor)과 비경활 빈곤층(inactive poor)으로 구분한다. 경활 빈곤층은 취업빈곤층(working poor)과 실업 빈곤층(unemployed poor)으로 구분한다. 취업빈곤층은 임금 근로빈곤층(employed poor)과 비임금 근로빈곤층(self-employed poor)으로 구분할 수 있다(노대명·최승아, 2004; 노대명, 2006; 노대명 외, 2009). 지은정(2009)은 경활 근로빈곤층을 정규직 근로빈곤층, 비정규직 근로빈곤층, 비임금 근로빈곤층, 실업빈곤층으로 세분화하였다.

28) 18-34세의 청년층이 분석대상에서 인원이 적은 것은 분석대상에서 대학생 등의 정규 학생은 제외하였고, 균형패널로 분석하기 위해 6차부터 17차까지 모든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포함되어 남성 등은 군대 등으로 조사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4-1> 분석대상 근로빈곤층 인적특성

		단위(%)	
		비가중치	가중치
성별	남자	42.35	43.79
	여자	57.65	56.21
연령대별	18-34	6.15	6.04
	35-44	21.15	21.22
	45-54	38.37	39.53
	55-70	34.33	33.21
교육수준	초졸 이하	1.86	1.34
	초졸	19.51	18.98
	중졸	23.85	19.96
	고졸	43.19	45.08
	전문대졸	5.31	5.87
	대졸	5.69	8.08
	대학원 졸 이상	0.6	0.69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제2절 근로빈곤 빈곤 지위 동태 분석

2.1. 빈곤 지위 변화

2.1.1. 빈곤 지위 이행확률²⁹⁾

한국노동패널의 각 2년 연도별로 빈곤 지위 변화를 빈곤의 상태와 비빈곤 상태에서 다음 해에 빈곤과 비빈곤 상태인지를 이행률로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동패널 6~7차 분석에서 6차에서 빈곤인 상태에서 다음 해에도 빈곤 확률은 55.23%이고 비빈곤 확률은 44.77%이고, 6차에서 비빈곤 상태에서 다음 해에 빈곤 상태 확률은 28.6%이다. 빈곤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빈곤한 상태로 유지하는 확률은 10~11차에서 44.13%로 낮아졌다가 11~12차부터 다시 점차 증가하여 16~17차에는 63.3%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도 6차에 빈곤한 상태에서 다음 해에도 빈곤 상태 확률은 55.04%로서 시장소득 기준보다 빈곤 확률이 약간 감소한다. 연도별로 빈곤 상태에서 다음 해에 빈곤 상태 확률은 시장소득 기준에서 6~7차년에는 55.23%에서 10~11차년도에서 44.13%로 줄어들었으나 16~17년에는 63.3%로 다시 다음 해부터 증가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4-2> 한국노동패널 6~17차 빈곤 지위 이행률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6~7차 (2003~2004년)	비빈곤	71.40	28.60	71.26	28.24
	빈곤	44.77	55.23	44.96	55.04
7~8차 (2004~2005년)	비빈곤	73.21	26.29	73.71	26.29
	빈곤	43.27	56.73	43.64	56.36
8~9차 (2005~2006년)	비빈곤	80.48	19.52	80.74	19.26
	빈곤	44.96	55.04	45.49	54.51

(표 계속)

29) 이행률은 t와 t-1기의 상태 전환 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p_{ij} = P_r(X_t = j | X_{t-1} = i)$

〈표 4-2〉 한국노동패널 6~17차 빈곤 지위 이행률(계속)

단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9~10차 (2006~2007년)	비빈곤	81.25	18.75	81.96	18.04
	빈곤	50.62	49.38	50.00	50.00
10~11차 (2007~2008년)	비빈곤	81.94	18.06	82.23	17.77
	빈곤	55.87	44.13	56.19	43.81
11~12차 (2008~2009년)	비빈곤	85.64	14.36	85.53	14.47
	빈곤	50.79	49.21	52.15	47.85
12~13차 (2009~2010년)	비빈곤	79.37	20.63	79.30	20.70
	빈곤	38.95	61.05	39.64	60.36
13~14차 (2010~2011년)	비빈곤	82.40	17.60	82.66	17.34
	빈곤	51.80	48.20	52.27	47.73
14~15차 (2011~2012년)	비빈곤	83.73	16.27	84.38	15.63
	빈곤	42.42	57.58	42.56	57.44
15~16차 (2012~2013년)	비빈곤	88.08	11.92	88.19	11.81
	빈곤	38.61	61.39	37.56	62.44
16~17차 (2013~2014년)	비빈곤	86.93	13.07	87.50	12.50
	빈곤	36.70	63.30	39.04	60.96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2.1.2. 빈곤탈출 이행률

〈표 4-3〉은 빈곤탈출 이행률로서 시장소득 기준으로 6~7차년도에 비탈출 상태에서 다음 해에 빈곤탈출 확률은 26.59%이고,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26.59%이다.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탈출 확률은 7~8차년도에 26.16%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9~10차년도에 35.7%, 13~14차년도에 36.44%로 계속 증가하다가 15~16차년도 부터 약간 감소하다가 16~17년도에는 25.6%로 과거 6~7차년도 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6~7차년도에 빈곤탈출 상태에서 다음 해에 빈곤탈출 상태 유지 확률은 55.73%로서 계속 증가하여 16~17년도에는 79.61%이다.

〈표 4-3〉 한국노동패널 6~17차 빈곤탈출 이행률

단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비탈출	빈곤탈출	비탈출	빈곤탈출
6~7차 (2003~2004년)	비탈출	73.41	26.59	73.41	26.59
	빈곤탈출	44.27	55.73	44.27	55.73
7~8차 (2004~2005년)	비탈출	73.84	26.16	73.84	26.16
	빈곤탈출	35.07	64.93	34.72	65.26
8~9차 (2005~2006년)	비탈출	74.19	25.81	73.90	26.10
	빈곤탈출	33.11	66.89	33.33	66.67
9~10차 (2006~2007년)	비탈출	64.30	35.70	63.98	36.02
	빈곤탈출	31.33	68.67	31.23	68.77
10~11차 (2007~2008년)	비탈출	65.77	34.23	65.58	34.42
	빈곤탈출	29.62	70.38	29.46	70.54
11~12차 (2008~2009년)	비탈출	62.32	37.68	60.97	39.03
	빈곤탈출	24.09	75.91	24.48	75.52
12~13차 (2009~2010년)	비탈출	69.65	30.35	68.93	31.07
	빈곤탈출	37.09	62.91	37.21	62.79
13~14차 (2010~2011년)	비탈출	63.56	36.44	61.93	38.07
	빈곤탈출	30.03	69.97	29.78	70.22
14~15차 (2011~2012년)	비탈출	69.54	30.46	70.29	29.71
	빈곤탈출	26.09	73.91	25.81	74.19
15~16차 (2012~2013년)	비탈출	72.38	27.62	71.35	28.65
	빈곤탈출	21.01	78.99	21.41	78.59
16~17차 (2013~2014년)	비탈출	74.40	25.60	73.56	26.44
	빈곤탈출	20.39	79.61	20.73	79.27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빈곤탈출 이행확률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코프(markov) 이행확률로 Pearson chi와 우도비(likelihood ratio) chi2로 확인한 결과를 〈표 4-4〉를 통해 살펴보면 빈곤 지위 변화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 비탈출 상태에서 빈곤탈출 확률은 시장소득 기준에서 6~7차에서 32%에서 16~17차에는 27%로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6~7차에서는 32%에서 16~17차에서는 28%로 감소하고 있다.

빈곤탈출에서 연속하여 빈곤탈출 상태를 유지 확률은 6~7차에서는 49%에서 79%로서 상승하였다. 즉, 빈곤에서 빈곤탈출 확률은 줄어들지만, 빈곤탈출에서 빈곤탈출을 유지하는 확률은 증가하고 있다.

〈표 4-4〉 빈곤탈출 상태 변화 Markov 이행확률

(단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비탈출	빈곤탈출	비탈출	빈곤탈출
6~7차 (2003~2004년)	비탈출	0.67	0.32	0.68	0.32
	빈곤탈출	0.50	0.49	0.50	0.50
	pearson chi 2 (likelihood-ratio chi2)		45.56*** 45.79***		45.22*** 45.47***
7~8차 (2004~2005년)	비탈출	0.73	0.26	0.74	0.26
	빈곤탈출	0.39	0.60	0.40	0.60
	Pearson chi 2 likelihood-ratio chi2		169.30*** 170.50***		170.87*** 172.13***
8~9차 (2005~2006년)	비탈출	0.74	0.25	0.74	0.26
	빈곤탈출	0.34	0.65	0.34	0.66
	Pearson chi 2 likelihood-ratio chi2		232.58*** 236.22***		231.51*** 235.18***
9~10차 (2006~2007년)	비탈출	0.69	0.31	0.69	0.31
	빈곤탈출	0.32	0.67	0.32	0.68
	Pearson chi 2 likelihood-ratio chi2		199.40*** 203.43***		195.58*** 199.50***
10~11차 (2007~2008년)	비탈출	0.64	0.35	0.65	0.35
	빈곤탈출	0.30	0.69	0.30	0.70
	Pearson chi 2 likelihood-ratio chi2		175.80*** 179.71***		174.67*** 178.54***
11~12차 (2008~2009년)	비탈출	0.64	0.35	0.63	0.37
	빈곤탈출	0.26	0.73	0.27	0.73
	Pearson chi 2 likelihood-ratio chi2		20.75*** 212.69***		198.18*** 202.80***
12~13차 (2009~2010년)	비탈출	0.65	0.34	0.65	0.35
	빈곤탈출	0.31	0.69	0.31	0.69
	Pearson chi 2 likelihood-ratio chi 2		178.61*** 181.99***		15.18*** 167.95***
13~14차 (2010~2011년)	비탈출	0.63	0.33	0.65	0.34
	빈곤탈출	0.34	0.66	0.34	0.67
	Pearson chi 2 likelihood-ratio chi2		155.34*** 158.14***		144.19*** 146.52***

(표 계속)

〈표 4-4〉 빈곤탈출 상태 변화 Markov 이행확률(계속)

(단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비탈출	빈곤탈출	비탈출	빈곤탈출
14~15차 (2011~2012년)	비탈출	0.64	0.36	0.66	0.34
	빈곤탈출	0.28	0.72	0.28	0.72
	Pearson chi 2 likelihood-ratio chi2		219.33*** 225.04***		216.76*** 222.22***
15~16차 (2012~2013년)	비탈출	0.71	0.29	0.71	0.29
	빈곤탈출	0.24	0.76	0.24	0.76
	Pearson chi 2 likelihood-ratio chi2		333.38*** 346.42***		330.15*** 342.65***
16~17차 (2013~2014년)	비탈출	0.73	0.27	0.72	0.28
	빈곤탈출	0.20	0.79	0.21	0.79
	Pearson chi 2 likelihood-ratio chi2		411.57*** 431.43***		391.56*** 409.08***

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2.1.3. 빈곤 재진입률

〈표 4-5〉는 빈곤 탈출(중위소득 80%)에서 빈곤 재진입(중위소득 60%)하는 확률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에서 6~7차년도에 빈곤 재진입률은 11.69%, 16~17차년도에는 6.31%로 12~13차년도를 제외하고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6~7차년도는 5.15%였으나 16~17차년도는 5.01%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빈곤에서 빈곤 탈출 가능성이 크고, 다시 빈곤으로 진입하는 확률은 낮지만, 빈곤 탈출 기준선과 빈곤 기준선 사이 주위에서 머물 확률이 높다.

〈표 4-5〉 빈곤탈출에서 빈곤 재진입률

단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탈출	빈곤 재진입	빈곤탈출	빈곤 재진입
6~7차 (2003~2004년)	88.31	11.69	94.85	5.15
7~8차 (2004~2005년)	90.58	9.42	93.50	6.50
8~9차 (2005~2006년)	93.35	6.65	94.68	5.32
9~10차 (2006~2007년)	93.80	6.20	95.30	4.70
10~11차 (2007~2008년)	92.96	7.04	94.90	5.10
11~12차 (2008~2009년)	94.20	5.80	95.02	4.98
12~13차 (2009~2010년)	89.70	10.30	92.33	7.67
13~14차 (2010~2011년)	91.30	8.70	92.99	7.01
14~15차 (2011~2012년)	92.66	7.34	94.07	5.93
15~16차 (2012~2013년)	96.23	3.77	97.13	2.87
16~17차 (2013~2014년)	93.69	6.31	94.99	5.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즉, 빈곤을 탈출하더라도 빈곤선의 주위에 머물러 완전한 탈출이라고 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에서 비롯된다(최옥금, 2008; 이병희 2010).

2.2. 노동시장 상태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

2.2.1. 종사상 지위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

〈표 4-6〉은 근로빈곤층의 상용, 임시, 일용의 각 종사상 지위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전환 비율은 전체 1.43%,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비율은 전체 1.72%,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비율은 0.83%, 일용직에서 상용

직 전환 비율은 1.38%, 임시직에서 일용직 전환 비율은 전체 0.43%, 일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전환 비율은 0.61%, 일용직에서 일용직의 유지 비율은 전체 19.06%이다.

전체적으로 상용직이나 임시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종사상 지위인 일용직으로 전환 비율도 낮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전환 비율도 낮아 근로빈곤층의 종사자 지위의 변화는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4-6> 종사상 지위 변화

	단위(명, %)						
	상용-임시	임시-상용	상용-일용	일용-상용	임시-일용	일용-임시	일용-일용
6차	6(1.5)	3(0.8)	5(0.8)	2(0.5)	-	2(0.5)	-
7차	2(10.6)	12(2.9)	10(1.6)	7(1.7)	3(0.8)	1(0.4)	78(18.1)
8차	5(1.3)	5(1.3)	2(0.4)	9(2.1)	2(0.8)	3(0.8)	83(19.2)
9차	6(1.5)	5(1.3)	4(0.7)	7(1.7)	1(0.4)	3(0.8)	78(18.7)
10차	6(1.4)	4(1.1)	2(0.3)	7(1.9)	3(0.8)	2(0.5)	78(18.7)
11차	8(1.9)	10(2.5)	13(1.9)	6.7(1.5)	3(0.0)	3(0.9)	83(19.2)
12차	8(1.9)	5(1.3)	20(2.9)	6(1.4)	0(0.52)	1(0.4)	87(19.9)
13차	7(1.7)	7(1.6)	4(0.6)	5(1.3)	0(0.0)	4(0.9)	86(19.4)
14차	7(1.1)	14(2.8)	1(0.2)	2(0.5)	1(0.3)	1(0.2)	101(20.0)
15차	11(2.1)	11(2.2)	1(0.1)	5(0.9)	4(0.8)	4(0.7)	102(19.0)
16차	3(0.6)	7(1.4)	3(0.4)	5(1.0)	1(0.2)	1(0.3)	103(19.0)
17차	7(1.3)	6(1.1)	2(0.3)	11(1.9)	1(0.2)	4(0.7)	105(17.9)
소계	80(1.4)	96(1.7)	73(0.8)	77(1.4)	22(0.4)	36(0.6)	983(19)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종사자 지위 변화에 따라서 빈곤과 비빈곤, 빈곤 탈출과 빈곤 비탈출의 통계적 연관성을³⁰⁾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과 로그 우도비 검정으로 살펴보면 임시직에서 일용직 변화는 9~10차년도에 빈곤과 비빈곤에 연관성이 있다. 일용직에서 임시직으로 변화는 11~12차년도에는 빈곤 탈출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 임시직에서 일용직으로의 변화는 6~7차년도, 7~8차년도, 8~9차년도에 빈곤 지위 변화에 6~7차년도와 7~8차년도에는 빈곤 탈출에 연관성이 있다. 일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유지하는 13~14차와 14~15차년, 16~17차년도에 빈곤탈출 변화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0) 범주형 간에 통계적 연관성은 다음 두 가설인 ' H_0 : 두 변수는 서로 독립이다. H_1 : 두 변수는 서로 종속이다'를 검정하게 되는데,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과 로그 우도비 검정으로 활용하였다.

<표 4-7> 종사상 지위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 비탈출	빈곤탈출
6~7차 (2003~2004년)	상용-임시	2(1.9)	1(1.1)	1(1.8)	2(1.2)
		0.0042(0.0043)		0.8446	
	임시-상용	8(7.8)	4(4.2)	6(7.1)	6(4.9)
		0.0172(0.0173)		0.4428(0.4353)	
	상용-일용	7(8.2)	6(4.8)	10(7.9)	3(5.1)
		0.4528(0.4413)		1.4056(1.5100)	
	일용-상용	5(5.8)	4(3.2)	6(5.3)	3(3.7)
		0.3503(0.3391)		0.2055(0.2103)	
	임시-일용	5(3.2)	0(1.8)	1(3.0)	4(2.0)
		2.7356*(4.3552*)		3.2371*(3.2697*)	
	일용-임시	1(1.3)	1(0.7)	1(1.2)	1(0.8)
		0.1952(0.1864)		0.0722(0.0710)	
일용-일용	49(51.9)	31(28.1)	49(47.5)	31(32.5)	
	0.5590(0.5526)		0.1498(0.1504)		
7~8차 (2004~2005년)	상용-임시	4(3.3)	1(1.7)	2(2.8)	3(2.2)
		0.4471(0.4887)		0.4740	
	임시-상용	4(4.6)	3(2.4)	4(3.9)	3(3.1)
		0.2424(0.2343)		0.0105(0.0105)	
	상용-일용	2(2.5)	2(1.5)	2(2.3)	2(1.7)
		0.2627(0.2546)		0.1264(0.1245)	
	일용-상용	4(4.0)	2(2.0)	3(3.3)	3(2.7)
		0.0016(0.0016)		0.0672(0.0669)	
	임시-일용	2(2.0)	1(1.0)	3(1.7)	0(1.3)
		0.0008(0.0008)		2.4472(3.5773*)	
	일용-임시	2(2.6)	2(1.4)	2(2.2)	2(1.8)
		0.4538(0.4302)		0.0446(0.0444)	
일용-일용	58(63.3)	38(32.7)	59(53.0)	37(43.0)	
	1.6070(1.5798)		1.8845(1.9012)		

(표 계속)

〈표 4-7〉 종사상 지위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계속)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 비탈출	빈곤탈출
8~9차 (2005~2006년)	상용-임시	5(4.8)	2(2.2)	3(4.0)	4(3.0)
		0.0293(0.0298)		0.5922	
	임시-상용	3(4.1)	3(1.9)	5(3.4)	1(2.6)
		0.9572(0.8898)		1.7023(1.9058)	
	상용-일용	3(2.7)	1(1.3)	3(2.3)	1(1.7)
		0.1132(0.1187)		0.5183(0.5508)	
	일용-상용	6(6.2)	3(2.8)	7(5.1)	2(3.9)
		0.0134(0.0133)		1.5954(1.7197)	
	임시-일용	0(1.4)	2(0.6)	2(1.1)	0(0.9)
		4.3564**(4.6322**)		1.5064(2.2449)	
	일용-임시	2(2.7)	2(1.3)	3(2.3)	1(1.7)
		0.6354(0.5905)		0.5253(0.5581)	
일용-일용	60(61.6)	30(28.4)	55(51.4)	35(38.6)	
	0.1628(0.1616)		0.7161(0.7210)		
9~10차 (2006~2007년)	상용-임시	4(4.3)	2(1.7)	2(2.8)	4(3.2)
		0.0927(0.0893)		0.4689	
	임시-상용	2(4.3)	4(1.7)	4(2.8)	2(3.2)
		4.5743**(3.9648**)		0.9245(0.9348)	
	상용-일용	2(2.1)	1(0.9)	2(1.5)	1(1.5)
		0.0299(0.0290)		0.3266(0.3331)	
	일용-상용	6(7.2)	4(2.8)	5(4.7)	5(5.3)
		0.7576(0.7058)		0.0322(0.0321)	
	임시-일용	3(2.9)	1(1.1)	1(1.9)	3(2.1)
		0.0158(0.0161)		0.7978(0.8416)	
	일용-임시	1(1.4)	1(0.6)	2(0.9)	0(1.1)
		0.4931(0.4412)		2.2471(3.0129*)	
일용-일용	64(62.8)	23(24.2)	46(41.1)	41(45.9)	
	0.0994(0.1002)		1.3839(1.3818)		

(표 계속)

<표 4-7> 종사상 지위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계속)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 비탈출	빈곤탈출
10~11차 (2007~2008년)	상용-임시	7(6.3)	1(1.7)	2(3.6)	6(4.4)
		0.3708(0.4182)		1.2981	
	임시-상용	11(10.2)	2(2.8)	5(5.8)	8(7.2)
		0.2730(0.2940)		0.2213(0.2239)	
	상용-일용	10(8.2)	1(2.8)	5(5.3)	6(5.7)
		1.5941(1.9564)		0.0239(0.0240)	
	일용-상용	4(5.5)	3(1.5)	5(3.1)	2(3.9)
		1.9895(1.6783)		2.0290(2.0531)	
	임시-일용			47(40.8)	44(50.2)
				2.1182(2.1087)	
일용-임시	4(3.9)	1(1.1)			
	0.0045(0.0046)				
일용-일용	73(71.7)	18(19.3)	3(2.2)	2(2.8)	
	0.1419(0.1438)		0.4686(0.4661)		
11~12차 (2008~2009년)	상용-임시	9(8.1)	1(1.9)	1(3.8)	9(6.2)
		0.5140(0.5952)		3.4391*	
	임시-상용	6(4.9)	0(1.1)	0(2.3)	6(3.7)
		1.4034(2.5104)		3.7543*(5.8195**)	
	상용-일용	7(6.9)	2(2.1)	4(3.8)	5(5.2)
		0.0057(0.0057)		0.0163(0.0162)	
	일용-상용	6(6.5)	2(1.5)	4(3.1)	4(4.9)
		0.2089(0.1940)		0.4830(0.4695)	
	임시-일용	2(1.6)	0(0.4)	0(0.8)	2(1.2)
		0.4636(0.8326)		1.2402(1.9286)	
일용-임시	1(1.6)	1(0.4)	2(0.8)	0(1.2)	
	1.2878(0.9964)		3.2543*(3.8671**)		
일용-일용	79(72.3)	10(16.7)	31(34.0)	58(55.0)	
	4.1162**(4.5317**)		0.5244(0.5292)		

(표 계속)

〈표 4-7〉 종사상 지위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계속)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 비탈출	빈곤탈출
12~13차 (2009~2010년)	상용-임시	4(3.8)	1(1.2)	3(2.4)	2(2.6)
		0.0500(0.0522)		0.3108	
	임시-상용	6(6.1)	2(1.9)	4(3.8)	4(4.2)
		0.0024(0.0024)		0.0185(0.0185)	
	상용-일용	4(3.5)	1(1.5)	4(2.5)	1(2.5)
		0.2415(0.2609)		1.7081(1.8350)	
	일용-상용	5(5.3)	2(1.7)	2(3.3)	5(3.7)
		0.0718(0.0693)		1.0346(1.0747)	
	임시-일용				
	일용-임시	3(2.3)	0(0.7)	1(1.4)	2(1.6)
		0.9677(1.6740)		0.2471(0.2530)	
	일용-일용	61(65.1)	25(20.9)	49(41.0)	37(45.0)
1.3432(1.3026)		3.7505*(3.7516*)			
13~14차 (2010~2011년)	상용-임시	6(5.4)	1(1.6)	2(3.2)	5(3.8)
		0.3122(0.3473)		0.7938	
	임시-상용	8(10.0)	5(3.0)	8(5.9)	5(7.1)
		1.7679(1.5752)		1.4385(1.4343)	
	상용-일용	1(1.5)	1(0.5)	1(0.9)	1(1.1)
		0.5506(0.4867)		0.0068(0.0068)	
	일용-상용	2(2.3)	1(0.7)	2(1.4)	1(1.6)
		0.1770(0.1625)		0.5612(0.5632)	
	임시-일용	1(1.5)	1(0.5)	1(0.9)	1(1.1)
		0.8160(0.6853)		0.0186(0.0185)	
	일용-임시	0(0.8)	1(0.2)	1(0.5)	0(0.5)
		3.3313*(2.9355*)		1.2145(1.5903)	
일용-일용	72(77.6)	29(23.4)	55(45.7)	46(55.3)	
	2.2467(2.1662)		4.4157**(4.3977**)		

(표 계속)

<표 4-7> 종사상 지위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계속)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 비탈출	빈곤탈출
14~15차 (2011~2012년)	상용-임시	5(7.8)	5(2.2)	8(4.0)	2(6.0)
		4.8015**(3.9538**)		6.7413***	
	임시-상용	10(8.6)	1(2.4)	5(4.4)	6(6.6)
		1.0558(1.2734)		0.1311(0.1295)	
	상용-일용	1(0.7)	0(0.3)	0(0.5)	1(0.5)
		0.3767(0.6391)		0.8721(1.2540)	
	일용-상용	4(3.9)	1(1.1)	3(2.0)	2(3.0)
		0.0088(0.0090)		0.8271(0.8058)	
	임시-일용	2(2.3)	1(0.7)	2(1.2)	1(1.8)
		0.2394(0.2157)		0.8822(0.86230)	
	일용-임시	3(3.1)	1(0.9)	2(1.6)	2(2.4)
		0.0255(0.0246)		0.1624(0.1592)	
일용-일용	72(75.1)	24(20.9)	45(38.6)	51(57.4)	
	0.7556(0.7366)		2.2397(2.2150)		
15~16차 (2012~2013년)	상용-임시	4(3.2)	0(0.8)	0(1.6)	4(2.4)
		1.0031(1.7852)		2.6245	
	임시-상용	6(4.8)	0(1.2)	2(2.4)	4(3.6)
		1.5110(2.6840)		0.0942(0.0962)	
	상용-일용	2(2.2)	1(0.8)	2(1.3)	1(1.7)
		0.0989(0.0933)		0.5754(0.5769)	
	일용-상용	4(3.2)	0(0.8)	1(1.6)	3(2.4)
		1.0031(1.7852)		0.3512(0.3732)	
	임시-일용	2(1.6)	0(0.4)	0(0.8)	2(1.2)
		0.4995(0.8905)		1.3068(2.0102)	
	일용-임시	1(1.6)	1(0.4)	1(0.8)	1(1.2)
		1.1395(0.9036)		0.0942(0.0920)	
일용-일용	74(76.1)	21(18.9)	50(37.4)	45(57.6)	
	0.3552(0.3483)		8.6494*** (8.4871***)		

(표 계속)

〈표 4-7〉 종사상 지위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계속)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 비탈출	빈곤탈출
16~17차 (2013~2014년)	상용-임시	7(6.4)	1(1.6)	4(3.1)	4(4.9)
		0.2493(0.2769)		0.4252	
	임시-상용	3(4.0)	2(1.0)	3(1.9)	2(3.1)
		1.3659(1.1339)		0.9507(0.9193)	
	상용-일용	3(2.2)	0(0.8)	2(1.3)	1(1.7)
		1.0499(1.7984)		0.5905(0.5913)	
	일용-상용	3(3.2)	1(0.8)	1(1.6)	3(2.4)
		0.0800(0.0750)		0.3259(0.3462)	
	임시-일용	1(0.8)	0(0.2)	1(0.4)	0(0.6)
		0.2416(0.4325)		1.5769(1.8939)	
	일용-임시	2(1.6)	0(0.4)	1(0.8)	1(1.2)
		0.4842(0.8660)		0.1050(0.1024)	
	일용-일용	77(75.7)	17(18.3)	41(36.5)	53(57.5)
		0.1339(0.1358)		1.1108(1.0999)	

주: Pearson chi 2(likelihood-ratio chi2) :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2.2.2. 고용형태 변화와 빈곤 지위

각 한국노동패널 자료 연도별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전환 비율은 6~7차년도에 11.05%로 증가하였지만, 전체 4.6%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은 7~8차년도에 8.14%로 상승하였지만, 전체 2.52%로 낮은 편이다.

〈표 4-8〉 고용형태 변화³¹⁾

(단위: 명, %)

	정규-비정규	비정규-정규	비정규-비정규
6~7차 (2003~2004년)	37(11.05)	23(7.12)	117(35.24)
7~8차 (2004~2005년)	30(8.48)	28(8.14)	154(43.55)
8~9차 (2005~2006년)	10(2.85)	18(5.17)	166(45.61)
9~10차 (2006~2007년)	11(2.99)	13(3.52)	167(44.11)
10~11차 (2007~2008년)	32(8.0)	19(4.79)	176(43.75)
11~12차 (2008~2009년)	28(6.9)	9(2.24)	210(50.53)
12~13차 (2009~2010년)	10(2.44)	18(4.32)	221(52.52)
13~14차 (2010~2011년)	12(2.55)	11(2.36)	256(54.30)
14~15차 (2011~2012년)	17(3.47)	20(4.18)	261(52.55)
15~16차 (2012~2013년)	15(3.11)	17(3.43)	272(53.99)
16~17차 (2013~2014년)	13(2.56)	13(2.52)	298(55.34)
전체	231(4.61)	198(3.97)	2415(48.22)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1) 전체조사 중 정규직은 30.80%, 비정규직은 35.27%, 결측치는 33.94%로서 실제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병희(2007)는 근로빈곤층은 고용·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 반복적인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가구주의 고용형태별로 요인 분해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학영·구인회(2010)도 비정규직의 낮은 소득과 빈곤은 주요하게 근로시간의 차이, 즉 고용 불안정에 기인한다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정규직의 취약근로자(정규직 임시·일용직) 빈곤층 규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하였다.

<표 4-9>를 통해 고용형태 변화에 따라서 빈곤 지위 및 빈곤탈출 통계적 연계성을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과 로그 우도비 검정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6~7차, 7~8차, 8~9차년도에 빈곤 지위 변화에 유의하고, 7~8차년, 8~9차년, 14~15차년도에는 빈곤탈출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에서 비정규의 유지는 7~8차, 13~14차, 14~15차, 16~17차년도에 각 빈곤 지위 변화에 연관성이 있고, 7~8차, 13~14차, 15~16차, 16~17차년도에도 빈곤탈출 변화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학영·구인회(2010)의 연구에서도 정규직의 취약근로자(정규직 임시·일용직) 빈곤층 규모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교하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으나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빈곤 지위 변화를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표 4-9> 고용형태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탈출	빈곤 비탈출
6~7차 (2003~2004년)	정규직- 비정규	32(27.6)	10(14.4)	26(24.5)	16(17.5)
		2.3017(.4285)		0.2417(0.2436)	
	비정규- 정규	12(17.1)	14(8.9)	16(15.2)	10(10.8)
		4.7336**(4.4802**)		0.1148(0.1156)	
	비정규- 비정규	84(88.0)	50(46.0)	83(78.2)	51(55.8)
		0.8356(0.8308)		1.0786(1.0835)	

(표 계속)

<표 4-9> 고용형태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계속)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탈출	빈곤 비탈출
7~8차 (2004~2005년)	정규직- 비정규	24(23.2)	10(10.8)	17(17.9)	17(16.1)
		0.1059(0.1073)		0.1054(0.1053)	
	비정규- 정규	23(18.4)	4(8.6)	8(14.2)	19(12.8)
		3.8937**(4.4251**)		6.1651**(6.2836**)	
	비정규- 비정규	104(119.2)	71(55.8)	104(92.2)	71(82.8)
		10.8791***(10.8533**)		5.7773**(5.7982**)	
8~9차 (2005~2006년)	정규직- 비정규	8(8.2)	4(3.8)	5(6.8)	7(5.2)
		0.0171(0.0169)		1.192(1.1771)	
	비정규- 정규	10(14.4)	11(6.6)	17(12.0)	4(9.0)
		4.4227**(4.1045**)		5.1695**(5.6657**)	
	비정규- 비정규	129(130.0)	61(60.0)	114(108.4)	76(81.6)
		0.0414(0.0414)		1.2822(1.2838)	
9~10차 (2006~2007년)	정규직- 비정규	8(10.3)	6(3.7)	7(6.5)	7(7.5)
		1.9701(1.7915)		0.0871(0.0868)	
	비정규- 정규	10(12.5)	7(4.5)	9(7.8)	8(9.2)
		1.9386(1.7774)		0.3304(0.3292)	
	비정규- 비정규	141(140.3)	50(50.7)	92(88.1)	99(102.9)
		0.0279(0.0279)		0.5893(0.5893)	
10~11차 (2007~2008년)	정규직- 비정규	23(23.2)	6(5.8)	13(12.9)	16(16.1)
		0.0135(0.0134)		0.0019(0.0019)	
	비정규- 정규	17(17.6)	5(4.4)	11(9.8)	11(12.2)
		0.1200(0.1162)		0.2901(0.2884)	
	비정규- 비정규	157(159.2)	42(39.5)	95(88.4)	1.4(110.6)
		0.3674(0.3669)		1.6516(1.6519)	
11~12차 (2008~2009년)	정규직- 비정규	18(16.4)	2(3.6)	7(7.6)	13(12.4)
		0.9203(1.0549)		0.0684(0.0691)	
	비정규- 정규	8(8.2)	2(1.8)	5(3.8)	5(6.2)
				0.6522(0.6327)	
	비정규- 비정규	179(180.3)	41(39.7)	83(83.1)	137(136.9)
		0.1063(0.1064)		0.0003(0.0003)	

(표 계속)

〈표 4-9〉 고용형태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계속)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탈출	빈곤 비탈출
12~13차 (2009~2010년)	정규직- 비정규	8(8.3)	3(2.7)	8(5.2)	3(5.8)
		0.0623(0.0606)		2.8907*(2.9696*)	
	비정규- 정규	15(14.4)	4(4.6)	10(9.0)	9(10.0)
		0.1009(0.1038)		0.2127(0.2124)	
비정규- 비정규	163(165.5)	55(52.5)	107(103.5)	111(114.5)	
	0.3223(0.3228)		0.4790(0.4791)		
13~14차 (2010~2011년)	정규직- 비정규	9(9.3)	3(2.7)	7(5.4)	5(6.6)
		0.0408(0.0398)		0.8600(0.8555)	
	비정규- 정규	9(10.1)	4(2.9)	5(5.9)	8(7.1)
		0.5115(0.4763)		0.2447(0.2476)	
비정규- 비정규	177(187.3)	65(54.7)	124(109.4)	118(132.6)	
	5.4867**(5.5639**)		7.7966*** (7.8323***)		
14~15차 (2011~2012년)	정규직- 비정규	16(15.7)	4(4.3)	8(8.0)	12(12.0)
		0.0300(0.0305)		0.0004(0.0004)	
	비정규- 정규	17(15.7)	3(4.3)	12(8.0)	8(12.0)
		0.5320(0.5769)		3.5730*(3.4775*)	
비정규- 비정규	179(188.3)	61(51.7)	105(95.5)	135(144.5)	
	4.5343**(04.5859**)		3.3875*(3.3981*)		
15~16차 (2012~2013년)	정규직- 비정규	8(7.9)	2(2.1)	4(4.0)	6(6.0)
		0.0018(0.0019)		0.0003(0.0003)	
	비정규- 정규	11(9.5)	1(2.5)	4(4.8)	8(7.2)
		1.1263(1.3704)		0.2107(0.2152)	
비정규- 비정규	193(199.4)	58(51.6)	111(99.7)	140(151.3)	
	2.3359(2.3635)		4.8845**(4.9155**)		
16~17차 (2013~2014년)	정규직- 비정규	10(10.5)	3(2.5)	7(5.1)	6(7.9)
		0.1269(0.1213)		1.2537(1.2178)	
	비정규- 정규	4(4.0)	1(1.0)	1(1.9)	4(3.1)
		0.0019(0.0019)		0.7619(0.8362)	
비정규- 비정규	201(211.6)	61(50.4)	112(102)	150(160)	
	6.6599*** (6.8802***)		3.8896** (3.9167**)		

주: Pearson chi 2(likelihood-ratio chi2):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2.2.3. 경제활동 상태와 빈곤 지위 변화

취업과 실업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율을 살펴보면 취업에서 실업 이동은 전체 7.5%,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은 13차와 14차년도에 10%였으나 17년도에는 3.1%로 감소하였다. 실업에서 실업 상태의 유지는 11~12차년도에 21.1%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다가 16~17차년도에는 21.6%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취업에서 취업상태의 유지는 전체 65.4%이다.

<표 4-10>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명, %)			
	취업-실업	실업-취업	실업-실업	취업-취업
6~7차 (2003~2004년)	53(8.0)	67(10)	128(19)	424(63)
7~8차 (2004~2005년)	54(8.0)	47(6.9)	136(20.1)	441(64.9)
8~9차 (2005~2006년)	55(8.2)	57(8.4)	137(20)	434(63.4)
9~10차 (2006~2007년)	58(8.5)	59(8.6)	133(19.5)	436(63.4)
10~11차 (2007~2008년)	63(8.9)	60(8.4)	139(19.5)	449(63.1)
11~12차 (2008~2009년)	63(8.8)	52(7.3)	153(21.1)	457(62.9)
12~13차 (2009~2010년)	71(9.4)	77(10.3)	145(19.2)	462(61.1)
13~14차 (2010~2011년)	36(4.6)	81(10.3)	145(18.3)	529(66.8)
14~15차 (2011~2012년)	48(6.2)	39(5.0)	143(18.1)	559(70.7)
15~16차 (2012~2013년)	51(6.3)	42(5.2)	154(18.9)	568(69.6)
16~17차 (2013~2014년)	41(4.8)	27(3.1)	188(21.6)	612(70.4)
소계	7.5	7.6	19.5	65.4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취업과 실업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에 따라서 빈곤 지위 및 빈곤탈출 변화의 통계적 연관성을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과 로그 우도비 검정으로 살펴보면 취업에서 실업의 이동은 8-9차, 9-10차년도에 빈곤 지위 변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은 7-8차, 8-9차, 9-10차년도에는 빈곤 지위에 7-8차, 9-10차, 10-11차, 14-15차년도에는 빈곤 탈출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에서 실업의 유지는 각 11-12차, 12-13차, 13-14차, 14-15차, 15-16차년, 16-17차년도에 빈곤 지위와 빈곤 탈출에 7-8차와 10-11차는 빈곤 지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에서 취업의 유지는 7-8차와 10-11차 11-12차, 12-13차, 14-15차, 15-16차 16-17차에 각각 빈곤 지위와 빈곤 탈출에 연관성이 있고, 9-10차년도에는 빈곤 탈출, 13-14차는 빈곤 지위 변화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은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 자체만으로 빈곤 탈출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병희·반정호(2008)는 한국복지패널 1~2차 자료를 이용해 빈곤이행과 취업 지위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비취업에서 취업해도 빈곤 유입률은 9.8%, 빈곤 탈출률은 59.2%, 취업에서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빈곤 유입률은 5.7%, 빈곤 탈출률은 53.7%로 분석하였다. 이병희(2010a)도 가계조사 패널을 통하여 가구주의 취업 상태 변화에 따라 가구빈곤 상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취업에서 실직하게 될 때 빈곤 유입률이 52.9%이고, 비취업에서 취업이나 취업에서 취업으로 유지하는 경우에 빈곤 탈출률이 각각 38.2%, 30%로 나타났다.

즉, 취업상태일지라도 잦은 고용단절을 경험하거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빈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황덕순·이병희, 2011).

<표 4-11> 경제활동 상태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비탈출	빈곤탈출
6~7차 (2003~2004년)	취업 - 실업	43(39.6)	20(23.4)	37(38.4)	26(24.6)
		0.348(0.343)		0.1530(0.1520)	
	실업 - 취업	31(44.0)	39(26.0)	52(42.7)	18(27.3)
		11.3288*** (10.9175***)		5.7141** (6.0149**)	
	실업 - 실업	87(87.3)	52(51.7)	85(84.8)	54(54.2)
		0.0029(0.0029)		0.0011(0.0011)	
취업 - 취업	303(293.2)	164(173.8)	277(285.0)	190(182.0)	
	2.3827(2.3717)		1.5666(1.5734)		
7~8차 (2004~2005년)	취업 - 실업	39(36.8)	20(22.2)	33(34.6)	26(24.4)
		0.3781(0.3831)		0.2068(0.2056)	
	실업 - 취업	27(33.1)	26(19.9)	41(31.1)	12(21.9)
		3.1831* (3.0961*)		8.1761*** (8.7686***)	
	실업 - 실업	80(92.9)	69(56.1)	96(87.5)	53(61.5)
		6.0061** (5.8992**)		2.5030(2.5340)	
취업 - 취업	315(298.2)	163(179.8)	264(280.7)	214(197.3)	
	7.1378*** (7.0833***)		6.8319*** (6.8967***)		
8~9차 (2005~2006년)	취업 - 실업	48(41.6)	14(20.4)	36(35.5)	26(26.5)
		3.2543* (3.4559*)		0.0188(0.0188)	
	실업 - 취업	34(41.6)	28(20.4)	40(35.5)	22(26.5)
		4.6236** (4.4199**)		1.4641(1.4887)	
	실업 - 실업	93(98.0)	53(48.0)	79(83.6)	67(62.4)
		0.9638(0.9519)		0.7282(0.7253)	
취업 - 취업	321(314.8)	148(154.2)	268(268.5)	201(200.5)	
	1.0223(1.0176)		0.0049(0.0049)		

(표 계속)

〈표 4-11〉 경제활동 상태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계속)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비탈출	빈곤탈출
9-10차 (2006~2007년)	취업 -	54(47.7)	13(19.3)	29(33.6)	38(33.4)
	실업	3.1868*(3.4210*)		1.4111(1.4147)	
	실업 -	34(45.6)	30(18.4)	47(32.1)	17(31.9)
	취업	11.1303*** (10.2632***)		15.1306*** (15.6970***)	
	실업 -	103(102.5)	41(41.5)	76(72.3)	68(71.7)
	실업	0.0107(0.0107)		0.4743(0.4745)	
10-11차 (2007~2008년)	취업 -	335(330.3)	129(133.7)	219(232.9)	245(231.1)
	취업	0.6336(0.6307)		4.5030** (4.5094**)	
	취업 -	51(52.8)	20(18.2)	32(33.9)	39(37.1)
	실업	0.2777(0.2725)		0.2290(0.2294)	
	실업 -	42(45.4)	19(15.6)	39(29.1)	22(31.9)
	취업	1.0847(1.0431)		6.9653*** (7.0176***)	
11-12차 (2008~2009년)	실업 -	97(111.6)	53(38.4)	77(71.7)	73(78.3)
	실업	9.4151*** (8.9485***)		0.9592(0.9584)	
	취업 -	360(340.1)	97(116.9)	218(218.3)	252(238.7)
	취업	11.9041*** (11.7107***)		4.0632** (4.0638**)	
	취업 -	56(53.7)	14(16.3)	29(29.6)	41(40.4)
	실업	0.4643(0.4791)		0.0272(0.0272)	
12-13차 (2009~2010년)	실업 -	35(39.9)	17(12.1)	27(22.0)	25(30.0)
	취업	2.7781* (2.5822)		2.0976(2.1)	
	실업 -	112(129.7)	57(39.3)	86(71.6)	83(97.4)
	실업	13.4068*** (12.6502***)		6.5343*** (6.4793***)	
	취업 -	364(343.7)	84(104.3)	171(189.7)	277(258.3)
	취업	13.0432*** (12.8340***)		8.1608*** (8.1414***)	
12-13차 (2009~2010년)	취업 -	42(41.3)	17(17.7)	25(30.0)	34(29.0)
	실업	0.0459(0.0463)		1.8565(1.8614)	
	실업 -	52(54.6)	26(23.4)	39(39.7)	39(38.3)
	취업	0.4499(0.4422)		0.0270(0.0270)	
	실업 -	89(112.6)	72(48.4)	102(81.9)	59(79.1)
	실업	21.1074*** (20.1029***)		12.8168*** (12.9542***)	
12-13차 (2009~2010년)	취업 -	334(308.5)	107(132.5)	210(224.4)	231(216.6)
	취업	17.3700*** (17.1938***)		4.6519** (4.6593**)	

(표 계속)

<표 4-11> 경제활동 상태 변화와 빈곤 지위 변화(계속)

단위: 관측빈도 수(기대빈도수)

		비빈곤	빈곤	빈곤비탈출	빈곤탈출
13~14차 (2010~2011년)	취업-	32(28.6)	10.4	15(18.4)	24(20.6)
	실업	1.6419(1.7770)		1.2305(1.2444)	
	실업-	37(41.0)	19(15.0)	24(26.4)	32(29.6)
	취업	1.5729(1.5032)		0.4359(0.4377)	
	실업-	103(120.1)	61(43.9)	92(77.2)	72(86.8)
	실업	11.6277***(11.0945***)		6.8628***(6.8581***)	
	취업-	369(351.4)	111(128.6)	217(226.0)	263(254.0)
	취업	9.3943***(9.2151***)		1.9476(1.9464)	
14~15차 (2011~2012년)	취업-	33(34.9)	15(13.1)	23(22.3)	25(25.7)
	실업	0.3963(0.3862)		0.0386(0.0385)	
	실업-	28(32.7)	17(12.3)	28(20.9)	17(24.1)
	취업	2.6312(204740)		4.7307**(4.7402**)	
	실업-	94(114.8)	64(43.2)	97(73.5)	61(84.5)
	실업	17.5549***(16.6091***)		17.7952***(17.8293***)	
	취업-	382(354.6)	106(133.4)	196(227.2)	292(260.8)
	취업	22.7894***(22.1701***)		23.5455***(23.5981***)	
15~16차 (2012~2013년)	취업-	39(38.0)	12(13.0)	23(22.9)	28(28.1)
	실업	0.1054(0.1071)		0.0007(0.0007)	
	실업-	28(31.3)	14(10.4)	24(18.9)	18(23.1)
	취업	1.4628(1.3838)		2.6864(2.6698)	
	실업-	98(122.3)	66(41.7)	95(73.7)	69(90.3)
	실업	24.3537***(22.7821***)		14.3995***(14.3479***)	
	취업-	386(359.4)	96(122.6)	190(216.5)	292(265.5)
	취업	22.2870***(21.6656***)		16.9849***(16.9662***)	
16~17차 (2013~2014년)	취업-	28(26.0)	7(9.0)	15(15.6)	20(19.4)
	실업	0.6551(0.6904)		0.0480(0.0482)	
	실업-	23(23.7)	9(8.3)	15(14.3)	17(17.7)
	취업	0.0907(0.0891)		0.0667(0.0665)	
	실업-	103(135.7)	80(47.3)	110(81.7)	73(101.3)
	실업	40.5275***(37.8981***)		23.5057***(23.4515***)	
	취업-	394(362.6)	95(126.4)	190(218.4)	299(270.6)
	취업	31.0694***(30.0606***)		19.6762***(19.6492***)	

주: Pearson chi 2(likelihood-ratio chi2):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제3절 근로빈곤층 노동시장 특성

3.1. 경제활동 상태 특성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지난 1주 일간 구직여부 -예; * 일할 수 있었다. 로 응답한 자), 비경활로 분류하여 <표 4-12>를 통해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평균 66.69%이고, 실업자의 비중은 평균 3%, 비경활은 24%로서 임금근로자와 비경활 간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표 4-12>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명, %)

	임금근로자	비임금	실업자	비경활
6차(2003년)	402(60.06)	76(11.36)	25(3.75)	166(24.83)
7차(2004년)	421(62.54)	70(10.43)	32(4.80)	149(22.23)
8차(2005년)	422(62.13)	66(9.73)	33(4.87)	158(23.28)
9차(2006년)	445(65.06)	46(6.77)	29(4.27)	164(23.90)
10차(2007년)	456(66.37)	39(5.70)	25(3.61)	167(24.32)
11차(2008년)	480(67.4)	30(4.17)	15(2.10)	187(26.32)
12차(2009년)	485(66.66)	25(3.49)	30(4.17)	186(25.68)
13차(2010년)	514(67.94)	26(3.41)	15(1.96)	202(26.69)
14차(2011년)	569(71.85)	41(5.21)	13(1.63)	169(21.31)
15차(2012년)	562(70.97)	37(4.72)	27(3.41)	165(20.89)
16차(2013년)	568(69.47)	43(5.28)	13(1.54)	194(23.71)
17차(2014년)	584(67.19)	55(6.39)	9(1.05)	220(25.37)
소계	66.69	6.28	3.00	24.03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2)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으로 근로빈곤층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이 6-17차 중 4회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비경활 대상자도 5회 이상인 대상자, 비임금 근로자가 6년 이상인 대상자도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비임금자와 비경활 비중이 다소 적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직업력의 형태로 살펴보기 위해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으로 상위 10개의 패턴을 살펴보면 14(임금근로자-비경활) 패턴이 34.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임금근로자) 패턴이 18.94%, 134(임금근로자-실업자-비경활) 패턴이 13.4%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근로빈곤층은 임금근로자에서 실업자로 이동보다 비경활로 이동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3> 경제활동 상태 변화 배열분석

배열패턴	비율(%)
4	0.54
34	0.68
24	2.84
234	0.54
1	18.94
14	34.24
13	5.55
134	13.40
12	5.68
124	10.83
123	1.76
1234	5.01
합계	100.00

주: 1; 임금 2: 비임금 3: 실업자; 4: 비경활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2. 직업별 특성

선행연구를 보면 단순 노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순으로 근로빈곤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구인회·백학영, 2010; 김교성·최영 2010). 송호근(2002)은 서비스직, 생산직 59%,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은 22.9%, 자영업자 13.4%로 근로빈곤층이 종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홍경준(2005)은 판매 서비스직, 농어업, 기능직, 단순 노무직의 순으로 근로빈곤의 위험이 있고, 박경숙 외(2005)와 장원봉·정수남(2005)은 직종으로 보면 단순 노무직과 단순 서비스, 금재

호(2006)는 단순 노무직을 기준으로 직업이 관리자이거나,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직종일 경우에 빈곤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서비스 종사자는 9.6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9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23.6%, 단순노무 종사자 21.93%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표 4-14> 직종별 현황

단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 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 사자	농림어 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6차 (2003년)	0.7	8.4	8.4	12.9	9.6	0.5	23.8	16.3	19.3
7차 (2004년)	0.3	7.8	7.6	14.5	9.3	0.5	22.4	18.1	19.5
8차 (2005년)	0.0	7.5	7.7	14.7	8.6	0.3	22.5	16.9	21.7
9차 (2006년)	0.3	7.1	8.7	13.2	9.0	0.2	23.0	18.9	19.6
10차 (2007년)	0.3	9.2	6.8	13.7	10.1	0.5	22.9	17.8	18.7
11차 (2008년)	0.0	9.6	5.8	14.4	8.4	0.8	22.4	19.3	19.2
12차 (2009년)	0.0	8.9	4.7	13.0	10.2	0.6	7.9	30.9	23.6
13차 (2010년)	0.0	8.5	5.5	13.5	11.2	0.4	8.5	30.3	22.1
14차 (2011년)	0.0	8.7	5.4	13.8	10.2	0.6	8.1	27.6	25.6
15차 (2012년)	0.0	9.0	4.9	14.2	10.6	0.3	8.5	28.9	23.5
16차 (2013년)	0.1	10.0	5.9	14.5	9.3	0.6	9.1	26.5	23.9
17차 (2014년)	0.0	10.4	5.1	15.6	9.3	0.3	7.9	27.3	24.1
소계	0.1	8.8	6.3	14.0	9.7	0.5	14.9	23.6	21.9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3. 업종별 특징

선행연구에서 농업·임업, 서비스업, 건설업일 경우 근로빈곤 위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김재호, 2006; 석재은, 2004; 김교성·최영, 2006; 김환준, 2011; 김태환, 2012).

노대명(2005)은 근로빈곤층 가구주의 24.6%가 제조업 부문에, 22.7%가 건설업 부문에, 31.8%가 단순 서비스업 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빈곤층 가구주의 64.7%가 상대적으로 저숙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전문기술이나 직업경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노대명 외(2006)는 근로빈곤층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근로빈곤층의 종사 산업별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개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7.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건설업이 11.52%, 숙박·음식점업이 7.97%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서비스업은 6차년도에는 1.84%이었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민간서비스업에는 청소 등의 용역 근로자들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 분야 산업·직업별 고용현황 조사 및 분석’을 보면 ‘건설업 고용계수’는 2006년 10.7명에서 2014년 5.9명으로 44.9% 감소했고,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2006년 15.2명에서 2014년 10.2명으로 32.8%가 줄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최근 건설업에서 굴착기나 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활용도가 크게 늘면서 근로자 투입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성은 크게 향상됐다. 또 경기침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국토연구원 작성, 2016). 본 연구에서도 가장 많은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인데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연관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표 4-15〉 주요 업종별 특징

	단위(%)				
	제조업	건설업	판매업	숙박음식점업	민간서비스업
6차 (2003년)	18.66	11.73	8.24	8.87	1.84
7차 (2004년)	17.89	13.12	7.99	11.02	1.47
8차 (2005년)	17.25	12.38	7.92	10.24	1.70
9차 (2006년)	19.22	11.68	8.61	8.06	1.99
10차 (2007년)	18.50	12.67	9.01	8.10	2.58
11차 (2008년)	18.71	11.92	7.41	7.97	2.55
12차 (2009년)	16.22	12.02	8.45	8.19	3.02
13차 (2010년)	17.54	11.20	7.03	7.62	2.99
14차 (2011년)	18.20	11.00	6.82	7.48	2.99
15차 (2012년)	18.48	9.77	8.02	6.54	3.49
16차 (2013년)	17.70	10.62	7.27	6.37	3.80
17차 (2014년)	16.04	10.89	7.79	6.37	3.99
소계	17.83	11.52	7.85	7.97	2.76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4. 평균 구직기간

평균 구직기간을 보면 평균 6.9주로서 1년 중 평균 42일 정도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의 집단 1의 평균 구직기간이 10.3%로 가장 길다. 특히 18~34세의 연령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평균 구직기간이 많은 것은 잦은 직업이동과 짧은 근속 기간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4-16〉 평균 구직기간

(단위:주)

	전체	18~34세	35~44세	45~54세	55~70세
6차 (2003년)	9.2	11	8.8	7.2	10.1
7차 (2004년)	7.3	8	7.9	6.6	6.6
8차 (2005년)	8.1	7	10	7.2	3
9차 (2006년)	6.7	7.5	4.7	9.1	7
10차 (2007년)	8.0	13.4	5.9	5.7	16
11차 (2008년)	6.6	10.7	3.5	6.7	6.3
12차 (2009년)	4.0	5.3	3	5.8	3
13차 (2010년)	6.4	12.7	2.4	5.7	8.5
14차 (2011년)	9.7	50	13.7	3.4	4
15차 (2012년)	5	-	4.5	6.2	4.6
16차 (2013년)	3.3	1	4.3	2.2	3.7
17차 (2014년)	3.7	-	4.5	5	2.6
소계	6.9	10.3	6.8	6.3	6.3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5. 임금

근로빈곤층의 임금을 〈표 4-17〉을 통해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7차년도에는 150만 원이고, 중위소득은 120만 원이다.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차년도에 청년층은 116만 원이고, 노령층은 135만 원이다.

17차년도인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

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18.1만 원으로 본 분석의 임금 근로빈곤층의 월평균 임금은 150만 원으로 약 68만 원 적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제활동 상태 등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근로빈곤층은 임금근로자에서 비경활의 경로가 많고, 구직기간이 평균 1달 이상인 것에서 보듯이 소득의 단절성 발생으로 인해 근로빈곤의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4-17> 임금 평균

(단위:만원)

	전체		18~34세		35~44세		45~54세		55~70세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6차 (2003년)	107.5	100	93.4	80	109.1	100	109.1	100	109.1	100
7차 (2004년)	111.5	100	100.9	80	115.1	100	110.6	100	112.0	100
8차 (2005년)	111.0	100	106.0	100	112.2	100	115.2	100	101.3	100
9차 (2006년)	117.5	100	124.3	120	109.8	100	124.0	110	112.6	100
10차 (2007년)	120.8	110	123.8	130	123.7	110	122.1	110	114.0	100
11차 (2008년)	126.2	120	130.8	120	134.4	120	131.5	120	110.2	100
12차 (2009년)	126.9	120	151.6	150	136.1	115	128.2	120	120.9	100
13차 (2010년)	129.6	120	162.6	150	130.7	120	131.7	120	126.5	105
14차 (2011년)	139.9	130	176.0	190	152.7	140	142.7	130	135.9	120
15차 (2012년)	142.5	130	161.4	166	154.5	150	142.3	135	136.9	130
16차 (2013년)	149.0	150	164.4	150	169.7	170	153.2	150	136.9	140
17차 (2014년)	150.5	150	176.6	1160	167.3	150	160.6	150	134.9	135
소계	129.3	120	131.4	130	131.0	120	132.2	120	123.6	12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6. 근로시간 및 임금

이병희(2010)는 일하는 데도 빈곤한 주된 원인은 적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낮은 시간당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또한, 저소득 취업자의 5개년에 걸친 동태적인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저소득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기간은 짧지만 낮은 시간당 소득, 고용의 단절과 불규칙성이 큰 일자리에 고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별 임금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표 4-18>을 통해 살펴보면 15시간 이하는 100만 원 이하가 93.22%이다. 41시간 이상 주당 근로시간 근로에도 100만 원의 비중이 35.57%로 장시간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18> 주당 근로시간별 임금현황

임금	근로시간			
	15시간 이하	16~35시간	36~40시간	41시간 이상
100만 원 이하	93.22	73.12	39.53	35.57
101~150만 원	3.37	16.77	32.1	30.74
151~200만 원	3.41	8.84	19.93	20.93
201~250만 원	0.0	1.16	7.16	6.63
251- 만원	0.0	0.10	1.24	2.91
소계	100	100	100	100

단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연도별로 근로시간별 임금현황을 <표 4-19>를 통해 살펴보면 주당 41시간 이상 근로자 중에 100만원 이하 비중이 12차년도에 58%였으나, 점차 감소 추세로 17차년도에는 12.1%이다. 근로빈곤층의 주요 빈곤 요인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 참여와 저임금에 있다고 분석하였다(최옥금, 2008; 이병희, 2010). 본 연구에서도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저임금의 비중도 높고, 또한 서비스업의 시간제 고용 등의 불완전한 고용으로 적은 노동시간과 저임금, 많은 노동시간과 저임금의 확률이 높은 것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4-19〉 연도별 근로시간별 임금현황

단위(%)

시간	임금 (만원)	6차 (03년)	7차 (04년)	8차 (05년)	9차 (06년)	10차 (07년)	11차 (08년)	12차 (09년)	13차 (10년)	14차 (11년)	15차 (12년)	16차 (13년)	17차 (14년)
15 이하	100 이하	79.0	100	79.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7.2	90.8
	101-150	5.9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9	9.2
	151-200	15.0	0.0	2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1-2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6- 35	100 이하	97.5	84.3	87.0	77.9	78.7	81.6	85.0	75.9	65.6	56.5	58.3	59.4
	101-150	0.8	10.0	11.7	15.8	15.9	9.9	7.0	16.8	18.1	28.3	33.3	16.2
	151-200	1.7	4.1	1.2	6.1	2.6	8.3	7.8	6.0	0.6	15.1	7.2	22.2
	201-250	0.0	0.0	0.0	0.0	2.6	0.0	0.0	1.1	5.5	0.0	1.0	2.1
	251-	0.0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6- 40	100 이하	59.7	62.7	43.0	44.7	46.7	44.5	58.5	51.6	43.3	35.6	23.9	18.3
	101-150	29.9	16.3	26.3	30.7	24.7	34.8	21.3	28.3	31.1	35.0	36.1	43.1
	151-200	1.02	17.8	26.9	19.2	24.0	15.4	11.0	12.2	16.2	18.0	29.3	27.1
	201-250	0.0	3.01	1.4	4.4	4.4	5.1	6.6	6.9	8.6	9.2	9.8	8.8
	251-	0.0	0.0	2.2	0.8	0.0	0.0	2.4	0.7	0.6	1.9	0.6	2.5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1 이상	100 이하	52.0	48.2	54.3	46.7	42.5	39.7	33.2	32.9	26.0	19.3	14.4	12.5
	101-150	31.8	30.0	26.1	28.7	34.5	34.4	35.5	37.3	37.1	38.9	35.1	37.8
	151-200	13.9	17.0	16.0	19.2	16.3	17.3	22.0	22.6	26.0	26.7	31.2	23.9
	201-250	1.8	3.2	3.0	3.2	4.8	7.1	6.3	5.2	6.9	10.4	11.3	17.2
	251-	0.2	1.4	0.4	2.0	1.5	1.2	2.7	1.8	3.8	4.5	7.7	8.3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7. 사회보험 가입률

이병희(2011)와 전병유·이상혁(2011)의 연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식 일자리가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강금봉, 2016에서 재인용). 근로빈곤층의 주요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³³⁾ 비가입자는 전체 평균 50.89%이고, 국민연금 비가입자는 평균 55.17%, 산재보험은 51.15%이다.

<표 4-20> 주요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단위(%)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비가입	가입	비가입	가입	비가입	가입
6차(2003년)	63.59	36.41	66.39	33.61	63.84	36.16
7차(2004년)	63.46	36.54	68.06	31.94	63.35	36.65
8차(2005년)	61.31	38.69	65.72	34.28	61.02	38.98
9차(2006년)	52.2	47.80	57.08	42.92	51.68	48.32
10차(2007년)	55.0	45.0	56.35	43.65	54.29	45.71
11차(2008년)	54.93	45.07	57.19	42.81	55.33	44.67
12차(2009년)	47.8	52.2	52.02	47.98	48.45	51.55
13차(2010년)	48.03	51.97	50.45	49.55	47.74	52.26
14차(2011년)	47.0	53.0	50.76	49.24	49.29	50.71
15차(2012년)	44.44	55.56	48.98	51.02	46.28	53.72
16차(2013년)	42.63	57.37	48.51	51.49	42.99	57.01
17차(2014년)	40.89	59.11	49.97	50.03	39.85	60.15
소계	50.89	49.11	55.17	44.83	51.15	48.85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3) 고용보험가입 33.34% 비가입 32.47%, 결측치가 34.19%으로 실제 가입자 비율은 낮을 수도 있다. 다른 보험가입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연도별 및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18~34세 연령층의 고용보험 가입은 다른 연령에 비하여 17년도에는 1.4%로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35~44세 연령대가 17년도에 15.8%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연도별 및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18~34세	35~44세	45~54세	55~70세	소계
6차(2003년)	13.5	32.3	38.4	15.8	100
7차(2004년)	8.1	31.3	46.5	17.1	100
8차(2005년)	8.4	28.1	44.7	18.9	100
9차(2006년)	8.7	29.2	39.8	22.3	100
10차(2007년)	8.9	28.0	41.5	21.5	100
11차(2008년)	6.9	26.0	44.3	22.7	100
12차(2009년)	6.1	24.3	39.3	30.3	100
13차(2010년)	5.8	21.1	44.8	28.2	100
14차(2011년)	4.3	22.4	35.6	37.7	100
15차(2012년)	3.4	19.6	43.0	33.9	100
16차(2013년)	1.8	17.6	42.9	37.6	100
17차(2014년)	1.4	15.8	42.1	40.7	1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8.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수령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유급 휴일·휴가 수혜율 등의 근로조건 환경 및 보호 등과 상관이 높다. 근로계약서 미수령 여부를 살펴보면 11차년도에 근로계약서 미수령이 80.81%로 증가하였다가 차츰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7차년도에 57.55%로 근로계약서를 미수령하고 있다.

<표 4-22> 연도별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

	단위(%)	
	근로계약서 수령	근로계약서 미수령
6차(2003년)	8.63	91.37
7차(2004년)	9.24	90.76
8차(2005년)	14.16	85.84
9차(2006년)	13.74	86.26
10차(2007년)	21.65	78.35
11차(2008년)	19.29	80.71
12차(2009년)	23.89	76.11
13차(2010년)	25.83	74.17
14차(2011년)	28.89	71.11
15차(2012년)	35.72	64.28
16차(2013년)	37.81	62.19
17차(2014년)	42.45	57.55
소계	24.75	75.25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9. 직업훈련 참여율

김철희·나영선·류기락(2013)은 근로 비 빈곤층은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경우 약 12%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지만, 근로빈곤층은 상대빈곤 및 최저생계비 100%를 기준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33~36%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서 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3.39% 만이 참여하여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한 상태이다. 근로빈곤층의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해서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4-23> 연도별 직업훈련 참여 현황

	미참여	참여
6차(2003년)	97.49	2.51
7차(2004년)	96.13	3.87
8차(2005년)	96.06	3.94
9차(2006년)	95.52	4.48
10차(2007년)	96.05	3.95
11차(2008년)	96.48	3.52
12차(2009년)	97.07	2.93
13차(2010년)	96.46	3.54
14차(2011년)	97.43	2.57
15차(2012년)	96.80	3.20
16차(2013년)	95.85	4.15
17차(2014년)	97.65	2.35
소계	96.61	3.39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10. 직장규모

근로빈곤층의 직장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28명으로 30인 미만이고, 중위값은 5명으로 대부분이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보호 등의 근로조건 보호에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4-24> 연도별 및 연령별 직장규모

단위(명)

	전체		18~34세		35~44세		45~54세		55~70세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6차 (2003년)	33.2	6	18.1	5	28.7	7	45.8	5	25.3	5
7차 (2004년)	21.8	6	7.8	4	28.7	5	19.1	7	21.9	7
8차 (2005년)	40.5	6	17.8	6	27.2	6	57.2	6	28.5	10
9차 (2006년)	29.5	8	17.3	7	26.4	7	29.6	8	39.4	10
10차 (2007년)	45.3	7	54.9	10	72.9	6	35.4	7	28.1	15
11차 (2008년)	22.5	6	5.5	4	26.1	6	25.8	5	15.3	7
12차 (2009년)	36.8	5	10.6	7	25.4	6	55.5	5	11.7	5
13차 (2010년)	15.3	5	14.0	10	14.4	5	18.6	4	9.5	3
14차 (2011년)	18.3	4	7.4	10	33.8	5	25.9	3	13.9	4
15차 (2012년)	23.2	5	12	12	8.3	7	27.6	4	11.3	5
16차 (2013년)	19.4	5	8	6	15.4	5	27.3	5	10.9	6
17차 (2014년)	15.2	5	23	5	10.1	6	20.1	5	10.0	4
소계	28.0	5	19.5	7	30.9	6	32	5	17.7	6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11. 일 교육 적합도

노대명 외(2006)는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직업기술 보유실태 분석에서 전체적으로 특별한 직업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이 대다수인 71.4%에 이르며, 임금근로자(66.7%)나 미취업자(74.0%)보다 비임금 근로자(76.4%)에게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기술이 있는 경우 자격증 없는 기능자인 경우가 1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능사와 기타 공인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근로빈곤층 발생 원인으로 산업구조 변화 등에 변화하지 못한 저숙련으로 지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일의 교육과 기술 연결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의 설문지에 ‘현재 하는 일은 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기술 수준 적합도가 어떨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은 21.43%, 수준이 맞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76%, 수준이 높은 편으로 답한 비율은 0.68%로 나타났다.

<표 4-25> 일 교육 적합도

	수준이 매우 낮다.	수준이 낮은 편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은 편이다.
6차(2003년)	1.89	24.06	73.41	0.64
7차(2004년)	1.07	23.28	75.15	0.50
8차(2005년)	1.38	20.61	77.06	0.67
9차(2006년)	1.50	20.36	77.10	1.04
10차(2007년)	3.53	21.65	72.51	2.10
11차(2008년)	1.39	21.74	76.38	0.49
12차(2009년)	0.99	18.71	79.53	0.78
13차(2010년)	0.99	17.88	80.32	0.81
14차(2011년)	0.64	24.43	74.46	0.47
15차(2012년)	1.06	20.72	78.14	0.08
16차(2013년)	2.20	18.47	78.80	0.53
17차(2014년)	1.03	21.87	76.77	0.33
소계	1.45	21.13	76.70	0.68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현재 하는 일은 나의 기술(기능) 수준과 비교하여 기술 수준 적합도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36%, 수준이 맞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77.51%,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04%이었다.

<표 4-26> 일 기술(기능) 적합도

	단위(%)				
	수준이 매우 낮다	수준이 낮은 편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은 편이다.	수준이 매우 높다.
6차(2003년)	2.17	21.78	75.58	0.47	0.00
7차(2004년)	1.18	23.13	75.43	0.26	0.00
8차(2005년)	1.63	20.39	77.57	0.13	0.28
9차(2006년)	1.93	18.30	78.87	0.90	0.00
10차(2007년)	4.57	20.51	73.84	0.87	0.21
11차(2008년)	1.39	21.07	77.38	0.15	0.00
12차(2009년)	0.99	18.62	79.68	0.71	0.00
13차(2010년)	1.23	16.72	81.09	0.95	0.00
14차(2011년)	0.64	23.81	74.87	0.68	0.00
15차(2012년)	1.06	19.82	78.32	0.80	0.00
16차(2013년)	2.00	19.83	78.06	0.12	0.00
17차(2014년)	0.77	20.24	78.84	0.16	0.00
소계	1.58	20.36	77.51	0.51	0.04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제4절 빈곤 탈출 결정 요인 분석

4.1. 빈곤 지위 결정 연구방법

빈곤의 동태적 지위 변화에 관한 초기 연구에는 빈곤기간(Poverty spell)을 고려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생존분석에 기반을 둔 위험률(hazard rate) 또는 빈곤 지속기간에 기반을 둔(spell-based method) 분석으로 빈곤기간에 따라서 빈곤 탈출 확률을 분석하는 것이다.

Bane and Ellwood(1986)는 생존분석으로 빈곤주기에 따른 빈곤이행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보통 생명표 분석이나 Kaplan-Meier를 통하여 빈곤탈출확률을 구하고, 빈곤 탈출 및 빈곤 재진입에 대한 이산시간 위험모델(discrete-time hazard model)을 통해서 빈곤 지속기간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한다.

이산시간 분석은 특정한 기간(time period)에서 개인에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빈곤 이행률(transition)을 종속변수로 한다. 자료구성 방법은 person data에서 person-tear data로 바꾼 후, 빈곤이행 시점 기준으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결합하여 로짓분석³⁴⁾(김교성, 1997; 홍경준, 2004; 최옥금, 2005 등)을 시행한다.

이산시간 분석은 분석모형에 빈곤기간 더미를 포함하여 빈곤탈출 확률을 계산할 때 빈곤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이 빈곤탈출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빈곤기간의 차이가 주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경과에 따른 시간 변동변수(time-varying variables)를 이산시간 분석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강금봉, 2016).³⁵⁾

34) 사건의 발생에 대한 년 단위의 관측들은 실제로 어느 시점에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할 때 로지스틱 회귀분석보다는 complementary log-log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llison, 1982; Jenkins and Schluter, 2003; Jenkins, 2004; Andriopoulou and Tsakloglou, 2011)

35) 한 요인의 효과는 사건의 순위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순위별로 따로 분석하면 공통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효과가 전 순위를 통하여 같다 하여도 순위에 따라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는 표본오차 등으로 인하여 보통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인의 효과평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확장된 생존분석(extended cox model)의 일종인 시간 가변 공변량 분석이다. 이 방법의 결정적인 결점은 분산의 추정치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반복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는데, 여성의 출산과 같이 몇 번씩 되풀이할 수 있는 사건을 반복사건(recurrent event, repeating) 또는 복수사건(multiple event)이라고 부른다. 근로빈곤층의 빈곤 지위는 일회적인 문제라기보다 빈곤의 탈출과 빈곤 진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복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재발사건분석(Recurrent event analysis)은³⁶⁾ 관측 대상이 동일 사건을 여러 번 경험할 때 발생하는 자료를 일컫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한 분석은 생존분석기법을 기반으로 관측 대상이 지니고 있는 사건 재발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신슬비, 2013). Cellens and Croux(2009)은 이러한 반복적 특성을 고려하여 multilevel recurrent discrete-time hazard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빈곤지위 연구 방법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첫째는 빈곤탈출의 영향성에서 통제변수를 어떤 변수로 설정한 것인가이다. Lohmann(2005)은 근로 빈곤탈출 가능성 분석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고용형태 변화, 인구학적 변화, 빈곤기간, 성, 교육, 연령을 통제하고 개인의 고용형태 빈곤에 따른 빈곤탈출만을 고려하였다.

둘째는 좌측절단자료나 좌측절단자료를 포함할 것인지는 빈곤 연구에서 중요하다. Stevens(1999)는 PISD 자료의 1967년에서 1988년 분석에서 좌측절단자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빈곤탈출과 진입, 지속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분석하였다. Stevens, 1999과 Jenkins et al. 2001은 우측절단자료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Andriopoulou and Tsakloglou(2011)은 비빈곤 상태에서 시작된 대상만을 선택하여 빈곤탈출과 빈곤 재진입을 분석하였다.³⁷⁾

사건의 횟수가 많은 사람의 사건 간 간격은 횟수가 적은 사람의 간격에 비하여 짧을 것이다. 따라서 간격이 짧은 사람의 특성이 긴 사람의 특성보다 표본에 많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동일한 개체가 여러 번 포함된 표본은 관찰변수에 상관(correlated)이 있어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비하여 편의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경우 표준오차는 하향 편의가 있고 검정 통계값에는 상향 편의가 있다(박재빈, 2007).

- 36) 재발사건분석을 risk set과 사용되는 time scale에 따라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첫째는 Andersen and Gill(AG), 둘째는 Wei, Lin and Weissfeld(WLW), 셋째는 Prentice, Willams and Peterson, total time(PWP-CP), 넷째는 gap time(PWP-GT)이다. Wei, Lin and Weissfeld(WLW)은 marginal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그 순차를 고려하지 않고 서로 분리된 사건으로 간주한다. Prentice, Willams and Peterson, total time(PWP-CP)은 조건부(condition)모델이라고 하며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발생 순서를 고려한 자료에 적합하고, gap time(PWP-GT)은 PWP-CP모델과 함께 다음 사건이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천천히 발생되는지를 조사하기를 원할 때 사용한다.

셋째는 개인의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이다. 빈곤 동태성에 보이지 않는 특성(빈곤탈출 의지, 지혜, 사회적 관계망, 삶의 태도 등) 등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거 빈곤연구(Canto, 1996; Steven, 1999; Cappellari and Jenkins, 2004; Biewen, 2003; 2006; Callens et al., 2005) 등은 관찰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관찰되는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중 이산시간 분석 모형(multiple transition discrete hazard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빈곤탈출과 재진입의 확률(hazard rate)을 각 분리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빈곤주기(multiple spells)와 지속기간, 개인과 가구 특성, 비관찰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였다(Stevens, 1999; Biewen, 2006; Fertig and Tamm, 2010; Devicienti, 2011; Jenkins, 2011).

넷째는 조사대상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의 개인별 초기 상태(initial condition)³⁷⁾에 대한 고려 없이 빈곤 지위의 변화를 분석할 경우 과대 추측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분석 1기에 빈곤인 개인은 이전에 빈곤(상태 의존성)이기 때문이거나, 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관찰되거나 관찰되지 않은 특성들 때문에 빈곤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값은 내생적(endogenous)이다. Cappellari and Jenkins(2008) 시간에 따른 생존분석방법(survival analysis approach)보다 동태 프로비트 모델(dynamic probit model)에 집중하는 주요 이유로 패널 분석 자료에 들어오는 상태의 문제라고 제기하였다.

다섯째는 상태 의존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이다. 상태의존성이란 전기($t-1$)의 빈곤 지위 상태 t 기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빈곤 지위 변동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조사대상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의 개인별 초기상태(initial condition)에 대한 고려 없이 빈곤지위의 변화를 분석할 경우 오차항에 자기상관(autocorrelated error)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대 추측할 수 있다.

Cappellari and Jenkins(2008)는 빈곤 및 저임금, 실업, 실업급여 수급 등의 전의

37) 빈곤 이행분석(transition analysis)에서 조사 첫해에 빈곤층을 포함하게 될 것에는 비확률 표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서 빈곤 상태 의존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특히 과잉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Cappellari and Jenkins, 2004). Arulampalam et al.(2000)은 의존성을 고려할 때 초기 조건을 통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38) 초기조건의 문제란 조사에서 관찰된 기간의 처음시점의 조건이 개인이 실제사건을 경험한 확률적 과정의 처음시점의 조건이 다른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석상훈, 2008).

확률(transition probabilities) 방법으로 세 가지 제안하였다. 개인별 이질성과 상태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본 모델, 개인별 이질성과 상태의존성을 고려한 endogenous switching model, 개인별 이질성과 상태의존성을 고려하여 차기 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 model)을 고려한 동태적 확률 프로빗모형(dynamic random effect probit model)이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의 동태적 빈곤지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과 함께 최근에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과 초기 상태(initial conditions)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이다(Cappellari and Jenkins, 2004; Biewen, 2009; Ayllon, 2009; Andriopoulou and Tsakloglou, 2011b).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계량 분석방법에는 Heckman(1981) Orme(1997, 2001), wooldridge(2005)는 동태적 확률효과 모델(the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s)을 제안하였다.

<표 4-27> 국내 빈곤이행 관련 주요 연구방법

연구자	연구방법
윤정윤·박나량(2004)	로짓분석
이병희(2005)	이산시간 분석
임세희(2006)	이산시간 분석
김기승·조용수(2007)	로짓분석
지은정(2007)	Markov 이행확률, 이산시간 분석
이병희(2008)	로짓분석
김은하(2009)	생명표분석, 이산시간 분석
김재호(2009)	Kaplan-Meier, 이산시간 분석
박효진(2009)	이산시간 분석
조막래·이순아(2012)	이산시간 분석
변금선(2012)	로짓분석
정준수(2013)	Kaplan-Meier, 확장 콕스회귀분석
유진성·허원재(2014)	로짓, 프로빗 분석
최승아·최재성(2014)	생명표분석, 이산시간 분석
강금봉(2015)	Kaplan-Meier, 재발사건분석(AG, PWP-GP 모델)

4.2. 주요변수

종속변수의 빈곤탈출 기준은 임의적인 소득선을 경계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소득 측정상의 오차, 미미한 소득 증가, 최저임금 상승 등의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화로도 빈곤탈출이 과대 추정되기 쉽다(강금봉, 2016).

연구자가 빈곤탈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빈곤 기준을 빈곤선을 넘는 경우에 빈곤 탈출로 인정하는 연구도 있었고, 연구 기간 내에 일정 소득을 한 회만 넘어도 빈곤 탈출로 인정하였다(강금봉, 2016).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의 반복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빈곤탈출의 기준을 보면 소득의 변화를 빈곤 탈출로 정의하는 연구에는 Jenkins and Rigg(2002)는 소득이 20% 이상 변화한 경우만 빈곤 탈출로 인정하였다. 임세희(2006)도 소득을 중심으로 최소 20% 이상을 빈곤 탈출로 정의하였다. 절대적 빈곤 기준에서는 최저생계비 120% 초과 시, 상대적 빈곤 기준에서는 중위소득 20% 이상 노동패널 6차~17차년도 기간에 한 번이라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난 가구를 탈출로 간주하였다(강금봉, 2016).

소득과 함께 빈곤의 횡수나 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에는 박효진(2009)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을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유지될 때 탈출로 간주하였다(강금봉, 2016).

<표 4-28> 빈곤 탈출 기준 선행 연구 요약표

연구자	빈곤 소득 기준	탈출기준
Jenkins(2000); Jenkins and Schluter(2001)	중위소득 60%	최소 10% 이상
Lohmann(2005)	중위소득 60%	개인소득 변화가 5% 이상 변화
임세희(2006)	중위소득 60%	소득이 최소 20% 이상
지은정(2007)	소비지출, 절대빈곤	육구-소득비 이용 50% 이상의 소비 지출 변화

(표 계속)

〈표 4-28〉 빈곤 탈출 기준 선행 연구 요약표(계속)

연구자	빈곤 소득 기준	탈출기준
김위정 · 김왕배(2007)		빈곤/비빈곤만성, 단기빈곤/비빈곤, 만성빈곤/단기빈곤
이병희 · 반정호(2008)	최저생계비 150%	소득계층 상향이동(절대빈곤→차상위, 절대빈곤→차차상위, 절대빈곤→비빈곤, 차상위→차차상위, 차상위→비빈곤, 차차상위→비빈곤)
배성우 · 손지아 · 박순미(2008)		4차년도에 빈곤을 한 집단이 8차년도 시점에서 빈곤에서 벗어난 경우
유태균 · 박효진(2009)		klips 4차년도 시점에서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6차년도 시점에서 빈곤을 벗어난 경우
박효진(2009)	최저생계비 120%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을 초과하는 상태(1)가 2년 이상 유지(1+2)
김은하(2009), 김재호(2009), 유진성 · 허원재(2014)	최저생계비	비빈곤을 빈곤탈출
이병희(2010)	중위소득 50%	일시빈곤(1년), 반복빈곤(2년), 지속빈곤(3년 이상)
정준수(2013)	절대적 빈곤(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 상대적 빈곤(중위소득 50% 이하)	7차~12차년도 기간에 한 번이라도 빈곤상태에서 벗어난 가구(event): 절대적 빈곤: 최저생계비 120% 초과, 상대적 빈곤: 중위소득 20% 이상 변화한 경우
윤정윤 · 박나량(2004)	중위소득의 60%	중위소득 80%를 2년 동안 유지
강금봉(2015)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80% 이상의 소득을 연속 2년과 3년간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 및 빈곤 재진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로는 빈곤 탈출 1회, 빈곤 탈출 2회, 빈곤 탈출에서 빈곤 재진입 각 세 가지 기준에서 분석하게 된다. 빈곤 탈출의 기준은 가구 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이 각각 빈곤선인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상 상승하였

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빈곤 재진입은 빈곤 탈출(중위소득 80%)에서 다시 빈곤 선인 중위소득 60% 이하로 이동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빈곤 탈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 소득 변화에는 가구주나 배우자의 근로소득 상승, 다른 가구주의 근로소득 상승, 자산소득 상승, 연금 상승, 급여 상승, 사적 이전소득, 근로 소득세, 인구학적 변화 자녀의 가구주, 여성 가구주의 변화, 부양 노인과 자녀 수 변화이다. 노동시장의 변화 요인으로 가구에서는 취업자의 증감, 가구의 근로소득 증감, 가구 구성원의 풀타임 근로자 증가, 급여 임금, 사적 및 공적 소득 변화, 인구학적 사건 가구유형의 변화, 결혼, 한 부모, 다른 가구주 변화이다. 건강사건 가구주의 건강문제, 건강으로 인한 근로활동 제약 가구원 수 증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적자본특성으로는 성별변수와 연령대별로 빈곤 탈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8-34세, 35-44세, 45-54세, 55-70세를 집단으로 분류하여 변수화하였고, 교육수준은 교육연수 대신에 그동안 주요 근로빈곤층의 학력 분포를 이루고 있는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을 변수화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 보고식 질문을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으로 변수화하였고, 직업훈련 여부에 대해서도 참여와 비참여로 변수화하였다.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8세 미만 아동 수와 70세 이상 가구원 수를 변수 투입하였고, 가구 내의 소득증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취업자 수, 가구 내 균등화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가족 수, 가구 내의 관계 변수로는 가구주와 배우자 여부에 대해 더미화 하였다. 가구의 소득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는 작년 대비 총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자산 39)의 증가 여부를 변수화하였다.

노동시장 특성의 변수에는 그동안 근로빈곤 연구에서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과 진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취업이나 취업 그 자체만으로 빈곤탈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에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 로그 임금, 기업규모를 변수화하였다. 고용의 단절과 불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에는 근로시간 규칙

39) 자산의 항목에는 전세임대보증금,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보증금, 은행예금, 주식, 채권, 저축성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성과 주당 근로시간, 근속 기간, 실업횟수를 유추할 수 있는 구직 횟수 변수를 투입하였다. 고용형태 변화와 종사자 지위 변화에 대한 변수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이동을 변수화하였다.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의 숙련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변수로 현재하고 있는 기술 수준 적합도⁴⁰⁾ 질문을 통하여 기술 수준에 대해서 더미 변수화하였다.

지역 노동시장을 유추할 수 있는 변수로는 직장소재지의 광역시 여부를 변수를 투입하였고, 산업 및 직업의 특성에 대한 변수에는 근로빈곤층의 주요 업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판매업, 숙박·음식점업을 더미 변수화하였고, 직종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사, 단순노무자를 각 더미 변수화하였다.

<표 4-29> 빈곤탈출 결정 모형의 투입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 측정 방법
종속 변수	빈곤탈출	빈곤탈출	빈곤 탈출(빈곤:0-빈곤탈출:1) 빈곤 재진입(빈곤탈출:0-빈곤:1)
상태의존 변수		빈곤(t-1) 빈곤(t-2)	각 더미 변수(1, 0)
초기상태 변수		빈곤(t1)	더미 변수(1, 0)
연도변수		연도(2005-2013)	각 더미 변수

(표 계속)

40) 한국노동패널의 개인데이터 중 ‘현재 하는 일 기술 수준 적합도’ 질문이 있다. 대답항목에는 (1) 수준이 매우 낮다 (2) 수준이 낮은 편이다 (3) 수준이 맞는다 (4) 수준이 높은 편 (5) 수준이 매우 높다.

〈표 4-29〉 빈곤탈출 결정 모형의 투입변수(계속)

구분		변수명	변수 측정 방법
독립 변수	인적자본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대별 더미 변수	1 : 18~34세(기준변수) 1 : 35~44세 1 : 44~54세 1 : 55~70세
		교육수준 더미 변수	1: 초졸 이하 여부 1: 중졸 여부 1: 고졸 여부 1: 대졸 이상 여부
		건강상태	1: 건강하다 0:건강하지 않다
		직업훈련 여부	1: 직업훈련 받음. 0: 받지 않음
	가구 특성	8세 미만 가구원 수	1: 있음. 0:없음
		70세 이상 가구원 수	1:있음. 0: 없음
		취업자 수	연속변수
		가족 수	연속변수
		배우자 유무	1: 배우자 있음 0:없음(사별, 이혼 등 포함)
		가구 내 관계 더미	1: 가구주 여부 1: 배우자 여부
		자산 증가	1: 작년 비해 자산 증가 0 비증가
		근로소득 증가	1: 작년 비해 총 근로소득 증가 0 비증가
	노동시장 특성	주된 일자리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	1: 수령 0: 비수령
		근로시간 규칙성	1: 규칙 0: 비규칙
		고용 안정성	1: 고용 안정성 0: 불안정성
		로그 임금	연속변수

(표 계속)

<표 4-29> 빈곤탈출 결정 모형의 투입변수(계속)

구분	변수명	변수 측정 방법
	주당 근로시간 더미	1 : 25~35시간 여부 1 : 36~45시간 여부 1 : 46~56시간 여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1: 이동 0: 비이동
	임시직에서 상용직	1: 이동 0: 비이동
	구직 횟수	연속변수
	직장소제지	1: 수도권 및 광역시 0: 비수도권 및 광역시
	일 기술 수준 적합도	1: 수준이 낮음 0: 수준이 맞거나 높음
	고용보험 가입 여부	1: 고용보험 가입 0:비가입
	종업원 수 더미	1 : 1~4명 1 : 5~9명 1 : 10~69명 1: 1,000명 이상
	주 평균근로시간	연속변수
	근속 기간	연속변수
	근속 기간 제공근	연속변수
	산업 더미 변수	1: 제조업 1. 건설업 1. 판매업 1. 숙박·음식점업
	직종 더미 변수	1. 서비스 종사자 1. 판매종사자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사 1. 단순노무자

4.3.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일반적인 빈곤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식(1)과 같다.

$$y_{it}^* = \gamma' y_{it-1} + x_{it}' \beta + \alpha_i + u_{it} \quad \text{식(1)}$$

식(1)에서 $i=1, \dots, N$; $t=2, \dots, T$ 이다. y_{it}^* 는 잠재적 종속변수이다. x_{it} 는 외생적(exogenous) 설명변수, α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즉 비관찰적인 개인 특수적 확률효과(unobserved individual-specific random effects)이고, u_{it}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오차항으로 α_i 는 $N(0, \sigma_\alpha^2)$, u_{it} 는 $N(0, \sigma_u^2)$ 로 가정할 수 있다.

y_{it} 는 관찰되는 이항 결과변수로서 1은 빈곤탈출, 0은 빈곤 비탈출이다.

$$y_{it} = \begin{cases} 1 & \text{if } y_{it}^* \geq 0 \\ 0 & \text{else} \end{cases}$$

일치 추정량을 얻게 위해서는 u_{it} 가 시간들 사이에 독립적이어야 하나 a_i 와 시간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게 된다. 동적 패널 모형을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한다면 설명변수 y_{it-1} 과 오차항 a_i 가 상관관계가 있게 되어 역시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 즉, 패널 프로빗 모형에서도 $cov(x_{it}, a_i) = 0$ 을 가정한다.

표준적인 확률효과에서는 a_i 는 x_{it} 가 상관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상관이 있게 되면 Mundlak-Chamberlain 방법(Chamberlain-Mundlak Device Style Correlated Random Effects Probit)을 사용하게 된다. a_i 가 x 변수의 시간 평균 또는 차수나 앞수와 결합하여 허용할 수도 있게 된다. 즉, $a_i = \bar{x}_i' a + \zeta_i$, $\zeta_i \sim iid$ (정규분포, 모든 개인(i)와 시간(t)에 대해서 x_{it} 와 u_{it} 는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y 는 이항변수로서 정규화(Normalization)가 필요하다. 편리한 방법의 하나는 $\sigma_u^2 = 1$ 이다. u_{it} 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개인이 t 시기, α_i 가 주어졌을 때, 개인 i 의 전환 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은 다음과 같다.

$$P[y_{it}|x_{it}, y_{it}, \alpha_i] = \Phi[(\gamma y_{it} + x'_{it}\beta + \alpha_i)(2y_{it} - 1)] \quad \text{식(2)}$$

식(2)에서 Φ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이다. 이 모델의 추정에서 y_{i1} 에 관한 가정이 필요한데, 특히, α_i 와의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al)인 y_{i0} 가 α_i 가 상관관계가 없고, y_{i0} 은 외생변수(exogenous)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표준적인 Random Effect Probit model에서는 $t = 1$ 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t = 2, \dots, T$ 결합 확률과 두 개의 독립변수를 분해하여 우도비(likelihood)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초기 상태가 α_i 가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 추정은 불일치성을 가지고, γ 는 과대 추정되어 결국 상태 의존성이 과잉 추정될 수 있다.

Wooldridge(2012, 2013)가 제안한 대안적 추정량은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성 분포가 초기값에 조건적으로 주어져 있고 외생변수이라고 가정된다. 동적 확률효과 프로빗모형(random effect dynamic probit model)은 다음과 같다.⁴¹⁾

$$P[y_{it} = 1|z_{it}, y_{i,t-1}, c_i] = \Phi[(x_{it}\beta + c_i)] \quad \text{식(3)}$$

x_{it} 은 $(z_{it}, y_{i,t-1})$ 은 함수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c_i|z_i, y_{i0} \sim Normal(\psi + z_i\xi + \xi_0 y_{i0}, \sigma_a^2)$$

$$\text{또는, } c_i|z_i, y_{i0} \sim Normal(\psi + x_{i0}, \sigma_a^2)$$

x_{i0} 은 (z_i, y_{i0}) 은 함수이다.

41) 동태적 선형 패널모형의 표준적 가정에는 u_{it} 는 u_{i0} 과 a_i 와 비상관이고, u_{i1}, \dots, u_{iT} 는 서로 간에 비상관적이라는 가정 외에 x_{it} 에 대한 외생적, 선결적 또는 내생적이 추가됨. a_i 에 대해서는 고정효과일 경우에는 별도의 가정이 없음.

$$P[y_{it} = 1 | z_{it}, y_{i,t-1}, \dots, c_i] = \Phi[(Z_{it}\delta + \rho y_{i,t-1} + \psi + Z_i\xi + \xi_0 y_{i0} + a_i)]$$

$a_i = c_i - \psi - Z_i\xi - \xi_0 y_{i0}$ 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빈곤탈출 모형 1은 빈곤의 상태 의존성 및 초기 상태,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는 합동(pooling) 프로빗 모형이다.

$$(모형 1) P(povertyexit_{it} = 1) = \Phi(\alpha_t + \delta_1 x_i + \delta_2 x_{it} + c_i)$$

모형 2는 상태 의존성 및 초기 상태,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한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Dynamic Random Effect Probit model)이다.

(모형 2)

$$\begin{aligned} &P(povertyexit_{it} = 1 \\ &| povertystate_{i,t-1}, povertystatet, year_{it}, c_i) \\ &= \Phi(\alpha_t + \delta_1 x_i + \delta_2 x_{it} + \lambda povertystate_{i,t-1} + povertystate_{i0} + c_i) \end{aligned}$$

$povertyexit_{it}$ 는 종속변수로서 빈곤탈출의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이다. 독립변수에는 $povertystate_{i,t-1}$ $povertystate_{i,t-2}$ 는 상태 의존성의 나타내는 변수로서 빈곤 상태 변수이다. 그러므로 λ 은 상태 의존성의 효과이다. $povertystate_{i0}$ 은 초기 상태(initial conditions)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c_i 은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다. x_i 는 인적특성 등 변하지 않는 변수(time-constant variables)는 성별, 학력 등의 개인적 특성 변수 벡터이고, x_{it} 는 가구 특성 및 노동시장 특성 등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time-varying variables) 벡터이다.

4.4. 분석결과

4.4.1.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1회)

빈곤 탈출의 기준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균등화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상태에서 중위소득 80% 이상을 1년 단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을 정의하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 내 아동수와 가족 수, 가구 내 관계가 가구주, 노동시간이 41시간 이상일 때, 직종 중에는 서비스 종사자는 빈곤 탈출에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가구 내에 취업자 수, 근로자의 임금, 근로계약서 수령, 근속 기간 증가할 때는 빈곤탈출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모형 2의 동적확률효과 프로빗 분석 결과에서 ρ 에 대한 Likelihood-ratio test⁴²⁾를 보면, $\chi^2(1) = 135.73$ 이고, 가처분소득 모형 2의 분석결과에서는 $\chi^2(1) = 132.45$ 로서 각각 1%의 유의수준에서 $\rho=0$ 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확률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형 1의 분석결과보다 초기 상태와 개인의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고려한 모형 2의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형 2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 특성에서는 시장소득 기준 분석에서는 가구 내에 70세 이상 가구원 수와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각각 유의수준 5%와 10%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 나타났으나,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근로소득 증가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자산 증가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분석에서 빈곤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내에 취업자 수의 증가와 근로소득의 증가가 빈곤 탈출에 확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42) Likelihood-ratio test는 $H_0 = \rho = 0$ 또는 $H_0 = \sigma_u^2 = 0$ 검정으로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한 확률효과 모형($u_i \sim N(0, \sigma_u^2)$)적절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개체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합동(pooled)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면 된다.

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빈곤의 많은 연구에서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빈곤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임금의 증가와 근로계약서 수령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분석에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근로계약서 수령은 시장소득 기준에서는 26.5%,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31.1% 증가하는 나타나 근로조건 보호의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사업장의 종사자 수 변수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5-9명의 사업장에서는 빈곤탈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빈곤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성별(기준: 남성)	0.091 (0.080)	-0.049 (0.169)	0.066 (0.080)	-0.083 (0.167)
35~44세 (기준: 18~34세)	-0.253* (0.145)	-0.260 (0.238)	-0.258* (0.145)	-0.284 (0.237)
45~54세	-0.129 (0.148)	-0.145 (0.254)	-0.135 (0.148)	-0.193 (0.252)
55~70세	0.083 (0.154)	-0.000 (0.269)	0.071 (0.154)	-0.055 (0.268)
배우자 유무	0.004 (0.078)	0.107 (0.148)	-0.002 (0.078)	0.085 (0.147)
8세 미만 아동수	-0.202** (0.100)	-0.234 (0.179)	-0.161 (0.100)	-0.140 (0.179)
70세 이상 가구원 수	-0.183** (0.092)	-0.356** (0.152)	-0.108 (0.093)	-0.231 (0.152)
가구 내 취업자 수	0.168*** (0.036)	0.113** (0.053)	0.178*** (0.036)	0.130** (0.052)
가족 수	-0.124*** (0.035)	-0.099* (0.058)	-0.119*** (0.035)	-0.089 (0.058)
총 근로소득 증가	0.687*** (0.047)	1.352*** (0.073)	0.696*** (0.047)	1.344*** (0.073)
자산 증가	0.156*** (0.048)	0.147** (0.063)	0.158*** (0.048)	0.149** (0.062)

(표 계속)

〈표 4-30〉 빈곤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가구주 관계 (1: 가구주)	-0.217* (0.119)	-0.335 (0.219)	-0.210* (0.120)	-0.303 (0.218)
가구주 관계 (1: 배우자)	0.142** (0.066)	0.032 (0.130)	0.136** (0.066)	0.043 (0.129)
건강상태 (1: 건강)	0.059 (0.086)	0.077 (0.121)	0.065 (0.086)	0.078 (0.121)
학력별 더미 (1: 초졸 이하)	-0.047 (0.119)	-0.111 (0.224)	-0.073 (0.119)	-0.155 (0.223)
학력별 더미 (1: 중졸)	0.011 (0.115)	-0.100 (0.215)	0.007 (0.116)	-0.123 (0.215)
학력별 더미 (1: 고졸)	-0.091 (0.108)	-0.194 (0.200)	-0.107 (0.108)	-0.231 (0.200)
학력별 더미 (1: 대졸)	0.172 (0.153)	0.117 (0.279)	0.139 (0.153)	0.036 (0.276)
일 기술 수준 (1: 낮음)	-0.070 (0.060)	0.072 (0.082)	-0.060 (0.060)	0.083 (0.082)
근로시간 규칙성 (1: 규칙성)	0.096 (0.078)	0.143 (0.113)	0.081 (0.078)	0.122 (0.113)
고용 안정성 (1: 고용 안정성)	0.157** (0.066)	0.116 (0.095)	0.134** (0.066)	0.069 (0.095)
로그 임금	0.744*** (0.066)	0.816*** (0.111)	0.743*** (0.066)	0.817*** (0.110)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 (1: 수령)	0.265*** (0.063)	0.305*** (0.088)	0.267*** (0.063)	0.311*** (0.088)
직업훈련 참여 여부 (1: 참여)	0.024 (0.116)	-0.146 (0.160)	0.026 (0.116)	-0.133 (0.159)
구직 횟수	-0.025 (0.022)	-0.053 (0.041)	-0.019 (0.022)	-0.043 (0.041)
일용직-상용직 이동	-0.057 (0.209)	-0.156 (0.259)	0.010 (0.210)	-0.072 (0.259)
일용직-임시직 이동	0.026 (0.308)	0.077 (0.384)	0.019 (0.309)	0.024 (0.387)
비정규-정규직 이동	-0.114 (0.130)	-0.157 (0.164)	-0.139 (0.130)	-0.192 (0.164)

(표 계속)

〈표 4-30〉 빈곤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사적 소득 증가	0.023 (0.086)	0.171 (0.119)	0.019 (0.086)	0.153 (0.120)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25~35시간)	0.022 (0.180)	-0.021 (0.287)	0.043 (0.180)	0.017 (0.286)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36~45시간)	-0.098 (0.175)	-0.156 (0.282)	-0.081 (0.175)	-0.142 (0.281)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46~56시간)	-0.183 (0.172)	-0.210 (0.278)	-0.167 (0.172)	-0.198 (0.277)
근속 기간	0.002 (0.004)	-0.007 (0.007)	0.001 (0.004)	-0.008 (0.007)
근속 기간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종사자 수 더미 (1 : 1~4명)	-0.193 (0.155)	-0.326 (0.215)	-0.150 (0.155)	-0.248 (0.213)
종사자 수 더미 (1 : 5~9명)	-0.294* (0.159)	-0.506** (0.219)	-0.234 (0.159)	-0.399* (0.217)
종사자 수 더미 (1 : 10~69명)	-0.111 (0.156)	-0.242 (0.212)	-0.098 (0.156)	-0.210 (0.210)
종사자 수 더미 (1 : 1,000명 이상)	-0.040 (0.145)	-0.250 (0.197)	-0.014 (0.144)	-0.194 (0.195)
고용보험가입 여부 (1: 가입)	-0.124** (0.060)	-0.124 (0.090)	-0.117** (0.060)	-0.106 (0.090)
직장소재지 (1: 광역시)	0.058 (0.054)	0.013 (0.097)	0.058 (0.054)	0.018 (0.096)
직종별 더미 (1: 서비스 종사자)	-0.237** (0.120)	-0.069 (0.203)	-0.229* (0.120)	-0.045 (0.202)
직종별 더미 (1: 판매종사자)	-0.161 (0.141)	-0.084 (0.236)	-0.140 (0.141)	-0.063 (0.235)
직종별 더미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0.128 (0.108)	-0.007 (0.186)	-0.138 (0.108)	0.017 (0.185)
직종별 더미 (1: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사)	-0.107 (0.099)	0.072 (0.170)	-0.101 (0.099)	0.082 (0.169)

(표 계속)

〈표 4-30〉 빈곤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직종별 더미 (1: 단순노무자)	-0.106 (0.097)	-0.033 (0.167)	-0.097 (0.097)	-0.008 (0.166)
업종별 더미 (1: 제조업)	0.046 (0.073)	0.059 (0.126)	0.045 (0.073)	0.056 (0.125)
업종별 더미 (1: 건설업)	-0.068 (0.089)	0.000 (0.152)	-0.039 (0.089)	0.045 (0.151)
업종별 더미 (1: 판매업)	0.171 (0.120)	0.183 (0.192)	0.170 (0.120)	0.175 (0.191)
업종별 더미 (1: 숙박·음식점업)	0.149 (0.107)	0.044 (0.176)	0.135 (0.107)	0.018 (0.175)
연도별 더미 (1 : 2005년)		-0.037 (0.156)		-0.056 (0.155)
연도별 더미 (1 : 2006년)		-0.158 (0.153)		-0.149 (0.153)
연도별 더미 (1 : 2007년)		0.142 (0.149)		0.149 (0.149)
연도별 더미 (1 : 2008년)		-0.074 (0.143)		-0.069 (0.143)
연도별 더미 (1 : 2009년)		0.094 (0.142)		0.117 (0.142)
연도별 더미 (1 : 2010년)		-0.117 (0.140)		-0.119 (0.140)
연도별 더미 (1 : 2011년)		-0.116 (0.135)		-0.076 (0.135)
연도별 더미 (1 : 2012년)		-0.056 (0.134)		-0.061 (0.134)
연도별 더미 (1 : 2013년)		-0.037 (0.131)		-0.040 (0.131)
t-1 빈곤 상태 (1: 빈곤)		-1.163*** (0.081)		-1.151*** (0.081)
t-2 빈곤 상태 (1: 빈곤)		-0.357*** (0.072)		-0.352*** (0.072)

(표 계속)

〈표 4-30〉 빈곤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1기 빈곤 상태 (1:빈곤)		0.170* (0.099)		0.206** (0.098)
상수항	-3.641*** (0.426)	-3.607*** (0.724)	-3.702*** (0.426)	-3.713*** (0.720)
/lnsignu		-0.709*** (0.163)		-0.736*** (0.163)
ρ		0.33 (0.03)		0.32 (0.036)
Log likelihood	-1987.07	-1435.92	-1985.8	-1436.60
LR(Wald) chi2()	585.90(49)	564.65(61)	585.66(49)	550.13(61)
(pvalue)	0.00	0.00	0.00	0.00
Pseudo R2	0.128		0.128	
obs	3312	2871	3312	2871

주: 1) legend: * $p < .1$; ** $p < .05$; *** $p < .01$.

2) 표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4.4.2.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2년 연속)

빈곤 탈출 기준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균등화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상태에서 중위소득 80% 이상을 2년 이상 유지한 것을 정의하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 모형 2의 동적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의 ρ 에 대한 Likelihood-ratio test에서 $\chi^2(1) = 586.6$,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는 $\chi^2(1) = 588.14$ 로서 각각 1% 유의수준에서 $\rho=0$ 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확률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형 1의 분석결과보다 초기 상태와 개인의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고려한 모형 2의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형 2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 특성에서는 시장소득 기준 분석에서는 가구 내에 70세 이상 가구원 수와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각각 유의수준 5%와 10%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빈곤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 나타났으나,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유의수준 각각 5%와 10%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근로소득 증가와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자산 증가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내에 취업자 수의 증가와 근로소득의 증가가 빈곤 탈출에 확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특성에서는 건강상태가 건강할수록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각각 유의수준 5%와 10%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에서 임금 증가와 근로시간이 규칙적일수록 유의수준 1% 수준에서, 근로계약서 수령은 유의수준 5%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빈곤 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성별(기준: 남성)	0.125 (0.080)	0.008 (0.263)	0.123 (0.080)	0.024 (0.262)
35~44세 (기준: 18~34세)	-0.319** (0.143)	-0.370 (0.318)	-0.320** (0.143)	-0.411 (0.315)
45~54세	-0.129 (0.146)	-0.197 (0.346)	-0.134 (0.146)	-0.260 (0.343)
55~70세	0.157 (0.152)	0.208 (0.371)	0.107 (0.152)	0.068 (0.368)
배우자 유무	0.035 (0.079)	0.279 (0.214)	0.003 (0.079)	0.156 (0.213)
8세 미만 아동수	-0.088 (0.103)	0.154 (0.238)	-0.078 (0.102)	0.183 (0.237)

(표 계속)

〈표 4-31〉 빈곤 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70세 이상 가구원 수	-0.140 (0.093)	-0.503** (0.208)	-0.076 (0.092)	-0.403* (0.207)
가구 내 취업자 수	0.141*** (0.036)	0.192*** (0.065)	0.152*** (0.036)	0.226*** (0.065)
가족 수	-0.119*** (0.036)	-0.190** (0.079)	-0.116*** (0.035)	-0.177** (0.079)
총 근로소득 증가	0.366*** (0.047)	1.162*** (0.086)	0.367*** (0.047)	1.144*** (0.085)
자산 증가	0.148*** (0.047)	0.182** (0.072)	0.148*** (0.047)	0.181** (0.072)
사적 소득 증가	-0.046 (0.085)	0.159 (0.140)	-0.043 (0.085)	0.159 (0.141)
가구주 관계 (1: 가구주)	-0.290** (0.119)	-0.491 (0.318)	-0.269** (0.118)	-0.425 (0.316)
가구주 관계 (1: 배우자)	0.047 (0.066)	-0.187 (0.193)	0.067 (0.066)	-0.099 (0.192)
건강상태 (1: 건강)	0.212** (0.090)	0.348** (0.156)	0.148* (0.089)	0.288* (0.153)
학력별 더미 (1: 초졸 이하)	0.157 (0.119)	0.078 (0.357)	0.137 (0.118)	0.014 (0.354)
학력별 더미 (1: 중졸)	0.213* (0.115)	0.035 (0.346)	0.222* (0.114)	0.020 (0.343)
학력별 더미 (1: 고졸)	0.148 (0.107)	0.173 (0.320)	0.136 (0.107)	0.121 (0.318)
학력별 더미 (1: 대졸)	0.349** (0.149)	0.566 (0.441)	0.339** (0.149)	0.499 (0.437)
일 기술 수준 (1: 낮음)	-0.147** (0.059)	0.089 (0.099)	-0.137** (0.059)	0.100 (0.099)
근로시간 규칙성 (1: 규칙성)	0.339*** (0.080)	0.412*** (0.139)	0.320*** (0.080)	0.375*** (0.139)
고용 안정성 (1: 안정성)	0.078 (0.066)	0.006 (0.111)	0.064 (0.065)	-0.041 (0.111)

(표 계속)

〈표 4-31〉 빈곤 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로그 임금	0.567*** (0.066)	0.633*** (0.139)	0.573*** (0.066)	0.646*** (0.138)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1:수령)	0.110* (0.061)	0.207** (0.104)	0.102* (0.061)	0.208** (0.104)
직업훈련 참여 여부(1: 참여)	-0.083 (0.114)	-0.133 (0.200)	-0.136 (0.115)	-0.187 (0.201)
구직 횟수	-0.005 (0.022)	-0.085 (0.068)	0.002 (0.022)	-0.064 (0.068)
일용직-상용직 이동	-0.098 (0.209)	-0.094 (0.306)	-0.082 (0.209)	-0.119 (0.303)
일용직-임시직 이동	-0.040 (0.324)	-0.298 (0.493)	-0.054 (0.325)	-0.419 (0.503)
비정규-정규직 이동	-0.045 (0.129)	-0.154 (0.194)	-0.082 (0.129)	-0.201 (0.195)
근로시간 더미(1: 주당 25~35시간)	-0.044 (0.180)	-0.057 (0.373)	0.012 (0.181)	-0.048 (0.372)
근로시간 더미(1: 주당 36~45시간)	-0.081 (0.175)	-0.122 (0.366)	-0.026 (0.176)	-0.130 (0.365)
근로시간 더미(1: 주당 46~56시간 이상)	-0.168 (0.172)	-0.205 (0.361)	-0.099 (0.173)	-0.186 (0.360)
근속 기간	0.000 (0.004)	-0.009 (0.010)	0.000 (0.004)	-0.007 (0.010)
근속 기간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종사자 수 더미(1 : 1~4명)	-0.024 (0.155)	0.020 (0.264)	-0.004 (0.155)	0.006 (0.262)

(표 계속)

〈표 4-31〉 빈곤 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종사자 수 더미 (1 : 5~9명)	-0.104 (0.159)	-0.249 (0.267)	-0.032 (0.159)	-0.156 (0.265)
종사자 수 더미 (1 : 10~69명)	-0.147 (0.157)	-0.236 (0.258)	-0.105 (0.156)	-0.176 (0.256)
종사자 수 더미 (1 : 1,000명 이상)	0.018 (0.145)	-0.073 (0.239)	0.047 (0.145)	-0.051 (0.238)
고용보험가입 여부 (1: 가입)	-0.066 (0.059)	-0.073 (0.111)	-0.045 (0.059)	-0.068 (0.111)
직장소재지 (1: 광역시)	0.189*** (0.055)	0.136 (0.147)	0.172*** (0.054)	0.087 (0.146)
직종별 더미 (1: 서비스 종사자)	-0.163 (0.120)	0.191 (0.294)	-0.135 (0.120)	0.280 (0.293)
직종별 더미 (1: 판매종사자)	-0.165 (0.137)	0.168 (0.328)	-0.162 (0.137)	0.156 (0.326)
직종별 더미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0.116 (0.107)	0.124 (0.253)	-0.125 (0.107)	0.157 (0.252)
직종별 더미 (1: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사)	-0.020 (0.097)	0.336 (0.233)	-0.018 (0.097)	0.334 (0.231)
직종별 더미 (1: 단순노무자)	-0.173* (0.096)	-0.031 (0.238)	-0.155 (0.096)	0.012 (0.236)
업종별 더미 (1: 제조업)	-0.044 (0.072)	0.000 (0.174)	-0.049 (0.072)	-0.034 (0.173)
업종별 더미 (1: 건설업)	0.058 (0.089)	0.026 (0.213)	0.113 (0.089)	0.149 (0.212)
업종별 더미 (1: 판매업)	0.364*** (0.116)	0.403 (0.254)	0.323*** (0.116)	0.287 (0.253)
업종별 더미 (1: 숙박·음식점업)	-0.067 (0.107)	-0.096 (0.254)	-0.082 (0.106)	-0.188 (0.253)
연도별 더미 (1 : 2005년)		0.334* (0.192)		0.255 (0.191)
연도별 더미 (1 : 2006년)		0.038 (0.186)		0.044 (0.185)

(표 계속)

〈표 4-31〉 빈곤 탈출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연도별 더미 (1 : 2007년)		0.129 (0.180)		0.100 (0.179)
연도별 더미 (1 : 2008년)		0.053 (0.170)		0.021 (0.168)
연도별 더미 (1 : 2009년)		0.261 (0.164)		0.243 (0.163)
연도별 더미 (1 : 2010년)		0.177 (0.163)		0.137 (0.162)
연도별 더미 (1 : 2011년)		0.085 (0.154)		0.066 (0.153)
연도별 더미 (1 : 2012년)		0.197 (0.154)		0.170 (0.152)
연도별 더미 (1 : 2013년)		-0.010 (0.146)		-0.041 (0.146)
t-1 빈곤 상태 (1: 빈곤)		-1.499*** (0.104)		-1.500*** (0.104)
t-2 빈곤 상태 (1: 빈곤)		-0.111 (0.085)		-0.123 (0.084)
1기 빈곤 상태 (1: 빈곤)		0.012 (0.165)		0.074 (0.163)
상수항	-3.479*** (0.427)	-4.402*** (0.975)	-3.565*** (0.426)	-4.423*** (0.971)
/lnsig2u		0.700*** (0.133)		0.682*** (0.132)
ρ		0.33 (0.04)		0.32 (0.03)
Log likelihood	-2011.56	-1322.43	-2022.94	-1331.06
LR(Wald) chi2()	393.25(49)	378.56(61)	376.04(49)	377.47(61)
(pvalue)	0.00	0.00	0.00	0.00
Pseudo R2	0.09		0.08	
obs	3312	2871	3312	2871

주: 1) legend: * p<.1; ** p<.05; *** p <.01.

2) 표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4.4.3. 빈곤 탈출에서 빈곤 재진입 결정요인 분석

빈곤 탈출 기준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균등화 중위소득 80% 이상의 빈곤 탈출상태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빈곤 재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 모형 2의 동적확률효과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에서 ρ 에 대한 Likelihood-ratio test에서 $\chi^2(1) = 1594.43$ 이고,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에서는 $\chi^2(1) = 1577.50$ 으로서 각각 1%의 유의수준에서 $\rho=0$ 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확률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형 1의 분석결과보다 초기 상태와 개인의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 의존성을 고려한 모형 2의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다.

빈곤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가구 특성에서는 총 근로소득 증가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재진입 확률이 감소하고, 가구 내 8세 미만 아동 수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재진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증가가 빈곤 재진입 확률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근로빈곤층의 소득증가는 근로소득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구 내에 취업자의 감소는 가구 내 빈곤 확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적특성은 18~34세 연령대보다 45~54세, 55~70세 연령대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재진입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빈곤 재진입 확률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재진입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대상자인 근로빈곤층이 가구 내 위치가 배우자일 때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재진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내 7세 미만의 아동수가 증가할 때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재진입 확률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배우자인 여성들이 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감소와 근로소득 감소로 인하여 빈곤 재진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시장소득 기준에서만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빈곤 재진입 확률이 감소하는 것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주당 46~56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재진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하지만, 저임금인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종사자 수는 가치분소득 기준에서만 10~69명, 1,000명 이상 일 때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재진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소재지가 광역시일 때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재진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사일 때 즉 제조업일 때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재진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상태가 t-1, t-2, 초기 상태가 빈곤할 때 빈곤 재진입 확률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재진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 탈출을 하였지만, 다시 빈곤으로 재진입하는 반복적인 빈곤 상태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32> 빈곤 재진입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성별(기준: 남성)	0.102 (0.082)	-0.006 (0.574)	0.147* (0.081)	0.227 (0.573)
35~44세 (기준: 18~34세)	-0.162 (0.152)	-1.044 (0.652)	-0.130 (0.152)	-0.954 (0.640)
45~54세	-0.042 (0.156)	-1.671** (0.708)	-0.020 (0.155)	-1.587** (0.696)
55~70세	0.168 (0.161)	-1.603** (0.750)	0.196 (0.161)	-1.516** (0.740)
배우자 유무	-0.355*** (0.081)	-1.200*** (0.405)	-0.336*** (0.081)	-1.320*** (0.411)
8세 미만 아동수	0.029 (0.099)	0.858** (0.410)	0.024 (0.099)	0.895** (0.421)

(표 계속)

〈표 4-32〉 빈곤 재진입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70세 이상 가구원 수	0.177* (0.097)	0.342 (0.365)	0.186* (0.096)	0.281 (0.371)
가구 내 취업자 수	-0.060 (0.037)	-0.128 (0.103)	-0.065* (0.037)	-0.129 (0.104)
가족 수	0.118*** (0.036)	0.015 (0.148)	0.115*** (0.036)	0.031 (0.149)
총 근로소득 증가	0.005 (0.048)	-0.367*** (0.119)	0.009 (0.048)	-0.356*** (0.121)
자산 증가	0.050 (0.048)	-0.051 (0.116)	0.068 (0.048)	-0.019 (0.117)
사적 소득증가	0.036 (0.088)	0.111 (0.255)	0.063 (0.088)	0.224 (0.265)
가구주 관계 (1: 가구주)	-0.268** (0.124)	0.748 (0.689)	-0.310** (0.124)	0.858 (0.710)
가구주 관계 (1: 배우자)	0.035 (0.068)	1.037** (0.431)	0.044 (0.068)	1.201*** (0.445)
건강상태 (1: 건강)	0.047 (0.086)	0.215 (0.238)	0.049 (0.086)	0.252 (0.242)
학력별 더미 (1: 초졸 이하)	0.033 (0.118)	-0.657 (0.819)	0.014 (0.118)	-0.681 (0.820)
학력별 더미 (1: 중졸)	0.181 (0.114)	0.107 (0.761)	0.156 (0.114)	0.051 (0.776)
학력별 더미 (1: 고졸)	0.037 (0.107)	-0.127 (0.698)	0.030 (0.106)	-0.139 (0.700)
학력별 더미 (1: 대졸)	0.044 (0.156)	0.304 (0.991)	0.097 (0.157)	0.630 (0.992)
일 기술 수준 (1: 낮음)	-0.002 (0.060)	-0.097 (0.159)	-0.006 (0.060)	-0.092 (0.160)
근로시간 규칙성 (1: 규칙성)	0.014 (0.079)	0.024 (0.240)	0.027 (0.079)	0.006 (0.244)
고용 안정성 (1: 고용 안정성)	0.168*** (0.065)	0.249 (0.180)	0.179*** (0.065)	0.304 (0.183)

(표 계속)

〈표 4-32〉 빈곤 재진입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로그 임금	0.046 (0.065)	0.124 (0.221)	0.061 (0.065)	0.125 (0.222)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1:수령)	-0.140** (0.062)	0.038 (0.172)	-0.155** (0.062)	0.047 (0.174)
직업훈련 참여 여부(1: 참여)	-0.180 (0.114)	-0.480* (0.279)	-0.108 (0.114)	-0.258 (0.285)
구직 횟수	0.022 (0.022)	-0.070 (0.159)	0.026 (0.022)	-0.066 (0.161)
일용직-상용직 이동	-0.070 (0.203)	-0.274 (0.486)	0.030 (0.203)	-0.025 (0.520)
일용직-임시직 이동	0.174 (0.318)	0.905 (0.746)	0.171 (0.318)	0.836 (0.743)
비정규-정규직 이동	0.095 (0.130)	-0.288 (0.330)	0.026 (0.129)	-0.404 (0.339)
근로시간 더미(1: 주당 25~35시간)	0.112 (0.178)	0.373 (0.507)	0.200 (0.177)	0.355 (0.508)
근로시간 더미(1: 주당 36~45시간)	0.144 (0.174)	0.786 (0.494)	0.229 (0.172)	0.755 (0.496)
근로시간 더미(1: 주당 46~56시간)	0.128 (0.170)	0.912* (0.491)	0.207 (0.169)	0.920* (0.493)
근속 기간	-0.009 (0.010)	-0.023 (0.020)	-0.008 (0.010)	-0.025 (0.020)
근속 기간 계급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종사자 수 더미(1 : 1~4명)	-0.334** (0.162)	-0.155 (0.424)	-0.329** (0.161)	0.188 (0.438)
종사자 수 더미(1 : 5~9명)	-0.237 (0.165)	0.167 (0.426)	-0.242 (0.165)	0.418 (0.439)
종사자 수 더미(1 : 10~69명)	-0.096 (0.163)	0.566 (0.396)	-0.105 (0.162)	0.857** (0.409)
종사자 수 더미(1 : 1,000명 이상)	-0.215 (0.151)	0.493 (0.373)	-0.208 (0.151)	0.815** (0.386)

(표 계속)

〈표 4-32〉 빈곤 재진입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고용보험가입 여부 (1: 가입)	-0.172*** (0.061)	0.180 (0.193)	-0.187*** (0.061)	0.126 (0.195)
직장소재지 (1: 광역시)	0.185*** (0.054)	0.934*** (0.328)	0.160*** (0.054)	0.922*** (0.332)
직종별 더미 (1: 서비스 종사자)	-0.431*** (0.124)	0.033 (0.547)	-0.396*** (0.123)	0.225 (0.551)
직종별 더미 (1: 판매종사자)	0.448*** (0.151)	0.421 (0.620)	0.423*** (0.150)	0.544 (0.628)
직종별 더미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0.181 (0.111)	1.485*** (0.531)	-0.160 (0.111)	1.576*** (0.533)
직종별 더미 (1: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사)	0.002 (0.103)	1.471*** (0.517)	0.032 (0.103)	1.548*** (0.517)
직종별 더미 (1: 단순노무자)	-0.270*** (0.100)	-0.472 (0.474)	-0.202** (0.100)	-0.168 (0.478)
업종별 더미 (1: 제조업)	-0.361*** (0.073)	-0.898** (0.372)	-0.359*** (0.073)	-1.055*** (0.392)
업종별 더미 (1: 건설업)	-0.248*** (0.090)	0.378 (0.404)	-0.245*** (0.090)	0.330 (0.403)
업종별 더미 (1: 판매업)	-0.551*** (0.124)	-0.532 (0.496)	-0.508*** (0.124)	-0.406 (0.507)
업종별 더미 (1: 숙박·음식점업)	-0.079 (0.107)	0.641 (0.457)	-0.098 (0.107)	0.557 (0.462)
연도별 더미 (1 : 2005년)		-0.373 (0.312)		-0.381 (0.316)
연도별 더미 (1 : 2006년)		0.025 (0.308)		0.021 (0.312)
연도별 더미 (1 : 2007년)		0.134 (0.290)		0.120 (0.293)
연도별 더미 (1 : 2008년)		0.072 (0.279)		0.071 (0.281)
연도별 더미 (1 : 2009년)		0.285 (0.255)		0.283 (0.257)

(표 계속)

〈표 4-32〉 빈곤 재진입 결정요인 모형 추정 결과(계속)

	시장소득 기준 모형 1	시장소득 기준 모형 2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1	가처분소득 기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연도별 더미 (1 : 2010년)		0.124 (0.251)		0.147 (0.254)
연도별 더미 (1 : 2011년)		-0.001 (0.237)		0.012 (0.239)
연도별 더미 (1 : 2012년)		0.203 (0.230)		0.139 (0.230)
연도별 더미 (1 : 2013년)		0.186 (0.223)		0.202 (0.223)
t-1 빈곤 상태 (1: 빈곤)		0.655*** (0.160)		0.653*** (0.162)
t-2 빈곤 상태 (1: 빈곤)		0.456*** (0.148)		0.455*** (0.150)
1기 빈곤 상태 (1: 빈곤)		1.586*** (0.422)		1.559*** (0.439)
상수항	0.485 (0.425)	0.858 (1.869)	0.264 (0.423)	0.101 (1.863)
/lnsig2u		3.190*** (0.155)		3.230*** (0.156)
ρ		0.96 (0.00)		0.96 (0.01)
Log likelihood	-1961.62	-841.85	-1968.43	-837.18
LR(Wald) chi2() (pvalue)	193.98(49) 0.00	100.91(61) 0.00	192.84(49) 0.00	98.61(61) 0.00
Pseudo R2	0.05		0.05	
obs	3312	2871	3312	2871

주: 1) legend: * p<.1; ** p<.05; *** p <.01.

2) 표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4.4.4. 세부집단별 분석

1) 남성 빈곤 탈출 결정요인

성별은 근로빈곤층 빈곤탈출에 차이를 가지게 하는데, 여성일 때 빈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경준·김대일, 2003; 구인회, 2002; 금재호·김승택, 2001; 황덕순, 2001). 또한, 여성 가구주의 낮은 직업지위로 인해 빈곤 가능성이 크고, 이들의 가구 빈곤은 다음 세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남성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빈곤 탈출 기준을 시장소득 기준의 균등화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상태에서 중위소득 80% 이상을 각각 1년과 2년 단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을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 빈곤탈출 1회 기준 모형 2의 동적확률효과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에서 ρ 에 대한 Likelihood-ratio test에서 $\chi^2(1) = 53.16$ 이고, 빈곤탈출 2회 기준 모형 2 분석결과에서 $\chi^2(1) = 166.51$ 로서 각각 1%의 유의수준에서 $\rho=0$ 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확률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형 1의 분석결과보다 초기 상태와 개인의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고려한 모형 2의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형 2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중 가구 특성에서는 가구 내에 70세 이상 가구원 수 증가할수록 빈곤탈출 1회 기준과 2회 기준에서 각각 유의수준 10%와 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빈곤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 나타났다. 가족 수는 빈곤탈출 1회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빈곤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곤탈출 2회 기준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근로소득 증가와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자산 증가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빈곤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내에 취업자 수의 증가와 근로소득의 증가가 빈곤탈출에 확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소득의 증가는 빈곤탈출 1회 기준에서만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곤탈출 2회 기준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특성에서 건강상태는 빈곤탈출 2회 기준에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

게 빈곤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빈곤탈출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이동영, 2005; 유태균·박효진, 2009; 윤성원, 2009)가 있는 반면에, 건강상태가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김교성·반정호, 2004; 김은하, 2009).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에 건강은 빈곤탈출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 증가와 근로시간 규칙적일 때 빈곤탈출 1회와 2회 기준 분석에서 동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에서는 5-9명의 기업에 종사할 때 빈곤탈출 1회 기준에서는 유의수준 5%, 빈곤탈출 2회 기준에서는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특성에서는 판매업은 빈곤탈출 2회 기준 분석에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은(2004)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제조업 대비 도소매 및 판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속하였다면 빈곤진입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도 판매업에 속하였다더라도 빈곤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남성 빈곤 탈출 결정요인 추정 결과

	남성 모형 1 (빈곤 탈출 1회)	남성 모형 2 (빈곤 탈출 1회)	남성 모형 1 (빈곤 탈출 2회)	남성 모형 2 (빈곤 탈출 2회)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35~44세 (기준: 18~34세)	-0.129 (0.204)	0.061 (0.344)	-0.347* (0.206)	-0.339 (0.449)
45~54세	0.084 (0.209)	0.247 (0.372)	0.099 (0.211)	0.081 (0.492)
55~70세	0.289 (0.214)	0.416 (0.385)	0.423** (0.214)	0.558 (0.511)
배우자 유무	-0.045 (0.120)	0.016 (0.215)	0.054 (0.121)	0.143 (0.278)
8세 미만 아동 수	-0.145 (0.132)	-0.258 (0.237)	0.131 (0.140)	0.230 (0.303)
70세 이상 가구원 수	-0.191 (0.119)	-0.370* (0.200)	-0.111 (0.118)	-0.555** (0.248)
가구 내 취업자 수	0.204*** (0.055)	0.166** (0.084)	0.218*** (0.056)	0.266*** (0.100)
가족 수	-0.186*** (0.051)	-0.189** (0.089)	-0.152*** (0.053)	-0.144 (0.110)
총 근로소득 증가	0.709*** (0.071)	1.385*** (0.114)	0.394*** (0.071)	1.091*** (0.123)
자산 증가	0.132* (0.072)	0.075 (0.096)	0.130* (0.072)	0.054 (0.105)
사적 소득증가	0.211 (0.132)	0.362** (0.183)	0.089 (0.129)	0.303 (0.195)
가구주 관계 (1: 가구주)	-0.158 (0.172)	-0.175 (0.327)	-0.332* (0.172)	-0.472 (0.426)
가구주 관계 (1: 배우자)	0.127 (0.112)	-0.123 (0.394)	-0.009 (0.112)	-0.878 (0.594)
건강상태 (1: 건강)	0.012 (0.135)	0.148 (0.195)	0.350** (0.141)	0.740*** (0.240)
학력별 더미 (1: 초졸 이하)	0.004 (0.188)	-0.068 (0.366)	0.303 (0.191)	0.297 (0.515)

(표 계속)

〈표 4-33〉 남성 빈곤 탈출 결정요인 추정 결과(계속)

	남성 모형 1 (빈곤 탈출 1회)	남성 모형 2 (빈곤 탈출 1회)	남성 모형 1 (빈곤 탈출 2회)	남성 모형 2 (빈곤 탈출 2회)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학력별 더미 (1: 중졸)	-0.097 (0.179)	-0.425 (0.349)	0.303* (0.182)	0.101 (0.493)
학력별 더미 (1: 고졸)	-0.246 (0.172)	-0.487 (0.333)	0.167 (0.175)	0.171 (0.471)
학력별 더미 (1: 대졸)	0.086 (0.238)	0.183 (0.455)	0.479** (0.234)	0.899 (0.618)
일 기술 수준 (1: 낮음)	-0.200** (0.092)	-0.086 (0.132)	-0.206** (0.092)	-0.045 (0.150)
근로시간 규칙성 (1: 규칙성)	0.289** (0.114)	0.468*** (0.169)	0.374*** (0.116)	0.601*** (0.190)
고용 안정성 (1: 고용 안정성)	0.118 (0.097)	0.207 (0.145)	0.079 (0.097)	0.135 (0.160)
로그 임금	1.016*** (0.104)	1.209*** (0.178)	0.737*** (0.104)	0.927*** (0.202)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 (1: 수령)	0.183* (0.100)	0.153 (0.140)	0.023 (0.097)	0.093 (0.154)
직업훈련 참여 여부 (1: 참여)	-0.022 (0.174)	-0.172 (0.248)	-0.141 (0.172)	-0.207 (0.287)
구직 횟수	-0.049 (0.033)	-0.087 (0.064)	-0.013 (0.033)	-0.070 (0.090)
일용직-상용직 이동	-0.312 (0.337)	-0.639 (0.425)	-0.340 (0.335)	-0.317 (0.477)
일용직-임시직 이동	0.942 (0.602)	1.104 (0.755)	0.523 (0.562)	0.994 (0.950)
비정규-정규직 이동	0.157 (0.241)	0.216 (0.303)	0.044 (0.240)	-0.061 (0.337)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25~35시간)	-0.552* (0.283)	-0.383 (0.459)	-0.555** (0.283)	-0.254 (0.548)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36~45시간)	-0.449 (0.278)	-0.299 (0.456)	-0.235 (0.275)	-0.095 (0.540)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46~56시간)	-0.684** (0.274)	-0.519 (0.452)	-0.489* (0.271)	-0.314 (0.533)

(표 계속)

〈표 4-33〉 남성 빈곤 탈출 결정요인 추정 결과(계속)

	남성 모형 1 (빈곤 탈출 1회)	남성 모형 2 (빈곤 탈출 1회)	남성 모형 1 (빈곤 탈출 2회)	남성 모형 2 (빈곤 탈출 2회)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근속 기간	-0.003 (0.005)	-0.007 (0.008)	-0.008* (0.005)	-0.012 (0.011)
근속 기간 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종사자 수 더미 (1 : 1~4명)	-0.094 (0.252)	-0.268 (0.355)	0.095 (0.252)	-0.324 (0.413)
종사자 수 더미 (1 : 5~9명)	-0.334 (0.252)	-0.714** (0.356)	-0.112 (0.252)	-0.731* (0.413)
종사자 수 더미 (1 : 10~69명)	-0.069 (0.247)	-0.148 (0.341)	-0.157 (0.248)	-0.543 (0.397)
종사자 수 더미 (1 : 1,000명 이상)	0.034 (0.234)	-0.194 (0.324)	0.079 (0.234)	-0.425 (0.375)
고용보험가입 여부 (1: 가입)	-0.194** (0.095)	-0.189 (0.144)	-0.016 (0.094)	0.043 (0.162)
직장소재지 (1: 광역시)	0.168** (0.079)	0.173 (0.141)	0.323*** (0.080)	0.234 (0.190)
직종별 더미 (1: 서비스 종사자)	-0.263 (0.503)	0.083 (0.826)	-0.484 (0.498)	0.537 (0.996)
직종별 더미 (1: 판매종사자)	0.063 (0.283)	0.067 (0.466)	0.148 (0.273)	0.856 (0.595)
직종별 더미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0.126 (0.145)	0.087 (0.264)	-0.130 (0.143)	0.050 (0.333)
직종별 더미 (1: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사)	-0.134 (0.136)	0.116 (0.245)	-0.110 (0.133)	0.207 (0.313)
직종별 더미 (1: 단순노무자)	-0.219 (0.146)	0.031 (0.265)	-0.292** (0.144)	0.017 (0.342)
업종별 더미 (1: 제조업)	0.032 (0.106)	-0.062 (0.188)	-0.040 (0.105)	-0.320 (0.237)
업종별 더미 (1: 건설업)	-0.033 (0.108)	0.051 (0.186)	0.126 (0.109)	0.190 (0.234)
업종별 더미 (1: 판매업)	0.352 (0.232)	0.217 (0.362)	0.736*** (0.226)	0.733* (0.435)
업종별 더미 (1: 숙박·음식점업)	-0.042 (0.469)	-0.048 (0.844)	-0.831* (0.482)	-1.614 (1.048)

(표 계속)

〈표 4-33〉 남성 빈곤 탈출 결정요인 추정 결과(계속)

	남성 모형 1 (빈곤 탈출 1회)	남성 모형 2 (빈곤 탈출 1회)	남성 모형 1 (빈곤 탈출 2회)	남성 모형 2 (빈곤 탈출 2회)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연도별 더미 (1 : 2005년)		-0.197 (0.233)		0.171 (0.265)
연도별 더미 (1 : 2006년)		-0.016 (0.235)		0.298 (0.265)
연도별 더미 (1 : 2007년)		0.250 (0.229)		0.307 (0.256)
연도별 더미 (1 : 2008년)		-0.088 (0.222)		-0.052 (0.243)
연도별 더미 (1 : 2009년)		0.163 (0.215)		0.310 (0.231)
연도별 더미 (1 : 2010년)		-0.059 (0.216)		0.247 (0.235)
연도별 더미 (1 : 2011년)		-0.108 (0.208)		-0.013 (0.226)
연도별 더미 (1 : 2012년)		-0.089 (0.206)		0.228 (0.224)
연도별 더미 (1 : 2013년)		0.050 (0.202)		0.070 (0.214)
t-1 빈곤 상태 (1: 빈곤)		-1.008*** (0.127)		-1.209*** (0.149)
t-2 빈곤 상태 (1: 빈곤)		-0.301*** (0.112)		-0.092 (0.126)
1기 빈곤 상태 (1: 빈곤)		0.272* (0.156)		-0.094 (0.222)
상수항	-4.266*** (0.653)	-5.691*** (1.175)	-4.379*** (0.661)	-6.383*** (1.428)
/lnsig2u		-0.641** (0.257)		0.375* (0.215)
ρ		0.35 (0.06)		0.59 (0.05)
Log likelihood	-892.66	-638.05	-893.82	-614.60
LR(Wald) chi2()	366.98(48)	256.81(60)	311.54(48)	190.59(60)
(pvalue)	0.00	0.00	0.00	0.00
Pseudo R2	0.17		0.15	
obs	1561	1321	1561	1321

주: 1) legend: * p<.1; ** p<.05; *** p <.01.

2) 표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2) 여성 빈곤 탈출 결정요인

빈곤 탈출 기준을 시장소득 기준의 균등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상태에서 중위소득 80% 이상을 각각 1년과 2년 단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을 정의하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빈곤 탈출 1회 기준 모형 2의 동적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에서 ρ 에 대한 Likelihood-ratio test에서 $\chi^2(1) = 73.62$ 이고, 빈곤 탈출 2회 기준 모형 2에서는 $\chi^2(1) = 384.861\%$ 로서 각각 1%의 유의수준에서 $\rho=0$ 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확률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형 1의 분석결과보다 초기 상태와 개인의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고려한 모형 2의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형 2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 중 가구 특성에서는 총 근로소득 증가와 자산 증가는 빈곤 탈출 1회와 2회 기준 분석에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자산 증가는 유의수준 5%와 1%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특성 중에서 18-34세 연령대보다 35-44세 연령대는 빈곤 탈출 1회 기준에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감소로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빈곤 탈출 1회와 2회 기준 분석에서 임금 증가와 근로계약서 수령은 각각 유의수준 1%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기간이 증가할 때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나 근속 기간 제공의 기간이 증가할 경우에는 유의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하(2009)는 근로빈곤층의 여성은 경력 연수가 남성과 달리 빈곤 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근속 기간이 빈곤 탈출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겠다.

〈표 4-34〉 여성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결과

	여성 모형 1 (빈곤 탈출 1회)	여성 모형 2 (빈곤 탈출 1회)	여성 모형 1 (빈곤 탈출 2회)	여성 모형 2 (빈곤 탈출 2회)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35~44세 (기준: 18~34세)	-0.652*** (0.228)	-0.696* (0.358)	-0.570*** (0.220)	-0.470 (0.478)
45~54세	-0.510** (0.231)	-0.546 (0.380)	-0.460** (0.224)	-0.372 (0.524)
55~70세	-0.250 (0.243)	-0.424 (0.409)	-0.190 (0.235)	-0.054 (0.581)
배우자 유무	0.071 (0.132)	0.172 (0.260)	-0.082 (0.136)	-0.011 (0.407)
8세 미만 아동 수	-0.302* (0.173)	-0.167 (0.302)	-0.270 (0.176)	0.167 (0.438)
70세 이상 가구원 수	-0.319* (0.167)	-0.405 (0.270)	-0.433** (0.180)	-0.697 (0.429)
가구 내 취업자 수	0.149*** (0.049)	0.075 (0.070)	0.094* (0.049)	0.155* (0.092)
가족 수	-0.044 (0.052)	-0.054 (0.085)	-0.083 (0.052)	-0.267** (0.129)
총 근로소득 증가	0.663*** (0.066)	1.370*** (0.103)	0.339*** (0.066)	1.347*** (0.135)
자산 증가	0.174*** (0.066)	0.188** (0.086)	0.160** (0.065)	0.319*** (0.108)
사적 소득증가	-0.107 (0.119)	0.070 (0.165)	-0.168 (0.119)	-0.007 (0.220)
가구주 관계 (1: 가구주)	-0.183 (0.193)	-0.411 (0.346)	-0.342* (0.195)	-0.802 (0.559)
가구주 관계 (1: 배우자)	0.100 (0.090)	-0.060 (0.172)	0.074 (0.093)	-0.167 (0.289)
건강상태 (1: 건강)	0.146 (0.116)	0.078 (0.164)	0.121 (0.121)	0.094 (0.224)
학력별 더미 (1: 초졸 이하)	-0.117 (0.166)	-0.182 (0.305)	0.071 (0.165)	0.050 (0.544)
학력별 더미 (1: 중졸)	0.080 (0.164)	0.100 (0.298)	0.189 (0.160)	0.063 (0.535)

(표 계속)

〈표 4-34〉 여성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결과(계속)

	여성 모형 1 (빈곤 탈출 1회)	여성 모형 2 (빈곤 탈출 1회)	여성 모형 1 (빈곤 탈출 2회)	여성 모형 2 (빈곤 탈출 2회)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학력별 더미 (1: 고졸)	0.010 (0.148)	-0.027 (0.268)	0.151 (0.146)	0.269 (0.476)
학력별 더미 (1: 대졸)	0.123 (0.214)	-0.137 (0.388)	0.163 (0.207)	-0.200 (0.702)
일 기술 수준 (1: 낮음)	0.027 (0.081)	0.184* (0.110)	-0.072 (0.081)	0.221 (0.141)
근로시간 규칙성 (1: 규칙성)	-0.166 (0.116)	-0.155 (0.166)	0.245** (0.118)	0.297 (0.221)
고용 안정성 (1: 고용 안정성)	0.181* (0.093)	0.045 (0.134)	0.061 (0.092)	-0.130 (0.169)
로그 임금	0.559*** (0.090)	0.607*** (0.154)	0.493*** (0.091)	0.428** (0.214)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 (1: 수령)	0.291*** (0.085)	0.404*** (0.122)	0.150* (0.082)	0.389** (0.157)
직업훈련 참여 여부 (1: 참여)	0.148 (0.164)	-0.116 (0.221)	-0.002 (0.159)	-0.152 (0.298)
구직 횟수	-0.010 (0.032)	-0.057 (0.059)	0.002 (0.032)	-0.079 (0.114)
일용직-상용직 이동	0.065 (0.278)	0.116 (0.345)	0.094 (0.276)	-0.160 (0.417)
일용직-임시직 이동	-0.428 (0.409)	-0.299 (0.502)	-0.567 (0.460)	-0.848 (0.665)
비정규-정규직 이동	-0.157 (0.159)	-0.229 (0.206)	-0.052 (0.158)	-0.073 (0.259)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25~35시간)	0.422* (0.242)	0.280 (0.394)	0.290 (0.245)	0.187 (0.583)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36~45시간)	0.201 (0.235)	0.007 (0.386)	0.047 (0.239)	-0.098 (0.576)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46~56시간)	0.217 (0.229)	0.063 (0.379)	0.032 (0.234)	-0.022 (0.571)
근속 기간	0.046** (0.020)	0.067** (0.033)	0.018 (0.020)	0.092** (0.045)
근속 기간 제곱	-0.002* (0.001)	-0.005** (0.002)	-0.000 (0.001)	-0.007** (0.003)

(표 계속)

〈표 4-34〉 여성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결과(계속)

	여성 모형 1 (빈곤 탈출 1회)	여성 모형 2 (빈곤 탈출 1회)	여성 모형 1 (빈곤 탈출 2회)	여성 모형 2 (빈곤 탈출 2회)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종사자 수 더미 (1 : 1-4명)	-0.212 (0.207)	-0.410 (0.287)	-0.079 (0.204)	0.385 (0.371)
종사자 수 더미 (1 : 5-9명)	-0.255 (0.216)	-0.337 (0.300)	-0.094 (0.214)	0.322 (0.384)
종사자 수 더미 (1 : 10-69명)	-0.136 (0.210)	-0.373 (0.288)	-0.109 (0.209)	0.023 (0.366)
종사자 수 더미 (1 : 1,000명 이상)	-0.073 (0.192)	-0.352 (0.264)	0.020 (0.189)	0.290 (0.333)
고용보험가입 여부 (1: 가입)	-0.081 (0.082)	-0.114 (0.125)	-0.124 (0.082)	-0.254 (0.169)
직장소재지 (1: 광역시)	-0.080 (0.083)	-0.137 (0.147)	0.079 (0.083)	0.102 (0.255)
직종별 더미 (1: 서비스 종사자)	-0.189 (0.153)	-0.083 (0.258)	-0.084 (0.151)	0.002 (0.412)
직종별 더미 (1: 판매종사자)	-0.174 (0.177)	-0.002 (0.298)	-0.146 (0.172)	0.051 (0.456)
직종별 더미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0.076 (0.193)	-0.121 (0.326)	-0.082 (0.190)	-0.101 (0.482)
직종별 더미 (1: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사)	-0.050 (0.177)	0.035 (0.296)	0.124 (0.172)	0.491 (0.421)
직종별 더미 (1: 단순노무자)	-0.021 (0.146)	-0.082 (0.241)	-0.105 (0.142)	-0.310 (0.380)
업종별 더미 (1: 제조업)	-0.034 (0.125)	0.160 (0.213)	-0.107 (0.124)	0.166 (0.317)
업종별 더미 (1: 건설업)	-0.005 (0.260)	0.383 (0.468)	0.039 (0.262)	-0.522 (0.745)
업종별 더미 (1: 판매업)	0.007 (0.148)	0.018 (0.246)	0.194 (0.143)	0.223 (0.361)
업종별 더미 (1: 숙박·음식점업)	0.120 (0.120)	0.064 (0.196)	-0.024 (0.119)	-0.022 (0.306)
연도별 더미 (1 : 2005년)		0.074 (0.227)		0.489 (0.315)
연도별 더미 (1 : 2006년)		-0.367* (0.217)		-0.369 (0.295)

(표 계속)

〈표 4-3〉 여성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결과(계속)

	여성 모형 1	여성 모형 2	여성 모형 1	여성 모형 2
	(빈곤 탈출 1회)	(빈곤 탈출 1회)	(빈곤 탈출 2회)	(빈곤 탈출 2회)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연도별 더미		0.023		-0.141
(1 : 2007년)		(0.211)		(0.281)
연도별 더미		-0.120		0.072
(1 : 2008년)		(0.199)		(0.258)
연도별 더미		-0.058		0.117
(1 : 2009년)		(0.200)		(0.251)
연도별 더미		-0.216		0.100
(1 : 2010년)		(0.193)		(0.241)
연도별 더미		-0.185		0.163
(1 : 2011년)		(0.185)		(0.229)
연도별 더미		-0.098		0.083
(1 : 2012년)		(0.185)		(0.228)
연도별 더미		-0.167		-0.175
(1 : 2013년)		(0.181)		(0.216)
t-1 빈곤 상태		-1.317***		-1.862***
(1: 빈곤)		(0.112)		(0.161)
t-2 빈곤 상태		-0.387***		-0.067
(1: 빈곤)		(0.099)		(0.124)
1기 빈곤 상태		0.186		0.164
(1:빈곤)		(0.139)		(0.268)
상수항	-3.114***	-2.289**	-2.841***	-3.133**
	(0.600)	(1.019)	(0.597)	(1.498)
/lnsig2u		-0.699***		1.060***
		(0.223)		(0.185)
ρ		0.33		0.74
		(0.04)		(0.03)
Log likelihood	-1054.32	-762.34	-1069.62	-665.94
LR(Wald) chi2()	298.75	300.00(60)	175.88(48)	201.33(60)
(pvalue)	0.00	0.00	0.00	0.00
Pseudo R2	0.12		0.08	
obs	1751	1550	1751	1550

주: 1) legend: * p<.1; ** p<.05; *** p <.01.

2) 표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3)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18~49세

연령에 따라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8~39세, 40~49세, 50~60세, 61~70세로 분류하여 연령대별로 빈곤 탈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빈곤 탈출 기준을 시장소득 기준의 균등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상태에서 중위소득 80% 이상을 각각 1년 단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을 정의하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8~39세 연령대의 모형 2는 wald chi2의 검정에서 유의하지 않아, 통계 모형의 유의성을 신뢰할 수 없다.

18~39세 연령대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모형 1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 특성으로는 총 근로소득 증가와 자산증가가 각각 유의수준 1%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상승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소재지가 광역시일 때 비광역시에 비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이력이 빈곤 탈출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18~39세의 연령대에는 지속적인 빈곤상태의 상태의존성의 영향이 가장 적은 연령대로서 빈곤의 상태에서도 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 발생은 빈곤 탈출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변금선(2012)은 청년의 고용특성과 고용 불안정이 빈곤 이행(빈곤 진입과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고졸자나 저학력층은 더욱 빈곤에 취약하다고 분석하였고, 김혜련(2009)은 29세 미만은 빈곤 탈출 확률이 낮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18~39세의 근로빈곤 탈출의 결정요인이 대졸 이상의 학력과 가구적 소득증가의 특성 외에는 노동시장 요인으로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명확하지 않아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 요인에 관해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40~49세 연령대의 모형 2의 동적확률효과 프로빗 분석결과에서 ρ 에 대한 Likelihood-ratio test에서 $\chi^2(1) = 52.8$ 이고 1%의 유의수준에서 $\rho=0$ 이라는 가설

을 기각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확률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형 1의 분석결과보다 초기 상태와 개인의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고려한 모형 2의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다. 40~49세 연령대의 분석은 모형 2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49세의 연령대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가구 특성에서 가족 수가 증가할 때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고, 총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특성에는 구직 횟수의 증가와 근로시간이 주당 36~45시간일 때, 업종별 특성으로 건설업일 때 유의확률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2016. 3)』 분석결과에서도 30~54세의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가장 많은 업종이 건설업 29.45%이고, 이 중 시간제 근로 형태가 21.23%로 건설업 특성상 일자리가 없어 불안한 고용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8~39세의 연령대에서는 빈곤의 상태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0~49세 연령대에서는 t-1와 t-2의 빈곤상태가 1% 유의한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 상태의 상태의존성의 영향을 받게 되는 연령대로서 빈곤에 진입할 경우에 빈곤 탈출에 어려움이 시작되는 연령대로 추측할 수 있다. 즉, 18~39세 연령대에서는 빈곤 탈출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40대 이후에도 계속하여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18~39세의 청년층에게 맞는 근로빈곤 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35〉 18~49세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

	18~39세 모형 1	18~39세 모형 2	40~49세 모형 1	40~49세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성별(기준: 남성)	0.174 (0.227)	0.038 (0.632)	0.213 (0.153)	-0.033 (0.402)
배우자 유무	-0.378 (0.302)	-1.395* (0.819)	0.471*** (0.162)	0.489 (0.364)
8세 미만 아동수	0.029 (0.201)	-0.539 (0.522)	-0.298 (0.191)	0.074 (0.345)
70세 이상 가구원 수	-1.074** (0.419)	-1.290 (0.893)	0.123 (0.169)	0.128 (0.305)
가구 내 취업자 수	0.064 (0.138)	0.358 (0.316)	0.079 (0.057)	0.013 (0.097)
가족 수	-0.075 (0.118)	0.067 (0.256)	-0.211*** (0.060)	-0.315** (0.123)
총 근로소득 증가	0.768*** (0.169)	1.537*** (0.378)	0.664*** (0.083)	1.632*** (0.160)
자산 증가	0.046 (0.170)	0.432 (0.288)	0.104 (0.084)	0.078 (0.124)
사적 소득증가	-0.046 (0.264)	0.497 (0.487)	0.287 (0.248)	0.277 (0.469)
가구주 관계 (1: 가구주)	-0.855** (0.335)	0.509 (0.818)	0.210 (0.239)	0.227 (0.501)
가구주 관계 (1: 배우자)	-0.086 (0.176)	0.514 (0.517)	0.396*** (0.132)	0.452 (0.305)
건강상태 (1: 건강)	-0.705 (0.496)	0.524 (0.929)	0.075 (0.193)	-0.242 (0.324)
학력별 더미 (1: 초졸 이하)	1.279* (0.702)	2.547 (1.638)	-0.075 (0.216)	0.049 (0.476)
학력별 더미 (1: 중졸)	0.077 (0.408)	-1.302 (0.953)	-0.001 (0.204)	-0.107 (0.428)
학력별 더미 (1: 고졸)	0.396 (0.274)	0.211 (0.576)	0.121 (0.181)	0.069 (0.375)
학력별 더미 (1: 대졸)	0.934*** (0.334)	1.329** (0.676)	0.275 (0.261)	-0.032 (0.511)
일 기술 수준 (1: 낮음)	0.223 (0.193)	0.162 (0.331)	-0.158 (0.102)	-0.316* (0.162)

(표 계속)

〈표 4-35〉 18~49세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18~39세 모형 1	18~39세 모형 2	40~49세 모형 1	40~49세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근로시간 규칙성 (1: 규칙성)	0.011 (0.382)	-0.031 (0.739)	0.289** (0.145)	0.414 (0.258)
고용 안정성 (1: 고용 안정성)	-0.521 (0.324)	-1.632** (0.685)	0.298** (0.127)	0.257 (0.218)
로그 임금	0.811*** (0.249)	1.207** (0.607)	0.538*** (0.117)	0.773*** (0.238)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 (1: 수령)	0.328 (0.210)	0.470 (0.347)	0.262** (0.115)	0.280 (0.183)
직업훈련 참여 여부 (1: 참여)	0.666 (0.457)	0.603 (0.711)	0.222 (0.208)	0.011 (0.344)
구직 횟수	0.097 (0.068)	0.130 (0.139)	-0.061 (0.039)	-0.136* (0.079)
일용직-상용직 이동	-0.906 (0.810)	-3.312** (1.345)	0.436 (0.352)	0.392 (0.474)
일용직-임시직 이동	(dropped)	4.267 (491.466)	-0.345 (0.739)	0.337 (0.925)
비정규-정규직 이동	0.063 (0.329)	0.561 (0.522)	-0.097 (0.212)	-0.116 (0.305)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25~35시간)	-0.006 (0.384)	0.247 (0.688)	0.373* (0.191)	0.299 (0.309)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36~45시간)	0.328 (0.229)	0.773* (0.410)	-0.100 (0.111)	-0.349* (0.186)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46~56시간)	0.106 (0.206)	0.270 (0.376)	-0.116 (0.105)	-0.092 (0.173)
근속 기간	-0.040 (0.075)	-0.083 (0.146)	0.026*** (0.010)	0.016 (0.019)
근속 기간 제곱	0.008 (0.006)	0.008 (0.010)	-0.000*** (0.000)	-0.000 (0.000)
종사자 수 더미 (1 : 1~4명)	0.252 (0.496)	0.860 (1.063)	-0.057 (0.239)	-0.039 (0.398)
종사자 수 더미 (1 : 5~9명)	0.186 (0.513)	0.856 (1.031)	0.166 (0.247)	0.102 (0.404)
종사자 수 더미 (1 : 10~69명)	0.378 (0.502)	0.573 (0.996)	0.264 (0.238)	0.486 (0.405)

(표 계속)

<표 4-35> 18~49세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18~39세 모형 1	18~39세 모형 2	40~49세 모형 1	40~49세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종사자 수 더미 (1 : 1,000명 이상)	0.225 (0.461)	0.796 (0.960)	0.278 (0.219)	0.418 (0.359)
고용보험가입 여부 (1: 가입)	-0.189 (0.204)	-0.731 (0.449)	-0.229** (0.101)	-0.388** (0.183)
직장소재지 (1: 광역시)	-0.396* (0.202)	-1.054** (0.462)	0.012 (0.099)	0.080 (0.200)
직종별 더미 (1: 서비스 종사자)	0.448 (0.552)	-0.448 (1.101)	-0.308 (0.207)	-0.406 (0.399)
직종별 더미 (1: 판매종사자)	0.537 (0.376)	0.707 (0.842)	-0.333 (0.243)	-0.328 (0.429)
직종별 더미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0.497 (0.382)	0.830 (0.825)	-0.128 (0.211)	-0.183 (0.394)
직종별 더미 (1: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사)	0.237 (0.298)	1.135 (0.758)	-0.385* (0.198)	-0.338 (0.371)
직종별 더미 (1: 단순노무자)	0.547 (0.365)	1.420* (0.786)	-0.095 (0.187)	-0.039 (0.341)
업종별 더미 (1: 제조업)	0.181 (0.247)	-0.296 (0.534)	0.025 (0.137)	-0.181 (0.275)
업종별 더미 (1: 건설업)	-0.047 (0.347)	-0.205 (0.713)	-0.499*** (0.178)	-0.661* (0.344)
업종별 더미 (1: 판매업)	0.244 (0.311)	0.869 (0.608)	0.095 (0.216)	-0.221 (0.386)
업종별 더미 (1: 숙박·음식점업)	-0.189 (0.422)	0.797 (1.060)	0.059 (0.184)	-0.241 (0.358)
연도별 더미 (1 : 2005년)		-0.841 (0.895)		-0.384 (0.338)
연도별 더미 (1 : 2006년)		-1.084 (0.881)		-0.410 (0.333)
연도별 더미 (1 : 2007년)		-0.426 (0.890)		0.232 (0.317)
연도별 더미 (1 : 2008년)		-1.024 (0.917)		0.220 (0.304)
연도별 더미 (1 : 2009년)		-0.657 (0.880)		0.104 (0.311)

(표 계속)

<표 4-35> 18~49세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18~39세 모형 1	18~39세 모형 2	40~49세 모형 1	40~49세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연도별 더미 (1 : 2010년)		-1.055 (0.852)		0.112 (0.299)
연도별 더미 (1 : 2011년)		-0.615 (0.823)		-0.290 (0.287)
연도별 더미 (1 : 2012년)		-1.450* (0.773)		-0.019 (0.292)
연도별 더미 (1 : 2013년)		0.084 (0.872)		-0.335 (0.292)
t-1 빈곤 상태 (1: 빈곤)		-0.465 (0.352)		-1.475*** (0.168)
t-2 빈곤 상태 (1: 빈곤)		-0.232 (0.314)		-0.350** (0.147)
1기 빈곤 상태 (1: 빈곤)		0.309 (0.441)		0.198 (0.208)
상수항	-3.722** (1.508)	-6.799* (3.620)	-3.721*** (0.742)	-3.248** (1.450)
/lnsig2u		-0.420 (0.979)		-0.191 (0.285)
ρ		0.40 (0.05)		0.45 (0.02)
Log likelihood	-179.26	-106.42	-659.11	-427.33
LR(Wald) chi2()	132.55(45)	40.78(58)	223.36(46)	176.45(58)
(pvalue)	0.00	0.96	0.00	0.00
Pseudo R2	0.27		0.14	
obs	357	267	1113	930

주: 1) legend: * p<.1; ** p<.05; *** p <.01.

2) 표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4)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 50~70세

50대에서 70대의 중고령자에 대한 빈곤 탈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고령자는 고령일수록 빈곤 가능성이 큰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가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령이 많을수록 단순 노동직, 낮은 임금의 일자리,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등에 종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러한 결과로 개인과 가구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빈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석재은·김태완, 2000; 구인회, 2002; 윤정윤·박나량, 2004; 이병희, 2005; 김기승·조용수, 2007; 지은정, 2009; 변금선, 2012; 윤진성·허원재, 2014). 이병희(2005)도 50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빈곤 탈출에서 힘든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50~60대 연령대와 61~70대 연령대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빈곤 탈출 기준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균등화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상태에서 중위소득 80% 이상을 각각 1년 단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을 정의하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50~60대 연령대에서는 모형 2의 동적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의 ρ 에 대한 Likelihood-ratio test에서 $\chi^2(1) = 46.98$ 이고 1%와 유의수준에서 $\rho=0$ 이라는 가설을 기각되어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 2가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60~70대의 연령대에서는 $\rho=0$ 이라는 가정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1이 더 적절한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형 2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60대 연령대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으로 가구 특성에는 총 근로소득과 자산 증가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고, 70세 이상 가구원 수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 증가와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고,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직종에서는 단순노무자일 때 각각 유의수준 10%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70대 연령대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가구 특성에는 70세 이상 가

구원 수는 유의확률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와 총 근로소득 증가는 각각 유의수준 5%,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분석에서 61-70세에서만 자산증가가 빈곤탈출에 유의하지 않아 지금 현재 고령층의 빈곤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대에서는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자산소득으로 보충되어야 하나, 현재 고령대에서는 자산빈곤도 동시에 함께 겪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인적특성으로는 학력이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일 때 유의확률 5%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춘호·이성호·이상록(2006)은 교육에서의 배제는 빈곤가정-저학력-조기 취업으로 이어지는 노동빈곤층의 전통적 빈곤세습의 통로로서 노동빈곤층은 저학력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주변적 노동시장에 최초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령층 저학력자일수록 빈곤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졸 이상도 빈곤 탈출 영향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빈곤 탈출에 고학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 증가가 유의확률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한다. 고용보험 가입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고, 판매종사자,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할 때 각각 유의수준 5%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구·부가청·이혜정(2010)은 총 일자리 수가 많은 중·고령자일수록 빈곤 가능성이 크나 생애 근로기간이 긴 중·고령자일수록 빈곤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하였다. 판매종사자,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은 서비스직 중에서 저임금직으로 근로 빈곤층의 주요 업종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고령층에서는 업종과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상태에 머무는 것이 빈곤 탈출에 유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4-36〉 50~70세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

	50~60대 모형 1	50~60대 모형 2	61~70대 모형 1	61~70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성별(기준: 남성)	0.139 (0.143)	0.121 (0.271)	-0.544 (0.357)	-0.320 (0.436)
배우자 유무	0.045 (0.123)	0.095 (0.221)	-0.469 (0.305)	-0.383 (0.343)
8세 미만 아동수	0.088 (0.329)	0.425 (0.684)	-0.849 (0.781)	-1.478* (0.875)
70세 이상 가구원 수	-0.099 (0.136)	-0.513** (0.226)	-1.451*** (0.536)	-0.790 (0.689)
가구 내 취업자 수	0.223*** (0.060)	0.098 (0.088)	0.424*** (0.152)	0.441** (0.182)
가족 수	-0.185*** (0.062)	-0.038 (0.097)	0.043 (0.114)	-0.014 (0.137)
총 근로소득 증가	0.712*** (0.073)	1.356*** (0.116)	0.827*** (0.162)	1.445*** (0.223)
자산 증가	0.288*** (0.074)	0.263*** (0.099)	-0.120 (0.163)	-0.209 (0.187)
사적 소득증가	0.012 (0.158)	0.254 (0.224)	0.210 (0.173)	0.244 (0.194)
가구주 관계 (1: 가구주)	-0.172 (0.254)	-0.193 (0.433)	-0.288 (0.332)	-0.653 (0.401)
가구주 관계 (1: 배우자)	0.175 (0.130)	0.124 (0.229)		
건강상태 (1: 건강)	0.023 (0.124)	0.140 (0.180)	0.128 (0.226)	0.113 (0.268)
학력별 더미 (1: 초졸 이하)	-0.066 (0.227)	-0.036 (0.405)	-1.930** (0.864)	-2.213 (1.609)
학력별 더미 (1: 중졸)	-0.054 (0.218)	-0.128 (0.394)	-1.891** (0.874)	-2.388 (1.615)
학력별 더미 (1: 고졸)	-0.220 (0.218)	-0.326 (0.391)	-2.332*** (0.866)	-2.748* (1.611)
학력별 더미 (1: 대졸)	-0.593* (0.331)	-0.663 (0.587)	-1.398 (1.134)	-2.128 (1.826)
일 기술 수준 (1: 낮음)	-0.069 (0.098)	-0.070 (0.137)	0.013 (0.240)	-0.081 (0.281)

(표 계속)

〈표 4-36〉 50~70세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50~60대 모형 1	50~60대 모형 2	61~70대 모형 1	61~70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근로시간 규칙성 (1: 규칙성)	0.050 (0.111)	0.164 (0.158)	-0.102 (0.261)	0.054 (0.305)
고용 안정성 (1: 고용 안정성)	0.108 (0.100)	0.043 (0.146)	-0.213 (0.190)	-0.004 (0.231)
로그 임금	0.609*** (0.100)	0.667*** (0.163)	1.594*** (0.276)	1.390*** (0.336)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 (1: 수령)	0.366*** (0.103)	0.395*** (0.143)	0.168 (0.222)	0.353 (0.261)
직업훈련 참여 여부 (1: 참여)	-0.183 (0.178)	-0.367 (0.247)	-0.301 (0.451)	-0.817* (0.489)
구직 횟수	-0.034 (0.039)	-0.053 (0.069)	-0.059 (0.090)	-0.024 (0.103)
일용직-상용직 이동	-0.165 (0.325)	-0.154 (0.400)	-0.696 (1.133)	-0.790 (1.516)
일용직-임시직 이동	0.046 (0.424)	-0.051 (0.524)		-6.470 (39,385.418)
비정규-정규직 이동	-0.296 (0.220)	-0.474* (0.281)	-0.338 (0.967)	-0.317 (1.341)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25~35시간)	-0.098 (0.146)	0.125 (0.208)	-0.069 (0.280)	-0.314 (0.317)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36~45시간)	0.033 (0.094)	0.202 (0.137)	-0.202 (0.213)	-0.577** (0.246)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46~56시간)	-0.121 (0.096)	-0.054 (0.136)	-0.017 (0.248)	-0.417 (0.300)
근속 기간	-0.009* (0.005)	-0.019** (0.010)	-0.026 (0.031)	-0.036 (0.037)
근속 기간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1)
종사자 수 더미 (1 : 1~4명)	-0.320 (0.301)	-0.509 (0.484)	-0.774 (0.756)	-0.624 (0.915)
종사자 수 더미 (1 : 5~9명)	-0.337 (0.304)	-0.411 (0.483)	-0.380 (0.783)	-0.321 (0.927)
종사자 수 더미 (1 : 10~69명)	-0.434 (0.300)	-0.671 (0.475)	0.012 (0.741)	0.055 (0.875)

(표 계속)

〈표 4-36〉 50~70세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50~60대 모형 1	50~60대 모형 2	61~70대 모형 1	61~70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종사자 수 더미 (1 : 1,000명 이상)	-0.197 (0.284)	-0.449 (0.456)	0.169 (0.707)	0.308 (0.850)
고용보험가입 여부 (1: 가입)	-0.096 (0.094)	0.024 (0.142)	0.392* (0.218)	0.502** (0.254)
직장소재지 (1: 광역시)	0.152* (0.087)	0.115 (0.148)	0.019 (0.217)	0.182 (0.254)
직종별 더미 (1: 서비스 종사자)	-0.629*** (0.211)	-0.644* (0.362)	-0.188 (0.517)	-0.402 (0.670)
직종별 더미 (1: 판매종사자)	-0.776*** (0.256)	-1.086** (0.439)	1.984*** (0.683)	1.354 (0.844)
직종별 더미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0.397** (0.176)	-0.509 (0.325)	-0.029 (0.504)	-0.322 (0.682)
직종별 더미 (1: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사)	-0.374** (0.168)	-0.485 (0.309)	0.226 (0.441)	-0.415 (0.575)
직종별 더미 (1: 단순노무자)	-0.411** (0.171)	-0.640** (0.310)	0.004 (0.429)	-0.485 (0.558)
업종별 더미 (1: 제조업)	-0.028 (0.112)	0.034 (0.191)	-0.216 (0.364)	-0.266 (0.429)
업종별 더미 (1: 건설업)	-0.032 (0.135)	0.046 (0.234)	0.380 (0.359)	0.685 (0.429)
업종별 더미 (1: 판매업)	0.354* (0.212)	0.608* (0.348)	0.009 (0.500)	-0.122 (0.634)
업종별 더미 (1: 숙박·음식점업)	0.016 (0.170)	-0.026 (0.269)	0.939** (0.428)	0.644 (0.498)
연도별 더미 (1 : 2005년)		0.158 (0.238)		-0.007 (0.522)
연도별 더미 (1 : 2006년)		0.077 (0.233)		-1.108* (0.668)
연도별 더미 (1 : 2007년)		0.067 (0.233)		0.288 (0.451)
연도별 더미 (1 : 2008년)		-0.250 (0.216)		-0.091 (0.417)
연도별 더미 (1 : 2009년)		0.204 (0.215)		0.167 (0.358)

(표 계속)

<표 4-36> 50~70세 연령대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50~60대 모형 1	50~60대 모형 2	61~70대 모형 1	61~70대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연도별 더미 (1 : 2010년)		-0.109 (0.213)		-0.429 (0.364)
연도별 더미 (1 : 2011년)		0.080 (0.207)		-0.436 (0.347)
연도별 더미 (1 : 2012년)		0.146 (0.207)		-0.329 (0.319)
연도별 더미 (1 : 2013년)		0.180 (0.201)		0.133 (0.301)
t-1 빈곤 상태 (1: 빈곤)		-1.052*** (0.129)		-1.659*** (0.271)
t-2 빈곤 상태 (1: 빈곤)		-0.391*** (0.116)		-0.519** (0.221)
1기 빈곤 상태 (1: 빈곤)		0.147 (0.145)		0.035 (0.248)
상수항	-2.512*** (0.729)	-2.681** (1.247)	-6.107*** (1.719)	-4.065* (2.412)
/lnsig2u		-0.596** (0.264)		-14.053 (17.529)
ρ		0.35 (0.04)		1.00 (0.01)
Log likelihood	-845.18	-638.97	-181.40	-146.08
LR(Wald) chi2()	264.67(46)	2415.45(58)	162.48(44)	107.19(57)
(pvalue)	0.00	0.00	0.00	0.00
Pseudo R2	0.13		0.31	
obs	1460	1294	379	381

주: 1) legend: * p<.1; ** p<.05; *** p <.01.

2) 표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4.4.5. 빈곤 동태적 특성 집단별 분석

1) 빈곤집단 분석

Gardiner and Hills(1999)는 영국 가구패널(BHPS) 1991~1994년 자료를 통해 빈곤의 궤적(poverty trajectories)을 6가지로 구분하였다. 지속적 빈곤(Flat), 빈곤 탈출(Rising out of poverty), 빈곤 진입(Falling into poverty), 일시적 빈곤 탈출(Blips-out of poverty), 일시적 빈곤 진입(Blips-into poverty), 반복적 빈곤(other-repeated poverty), 일시적 빈곤(other-one-off poverty)으로 분류하였다. 또는, 연구자에 따라서 빈곤횟수에 따라서 빈곤의 일시성(one-off)은 1회, 반복(recurrent)은 2회, 단기(short-term)는 3회, 지속(persistent)은 4회, 장기(long-term)는 3~4회로 구분하기도 하고, 일시빈곤층(transitional poor), 반복빈곤층(recurrent poor), 지속빈곤층(persistent poor)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 12년 동안 빈곤횟수가 1~2회를 일시빈곤 집단, 3~6회를 반복빈곤집단, 7~11회를 지속적 빈곤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 탈출 기준을 시장소득 기준의 균등화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상태에서 중위소득 80% 이상을 각각 1년 단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을 정의하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시 빈곤집단 모형 2의 동적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에서 ρ 에 대한 Likelihood-ratio test에서 $\chi^2(1) = 40.05$ 이고, 반복 빈곤집단 모형 2의 분석에서는 $\chi^2(1) = 45.95$ 로서 각각 1% 유의수준에서 $\rho=0$ 이라는 가설을 기각되어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 2가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속 빈곤 집단 모형 2의 분석결과에서는 ρ 에 대한 Likelihood-ratio test에서 1% 유의수준에서 $\rho=0$ 이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모형 1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시빈곤집단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가구 내 취업자 수와 총 근로소득 증가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나, 가구 내 가족 수는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특성으로는 성별은 남성,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 종사자 수가 5~9명과 종사자 수가 1,000명 이상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빈곤집단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가구 내 8세 미만 아동수와 70세 이상 가구원 수가 유의수준 각각 5%,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고, 총 근로소득 증가와 자산 증가가 유의수준 각각 1%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과 근로계약서 수령이 유의수준 각각 1% 수준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서비스 종사자는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빈곤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빈곤집단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인적특성으로는 18~34세 연령대와 비교하면 35~44세, 45~54세 연령대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 배우자가 있을 때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학력은 중졸과 대졸이 각각 10%, 5%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 증가하였다.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 내 취업자 수와 총 근로소득 증가와 자산증가가 유의수준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나, 가족 수는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였다.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나, 구직 횟수 증가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복적인 실업으로 단기간의 고용과 실업기간의 증가는 임금상실 등이 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사자 수가 19~69명인 사업체에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나,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였다.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빈곤주기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

	일시빈곤 집단 모형 1	일시빈곤 집단 모형 2	반복빈곤 집단 모형 1	반복빈곤 집단 모형 2	지속 빈곤집단 모형 1	지속빈곤 집단 모형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성별 (기준: 남성)	-0.141 (0.195)	-1.234** (0.573)	0.092 (0.121)	0.039 (0.238)	0.211 (0.195)	0.311 (0.273)
35~44세 (기준: 18-34세)	0.032 (0.330)	0.317 (0.633)	0.046 (0.199)	0.164 (0.312)	-1.104** (0.494)	-1.436** (0.612)
45~54세	0.172 (0.336)	0.261 (0.672)	0.294 (0.204)	0.384 (0.336)	-0.997** (0.508)	-0.957 (0.631)
55~70세	0.241 (0.345)	0.298 (0.700)	0.540** (0.214)	0.506 (0.353)	-0.806 (0.520)	-0.891 (0.650)
배우자 유무	-0.016 (0.208)	0.163 (0.381)	-0.162 (0.112)	-0.114 (0.209)	-0.095 (0.178)	-0.037 (0.250)
8세 미만 아동 수	0.135 (0.255)	0.126 (0.401)	-0.200 (0.171)	-0.654** (0.316)	-0.093 (0.187)	0.049 (0.294)
70세 이상 가구원 수	-0.070 (0.234)	-0.290 (0.405)	-0.186 (0.125)	-0.344* (0.193)	-0.408 (0.283)	-0.499 (0.383)
가구 내 취업자 수	0.226*** (0.081)	0.354*** (0.126)	0.104* (0.056)	-0.060 (0.079)	0.232*** (0.075)	0.222** (0.095)
가족 수	-0.185** (0.080)	-0.386*** (0.141)	-0.094* (0.057)	0.016 (0.089)	-0.119* (0.071)	-0.076 (0.095)
총 근로소득 증가	0.767*** (0.103)	1.317*** (0.169)	0.765*** (0.067)	1.310*** (0.102)	0.773*** (0.110)	1.799*** (0.171)
자산 증가	0.043 (0.104)	-0.014 (0.144)	0.112* (0.068)	0.143* (0.086)	0.317*** (0.109)	0.335** (0.137)
사적 소득증가	-0.227 (0.185)	-0.163 (0.276)	-0.016 (0.128)	0.200 (0.172)	0.300 (0.188)	0.130 (0.234)
가구주 관계 (1: 가구주)	-0.696** (0.304)	-0.600 (0.645)	-0.121 (0.179)	-0.189 (0.304)	0.192 (0.289)	-0.205 (0.372)
가구주 관계 (1: 배우자)	-0.264 (0.161)	-0.528 (0.394)	0.270*** (0.100)	0.227 (0.186)	0.315** (0.156)	0.159 (0.205)
건강상태 (1: 건강)	0.175 (0.195)	-0.146 (0.287)	0.039 (0.126)	0.139 (0.173)	0.089 (0.182)	0.190 (0.231)
학력별 더미 (1: 초졸 이하)	-0.266 (0.309)	-0.760 (0.724)	-0.139 (0.178)	-0.133 (0.311)	0.354 (0.263)	0.315 (0.321)
학력별 더미 (1: 중졸)	-0.210 (0.288)	-0.318 (0.684)	-0.313* (0.174)	-0.420 (0.303)	0.530* (0.271)	0.586* (0.335)

(표 계속)

〈표 4-37〉 빈곤주기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일시빈곤 집단 모형 1	일시빈곤 집단 모형 2	반복빈곤 집단 모형 1	반복빈곤 집단 모형 2	지속 빈곤집단 모형 1	지속빈곤 집단 모형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학력별 더미 (1: 고졸)	-0.178 (0.285)	-0.311 (0.674)	-0.246 (0.162)	-0.331 (0.279)	0.144 (0.247)	-0.011 (0.303)
학력별 더미 (1: 대졸)	-0.687* (0.372)	-0.750 (0.852)	0.032 (0.266)	-0.266 (0.440)	0.705** (0.313)	0.598 (0.395)
일 기술 수준 (1: 낮음)	-0.116 (0.128)	0.165 (0.188)	-0.032 (0.086)	0.121 (0.114)	0.015 (0.138)	0.080 (0.169)
근로시간 규칙 성(1: 규칙성)	0.309 (0.190)	0.401 (0.304)	0.041 (0.107)	0.095 (0.152)	-0.055 (0.176)	0.107 (0.221)
고용 안정성 (1: 고용 안정성)	0.125 (0.151)	0.273 (0.233)	0.075 (0.095)	0.044 (0.133)	0.157 (0.142)	0.040 (0.185)
로그 임금	0.714*** (0.158)	1.092*** (0.287)	0.778*** (0.095)	0.906*** (0.153)	0.625*** (0.148)	0.360* (0.205)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1: 수령)	-0.036 (0.128)	-0.003 (0.194)	0.421*** (0.095)	0.420*** (0.126)	0.178 (0.154)	0.367* (0.196)
직업훈련 참여 여부(1: 참여)	0.055 (0.209)	-0.295 (0.307)	0.122 (0.182)	0.089 (0.240)	-0.187 (0.322)	-0.241 (0.419)
구직 횟수	0.059 (0.056)	0.127 (0.130)	0.023 (0.030)	0.000 (0.052)	-0.173*** (0.061)	-0.229*** (0.077)
일용직-상용직 이동	-0.393 (0.418)	-0.396 (0.513)	0.026 (0.299)	-0.136 (0.366)	0.036 (0.507)	-0.051 (0.602)
일용직-임시직 이동	-0.430 (0.589)	-0.501 (0.769)	0.388 (0.414)	0.374 (0.505)	-	-6.086 (50,326.7)
비정규-정규직 이동	-0.362 (0.271)	-0.778** (0.371)	-0.177 (0.178)	-0.121 (0.221)	0.149 (0.325)	0.083 (0.405)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25-35시간)	-0.422 (0.401)	-0.547 (0.778)	0.371 (0.253)	0.154 (0.359)	0.449 (0.532)	1.118 (1.225)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36-45시간)	-0.533 (0.389)	-0.757 (0.770)	0.238 (0.246)	-0.005 (0.352)	0.272 (0.527)	0.974 (1.219)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46-56시간)	-0.799** (0.377)	-1.089 (0.760)	0.095 (0.240)	-0.050 (0.344)	0.453 (0.522)	1.233 (1.216)
근속 기간	0.020 (0.022)	-0.035 (0.040)	-0.008 (0.005)	-0.02** (0.009)	-0.020 (0.027)	-0.058 (0.035)

(표 계속)

<표 4-37> 빈곤주기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일시빈곤 집단 모형 1	일시빈곤 집단 모형 2	반복빈곤 집단 모형 1	반복빈곤 집단 모형 2	지속 빈곤집단 모형 1	지속빈곤 집단 모형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근속 기간 제곱	-0.000 (0.001)	0.002 (0.001)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2 (0.001)
종사자 수 더미 (1 : 1~4명)	-0.366 (0.323)	-0.525 (0.501)	-0.091 (0.225)	-0.143 (0.297)	0.548 (0.443)	0.250 (0.514)
종사자 수 더미 (1 : 5~9명)	-0.464 (0.316)	-0.973** (0.478)	-0.327 (0.228)	-0.417 (0.302)	0.417 (0.467)	0.270 (0.547)
종사자 수 더미 (1 : 10~69명)	-0.392 (0.303)	-0.586 (0.455)	-0.164 (0.227)	-0.171 (0.294)	0.982** (0.451)	0.603 (0.528)
종사자 수 더미 (1 : 1,000명 이상)	-0.362 (0.275)	-0.919** (0.417)	0.085 (0.212)	-0.004 (0.276)	0.560 (0.431)	0.426 (0.504)
고용보험가입 여부(1: 가입)	-0.112 (0.135)	0.260 (0.224)	-0.276** (0.085)	-0.367** (0.124)	-0.071 (0.144)	-0.045 (0.187)
직장소재지 (1: 광역시)	0.081 (0.125)	0.332 (0.259)	0.070 (0.078)	-0.059 (0.128)	0.116 (0.133)	0.040 (0.169)
직종별 더미 (1: 서비스 종사자)	-0.172 (0.299)	0.244 (0.568)	-0.51*** (0.184)	-0.483* (0.290)	-0.666** (0.266)	-0.480 (0.325)
직종별 더미 (1: 판매종사자)	-0.331 (0.313)	-0.399 (0.559)	-0.405** (0.206)	-0.321 (0.336)	-0.350 (0.439)	-0.490 (0.535)
직종별 더미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0.378 (0.286)	-0.585 (0.539)	-0.190 (0.161)	-0.104 (0.260)	-0.239 (0.224)	-0.278 (0.292)
직종별 더미 (1: 기계조작 및 조 립 기능사)	-0.714*** (0.267)	-0.558 (0.503)	-0.054 (0.152)	-0.067 (0.244)	-0.085 (0.200)	-0.112 (0.264)
직종별 더미 (1: 단순노무자)	-0.398 (0.252)	-0.447 (0.461)	-0.229 (0.148)	-0.245 (0.243)	-0.144 (0.201)	-0.258 (0.255)
업종별 더미 (1: 제조업)	-0.044 (0.181)	-0.336 (0.337)	0.147 (0.103)	0.232 (0.171)	-0.024 (0.167)	0.067 (0.222)
업종별 더미 (1: 건설업)	-0.038 (0.224)	0.198 (0.454)	-0.097 (0.119)	-0.007 (0.192)	-0.160 (0.229)	0.184 (0.294)
업종별 더미 (1: 판매업)	0.166 (0.238)	0.025 (0.417)	0.003 (0.184)	-0.001 (0.282)	-0.085 (0.338)	0.148 (0.410)
업종별 더미 (1: 숙박·음식점업)	-0.246 (0.255)	-0.851* (0.493)	0.218 (0.151)	0.142 (0.234)	0.465* (0.247)	0.423 (0.303)

(표 계속)

〈표 4-37〉 빈곤주기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일시빈곤 집단 모형 1	일시빈곤 집단 모형 2	반복빈곤 집단 모형 1	반복빈곤 집단 모형 2	지속 빈곤집단 모형 1	지속빈곤 집단 모형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연도별 더미 (1 : 2005년)		0.036 (0.362)		-0.153 (0.216)		-0.398 (0.324)
연도별 더미 (1 : 2006년)		-0.238 (0.351)		-0.347* (0.210)		0.179 (0.316)
연도별 더미 (1 : 2007년)		0.276 (0.361)		-0.004 (0.206)		0.122 (0.300)
연도별 더미 (1 : 2008년)		-0.448 (0.333)		-0.050 (0.198)		-0.010 (0.294)
연도별 더미 (1 : 2009년)		-0.043 (0.330)		0.067 (0.196)		0.198 (0.297)
연도별 더미 (1 : 2010년)		-0.203 (0.316)		-0.123 (0.193)		-0.067 (0.301)
연도별 더미 (1 : 2011년)		-0.119 (0.310)		-0.168 (0.187)		-0.018 (0.278)
연도별 더미 (1 : 2012년)		0.184 (0.321)		0.006 (0.186)		-0.271 (0.275)
연도별 더미 (1 : 2013년)		-0.021 (0.308)		0.081 (0.186)		-0.074 (0.264)
t-1 빈곤 상태 (1: 빈곤)		-0.464* (0.256)		-0.999*** (0.114)		-1.546*** (0.163)
t-2 빈곤 상태 (1: 빈곤)		-0.223 (0.232)		-0.130 (0.100)		-0.500*** (0.138)
1기 빈곤 상태 (1:빈곤)		1.056*** (0.395)		0.248* (0.132)		0.107 (0.149)
상수항	-1.470 (1.005)	-2.155 (1.909)	-4.17*** (0.625)	-4.503*** (1.001)	-4.690*** (1.037)	-3.530** (1.745)
/lnsig2u		-0.211 (0.33)		-0.941*** (0.25)		-13.67 (24.65)
ρ		.45 (0.08)		.28 (0.51)		1.16 (0.00)
Log likelihood	-429.8	-309.3	-989.8	-749.9	-406.8	-267.1
LR(Wald) chi2()	125.2(40)	107.1(61)	353.9(49)	275.7(61)	179.7(48)	193.8(61)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Pseudo R2	0.15		0.15		0.18	
obs	853	737	1695	1466	761	668

주: 1) legend: * p<.1; ** p<.05; *** p <.01.

2) 표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2) 빈곤 탈출 집단 분석

빈곤의 동태성을 고려하여 빈곤횟수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하였다면, 빈곤 탈출 횟수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기간 12년 동안 빈곤 탈출 횟수가 0~4회를 일시빈곤탈출 집단, 5~7회를 반복빈곤탈출 집단, 8~11회를 지속빈곤탈출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로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빈곤 탈출 기준을 시장소득 기준의 균등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 상태에서 중위소득 80% 이상을 각각 1년 단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을 정의하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시 빈곤탈출집단과 반복빈곤탈출집단, 지속빈곤탈출집단 모형 2의 동적확률효과 프로빗 분석에서 각각 ρ 에 대한 Likelihood-ratio test의 유의확률이 1% 유의수준에서 $\rho=0$ 이라는 가정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1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시빈곤탈출 집단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인적특성으로는 연령대는 18~34세에 비해 35~44세 연령대와 배우자가 있을 때 각각 유의확률 10%,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으로는 70세 이상 가구원 수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나, 가구 내 취업자 수와 가구 수는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였다. 소득은 총 근로소득과 사적소득 증가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였다.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과 유의수준 1% 수준에서 구직 횟수, 고용보험 가입 1%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종에서는 서비스 종사자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업종에서는 판매업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빈곤탈출집단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18~34세 연령대가 35~44세, 45~54세, 55~70세보다 각 유의수준 10%, 1%, 1%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고, 가구 내 가구주이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 내 취업자 수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총 근로소득과 자산증가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탈출 확률 증가하고, 가구원 수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과 근로계약서 수령이 유의수준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 증가하고 구직 횟수 증가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에서는 판매업 5% 수준에서 직종에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빈곤 탈출 집단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인적특성으로는 가구 내 가구주이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였다.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 내 취업자 수와 총 근로소득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 증가, 가구원 수는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였다.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과 근로계약서 수령이 유의수준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였고, 구직 횟수 증가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였다. 직종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였다. 업종에서는 제조업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빈곤 탈출 주기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

	일시빈곤 탈출집단 모형 1	일시빈곤 탈출집단 모형 2	반복빈곤 탈출집단 모형 1	반복빈곤 탈출집단 모형 2	지속빈곤 탈출집단 모형 1	지속빈곤 탈출집단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성별 (기준:남성)	-0.035 (0.166)	0.082 (0.243)	0.054 (0.130)	-0.183 (0.171)	-0.077 (0.226)	-0.239 (0.377)
35~44세 (기준:18~34세)	-0.553* (0.325)	-0.964** (0.433)	0.474* (0.246)	0.146 (0.304)	-0.043 (0.351)	0.295 (0.500)
45~54세	-0.444 (0.335)	-0.662 (0.445)	0.718*** (0.250)	0.055 (0.320)	-0.102 (0.361)	0.387 (0.519)
55~70세	0.105 (0.344)	-0.242 (0.459)	0.958*** (0.259)	0.172 (0.332)	-0.199 (0.374)	-0.083 (0.540)
배우자 유무	-0.452*** (0.163)	-0.493** (0.226)	0.075 (0.120)	0.172 (0.154)	0.177 (0.208)	0.322 (0.301)
8세 미만 아동수	0.042 (0.164)	0.065 (0.244)	0.165 (0.191)	-0.214 (0.284)	0.162 (0.267)	0.586 (0.411)
70세 이상 가구원 수	-0.566** (0.235)	-1.014*** (0.312)	0.074 (0.138)	0.115 (0.164)	-0.445* (0.262)	-0.622* (0.337)
가구 내 취업자 수	0.121* (0.070)	0.005 (0.087)	0.134** (0.060)	0.049 (0.071)	0.317*** (0.092)	0.313*** (0.116)
가족 수	0.127* (0.069)	0.238*** (0.089)	-0.253*** (0.060)	-0.194*** (0.075)	-0.066 (0.089)	-0.203* (0.112)
총 근로소득 증가	0.818*** (0.099)	1.452*** (0.135)	0.792*** (0.075)	1.250*** (0.098)	0.974*** (0.115)	1.647*** (0.186)
자산 증가	0.108 (0.097)	0.069 (0.116)	0.266*** (0.076)	0.288*** (0.089)	-0.009 (0.112)	-0.055 (0.139)
사적 소득증가	0.466*** (0.178)	0.429** (0.208)	0.018 (0.130)	0.073 (0.150)	-0.015 (0.218)	-0.080 (0.268)
가구주 관계 (1: 가구주)	0.251 (0.232)	0.134 (0.297)	-0.696*** (0.207)	-0.327 (0.259)	-0.608* (0.359)	-0.916* (0.514)
가구주 관계 (1:배우자)	0.270** (0.128)	0.230 (0.179)	-0.159 (0.113)	-0.055 (0.147)	-0.288 (0.203)	-0.328 (0.319)
건강상태 (1: 건강)	0.087 (0.184)	0.311 (0.230)	-0.035 (0.123)	-0.213 (0.146)	-0.052 (0.266)	-0.014 (0.339)
학력별 더미 (1:초졸 이하)	0.089 (0.289)	-0.057 (0.330)	-0.149 (0.180)	0.068 (0.210)	0.152 (0.342)	0.161 (0.487)
학력별 더미 (1: 중졸)	0.117 (0.290)	-0.241 (0.332)	0.023 (0.173)	0.110 (0.200)	0.104 (0.336)	0.141 (0.477)

(표 계속)

<표 4-38> 빈곤 탈출 주기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일시빈곤 탈출집단 모형 1	일시빈곤 탈출집단 모형 2	반복빈곤 탈출집단 모형 1	반복빈곤 탈출집단 모형 2	지속빈곤 탈출집단 모형 1	지속빈곤 탈출집단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학력별 더미 (1: 고졸)	0.030 (0.263)	-0.317 (0.295)	0.165 (0.168)	0.247 (0.192)	-0.045 (0.317)	-0.050 (0.451)
학력별 더미 (1: 대졸)	0.536 (0.343)	-0.064 (0.412)	-0.100 (0.276)	-0.239 (0.306)	-0.154 (0.387)	-0.254 (0.532)
일 기술 수준 (1: 낮음)	-0.115 (0.125)	-0.036 (0.148)	0.102 (0.096)	0.132 (0.112)	0.092 (0.132)	0.253 (0.165)
근로시간 규 칙성 (1: 규칙성)	-0.031 (0.165)	0.029 (0.205)	0.066 (0.116)	0.077 (0.140)	0.024 (0.206)	0.198 (0.256)
고용 안정성 (1: 고용 안정성)	0.225 (0.130)	0.067 (0.162)	0.065 (0.107)	0.149 (0.129)	-0.146 (0.172)	-0.288 (0.224)
로그 임금	0.724*** (0.140)	0.560*** (0.184)	0.592*** (0.106)	0.570*** (0.138)	0.793*** (0.165)	1.009*** (0.237)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 (1: 수령)	-0.057 (0.136)	0.028 (0.160)	0.328*** (0.108)	0.284** (0.124)	0.439*** (0.149)	0.309* (0.180)
직업훈련 참여 여부 (1: 참여)	0.028 (0.264)	-0.002 (0.303)	-0.323 (0.201)	-0.725*** (0.232)	0.376 (0.276)	0.366 (0.325)
구직 횟수	-0.159*** (0.052)	-0.132** (0.062)	-0.076** (0.037)	-0.120*** (0.044)	0.007 (0.051)	-0.024 (0.064)
일용직-상용직 이동	0.279 (0.478)	0.149 (0.564)	-0.319 (0.315)	-0.323 (0.353)	0.096 (0.499)	-0.235 (0.609)
일용직-임시직 이동	0.078 (0.870)	0.345 (1.005)	0.284 (0.459)	0.235 (0.514)	-0.525 (0.532)	-0.531 (0.605)
비정규-정규 직 이동	0.031 (0.303)	-0.051 (0.348)	-0.290 (0.206)	-0.193 (0.232)	-0.103 (0.282)	-0.017 (0.349)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25-35 시간)	0.013 (0.378)	-0.140 (0.488)	0.268 (0.308)	0.312 (0.396)	-0.090 (0.421)	-0.566 (0.579)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36-45 시간)	-0.029 (0.372)	0.020 (0.481)	0.282 (0.301)	0.103 (0.388)	-0.285 (0.420)	-0.865 (0.580)
근로시간 더미 (1: 주당 46-56 시간)	0.294 (0.364)	0.296 (0.476)	0.043 (0.294)	-0.033 (0.382)	-0.477 (0.413)	-1.025* (0.574)

(표 계속)

<표 4-38> 빈곤 탈출 주기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일시빈곤 탈출집단 모형 1	일시빈곤 탈출집단 모형 2	반복빈곤 탈출집단 모형 1	반복빈곤 탈출집단 모형 2	지속빈곤 탈출집단 모형 1	지속빈곤 탈출집단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근속 기간	-0.002 (0.009)	-0.09 (0.011)	-0.010* (0.006)	-0.016** (0.007)	0.035 (0.029)	-0.048 (0.038)
근속 기간 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2 (0.001)
종사자 수 더미 (1 : 1~4명)	0.344 (0.377)	0.162 (0.419)	-0.297 (0.245)	-0.203 (0.282)	0.140 (0.350)	0.387 (0.404)
종사자 수 더미 (1 : 5-9명)	0.108 (0.393)	0.092 (0.436)	-0.412 (0.251)	-0.378 (0.287)	-0.352 (0.351)	-0.230 (0.413)
종사자 수 더미 (1 : 10-69명)	0.416 (0.375)	0.336 (0.413)	0.036 (0.251)	0.070 (0.288)	-0.272 (0.340)	0.047 (0.400)
종사자 수 더미 (1 : 100명 이상)	0.365 (0.360)	0.164 (0.396)	-0.122 (0.228)	-0.135 (0.262)	-0.016 (0.315)	0.307 (0.368)
고용보험가입 여부(1: 가입)	-0.348*** (0.127)	-0.404** (0.161)	-0.112 (0.096)	-0.079 (0.116)	-0.087 (0.140)	-0.022 (0.184)
직장소재지 (1: 광역시)	0.107 (0.116)	0.012 (0.139)	-0.022 (0.085)	-0.034 (0.099)	0.034 (0.149)	0.149 (0.185)
직종별 더미 (1: 서비스 종 사자)	-0.632** (0.284)	-0.169 (0.339)	-0.283 (0.199)	-0.411* (0.226)	0.360 (0.277)	0.434 (0.368)
직종별 더미 (1: 판매종사자)	-0.612** (0.311)	-0.416 (0.376)	-0.581** (0.263)	-0.649** (0.305)	0.383 (0.295)	0.879** (0.402)
직종별 더미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	-0.349 (0.249)	0.019 (0.325)	0.103 (0.164)	0.234 (0.200)	-0.551** (0.266)	-0.563 (0.363)
직종별 더미 (1: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사)	-0.160 (0.221)	0.135 (0.288)	0.014 (0.153)	0.074 (0.181)	-0.281 (0.241)	-0.362 (0.324)
직종별 더미 (1: 단순노무자)	-0.147 (0.218)	0.035 (0.282)	-0.147 (0.157)	-0.216 (0.185)	0.184 (0.229)	0.186 (0.303)
업종별 더미 (1: 제조업)	0.088 (0.153)	-0.063 (0.192)	-0.051 (0.118)	-0.170 (0.141)	0.417** (0.183)	0.536** (0.242)

(표 계속)

〈표 4-38〉 빈곤 탈출 주기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일시빈곤 탈출집단 모형 1	일시빈곤 탈출집단 모형 2	반복빈곤 탈출집단 모형 1	반복빈곤 탈출집단 모형 2	지속빈곤 탈출집단 모형 1	지속빈곤 탈출집단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업종별 더미 (1: 건설업)	-0.054 (0.204)	-0.107 (0.263)	-0.143 (0.133)	-0.176 (0.159)	0.108 (0.229)	0.592* (0.321)
업종별 더미 (1: 판매업)	0.430* (0.248)	0.648** (0.294)	0.327 (0.215)	0.276 (0.245)	-0.020 (0.252)	-0.616* (0.324)
업종별 더미 (1: 숙박· 음식점업)	0.120 (0.234)	0.094 (0.269)	0.252 (0.177)	0.109 (0.207)	-0.434* (0.230)	-0.508* (0.279)
연도별 더미 (1 : 2005년)		-0.267 (0.279)		-0.278 (0.217)		-0.082 (0.349)
연도별 더미 (1 : 2006년)		-0.164 (0.280)		-0.475** (0.213)		-0.209 (0.337)
연도별 더미 (1 : 2007년)		-0.072 (0.264)		-0.136 (0.211)		0.317 (0.343)
연도별 더미 (1 : 2008년)		-0.290 (0.268)		-0.197 (0.202)		0.076 (0.322)
연도별 더미 (1 : 2009년)		0.230 (0.256)		-0.097 (0.201)		0.052 (0.323)
연도별 더미 (1 : 2010년)		-0.000 (0.255)		-0.524*** (0.202)		0.339 (0.325)
연도별 더미 (1 : 2011년)		-0.062 (0.240)		-0.346* (0.194)		0.264 (0.342)
연도별 더미 (1 : 2012년)		-0.304 (0.235)		-0.200 (0.199)		0.252 (0.328)
연도별 더미 (1 : 2013년)		0.011 (0.224)		-0.014 (0.201)		-0.343 (0.299)
t-1 빈곤 상태 (1: 빈곤)		-0.890*** (0.132)		-1.024*** (0.114)		-1.322*** (0.220)
t-2 빈곤 상태 (1: 빈곤)		-0.156 (0.125)		-0.431*** (0.100)		-0.033 (0.176)
1기 빈곤 상태 (1: 빈곤)		0.361*** (0.133)		0.051 (0.095)		0.889*** (0.217)
상수항	-5.196*** (0.956)	-4.156*** (1.228)	-3.068*** (0.677)	-1.990** (0.879)	-3.279*** (1.105)	-4.042*** (1.509)

(표 계속)

<표 4-38> 빈곤 탈출 주기 집단별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계속)

	일시빈곤 탈출집단 모형 1	일시빈곤 탈출집단 모형 2	반복빈곤 탈출집단 모형 1	반복빈곤 탈출집단 모형 2	지속빈곤 탈출집단 모형 1	지속빈곤 탈출집단 모형 2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lnsig2u		-13.233 (22.150)		-13.305 (19.196)		-12.207 (29.469)
ρ		1.79 (0.00)		1.67 (0.00)		5.00 (0.00)
Log likelihood	-488.92	-354.72	-796.02	-596.21	-357.17	-245.62
LR (Wald) chi2()	186.21(49)	188.9(61)	289.26(49)	299.5(61)	182.6(49)	137.3(61)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Pseudo R2	0.16		0.15		0.20	
obs	984	840	1367	1173	961	858

주: 1) legend: * p<.1; ** p<.05; *** p <.01.

2) 표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제17차 자료

제5절 소결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6차부터 17차까지 총 12년 동안 자료를 사용하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균등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여 임금근로자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빈곤 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빈곤 지위 이행확률 분석에서 빈곤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빈곤한 상태로 유지하는 확률은 10~11차에서 44.13%로 낮아졌다가 11~12차부터 다시 점차 증가하여 16~17차에는 63.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서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 탈출에서 연속하여 빈곤 탈출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6~7차에서는 49%에서 79%로 상승하였다. 즉, 빈곤에서 빈곤 탈출 확률은 줄어들지만, 빈곤 탈출에서 빈곤 탈출을 유지하는 확률은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 상태를 직업력의 형태로 살펴보기 위해 배열분석으로 상위 10개의 패턴을 살펴보면 14(임금근로자-비경활) 패턴이 34.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임금근로자) 패턴이 18.94%, 134(임금근로자-실업자-비경활) 패턴이 13.4%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근로빈곤층은 임금근로자에서 실업자로의 이동보다 비경활로 이동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근로빈곤의 동태적 결정요인을 분석방법은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과 함께 최근에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과 초기 상태(initial conditions)를 고려한 동태적 확률효과모델(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s)이다.

빈곤 탈출의 기준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균등화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 상태에서 중위소득 80% 이상을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이행하는 것을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년 단위로 빈곤 탈출 결정요인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은 총 근로소득 증가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증가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자산 증가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분석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임금의 증가와 근로계약서 수령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분석에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근로계약서 수령은 시장소득 기준에서는 26.5%,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31.1% 증가하는 나타나 근로조건 보호의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2년 단위로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총 근로소득 증가와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자산 증가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내에 취업자 수의 증가와 근로소득의 증가가 빈곤 탈출에 확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특성에서는 건강상태가 건강할수록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각각 유의수준 5%와 10%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에서 임금 증가와 근로시간이 규칙적일수록 유의수준 1% 수준에서, 근로계약서 수령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에는 인적특성에서 건강상태는 빈곤 탈출 2회 기준에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 증가와 근로시간 규칙적인 때 빈곤 탈출 1회와 2회 기준 분석에서 동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에는 18~34세 연령대와 비교하면 35~44세 연령대는 빈곤 탈출 1회 기준에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에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감소로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빈곤 탈출 1회와 2회 기준 분석에서 임금 증가와 근로계약서 수령은 각각 유의수준 1%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기간이 증가할 때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였다.

연령대별에 따라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8~39세 연령대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 분석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과 소득증가의 특성 외에는 노동시장 요인으로 빈곤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명확하지 않아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 요인에 관해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40~49세의 연령대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에는 구직횟수 증가는 빈곤 탈출 확률이 감소하여 고용 안정성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18~39세의 연령대에서는 빈곤의 상태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0~49세 연령대에서는 t-1과 t-2의 빈곤 상태가 1% 유의한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 상태의 상태 의존성의 영향을 받게 되는 연령대로서 빈곤에 진입할 때 빈곤 탈출에 어려움이 시작되는 연령대로 추측할 수 있다. 즉, 18~39세 연령대에서는 빈곤 탈출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40대 이후에도 계속하여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18~39세의 청년층에게 맞는 근로빈곤 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50~60대 연령대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으로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임금 증가와 근로계약서 수령 여부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고, 61~70대 연령대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에는 고용보험 가입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고, 판매종사자,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할 때 각각 유의수준 5%와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빈곤 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분석에서 61~70세대에서만 자산 증가가 빈곤 탈출에 유의하지 않아 지금 현재 고령층의 빈곤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연령대에서는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을 동시에 함께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근로빈곤층의 탈출요인은 가구 단위에서 총 근로소득과 취업자 수 증가로서 취업을 촉진하는 고용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였듯이 취업 자체만으로는 빈곤 탈출을 할 수 없고 고용안정성과 임금 상승, 근로시간에 맞는 근로조건 보호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 분석결과에서도 근로계약서 수령은 빈곤 탈출에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근로계약서 수령은 고용기간과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조건 보호에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은 최저임금제 준수,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근로조건 보호 등의 정책과 함께, 취업자에서 실업이나 비경활로 이행한 후에는 이른 시일 내에 취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주요 업종은 제조업이 17.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건설업이 11.52%, 숙박·음식점업이 7.97%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건설업 고용계수는 2006년 10.7명에서 2014년 5.9명으로 44.9% 감소했고,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2006년 15.2명에서 2014년 10.2명으로 32.8%가 줄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술발전과 기술변화로 인해 숙련 편향적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와 숙련·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 확대, 해외 아웃소싱

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산업구조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단순히 취업 알선을 넘어서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숙련향상 등의 서비스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자산빈곤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근로소득 빈곤 접근에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근로빈곤 측정의 문제이다. 노동패널 가구원이 증가하게 되면 빈곤선 측정 시 가처분소득을 가구원 수로 계산하여 균등화 소득을 계산할 때 가구원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빈곤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구원 수에는 동거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에 빈곤이 과잉 추정될 소지가 있다. 또한, 가구는 빈곤하나 빈곤하지 않은 개인도 포함하게 된다. 근로빈곤층 가구의 가구원은 어느 기준에 따라 제외할 것인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가구 단위의 빈곤측정에서 소득항목에서 일부 결측치가 있어 근로빈곤 측정에 한계를 가진다.

둘째는 본 근로빈곤 대상에는 정규직 비중이나, 상용직 비중, 고용보험 가입 비율 등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통계상 결측치가 30% 차지하고 있어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에서 결측치를 제거하고 분석하게 되면 많은 연구대상자가 누락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결측치로 인해 기초 분석결과에 일부 한계를 가진다.

제5장

고용서비스와 근로빈곤 사례연구 -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제1절 고용서비스 제공자 인터뷰

1.1.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설계

FGI(Focus Group Interviewing) 대상으로 시군구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에서 고용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섭외하였다. 총 3회에 걸쳐 FGI를 실시하였는데, 1차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등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유관 경력이 오래된 팀장급 정도의 관리자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차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고용센터 상담사 4명, 3차는 서울지역의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사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차수별 개요는 <표 5-1>과 같다.

<표 5-1> FGI 차수별 개요

	1차	2차	3차
일시	2016.5.27. 15:00~17:10	2016.6.6. 14:00~16:00	2016.6.17. 19:00~21:00
장소	서울 용산구 Park 빌딩 4층 좌담회룸	대전 서구 괴정동 오렌지타운 611호 좌담회룸	서울 용산구 Park 빌딩 4층 좌담회룸
대상자	수도권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팀장급 7명	비수도권 고용센터 상담사 4명	수도권 민간위탁기관 상담사 4명
진행	연구진 2명	연구진 1명	연구진 1명

인터뷰는 반구조화한 설문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관련 업무 경력,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취업성공 패키지 제반 업무(사례 발굴, 간담회, 유관기관과 연계, 밀착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매칭되는 일자리의 특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특성, 취업 장애요인,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5-2>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FGI 반구조화 설문지

영역	질문
개인사항	0 연령, 근무연수
	0 업무범위, 주요 업무, 근로빈곤층 관련 업무내용
기관의 역할	0 주요 기능, 기능 범위, 근로빈곤층 관련 업무 범위
업무	0 업무 분장(취성패-취성패 외, 취성패 담당자: 상담-밀착사례관리-유관기관 연계-홍보·발굴 등) 0 담당업무별 업무량(수급자 상담, 비수급자 상담), 1인당 담당 사례 수

(표 계속)

〈표 5-2〉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FGI 반구조화 설문지(계속)

취업성공패키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급 참여자 발굴 방법(홍보 등), 발굴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발굴의 필요성 인식 ○ 비수급 참여자 발굴을 위한 타 기관 협력사례(시군구, 읍면동, 기타 유관기관) ○ 민간위탁기관 홍보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개최와 활용(서비스 연계, 홍보 등), 간담회의 실효성, 간담회 참가범위, 간담회 주기(월 1회)에 대한 인식
	유관기관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대상 추천서 추천서 작성 등 과정의 애로사항 ※ 추천기관(대상자 선별 → 대상자 추천) → 고용센터(접수, 대상자 연락 → 처리결과 통보) ○ 대상자 확인(소득확인) 상 애로사항, 개선방안(사통망 연계 등) ※ 현재 건강보험 자료 확인 ○ 복지욕구 파악 방법, 복지서비스 연계과정의 애로사항 ○ 지역의 복지자원 인지, 정보수집 경로, 지침 이외의 복지자원과의 연계상황 ○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정례적 미팅(통합사례회의) 주요 논의 내용, 실효성
	민간위탁기관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기관이 주로 담당했던 특정취약계층(장애인, 노숙인,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등)에 대한 이해 ○ 이들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성, 노하우 등 활용방식, 제안사항
	밀착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설명 ○ 밀착사례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2,3단계 진행 중 복지욕구가 발생한 경우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참여 발생 빈도, 재참여 발생 원인 ○ 재참여자에 대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방식, 사후관리의 정도, 애로사항, 자립지원상담사와 업무분담
	중도탈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완료율 제고 방안 ※ 3단계 완료시 고용의 질 높아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칭되는 일자리 수준, 취업성공수당과 관계 ※ 취업성공수당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취업패 I 유형 취업일자리 1/3 초과 	

(표 계속)

<표 5-2>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FGI 반구조화 설문지(계속)

대상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수급자 - 비수급 참여자의 태도 차이 ○ 지자체로부터 이관 사례자, 자체발굴 사례자, 스스로 찾아온 사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장단점, 각각의 어려운 점 ○ 발굴,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형(근로빈곤 해소를 위해)
취업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장애요인으로 생각되는 것(가정배경과 환경) ○ 연령대별, 수급여부별 취업장애요인이 다른가? ○ 취업의지, 직업능력, 취업기술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직업훈련 참여자 취업률 저조한 가장 큰 이유?
서비스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의 공공고용서비스 이용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 ○ 공공고용서비스 수혜자 증가를 위한 방안? ○ 취약 정도에 따른 개인별 심층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가?
근로빈곤 해소대책으로 고용서비스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의 역할 ○ 취업성공패키지의 효과? 개선방안? ○ 고용서비스 실효성(근로빈곤 해소, 근로빈곤 예방)을 높이기 위한 방안(서비스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방식) ○ 현재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간 역할 정립(현행 유지, 통합, 새로운 (전담)조직 신설 등) ○ 고용서비스 이외의 근로빈곤 해소 방안(교육훈련, 도제제도, 교육제도, 기업정책, 최저임금 및 복지제도 등)
근로빈곤층 인터뷰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경험한 가장 안타까운 사례, 가장 인상적인 사례 ○ 인터뷰 적합 대상자 유형 추천 ○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근로빈곤층 유형(기관별 교차 추천)

1.2. 주요 결과

상기의 반구조화 설문 내용을 토대로 하되, 인터뷰 대상자들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강조했거나,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주요한 주제별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이 같은 재구조화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과를 정리하였다.

인터뷰에서 나온 주요한 키워드를 열거하고, 키워드들이 상징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다시 정책적 관점에서의 의미단위로 분류해보면 <표 5-3>과 같다.

<표 5-3> 주요 키워드와 의미단위 분류

키워드	내용	의미단위
물량	참여자수, 매칭 건수 위주의 제도운영	정책목표
근로유지	근로유지 위한 사례관리 부재	정책목표
발굴	참여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발굴수단 동원	정책목표
추경	추경예산에 따라 지침 변경	제도운영
과잉서비스	대상자 특성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도운영	제도운영
교육훈련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 내일배움카드	제도운영
취성패 수당	저소득 참여자 프로그램 잔류 위한 유인책	제도운영
일자리 기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 나온 일자리 기준	일자리 수준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적용 사업장 제재,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수준
전직상담 서비스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 위한 고용서비스	사례관리
기초보장, 자활	복지연계	연계
고용복지+센터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기관 연계	연계
서비스 제공자	직무평가체계, 역량강화, 인력, 배치, 처우	고용서비스 질

1.2.1. 정책목표

1) 물량

인터뷰 참여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물량위주의 정책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는 1유형만 하고 있는데, 민간은 2유형을 하게 되면 120명 제한, 1유형은 80명 제한하지만, 고용센터는 1인당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오는 인원은 무제한으로 받으니까, 목표인원에 따라서 우리는 모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목표인원이 오게 되면 계속 배당하고 있는 거죠. (1차. 고용센터 담당자)

그런데 쓰나미로 인원이 막 몰려들 때, 솔직히,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상담사로서도 양심에 걸릴 정도로, 막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라포 형성 자체가 잘 안 되니까, (...) 제가 처음에 청년뉴스타트 할 때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 대해 관리했을 때 느낌과 취업패의 청년층을 관리했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3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상담사들은 집중하고 부분이 있어요, 참여자들에게 진정으로 상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가치, 방향을 잡아 나가고 싶는데 취업패는 정말, 몰랑, 해내기만 바쁜, 그럴 때는 내가 이 일을 정말 계속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이 힘든 것보다는 그런 부분. (3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사전단계에서의 상담은 취업패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상담의 역할과 효과를 강조했다. 취약집단의 가장 큰 취업 장애요인으로 취업의지가 꼽히고 있는데, 집단상담은 취업의지를 높이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집단상담이 취업의지를 강화하는데,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1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집단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바는, 고령자든, 중장년이든, 청년이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정보에도 취약해요.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내 눈 앞의 일 밖에 몰라요. 그런데 집단상담에 일단 참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이해, 눈높이도 맞추고 (1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또한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가 직업훈련이 필요한지, 일 경험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고,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 좋은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초기 상담을 통한 적절한 프로그램 배치가 성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량위주의 정책은 고용서비스의 상담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저희가 한, 8천명, 5천명. 저희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차. 고용센터 담당자)

이렇게 많은 물량이라도 성실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물량으로 측정되는 성과 위주의 평가체계는 온전히 상담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평가등급을 받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로능력 평가서를 내서, 1년 동안 내가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추진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을 받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단계 하면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 홍보도 못 나가고 뭐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전단계라는 업무를 해서, 인센티브는커녕, 아예 더. 오히려 더 낮아지는. (2차. 고용센터 담당자)

물량위주의 정책이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교육훈련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상자별 담당자를 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직과 인사이동이 잦은 이들에 대해서 대상자별 전담자 배치는 빠른 시간에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방법도 실적평가와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센터에서도 담당자 별로 전문성을 높이려고, 여성, 이렇게 나누게 했어요. 그런데 뭐가 걸렸냐, 실적에서 걸린 거예요.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데, 이게 센터 내 실적하고 걸리니까, 취업률이 높은 그런 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걸려서 다시 원위치가 되어 버렸죠. (2차. 고용센터 담당자)

따라서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취성패는 이제는 양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이 프로그램 안에 모든 여성가장이니, 기초생활수급자니, 청년층이니, 대학생재학생이니, 수급자별 개인 맞춤 서비스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사전단계도, 취성패도 이제는 양적으로 줄이고, 질적으로. (2차. 고용센터 담당자)

2) 근로유지

고용복지 정책으로서의 취성패의 중요한 역할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생계를 영위하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물량위주의 정책목표는 고용유지에는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후 1개월 이상 근속이면 취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단기 인턴, 특히 대학 재학생의 인턴십의 경우 실질적으로 안정된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율의 실적으로 잡히고 있다. 이것은 취성패의 고용유지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리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저희가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해야 할 점은, 학생들은 인턴, 기업에서 하는 학기 중 인턴, 1~2개월 인턴에 많이 참석하는데, 취성패는 고용보험 가입 후 1개월 이상이면 취업으로 종료가 되니까, 고용유지율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센터에도 요청했는데, 이걸 지침이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3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이처럼 이들 재학생 인턴까지 취업으로 분류되면 졸업 후 실제로 고용서비스가 필요할 시기에는 서비스가 종료되어 버려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처럼 지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3) 발굴

이렇게 많은 수의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집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야구장이나 박람회 등 행사장, 지하철 역 등이나 아파트 단지까지 홍보를 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는 대학에 분사무소를 설치해서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도 하다.

여차피 몇 년에 걸쳐서 물량에 대한 푸시를 많이 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야구장 꽃 박람회, 지하철역, 동사무소, 온갖 버스, 안 해본 데가 없어요. 아파트, 마트 (1차 고용센터 담당자)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아웃리치 방식의 모집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들에 따르면 훈련기관이나 지인의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패키지I 같은 경우는 모집량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 나가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데 실효성이 거의 없긴 해요. 아파트 단지 가서, 2천 가구네 뭐 해서 갔다 하더라도, 실지로 취업을 할 사람은 없고, 다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밖에 없는데. (2차. 고용센터 담당자)

제가 볼 때는 한 70%는 훈련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취업패로 들어오면 훨씬 더 메리트가 많으니까, 수당도 그렇고 혜택도 많고 (1차. 고용센터 담당자)

참여 신청을 받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을 알게 됐느냐 조사를 해서 저희도 통계를 내 보면,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1차. 고용센터 담당자)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취성패의 경우는 물량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어려운 학생들까지 무리해서 참여시키는 경우들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 청년고용이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청년취성패 실적에 대한 일정 정도 압박이 생기다보니 학업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대학 재학생까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다.

대학교 4학년을, 비경제활동 인구로 있는 사람들을 왜 지금 땡겨오느냐.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못해요. 패키지 기간이 1년 지원 아니냐. 그런데 이 4학년짜리를 3월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는 겨우 2-3개월 가 지고, 안 되는. 개네들은 2-3개월 지나면, 패키지 재참여 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하는데, 오히려 진정 패키지가 필요할 때는 못하고. (2차. 고용센터 담당자)

4학년 재학생을 다 참여시키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4학년 1학기는 안 시켜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학기 끝나고 참여를 시켜서 2학기 때부터 준비하게 하면. (...) 인력 때문에 재학생을 다 확대시켜서. (3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비효율적인 발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서비스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투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2. 제도운영

1) 추경 - 예산에 좌우되는 지침들

3차례 인터뷰 중에 ‘추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의 취성패 유형별 역할분담을 논의하는 과정, 유형별 물량 부담을 논의하는 과정, 그리고 내일배움카드와 희망리본사업과 관련한 대목에서 등장한 것인데, 상기 열거한 내용들이 추경 즉, 예산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에 따라 제도운영이 달라지게 되면 일선의 담당자는 물론, 참여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다. 그리고 참여시점의 차이에 따른 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2단계 중에, 내일배움카드라고 국비지원 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참여자는 전면 올해 중지. 카드 발급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순은 내일배움카드 저희 창구에서 홍보합니다. 센터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들은 카드 발급 받으려고 왔는데, 취성패에 참여시켜서 카드 안 나온다고 해요.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3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작년에는 추경 기준에서 그게 됐고, 올해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올해는 무조건 센터에 가야지. (1차. 고용센터 담당자)

14년도에 지금은 어차피 1유형을 했었고, 15년도에 2유형을 하다가, 추경에 다시 1유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1,2유형이 혼재 되어서 같이 가고 있죠. (1차. 고용센터 담당자)

2) 프로그램 유연화

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로 구성되며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 등 사전단계를 거쳐,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3단계를 모두 이수할 때 취업확률이 높아지고, 나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취업에 관한 역량이 모두 일률적이지 않아서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 단기간의 서비스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도 존재한다. 따라서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보다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키지가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하셨는데, 인센티브가 많으니까, 참여자 모집이 그래도 훈련기관보다 유리하다는 말씀이 일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의외로 패키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나 기간상의 문제 때문에 누수되는 청년들도 꽤 많습니다. (진행자: 누수라고 하면, 너무 길고 까다로워서?) 네. 그것 때문에 패키지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청년들은 오히려 짧은 훈련이나 금방 취업할 수 있는 훈련, 아니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훈련이 있다면, 굳이 패키지가 아니어도 갈 수 있는 훈련들이 꽤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패키지 아닌 다른 사업으로 흡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차. 고용센터 담당자)

똑같이 1단계 상담하고, 2단계 직업훈련하고 똑같이 3단계 취업알선. 이 프로그램 안에 모든 여성가장이니. 기초생활수급자니, 청년층이니, 대학생재학생이니, 수급자별 개인 맞춤 서비스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사전단계도, 취성패도 이제는 양적으로 줄이고, 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취성패, 그리고 누구를 위한 취성패, 이렇게 좀, 세분화 해서. (...) 1유형 중에서도 여성가장을 위한 취성패 해서, 그 분들은 어떻게 좀, 상담을 좀 더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밀착 사례처럼 어떤 프로그램은 꼭 넣고 한다든지 (2차. 고용센터 담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종의 맞춤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훈련기간이 길고, 훈련비용도 비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의 훈련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 수요도 많은 편이다. 그런데, 적성에 맞지 않는 참여자를 연계시킬 경우 출결상황이 좋지 않고,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감도 하락하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참여자의 입장에서 비용

이 들지 않으니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고,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들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갈 유인이 존재한다. 특히, 청년의 경우 국기를 유도하라는 방침이 있어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든 가능한 한 연계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청년 중에서도 긴 과정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선생님, 제 인생의 거의 1년을 훈련만 받는데, 그것도 9시부터 6시까지. 그거 자체가 자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짧은 과정을 들으려고 하니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해. 오히려 비싼 돈 내는 친구들은 공짜고, 짧은 과정으로 해서, 땀질해서 취업하려는 친구들은 자기 부담금도 내야 하고 그러니까. (3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국기의 경우 훈련효과가 전공분야와의 연관성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국기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청년은 무조건 국기로 유도하기 보다는 참여자의 전공이나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프로그램 참여유인

저소득층의 경우 취성패 참여에 따른 소득공백의 위험을 완전히 상쇄할 만큼의 참여유인이 필요하다. 취성패의 유인이란 취성패를 완료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나 프로그램 참여과정에 지원되는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수당)일 것인데, 둘 중 하나라도 현재의 소득상실의 기회비용을 상쇄하지 못한다면 참여유인은 떨어질 것이다.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예요. 나이가 청년 여성은, 나이가 젊으면 취업할 데가 많아요, 특히 안양은 중소기업이 많고, 되게 청년 여성을 많이 요구해요. 회계직이나 경리상으로, 알바보다는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동행면접을 한다든지, 날짜를 정하면, 안 나타난다거나, 내지는 정말 귀찮은 일자리가 있어서, 업체에 설명이 다 됐고, 가기만 하면 채용될 것 같은데, 저 알바가 있어서, 아르바이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 알바 하려고 취성패를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 그냥 알바 할래요. 취성패 안 할래요. (1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실제로 취업역량이 떨어지는 참가자의 경우 프로그램 3단계까지 완료했을 때의 취업의 성과는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 성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아무래도 3단계로 가게 되면 정보를 제공하든지, 대상자와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취업 후에도 사후관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분이 취업 후에 그 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고, 위탁기관들은 그게 위탁성공급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나은 일자리가 성공급여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특히나 더 신경 쓰시고, 센터는 또 평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탁기관도 그게 평가에 들어가 있고, (...) 아무래도 3단계로 하게 되면, 그 쪽에 집중적으로 취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1차. 고용센터 담당자)

1,2단계를 거치게 되면, 2단계 때 주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국가기간전략직종에 들어라든지, 고차원적이 내일배움카드를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게 가요. 임금수준이. 아무래서 2단계를 거치고, 능력을 배양한 사람들이 좋게 가기 때문에, 1단계에서 바로 팡 뛰어서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력만으로 그냥 취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서, 아무래도 단계별로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받고 가죠. (1차. 고용센터 담당자)

1.2.3. 일자리 수준

1) 좋은 일자리, 나은 일자리

기본적으로 고용서비스로 연계 되는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낮게 되면, 즉, 기초보장급여와 비교해 큰 우위를 갖지 않으면 복지제도에 잔류하게 될 유인이 커진다. 수급자들이 탈수급 할 경우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의료급여로 알려져 있다. 대상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와 해산·장제급여도 있고, 그 밖에 기초보장 수급자로서 받게 되는 부가적인 혜택(통신요금 감면 등)들도 있다. 따라서 취업을 통한 탈수급의 유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탈수급의 기회비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매칭되는 일자리의 수준으로는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주저하거나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직종을 맞춰놓고 평균을 내니까, 구직하고 구인 임금이 80몇 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겹이. 직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00만원, 130만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50만원 차이 나는 데도 있지만, 평균 죽 내니까, 구인 제시임금과 구직자 희망임금이 80만원 차이가 나요. (1차. 고용센터 담당자)

20대는 저희 학생, 어제 면담한 친구가 수급권자예요. 졸업하면 너 어떻게 일을 할 거니, 이런 거 얘기했는데, 답은 아버지가 하지 말랬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되냐고, 하니까, 지금 동생이 4년제 대학 다니고, 개가 2년제 다니고 아버지가 사이버로 학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직업을 갖게 되면, 4년제 대학 동생 등록금 안 나오지, 아버지 사이버 공부하는 거 못하지, 그리고 뺏도 안 되지, 안 되지 해서, 그래서 저는 취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1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일 안 하는 빈곤층이 봤더니, 근로빈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리로 안 가는 거지. 이걸 업으로 해서 위로 가야 하는 건데. 내가 일 해 봤자, 저렇게 될 건데, 왜 해? 그냥 이게 좋은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1차. 고용센터 담당자)

좋은 일자리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재취업을 위해 취성패로 다시 진입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일자리가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임금)과 기술습득 기회가 취성패가 제공하는 경제적 유인들(수당 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보다 낮지 않다고 판단하면 패키지로 회귀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취업했다가 이직해서 또 취성패로 다시 취업해야겠다. 이익이 많으니까. 취업하기도 쉽고, 고용촉진수당도 주니까, 다시 리턴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1차. 고용센터 담당자)

근로빈곤층을 탈출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일자리 자체가 근로유인형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노동시장 구조라든지, 최저임금 실태를 보면, 근로 유인을 하는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유인을 해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유지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근로를 단절시키는 지원책들이 더 많아요. 그게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1차. 고용센터 담당자)

2)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소득보장제도이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선을 설정한 것인데, 현실에서는 최저선이 상한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고용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구인업체들이 내걸고 있는 임금제시액이 최저임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전체적으로 저임금. 하향평준화시켰어요. 급여를 다. (1차. 고용센터 담당자)

일단 최저임금 놓고 보는 거죠. 업체들은. (1차. 고용센터 담당자)

제가 최근에 인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제조업이고 생산라인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걸 보고 제가 정말 너무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26만270원. 그때 딱. 왜냐하면 그건 쥐야 인턴 지원금이 나가니까. 정말 너무 한다, 130만원이라도 주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주는 거예요. (1차. 고용센터 담당자)

그런데, 제도상 고용주의 입장에서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더라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수요가 있는 한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유인이 크지 않다. 영세사업장일수록 더욱 그렇다. 150만원 이상이 되면 나는 일자리로 분류되어 추가지원이 있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150만원인 셈이다. 좋은 일자리 제공은 근로를 통한 탈빈곤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기준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저희가 취업처리 기준이 최저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그게 아닌 경우는 보류. 그리고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나은 일자리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거나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도 발견된다. 성공수당이나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인데,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이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특히, 민간위탁기관은 최저임금이거나 이에 미달하면 기관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인 성공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의 욕구가 큰 편이다. 그런데 법적·행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정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사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로 나오면, 저희는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선생님 이게 최저임금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안 된다,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3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고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지만 실제 미적용 비율은 오히려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000년대 초 5% 미만이었던 것이 2000년대 후반에 10%를 넘어, 2014년에는 12.1%까지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상봉, 2016).

해가 바뀌어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면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장려금이나 수당의 적절한 인상도 고려해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미적용의 법적, 윤리적, 사회보장적 측면의 해악을 차치하더라도 취성 패라는 제도만 놓고 볼 때 최저임금 적용여부는 제도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발시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1.2.4. 사례관리와 연계

1) 사례관리

취성패 참여자들의 참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 정기적인 연락을 통한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도 취업성공수당 등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사례관리를 받는다.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는 밀착사례관리의 대상이 되어, 각종 복지서비스의 연계대상이 된다. 이 같은 사례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논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발견된다. 먼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과 이직이다. 장기근속은 전문성을 향상시키지만 잦은 인사이동은 이를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자활센터 근무자들은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전문성이 높아지잖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와서, 저 이전의 담당자들은 거의 1년마다 바뀌고 다 나가고 하는 상황입니다. (...) 인원이 빠지고 나면 일당은 사람 모자란 쪽에 자꾸 받게 하니까, 엇그제만해도 네 명이 했는데, 한 명을 다른 부서로 빼가면서 한 명은 단시간, 즉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을 넣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밀착 사례관리, 조금 어렵습니다. (2차. 고용센터 담당자)

그러나 사례관리가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량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한정된 인원이 담당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측면이다.

작년에 저희들도 평가에 밀착사례건수가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그런데 올해 팀장님이 오셔서, 취업률이야 하면서 자활은 완전히 망했죠. 자활은 실적 면에서 완전히. 저희들 입장에서든 사람은 이쪽에서 그 쪽으로 빼가고, 그런 상황이어서, 밀착 사례까지 할 상황이 없으니까 올해는 저조합니다. (2차. 고용센터담당자)

밀착사례관리의 경우 인터뷰에서 연계시킬만한 복지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면접촉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형성되는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물량에 대한 부담은 이를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리본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복지서비스를, 희망리본에서는 가구 전체 상담을 대부분 하니까, 가구전체 상담을 하면서 복지서비스 장애요인을 조금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희망리본인원이 한명 당 처음에는 40명만 상담하면 됐었어요. 1년간. 그 40명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가고 연계하고, 이걸 계속 했던 게 주원인이예요. 복지서비스가 주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밀착이라는 건,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라포 형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 그게 밀착이 되는 거지. 복지서비스 하나 넣었다고 밀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2차. 자립지원센터 담당자)

사례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데 있어서 제도의 다소 경직적인 운영이 제약이 되는 사례도 제기되었다. 취성패 1유형 참가자 중에 건강이 악화해서 프로그램을 참가하기도 어렵고 곧바로 취업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참여자에게는 생계비가 중단되고, 담당자 입장에서 실적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밀착서비스 할 때,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 선생님 아픈 거 우리가 치료하면서 하다 보면, 그게 잘 나올 때도 있지만 극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은 일단 밀착서비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패키지는 1년 동안 계속 참여해야 해요. 아픈 데, 직업훈련 받을 것도 없고, 취업도 못하는 상태인데, 일단 들어왔으니까. 그랬을 때 이 분한테 정말 필요한 건, 구청에서 하는 단순한 업무가 생긴 거예요. 그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런데 중단을 하고 가면, 저희 실적도 걸리고, 어떤 데는 생계비도 중지해야 하고 (...) 밀착 사례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더 제공한다기보다는, 패키지를 유연하게 적용해서 담당자의 권한을 좀 더 확대해주는 게, 좀 더 진행할 때, 수급자의 특성상 더 좋지 않을까. (2차. 고용센터 담당자)

2) 복지연계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연계에 대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는 우선 복지서비스나 복지자원 수가 그리 많지 않거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수급지위로 인해 이미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3차례의 인터뷰 중에서 3건의 복지연계 시도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1건은 실패 사례, 2건은 성공사례다.

주거에 관련된 건데. 취성패 1년 기간 동안 제가 구청에 신청하고 그 결과를 끝날 때까지 받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건지, 얼마큼 받는지도 알 수 없었고. (3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어떤 분은 한부모가정인데 두 아이가 다 대학생인데, 아이들이 학생이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애는 박사과정인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능력이 있는 아이로 나오고, 거기에 무슨 프로젝트비로 돈이 3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애 통장에. 그런 게 다 노출이 되니까, 수급을 못 받으셨는데, 이 분이 암에 걸려 있어요, 최성패 참여자로 들어왔는데, 항암제 투여할 때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시면, 입원했다가 나오고, 입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까지 항암제 맞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그냥 살다가 죽는 수 밖에 없는, 그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수급도 안 돼, 아이들은 아직 공부 중이야. 이제 너무 어려워져. 그런데 그 분이 암 걸린 것 때문에, 김밥집에서 150만원 받고 다니다가 나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마침 그 때 한국여성재단에서는 그 사람의 소득이나 아무 것도 보지 않아요, 재산 상태를, 엄마가 일하고 싶은데, 질병에 걸려 있으면, 질병에 관련된 실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마침 그게 그 때 연계되어서, 그래도 항암치료비를 6번인가 10번까지 받아야 하는데 항암치료 다 받고, 거기에 무릎까지, 수술비가 딱 되더라고요, 그 돈으로 오래 서 있는 직업을 하다 보니, 무릎연골이 나가서, 수술비까지 해서, 참여 잘 해서, 요양보호사 수업 듣고, 요양보호사로 취업해서 잘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1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고시원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알선을 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보통 우리가 취업을 시키면 바로 출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6월초 시켰는데, 8월에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그 때 3개월 정도 고시원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 그러면 2개월간 또 실업 상태이고, 고시원에서는 쫓겨날 상황이고, 구청에 전화해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아서, 서류는 정말, 이 사람이 실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입사가 확정, 그런 서류를 제가 많이 해서 보내줬더니 그건 혜택을 바로 받았어요. 매달 체크를 해서 3개월간 지원을 받아서, 그걸 기다렸다가 회사에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3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이 같은 성공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위탁기관의 경우는 사례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적자료 접근이 제한적이고, 지역의 다양한 제공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 같은 민간 기관의 한계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군·구의 복지지원팀, 일자리 정책팀, 일자리 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입주해 있어 상시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교환과 연계가 이루어

어지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자체별 협의체를 통해 정보공유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가 확충되고 있기는 하지만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정보공유와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정기회의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1.2.5. 고용서비스의 질

1)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들은 잦은 인사이동과 편중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청년취성패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1유형의 빈곤층을 담당하던 인력이 2유형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많고,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더욱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참여자도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새로운 담당자들은 참여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원활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1년 안에 두 명, 세 명 빠져나가면, 한 참여자가 상담자가 4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1년 안에 상담자가 4번이 바뀌었어요. 초기 바뀌는 거, 그리고 육아휴직 나가서, 그리고 개인 돌봄 때문에, 저희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오신 분은, 이게 라포 형성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라포 형성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2차. 고용센터 담당자)

따라서 이상적인 라포형성과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적절한 인력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이 인터뷰에서 제안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차수 인터뷰에서는 이 같은 실험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단기적인 실적에 치중하게 되면서 실현을 하지 못한 것이다.

센터에서도 담당자 별로 전문성을 높이려고, 여성, 이렇게 나누게 했어요. 그런데 뭐가 걸렸냐, 실적에서 걸린 거예요.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데, 이게 센터 내 실적하고 걸리니까, 취업률이 높은 그런 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걸려서 다시 원위치가 되어 버렸죠. (2차. 고용센터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도 고용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인터뷰에 참여한 담당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교육의 부족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상담자들이 참여자들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력개발경로를 설정해주는 능력은 고용서비스가 미치는 영역이 취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노동시장 상향이동을 위한 지원에 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같은 상담사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규정상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어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취성패 참여한) 친구들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놓는데요. 회사마다 상담사마다 질적인 게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취성패 정말 쓰레기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취성패를 통해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이걸 좀. 공부도 시키고, 역량 개발도 시켜서, 그렇게 하면서 상담하게끔 하면, 기본적으로 상담이라는 걸 희망해서 온 분들은, 뭔가를 배우고 남들을 돕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거에 되게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치여서 그런 거 잘 못하게 되는. (3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2) 위탁기관

위탁기관의 입장에서 일정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실적을 내지 못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나 실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실질적으로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제대로 매칭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 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한 구직자의 니즈를 파악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매칭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보인다.

정말 좋은 구직자를 좋은 구인업체에 매칭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또, 저희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보고랑 점검평가가 있고, 어느 정도 취업실적이 나와야만 평가 순위가 높아지는 (...)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그 사람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한 후 질적으로 맞는 알선 매칭을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양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 상황이니깐 좋은 구직자인지, 좋은 구인처인지 파악이 쉽지도 않고, 선별할 수 있는 현지 시스템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게 현실이에요. (1차.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제2절 근로빈곤층 심층인터뷰

2.1. 심층인터뷰 설계

근로빈곤층 심층인터뷰를 진행. 2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는 전술한 FGI에 참여한 각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일부를 섭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령, 성별, 지역, 경황상태, 학력 등에 있어서 고른 분포를 나타내도록 섭외를 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비수급층의 경우는 상대적 빈곤선보다 다소 높은 선을 소득기준으로 삼았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5-4>와 같다.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빈곤여부를 판단할 때 가구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배우자와 같은 가구 내 다른 소득원이 있어서 가구소득이 빈곤선을 넘어서더라도 연구참여자로 포함을 시켰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빈곤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배제를 하고, 고용서비스 이용경험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였다.

<표 5-4> FGI 차수별 개요

번호	이름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경제활동상태
1	원OO	여	50대	전문대졸	구직자
2	최OO	여	30대	대학원졸	취업자
3	김OO	남	30대	전문대중퇴	취업자
4	한OO	여	50대	대졸	취업자
5	임OO	여	20대	대졸	구직자
6	김OO	여	20대	전문대졸	취업자
7	정OO	여	30대	전문대졸	구직자
8	조OO	여	50대	초등졸	취업자
9	장OO	남	50대	전문대졸	취업자
10	최OO	여	30대	검정고시	취업자

(표 계속)

<표 5-4> FGI 차수별 개요(계속)

번호	이름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경제활동상태
11	임OO	여	40대	고졸	취업자
12	황OO	여	50대	고졸	취업자
13	이OO	여	20대	고졸	취업자
14	민OO	여	40대	중졸	취업자
15	정OO	남	50대	대졸	구직자
16	배OO	여	20대	대졸	구직자
17	김OO	여	20대	전문대졸	구직자
18	이OO	여	20대	전문대졸	취업자
19	임OO	남	40대	전문대 중퇴	취업자
20	김OO	여	20대	대졸	취업자

인터뷰는 반구조화 설문지를 토대로 심층면접(IDI, In-depth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은 가족배경, 현재 가계 상황,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력, 근로상황, (취업자)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 (실업자) 구직 상황,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자) 참여 상황, 취업희망 직종, 고용복지서비스 욕구, 인식과 태도,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직업에 대한 이해 등이다. 반구조화 설문지는 <표 5-5>와 같다.

<표 5-5> 주요 키워드와 의미단위 분류

구분	인터뷰 내용
가족배경	- (15세 무렵) 살았던 곳,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부모님 직업, 학업성적, 부모님 혼인상태, 동거여부, 부모 학력
가계상황	- 본인 외 가족의 경제활동 상태, 경제적 수준(주관적), 가구소득, 지출(가장 큰 지출항목), 재산(저축 포함), 부채 - 가족 중 만성질환자 유무 - 가족 중 금융소득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
인구사회특성, 가족상황	- 연령, 성, 결혼여부, 가족과 동거여부, 자녀 수, 자녀 교육정도, 자녀 현재 상황(학업상황, 취업상황 등)

(표 계속)

〈표 5-5〉 주요 키워드와 의미단위 분류(계속)

구분	인터뷰 내용
본인 학력	- 최종학력, 고등학교 유형, 전공, 학자금 대출 여부, 학비 마련 방법
(취업자) 근로지위	- 종사상 지위, 직업분류, 산업분류, 사업장 규모,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 - 노조유무, 노조가입여부
(취업자) 소득, 복리후생	- 월급여(상여금 등 포함), 복리후생 상황, - 현 직장에서의 장래성(장기근속 가능성, 승진가능성 등), 장래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개인문제 또는 회사 문제 또는 인간관계 문제) - 희망임금 수준, 4대 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여부, 주간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여부
(실업자) 구직방법	- 실업기간, 구직에 어려운 점, 구직에상시기, 유보(희망) 임금 수준 - 희망일자리, 취업을 위해 본인에게 필요한 것(스펙)
고용서비스 (취업성공 패키지 포함)	- 고용서비스 경험여부, 이용한 고용서비스 종류, 만족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상담경험 여부, 상담에 대한 생각,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 - 고용센터에서 알선해주는 일자리 수준에 대한 생각 - 워크넷 인지여부 (인지자) 이용경험, 주된 이용 목적, 주요 활용한 콘텐츠, (비인지자) 향후 이용계획 여부
(취업자/실업자 공통) 취업 희망 및 가능 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가능 직종(직업) - 현재 보유한 능력 등을 기반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직종(직업) -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 취업 희망 직종(직업) - 추후에 본인의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다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 -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 그 취업 희망 직종(직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및 지원사항(ex. 자격증 취득, 평생교육과정 이수, 시간관리, 건강관리 등)

(표 계속)

〈표 5-5〉 주요 키워드와 의미단위 분류(계속)

구분	인터뷰 내용
육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육구 - 기초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아동장려세제 등 이용경험,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지원 ■ 직업훈련 - 교육훈련 이수상황, 필요한 교육훈련, 교육훈련 어려운 점(교육비, 시간, 교육의 질 등)
인식, 태도	- 지금 가장 큰 걱정, 근로빈곤 원인, 탈빈곤 가능성, 탈빈곤을 위한 조건, 미래 전망(자신과 자녀), 요즘 심리상태
주거현황	-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주거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전월세, 공공임대 등), 주거비(월 임대료, 월 관리비 등), 면적, 화장실 등 여부, 청결상태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 유무, 만성질환 유무, 건강관리 방식(운동, 투약 등), 월(혹은 연간) 의료비 지출
사회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사회에 대한 신뢰(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지?),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 참여 여부
문화적 자본	- 여행, 영화, 독서, 공연관람 등
직업세계 이해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도 - 전망이 좋은 직업을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직업인지 - 왜 그 직업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 전망 좋은 직업으로 본인이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사항’과 ‘최소 지원기간’ 및 ‘전제조건’(ex. 육아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교육 등)

2.2. 주요 결과

전체적으로는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에 고용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 일을 통한 자립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덧붙일 것이다. 따라서 본 절은 앞 절과는 달리 상기의 주제별로 기술하고자 한다.

고용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례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상담사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 근로빈곤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서의 고용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고려해서 본 절에서는 사례자들이 이야기하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아쉬운 점 또는 개선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2.1. 고용서비스: 상담

대다수의 사례자들은 상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직이나 폐업 등의 충격을 받은 경우나,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서 자신감을 결여한 경우 모두 상담을 통해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적되는 내용이 있어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사례는 상담의 문제라기보다 고용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초기 대응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담당자의 역할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방문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는 이 같은 역할이 더 중요하다.

고용센터 처음 가게 되면, 너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좋겠어요, 당연히 처음 왔을 때, 이 사람은 아무 것도, 1유형, 2유형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좋겠어요. 모르는 분이 없도록. (20대. 여성. 구직자. 취업패1유형 참여)

앞 절에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참여자와의 라포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 언급된 바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성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담당자의 불안정한 처우에 따라 참여자가 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보고되기도 했다.

상담하는 분도 임시직이고, 나도, 그러니까 그 분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분하고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항상 불안한 거야. 본인도, 상담하는 사람도 불안해. 자기 직종이 2년 계약적인데, 내가 보니까 5개월만에, 나는 6~7개월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5개월 만에 끝나고 갔어요. 상담하는 사람이 불안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뒤에 연결하신 분도 또 2년 계약직이야. 그 분도 열심히는 하는데, 뭐라고 할까, 그 분이 나 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용노동 정부에 속한 직도, 그런 식으로 고용을 해서 임시직으로 내모는 자체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50대. 남성. 구직자. 취성패1유형 참여)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력이 상실될 경우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해체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그 가족 모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할 경우 재취업이나 재기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가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가족 상담을 통한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의지를 도모할 수 있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정서적, 물질적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지원이라고 할까, 어떤 심리.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서 소외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자신감을 심어주고,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도 어떠한, 아기들은 아니더라도, 와이프까지는. 한번이라도, 두 사람의 부부상담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50대. 남성. 구직자. 취성패1유형 참여)

2.2.2. 고용서비스: 교육훈련

선택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 단계의 상담이나 적성검사의 부실 때문일 수도 있고, 훈련프로그램의 절대적 수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원하는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지원하는 직종의 종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없어요. 제 취향은 A인데 패키지 쪽에서는 B, C, D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한 쪽으로 A를 선택하면 그거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B, C, D를 정해놓고 그것만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적성에 안 맞는 걸 선택해서, 효과는 20도 안 나타나는 게 되더라고요. (50대. 남성. 구직자. 취업패1유형 참여)

다음으로,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고용서비스 기관에서는 상담을 통해 적절한 교육훈련기관을 연계하게 되는데, 일단 교육훈련기관으로 가게 되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담당자는 사례관리를 하지만 참여자가 만족할 만큼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물량 위주의 정책 때문에 적절한 사례관리가 어렵다는 상담사들의 토로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지원을 하려면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물론 쫓아다니면서 관리는 아니지만 상담을 꾸준히 해주면서, 만나서 코칭을 하면서 6개월 정도는 끌어줘야, 그 사람도 의무감으로라도 그걸 이겨내지 않을까. (50대. 남성. 구직자. 취업패1유형 참여)

이론과 실습의 균형, 또는 현장중심의 프로그램 역시 훈련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현장 경험 여부는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훈련에 실습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취득 후 알선을 통해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해당 사업장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직종은 상대방을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증은 실습이 꼭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습이 없기 때문에 임시직으로라도 가서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 어떤 기관에 가서 실습하다 보면 그 기관에서 취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좋으니까 어떤 기관에 소개해줄 수 있는, 연계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연계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해라 가 되는 거죠. (50대. 남성. 구직자. 취업패 1유형 참여)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받으면서 느꼈던 게, 자격증 수료를 도와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최대한 연계성이 있는 회사에 가깝게 갈 수 있게 해주면 제일 좋겠어요 어떤 회사와

연계를 가지고, 애네들을 국가가 교육시킬 테니, 너네가 한번이라도, 애네를 인턴이라도 받아보렴.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좋겠어요. (30대. 남성. 취업자. 취성패 1유형)

앞서 담당자 인터뷰에서 취성패에서 대상자들을 유형화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소위 취성패 3유형으로 불리는 중고령자들의 경우 실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일종의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들과 실제 취업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태도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간절한 태도로 임하는 사람들의 집중을 해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취업성공 패키지, 그래서 조금. 구성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취업을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의욕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조금. 그리고 너무 나이 드신 분과 너무 젊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그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 있었지만, 공동의 화제나 관심사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대상이 딱 집중이 되어서, 이 계층만 다룬다, 이렇게 되어서, 관심사나 이런 것들, 더 깊이 있게 팔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다, 조금 얽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 여성. 취업자. 취성패 1유형)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교육훈련 시작시간이 다소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육아나 보육 문제로 비경황 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진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기관 내 보육시설을 두거나 인근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김정훈 외, 2015: 42). 이 같은 기관 내 보육시설 설치 등 취성패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정친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요. 9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저한테는 빨라요. 다른 분들과 맞춰야 하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아이를 보내놓고 다시 여기 학원까지 와야 하는 시간이 있고, 또 9시 30분에 시작하면 40분까지 적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지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도 간당간당하게 찍히거나 지각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한 10시부터 시작하면 너무 좋겠는데. (30대. 여성. 구직자. 취성패1유형 참여)

교육의 시간적인 부분에서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학원들이 몇, 몇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리 부분에서, 저는 그거 받을 때, 안양에 있는 건질이 별로라고 해서 강남 가서 받았어요, 그러면 애가 그 때, 유치원에 다녔는데, 애를 아침 8시에 데려다 맡겨 놓고, 9시부터 수업이니까 맨날 뛰어다녔어요. 3개월 동안은. 커트라인 찍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각하면 안 되고 해서 맨날 뛰어다녔어요. (30대. 여성. 취업자. 취업패 1유형)

2.2.3. 고용서비스: 일자리와 매칭

전문직과 관련된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속기사(速記士)를 준비하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 취업패에서 관련된 훈련을 받고는 있지만,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 일자리 매칭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보를 탐색하는 게, 물론 제가 전문직이라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직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지원받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 자리를 구하는 건 제가 알아봐야 하는 것이고. (20대. 여성. 구직자. 취업패1유형 참여)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문직종의 경우 일자리의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칭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용서비스 담당자가 전문직 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 생겨나는 직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앞서 서비스 제공자 인터뷰에서도 제기되었던 것과 같이 담당자의 직무연수나 분야별 전담 담당자 배정과 같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2.4. 일자리의 질

취성패를 통해 매칭된 일자리의 질은 고용복지 성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임금수준은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또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앞서 담당자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저리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도 목격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사례자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경험도 보고되고 있다.

원래 상여금 없었고, 지난달에 136만원 받았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어서. 계약서를 몇 번 썼는지 몰라요. 두 번 썼나. (...) 많이 주기는 싫고 법에는 어긋나지 않아야 하니까 사업주들이 머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법을 모르니까. 하라고 해서 했어요. 월급변동은 없었으니까. (...) 모르겠어요. (초과근무) 두 시간씩 해요. 화요일, 목요일에 한번씩, 그렇게 하는데, 월급을 쪼개서 거기에 끼워 맞추기 한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랬거든요. 130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40대. 여성. 취업자. 취성패 1유형)

일부 사업주의 경우 취성패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취성패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인력을 큰 어려움 없이 수급할 수 있고, 여기에 고용지원금까지 받게 되니 인건비 부담은 거의 없게 된다. 따라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만 채우고, 또 다른 취성패 참여자를 채용하면서 다시 고용지원금을 챙기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뽀족하게 한 마디 하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한다고 했는데, 고용지원금이라는 게 나도 몰랐는데 그런 게 있대요. 고용지원금 대상자로 내가 올해 취업을 하게 됐는데, 취업을 해서 보니까, 고용지원금 대상자만 뽑고, 그 사람을 고용지원금 받는 딱 1년만 고용하고, 또 다른 고용지원금 받는 대상자를 뽑고, 이런 걸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해서 위크넷에 올릴 때, 고용지원금 대상자만 모집하더라고요. (40대. 여성. 취업자. 취성패 1유형)

사업체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여부뿐만 아니라 위의 사례와 같이 지원금을 목적으로 취성패 참여자를 채용-해고-채용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겠다. 위 사례를 보고한 참여자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가령, 고용지원금을 일정 기간 이상의 고용을 유지했을 때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나, 고용주에 대한 평가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등의 방법이다. 이 같은 방식은 이 같은 폐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직 하다.

2.2.5. 취성패 및 탈수급 유인

취성패를 통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할 경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보장 수급자와 같이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경우는 상당한 제약이 된다.

음. 제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영어 학원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상황이니깐,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학원을 좀 다니고 싶어요. 영어나 중국어. (20대. 여성. 구직자. 취성패 1유형 참여)

앞 절에서 근로를 통한 기초보장 탈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급자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근로를 통한 탈수급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크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사례자 중에서 취성패를 통해 취업을 하고, 탈수급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 근로소득이 기초보장 급여보다 커서 금전적인 형편은 나아졌지만, 의료비, 학비, 주거비 등에 수반되는 각종 지원이 끊기면서 오히려 후생수준이 낮아진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해방되는 건 기쁘지만, 웬만큼 기간을 줘서, 3년을 주든지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살아나게끔 소명기회를 주든지 해야지, 바로 그냥 잘라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감당이 안돼요. (...)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급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50대. 남성. 취업자. 취성패 1유형)

그래서 앞 절에서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당분간 취업이나 프로그램 참가를 유예하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했는데, 실제 사례자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수급자가 취성패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 받아서 취업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사례다.

그런데 제가 2인 가족에서, 제가 1호봉을 받으면 128만원이 되요. 그걸 제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걸 받으면... 제 아이가 지금 고3인데, 내년엔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 지원이 안돼요. 제가 그래서 면접 봤다가 포기하고, 시간 줄이고 월급싼 데로 갔어요. (40대. 여성. 취업자. 취성패 1유형)

이 같은 경우 탈수급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기초보장 급여 외에 제공받았던 각종 현물지원은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피력된다.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이상의 두 가지 인터뷰를 통해 취성패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서비스가 근로빈곤의 의미 있는 대응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물량위주의 정책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참여자 발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높은 취업률, 긴 근속유지기간,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등의 성과를 낳지 못한다면 취업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이들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공공부조제도 실제 인터뷰 참가자들은 취업의지가 강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뉴스타트 사업을 불특정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취성패보다 내실 있는 사업으로 평가한다.

또한 취성패 3 유형(중장년 취성패)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가나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전단계를 통해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알선하고, 이를 통한 취업에 이르고, 이후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취성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취성패의 근로빈곤 대응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양적 성과 위주의 담당자 및 위탁기관 평가의 틀도 질적인 측면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용서비스도 질적인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담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교육, 그리고 안정적인 직무배치 등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성패와 여타 제도와의 유기적이고 유연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취성패 부적응자나 건강 등의 이유로 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 중단 없이 자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제다. 다른 하나는 자활 등으로 연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기초보장 급여는 중단 없이 수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실, 급여중단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중단 없이 수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고용의 관점에서는 중단을 강조하고, 복지의 관점에서는 수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

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고용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 불이익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셋째, 고용 창출과 더불어 고용유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취약계층 고용서비스에 전직상담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좋은 일자리로 연계되는 경우가 충분히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은 근로빈곤 탈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취업 후 성공수당이나 장려금 지급을 위해 일정 기간 접촉을 하고 나면 그 이후는 관리의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다 보니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취성패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같은 단계를 반복하게 되고, 재참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연계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들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사후관리와 더불어 전직의 욕구가 있는 경우 전직상담서비스를 통해 비용이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보장제도 잔류 유인과 근로참여 유인의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앞선 사례에서 수급권 유지를 위해 취업을 유예하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탈수급에 따르는 유인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근로나 취성패 프로그램 참여시 얻는 혜택이 잔류시 얻는 혜택을 월등히 상회해야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교육훈련, 알선 단계별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프로그램 이수 시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취업자와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위한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나 월 150만원의 수준으로는 근로유인을 충분히 견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고용정책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개별 욕구를 고려하여 탈수급시 욕구별 급여에 대한 특례를 일정정도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과 미달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과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과 근로빈곤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저임

금을 받는 근로자의 일정 비율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빈곤선 위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다수가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층이라는 점, 그리고 현행 노동시장 이중구조 하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최저임금은 근로빈곤에 대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질 낮은 일자리에서는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상한선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 양극단을 공익위원이 절충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정부가 선출하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이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예산에 따라 각종 지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서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당해년, 가능하다면 5년 정도의 기간동안 예산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취약계층을 복지에서 고용으로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밀착사례관리와 고용 및 복지자원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설치율이 낮은 수준이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각종 복지협의체 등이 역할을 대체하고 있지만 성과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여덟째, 고용서비스 담당자들의 직업안정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담당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서비스의 효과성에도 관련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 중 다수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계통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분야에 진출해서 안정적인 지위를 지속할 수 있어야 고용서비스가 근로빈곤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 복지선진국에서도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또는 민간이양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일자리의 질 저하가 심각한 노동시장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차원에서도, 고용서비스의 효과성 제고의 차원에서도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처우를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근로’ 또는 ‘노동’이라는 개념 하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정의된 근로빈곤층 개념을 토대로 각 정의에 따른 근로빈곤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근로빈곤이 개인과 가구, 상대적 빈곤 기준 도입유무와 기준선, 근로 자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근로연령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근로연령 빈곤층’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경제활동인구 적용 대상인 15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사실 국내의 교육 환경 및 노동시장 특성상 15세부터 17세까지는 대부분이 학업을 수행하는 학령기 연령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7세 이전의 빈곤 문제는 아동빈곤이나 청소년빈곤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고, 본 연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학업이나 군복무와 같은 통상적인 제외 대상 외에도 장애, 만성질환 등과 같은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능력 빈곤층’ 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

년 동안에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는데도 빈곤한 ‘근로기간 빈곤층’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한편 소득을 시장소득 기준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공적이전 소득이 빈곤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처분소득 적용기준과 시장소득 기준으로 나누어서 각 추이를 비교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지난 10년간 근로빈곤 변화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황 분석에서는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근로빈곤율은 우려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현황에서 보면 남성 보다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고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불안정할수록 근로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은 근로빈곤의 장·단기적 변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빈곤 현상에서 소득 또는 노동시장 원인으로 국한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주거, 지원, 정신적 문제 등)과 결과 결합된 다차원 문제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서 근로빈곤의 기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장기간 근로빈곤을 경험하는 경우가 근로빈곤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로빈곤 현상은 단순히 소득빈곤만을 수반하지 않고 주거빈곤, 자산취득이 어려움, 정신적 문제를 함께 유발하고 있었다. 우울은 시간 경과에 따라 약간 개선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근로빈곤과 우울이 동시에 경험되고 있으며, 주거빈곤과 자산취득의 어려움 문제는 오히려 격차가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부가적인 문제들인 자산 불평등이나 자산빈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성과 중의 하나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6차부터 17차까지 12년 동안의 자료를 연결하여 동태분석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국내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불완전한 패널의 초기시점 자료를 구축하거나 약 7-8년 정도의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는데, 본 연구는 장기시점에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동태분석을 위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균등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여 임금근로자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빈곤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빈곤지위 이행확률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빈곤 상태 유지자의 빈곤 유지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빈곤탈출에 성공한 이는 빈곤 탈출 상태 유지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어, 어

면 식으로라도 일단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근로빈곤의 동태적 결정요인을 분석한 방법은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과 함께 최근에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과 초기상태(initial conditions)를 고려한 동태적 확률효과모형(the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s)이다.

빈곤탈출의 기준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균등화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상태에서 중위소득 80% 이상을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이행하는 것을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년 단위 빈곤탈출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총 근로소득 증가, 가구 내 취업자수 증가, 자산 증가, 임금 증가, 근로계약서 수령이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기준 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상황 개선과 더불어 근로조건 보호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년 단위 빈곤탈출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1년 단위 빈곤탈출 결정요인 분석에서 유의했던 변수들이 모두 유의하였는데, 추가적으로 건강상태가 건강할수록 빈곤탈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의 탈출요인에서 총근로소득과 취업자 수 증가가 주는 시사점은 취업을 촉진하는 고용중심정책의 중요성이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였듯이 취업 자체만으로는 빈곤탈출을 할 수 없고 고용안정성과 임금상승, 근로시간에 맞는 근로조건 보호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근로계약서 수령은 빈곤탈출에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근로계약서 수령은 고용기간과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조건 보호에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은 최저임금제 준수,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근로조건 보호 등의 정책과 함께, 취업자에서 실업이나 비경활로 이행한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취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빈곤탈출 결정분석에서는 건강상태, 여성의 경우에는 18-34세 연령대에 비해 35-44세 연령대는 빈곤탈출 1회 기준에서 빈곤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대 후반 40대 초반 연령대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소득감소로 이어져 빈곤탈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 차이에 따라 빈곤 탈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전 시점의 빈곤상태 여부가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18-39세의 연령대에서는 빈곤의 상태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0-49세 연령대에서는 t-1와 t-2의 빈곤

상태가 빈곤탈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상태의 상태의존성의 영향을 받게 되는 연령대로서 빈곤에 진입할 경우에 빈곤탈출에 어려움이 시작되는 연령대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노인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자산빈곤을 겪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근로소득 빈곤 접근에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근로빈곤층이 많이 분포한 업종은 제조업이,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고용계수는 2006년 10.7명에서 2014년 5.9명으로 44.9% 감소했고,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2006년 15.2명에서 2014년 10.2명으로 32.8%가 줄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기술발전과 기술변화로 인해 숙련 편향적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와 숙련·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 확대,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산업구조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단순히 취업알선을 넘어서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을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련향상 등의 서비스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

현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질적 분석을 위해 심층면접과 FGI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공급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서비스 수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성별, 지역, 경찰상태, 학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인터뷰를 통해 취성패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서비스가 근로빈곤층에 의미 있는 대응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량위주의 정책 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참여자 발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높은 취업률, 긴 근속유지기간, 좋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등의 성과를 낳지 못한다면 취업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이들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취성패 3 유형(중장년 취성패)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가나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전단계를 통해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알선하고, 이를 통한 취업에 이르고, 이후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취업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양적 성과 위주의 담당자 및 위탁기관 평가의 틀도 질적인 측면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용서비스도 질적인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담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교육, 그리고 안정적인 직무배치 등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패와 여타 제도와의 유기적이고 유연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취업패 부적응자나 건강 등의 이유로 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중단 없이 자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활 등으로 연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중단 없이 기초보장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고용 창출과 더불어 고용유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들에게 대한 보다 장기적인 사후관리와 더불어 전직의 욕구가 있는 경우 전직상담서비스를 통해 비용이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보장제도 잔류 유인과 근로참여 유인의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앞선 사례에서 수급권 유지를 위해 취업을 유예하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탈수급에 따르는 유인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근로나 취업패 프로그램 참여시 얻는 혜택이 잔류시 얻는 혜택을 월등히 상회해야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정책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개별 욕구를 고려하여 탈수급시 욕구별 급여에 대한 특례를 일정정도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과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을 목적으로 잦은 해고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여섯째, 예산에 따라 각종 지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당해년, 가능하다면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예산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취약계층을 복지에서 고용으로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밀착사례관리와 고용 및 복지자원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고용서비스 담당자들의 직업안정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 중 다수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의 사회서비스 계통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분야에 진출해서 안정적인 지위를 지속할 수 있어야 고용서비스가 근로빈곤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차원에서, 고용서비스의 효과성 제고의 차원에서도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처우를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통해 국내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을 단일한 정책적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세부 집단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영국은 근로빈곤층 정책을 아동 가구 근로빈곤층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의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서 5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2013년부터 근로빈곤층의 항목으로 직업력과 직업 선택, 임금을 조합하여 6개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둘째, 호주, 영국 등을 중심으로 상호의무를 강조하면서 활성화(activation)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서구 등의 사회보장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 등에서 복지 의존성을 낮추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도록 강화하려는 조치들이다. 그러므로 근로 가능한 집단에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근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 집단에는 소득지원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는 근로 무능력자들에게는 소득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직업훈련이 강조되고 있다.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현장의 필요한 숙련을 고용주가 직접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경력개발 상담사가 필요한 경력 및 직업훈련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넷째, 고용-복지-사회서비스 등을 원스톱 서비스 등의 체계를 갖추면서도 서비스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각종 연금 및 현금급여(Pension and benefits)의 결합과 함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교육, 가족 지원 및 건강 등이 지원되도록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근로빈곤층 현황과 특성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근로빈곤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성, 고연령, 불안정 고용상태 근로자는 특정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간 경과에 따른 코호트 변화에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가 근로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이

들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재취업, 취업지원 및 알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도 완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근로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코호트 분석에서 보듯이 사업장 규모가 작고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근로빈곤상태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근로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민간노동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을 고려하면서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직업을 발굴하고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정부의 몫이라 하겠다.

최근 흐름 중에 하나는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즉, 1997년 경제위기로 빈곤층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개선되었으나 빈곤 개선은 동반되지 않았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착되면서 고용 불안정성은 가속화되었고, 동시에 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위협과 이로 촉발된 가족 해체 등의 부가적인 문제로 인해 강신욱 외(2005)의 지적처럼 가족 간에 물질적 지원으로 인해 생계 유지 관습의 악화는 빈곤으로 연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빈곤층의 출현은 근로의욕 부재 또는 실업이 빈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되었으며, 빈곤의 원인 탐색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해졌다.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⁴³⁾이다(강신욱 외;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빈곤에 대한 노동시장 측면의 다양한 정의 기준을 통한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였지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들 또는 설명가능한 여러 가지 원인들 간의 다차원적 영향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대상별로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대책마련에 대해 복합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여 정부 부처간, 정부와 지자체간, 공공과 민간 사

43)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물질적, 경제적 박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박탈, 사회에 참여하는 것로부터의 박탈을 의미한다(Dell'Anno & Amendola, 2015). Dell'Anno & Amendola(2015)는 사회적 배제 개념 정의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접근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회 제도에 대한 참여부족(lack of participation in social institutions)으로 보는 관점이다(Duffy, 1995). 둘째, 사회적, 정치적, 시민권이 거부(denial or non-realization of social, political, and civil rights of citizenship)되는 것으로 보는 접근이다(de Haan, 2000). 셋째, 집단 간 거리의 증가(increase in the distance among population groups)로 보는 시각이다(Akerlof, 1997). 넷째, 사회적 배제를 박탈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일련의 과정(process that leads to a state of functioning deprivations)으로 보는 관점이다(Sen, 2000).

이에 서비스 제공과 지원 영역을 규정하고 구분하기 보다는 협력과 지원체계의 다양성에 대해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근로빈곤층 대상의 각종 통계 및 조사들이 갖는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세분화된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노동패널이나 복지패널 조사는 동태분석이 가능하지만 분석 대상의 수가 너무 적은 문제가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차상위실태조사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신 자료 사용상의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빈곤 개념에 대해서는 이 조사에서 다양한 기준을 기반으로 대상을 세분화할 수 있지만 근로 또는 노동의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의 다양한 개념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어떤 통계로도 이런 목적에 부응한 조사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빈곤층 현황 파악 조사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근로능력, 가구 내 취업자수, 가구원별 소득 규모, 공적 소득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근로 빈곤 정의별 근로빈곤층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복지, 고용, 고용복지연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발하여 근로빈곤층 지원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강금봉(2015).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에 미치는 요인 분석: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6(1), 27-56.
- 강금봉(2016).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분석 :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2009).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경제발전연구』, 15(2), 263-286.
- 강신욱(2014). 산업구조 변화와 소득불평등 보건복지포럼(2014.9), 44-57.
- 고용노동부(2016).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 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금재호(2004). 「취업으로 빈곤극복이 가능한가」. 『경제분석』, 10(3), 72-111.
- 금재호(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9(1), 41-73.
- 김경혜(2011). “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 Policy Report 100, 서울연구원.
- 김교성·노혜진(2009). 「빈곤탈피와 지속기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존표 분석과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185-212.
- 김문길·김태완·박신영·이병희·임병인·이서현(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김태완·최민정·이세미(2015). 『청년근로빈곤 사례연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안국(2013). 「스킬의 경제 사회적 성과.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세미나 자료집.
- 김양진(2014). 『생존분석』. 자유아카데미.
- 김영준·손종칠(2012). 「숙련노동 임금프리미엄 변동 변화 요인에 대한 문헌연구」. 『국제금융연구』, 2(2), 43-67.
- 김은하(2009). 「여성의 빈곤 지위 변동을 설명하는 페미니즘의 유효성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훈·김을식·이다겸(2015). 『청년근로빈곤 사례연구』. 정책연구 2015-45. 경기연구원.

- 김철희·나영선·류기락(2013). 『근로빈곤층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태완(2009). 『근로빈곤층의 실태진단:개념과 규모추정을 중심으로』. 워킹푸어의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집.
- 김태완·윤상용(2015a). 빈곤과 우울감간의 관계: 도농비교를 중심으로, 농촌경제, 38(2), 5-51.
- 김태완·이주미·정진욱(2015b).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5(3), 71-102.
- 김태완·김진희(2016a). 청년근로빈곤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태완·최민정(2016b). 사회적 배제의 원인분석: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QCA)을 활용한 OECD국가 비교연구,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환준(2013). 장기빈곤의 개념 정의와 장기빈곤층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24(4), 135-154.
- 남상호(2009).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자활정책평가센터.
- 남춘호·이성호·이상록. 「노동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화 유형 분석:전주시 사례에 대한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2(1): 259-303.
- 노대명·최승아(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외(2005). 『2004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최병두·조명래·류정순(2006). 「새로운 도시빈곤으로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대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6): 671-692.
- 노대명·황덕순·유진영·이은혜·원일(2007).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 외(2009).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2013a). 「유럽<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혁과 그 시사점: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2013.1)』, pp. 129-140.
- 노대명(2013b). 「근로빈곤층 실태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제193호.
- 노혜진(2013).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빈곤, 페미니즘 연구 13(2). 1-34.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http://www.insurancesupport.or.kr>)
- 류기락·양정승·류지영·노대명(2014).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재빈(2007). 『생존분석 이론과 실제』. 신광출판사.
- 박효진(2009). 『여성가구주 빈곤가구와 남성가구주 빈곤가구의 빈곤탈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학영·구인회(2010).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임금 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32, 87-117.
- 서병수(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 접근,” 사회복지정책, 18, pp. 199-232.
- 서병수·권중희(2013). 한국 다차원 빈곤의 중단분석 : 사회보장연구, 29(3)
- 서울경제. “한국, 정책에 의한 빈곤을 감소 효과 OECD 최저”, (2014년 11월 26일), 인터넷신문.
- 석상훈. 「빈곤의 지속-상태 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23(3): 79-99.
- 성재민(2014). 『임금 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송호근(2004).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23-50.
- 엄태완(2008).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8호. 36-66.
- 오상봉(2016). 최저임금 미준수 : 현황, 제도, 개선방안. 『노동리뷰』. 통권 제130호. 51-56.
- 윤윤규(2010). 「한국의 숙련구조 변화:임금함수 추정을 통한 숙련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직업능력개발연구』, 13(2), 21-45.
- 이래혁(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 : 가구유형과 노동시장 특성을 중심으로』.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병희·반정호(2008).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동향과 전망』, 75, 215-244.
- 이병희(2010).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경제발전연구』, 16(1), 93-116.
- 이병희(2011). 근로빈곤 정의를 둘러싼 쟁점과 추정.
- 이병희(2012). 「비공식 근로와 빈곤」. 『한국사회정책』, 19(1): 39-63.
- 이병희(2013). 「빈곤의 시간 차원 분석에 기반한 빈곤 정책적 함의」. 『사회보장연구』, 29(2), 237-259.
- 이병희·김현중·김혜원·노대명·이현주·성재민(2015). 『근로빈곤층 대상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록·백학영(2009). 「빈곤의 동태적 변화의 지역간 차이 분석-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40(4), 181-206.
- 이시균(2013). 「최저임금이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19(1), 35-64.
- 이은주(2008). 근로빈곤층의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 분석. 『사회복지정책』, vol. 34, 331-356.
- 이정희(2013). 「영국 노동연계복지 정책의 비판적 검토」 국제노동브리프 2013년 4월호, pp. 66-75.
- 이주환·김교성(2009). 「근로빈곤층의 빈곤 이력과 노동경력」. 『사회복지연구』, 44(3), 323-346.

- 이현주(2012). 빈곤층의 근로에 대한 태도: 근로가치와 근로동기에 대한 질적 분석. 『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사회복지정책학회.
- 이현주(2014). 「독일 고용센터 사례와 고용-복지 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 「보건복지포럼(2014.7)」, 115-124.
- 이현주(2015). 「영국 사회부조의 최근 동향: 유니버설크레딧의 도입과 그 배경」, 「보건복지포럼(2015.8)」, 105-117.
- 임세희(2006). 「빈곤 탈출의 결정요인: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253-277.
- 임찬우(2013). 『근로빈곤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대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세훈(2006). 「한국사회에 ‘신빈곤’은 존재하는가?」,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 장혜원(2014). 『한국의 인지적 숙련과 교육의 연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병유·이상혁(2011). 저소득 근로빈곤층 고용지원 방안, 고용노동부
- 조막래·이순아(2012). 「가구 생계부양 형태에 따른 빈곤지속 기간과 빈곤 탈출확률 결정요인」, 『지역발전연구』, 11(2), 181-214.
- 조명래(2006).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과 신빈곤」,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울아카데미.
- 지은정(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 결정요인 연구: 근로빈곤 노동시장의 경로제 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147-174.
- 진미윤(2013) 최근 주거빈곤의 양상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보건복지포럼 3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55.
- 최승노·대명아(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옥금(2008).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2016).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http://kosis.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 한준(2005). “사건사 분석”,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 현다운·석재은(2014). 『근로장려세계가 근로빈곤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2014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10.

- 홍경준(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 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pp. 119-142.
- 황수경(2007). 『한국의 숙련구조 변화와 핵심기능인력의 탐색』. 한국노동연구원.
- Akerlof, G. A(1997). Social distance and social decision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005-1027.
- Alexander Mosthaf & Thorsten Schank & Claus Schnabel(2009). Low-Wage Employment versus Unemployment: Which One Provides Better Prospects for Women?. Discussion Paper No. 4611. IZA.
- Alkire, Sabina, and James Foster(2011).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IFPRI oc63ch03. Also i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7), pp. 476-487.
- Andersen, P.K., Gill,R.D(1982). "Cox'Regression model for counting processes; A large sample study". *The Annals of Statistics*, vol.10, 1100-1120.
- Anne Green and Kevin Broughton and Maria de Hoyos(2015). "How cities can connect people in poverty with jobs", JRF.
- Australian Government(2016). jobactive Performance Framework Guideline.
- Chakravarty, Satya R., and Jacques Silber(2008). "Measuring Multidimensional Poverty: The Axiomatic Approach," in N. Kakwani and J. Silber (Eds.), *Quantitative Approaches to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London: Palgrave MacMillan.
- Cheti Nicoletti & Franco Peracchi & Francesca Foliano(2011). Estimating Income Poverty in the Presence of Missing Data and Measurement Error.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29(1), 61-79.
- David K. Shiple(2005). "THE WORKING POOR: Invisible in America", New York; Random House.
-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DIUS) and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2007). "Opportunity, Employment and Progression: Making Skills work London", HMSO.
- Dell' Anno, R., Amendola, A(2015). Social exclusion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European econom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1(2), 274-301.
- De Haan, A(2000). Social Exclusion: Enriching the understanding of deprivation, *Studies in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2(2), 22-40.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2015). "Evaluation of the Employer Ownership OF Skills pilot, Round 1: initial findings".
- Deutsch, Joseph, and Jacques Silber(2005). "Measuring Multidimensional Poverty: An Empirical Comparison of Various Approach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 51(1), 145-174.
- Duffy, K(1995). Social exclusion and human dignity in Europ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21-45.
- EU 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14). 「SPPM THEMATIC REVIEWS ON THE 2012 SOCIAL TRENDS TO WATCH: The working poor in EUROPE」
- Eirini Andriopoulou & Panos Tsakloglou.(2011). 「The Determinants of Poverty Transitions in Europe and the Role of Duration Dependence」. Discussion Paper No. 5692. IZA.
- Francesco Devicienti & Ambra Poggi(2011).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wo sides of the same coin or danamically interrelated processes?」. 『Applied Economics』. 43. 3549-3571.
- Haveman, R., Wolff, E(2011). “Who are the Asset Poor?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2-1998”. IRP Discussion Paper no. 1227-01. Madision, WI: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 Heckman, J. J(1981).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in S. Rose (ed.), Studies in Labor Markets, Chicago Press, Chicago, IL.
- Hilary Steedman and Steven McIntosh(2001),“Measuring low skills in Europe: how useful is the ISCED framework?”, 『Oxford Economic Papers』, 53(3), 564-581.
- Howell, David R and Edward N. Wolff(1991). “Trends in the Growth and Distribution of Skills in the U.S. Workplace, 1960-1995”.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4(3), 486-502.
- Hudson. C. G.(2005). “Socioeconomic Status and Mental Illness: Tests of the Social Causation and Selection Hypothes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1), 3-18.
- Iceland, J(1997). “The Dynamic of Poverty Spells and Issues of Left-Censoring”. PSC Research Series, 97-378.
- Ingram, Beth F., Gerouge R. Neumann(1996). “The Return to Skill”, 『Journal of Labor Economics』, 13(1), 35-59.
- Green, Anne E(1995).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comparative experience”. paper presented at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on Regional Future, 6-9 May, Gothenburg, Sweden.
- Kayte Lawton(2009). Nice “Work if you can get it: Achieving a sustainable solution to low pay and in-work poverty”.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Keely, B(2015). 「Income Inequalit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OECD Insights, OECD Publishing, Paris.
- Lord Leitch(2006). “Prosperity for all in the global economy – world class skills”. HM

- Treasury.
- Lorenzo Cappellari & Stephen P. Jenkins(2008). 『Appl. Statist.』. vol 57. part2. pp. 165-186.
- Marx, Ive et al(2012). “Can Higher Employment Levels Bring Down Relative Income Poverty in the EU Regression-based Simulations of the Europe 2020 Targe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5), 472-486.
- OECD(2012). Better Skills, “Better Jobs, Better Lives: A Strategic Approach to Skills Policies”.
- OECD(2013). “국제성인역량 국제보고서”.
- Orme, C. D(1997). 「The initial conditions problem and two-step estimation in discrete panel data models, University of Manchester.
- Orme, C. D(2001). 「Two-step inference in dynamic non-linear panel data models」, University of Manchester.
- Pintelon, Olivier et al(2013).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Social Risks: The Relevance of Class for Social Investment Strategi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1), 52-67.
- R. Haveman and E. N. Wolff(2004). “The Concepts and Measurement of Asset Poverty: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for the U.S., 1983-2001”, 『Journal of Economics Inequality』, 2(2), 145-169.
- Poletaev, M and Robinson, C(2008). “Human capital specificity: Evidence from the 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and Displaced Workers Surveys, 1984-2000”. Journal of Labor Economics, 26(3), 387-420.
- Randall W. Eberts(2015). 「2015년 미국 고용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2월호, 4-17.
- Randall W. Eberts(2016). 「미국의 고용 전망과 정책적 혁신」.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2월호, 4-17.
- Sen, A(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scrutiny, Social Development Papers No.1, Office of Environment and Social Development, Asian Development Bank.
- Steohen P. Kenkins and John A. Rigg(2002). “Route into and out of poverty in Britain”.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s Research conference paper(18, June).
- Thibault Brodaty(2007). 『Earning Mobility, State Dependence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the Case of the United-States in the 90's』. preliminary version.
- Watts, Harold W(1968). “An Economic Definition of Poverty,” in D.P. Moynihan(ed.),

- On Understanding Poverty, New York: Basic Books.
- Wiji Arulampalam & Mark B. Stewart(2007). 「Simplified Implementation of the Heckman Estimator of the Dynamic Probit Model and a Comparison with Alternative Estimators」. Discussion Paper No. 3039. IZA.
- Wooldridge, J(2005). 「Simple solutions to the initial conditions problem in dynamic, nonlinear panel data models with unobserved heterogeneity」,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0, 39-54.

<부록>

<부표>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FGI 반구조화 설문지

영역	질문	
개인사항	○ 연령, 근무연수	
	○ 업무범위, 주요 업무, 근로빈곤층 관련 업무내용	
기관의 역할	○ 주요 기능, 기능 범위, 근로빈곤층 관련 업무 범위	
업무	○ 업무 분장(취성패-취성패 외, 취성패 담당자: 상담-밀착 사례관리-유관기관 연계-홍보·발굴 등) ○ 담당업무별 업무량(수급자 상담, 비수급자 상담), 1인당 담당 사례 수	
취업성공패키지	발굴	○ 비수급 참여자 발굴 방법(홍보 등), 발굴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발굴의 필요성 인식 ○ 비수급 참여자 발굴을 위한 타 기관 협력사례(시군구, 읍면동, 기타 유관기관) ○ 민간위탁기관 공홍보
	간담회	○ 간담회 개최와 활용(서비스 연계, 홍보 등), 간담회의 실효성, 간담회 참가범위, 간담회 주기(월 1회)에 대한 인식
	유관기관 연계	○ 유관기관 대상 추천서 추천서 작성 등 과정의 애로사항 ※ 추천기관(대상자 선별 → 대상자 추천) → 고용센터(접수, 대상자 연락 → 처리결과 통보) ○ 대상자 확인(소득확인) 상 애로사항, 개선방안(사통망 연계 등) ※ 현재 건강보험 자료 확인 ○ 복지욕구 파악 방법, 복지서비스 연계과정의 애로사항 ○ 지역의 복지자원 인지, 정보수집 경로, 지침 이외의 복지자원과의 연계상황 ○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정례적 미팅(통합사례회의) 주요 논의 내용, 실효성
	민간위탁기관 연계	○ 민간위탁기관이 주로 담당했던 특정취약계층(장애인, 노숙인,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등)에 대한 이해 ○ 이들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성, 노하우 등 활용방식, 제안사항
	밀착사례관리	○ 전반적인 설명 ○ 밀착사례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2,3단계 진행 중 복지욕구가 발생한 경우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참여 발생 빈도, 재참여 발생 원인 ○ 재참여자에 대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사 후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방식, 사후관리의 정도, 애로사항, 자립지원상담사와 업무분담
	중 도 탈 락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완료율 제고 방안 ※ 3단계 완료시 고용의 질 높아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칭되는 일자리 수준, 취업성공수당과 관계 ※ 취업성공수당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취업패 I 유형 취업 일자리의 1/3 초과
대상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수급자 - 비수급 참여자의 태도 차이 ○ 지자체로부터 이관 사례자, 자체발굴 사례자, 스스로 찾아온 사례자 - 각각의 장단점, 각각의 어려운 점 ○ 발굴,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형(근로빈곤 해소를 위해)
취업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장애요인으로 생각되는 것(가정배경과 환경) ○ 연령대별, 수급여부별 취업장애요인이 다른가? ○ 취업의지, 직업능력, 취업기술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직업훈련 참여자 취업률 저조한 가장 큰 이유?
서비스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의 공공고용서비스 이용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 ○ 공공고용서비스 수혜자 증가를 위한 방안? ○ 취약 정도에 따른 개인별 심층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가?
근로빈곤 해소대책으로 고용서비스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의 역할 ○ 취업성공패키지의 효과? 개선방안? ○ 고용서비스 실효성(근로빈곤 해소, 근로빈곤 예방)을 높이기 위한 방안(서비스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방식) ○ 현재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간 역할 정립(현행 유지, 통합, 새로운 (전담)조직 신설 등) ○ 고용서비스 이외의 근로빈곤 해소 방안(교육훈련, 도제제도, 교육제도, 기업정책, 최저임금 및 복지제도 등)
근로빈곤층 인터뷰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경험한 가장 안타까운 사례, 가장 인상적인 사례 ○ 인터뷰 적합 대상자 유형 추천 ○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근로빈곤층 유형(기관별 교차 추천)

<부표> 심층인터뷰 반구조화 설문지

고용서비스경험자 인터뷰 가이드라인

No.		Place		Interviewee	
1, Date		Time		Interviewer	

0. 사전 준비

- 녹음시설 확인 및 고지, 개인정보보호 내용 고지
-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준비
- Introduction

이 인터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인터뷰는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단지 고용관련 정책 연구에만 활용되오니, 지금부터 제가 여쭙보는 질문에 편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I. 가족배경

1. 먼저 선생님의 부모님 등 과거(15세 무렵) 환경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1-1. 사셨던 곳은 어디인가요?
- 1-2. 집안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나요?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과거 상황)
- 1-3.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1-4. 부모님은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1-5.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십니까?
 - 1-5-1. 양부모님 함께 거주하십니까?

II. 가계상황

2. 선생님 집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2-1. 선생님 외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 2-1-1. 선생님 외에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 2-1-2. 선생님 외에 현재 일을 하지 않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 2-2.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선생님 닥의 경제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2-3. 현재 선생님 닥의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 2-4. 현재 선생님 댁의 월 지출은 얼마입니까?
 2-4-1. 현재 선생님 댁의 월 지출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5. 현재 선생님 재산은 얼마입니까? 저축도 포함됩니다.
 2-6. 현재 선생님 가족 중에 혹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Ⅲ. 인구사회학적 특성(가족상황)

3. 선생님의 자녀 등 현재 가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3-1. 성
 3-2. 연령
 3-3. 현재 선생님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3-3-1. (기혼만) 자녀가 있으십니까?
 3-3-1-1. (유자녀인 경우만) 자녀는 몇 명입니까?
 3-3-1-2. (유자녀인 경우만) 자녀는 학업을 어디까지 마쳤습니까?
 3-3-1-3. (졸업 자녀인 경우만) 자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Ⅳ. 본인학력

4. 선생님의 학력 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4-1.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4-2.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만) 선생님이 다니셨던 고등학교 유형은 무엇인가요?
 (인문계, 상업계, 예술고 등)
 4-3.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만) 선생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4-4. 학업을 하실 때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4-5. 학비 마련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Ⅴ. (취업자만) 근로지위

5. 선생님의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5-1. 선생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상용,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5-2.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5-3. 산업분류(추후 분류)
 5-4. 선생님 회사의 사업장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취업원수 기준)
 5-5. 선생님은 현재 정규직이십니까?
 5-6. 선생님은 현재 직장 근속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5-7. 선생님은 회사에 노조가 있습니까?
 5-8. (노조가 있는 경우만) 노조에 가입하셨습니까?

VI. (취업자만) 소득, 복리후생

6. 선생님의 현재 직장의 소득 복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 6-1. 선생님의 월급여(상여금 등 포함) 는 얼마나 됩니까?
- 6-2. 선생님 회사의 복리후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 6-3. 선생님의 현 직장에서의 장래성(장기근속 가능성, 승진가능성 등)은 얼마나 됩니까?
 6-3-1. (장래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만)선생님 직장에 장래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개인문제 또는 회사 문제 또는 인간관계 문제) 무엇입니까?
- 6-4. 선생님의 희망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6-5. 4대 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까?
- 6-6. 퇴직금은 있습니까?
- 6-7. 선생님의 주간 근로시간 는 얼마나 됩니까?
- 6-8. 초과근무를 할 경우 수당이 있습니까?

VII. (실업자만) 구직방법

7. 선생님의 구직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7-1. 선생님의 실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7-2. 선생님의 구직에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7-3. 선생님의 구직 예상시기는 언제입니까?
- 7-4. 선생님의 유보(희망)임금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 7-5. 선생님의 희망일자리는 무엇입니까?(직종, 구체적인 업무)
- 7-6. 선생님의 취업을 위해 본인에게 필요한 것(스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III. 고용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포함)

8.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 8-1. 선생님은 고용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 8-2. 선생님이 이용한 고용서비스 종류 무엇입니까?
 8-2-1. 선생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1-5점 기준)
 8-2-2. 좋았던 점 무엇입니까?
 8-2-3. 아쉬웠던 점 무엇입니까?
- 8-3. 선생님께서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8-4. 고용센터에서 알선해주는 일자리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8-5. 워크넷을 알고 계십니까?
- 8-6. (인지자)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8-7.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셨습니까?,
- 8-8. 주요 어떤 내용이나 메뉴 등을 사용하셨습니까?
- 8-9. (비인지자) 향후 이용계획이 있으십니까?

IX. (취업자/실업자 공통) 취업 희망 및 가능 직종**9. 취업희망 및 가능 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 9-1. 선생님은 현재 보유한 능력 등을 기반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직종(및 직업)은 무엇입니까?
 9-1-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2. 선생님이 추후에 본인의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다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이 무엇입니까?
 9-2-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2-2. 그 취업 희망 직종(직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및 지원사항은 무엇입니까?

X. 복지에 대한 수요**10. 선생님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동 복지에 대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10-1. 선생님께서는 기초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아동장려세제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2. 현재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는 복지지원은 무엇입니까?
 10-3. 선생님께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0-4. 선생님께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중 현재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까?
 10-5. 선생님께서는 정부교육훈련을 (받으시기에??)_과거 혹은 향후?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교육비, 시간, 교육의 질 등)

XI. 복지에 대한 수요**11. 선생님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동 복지에 대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11-1. 선생님의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11-2. 선생님께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취업자만??)
 11-2-1. 선생님의 탈빈곤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선생님께서서는 지금보다 경제적 형편이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2-2. 선생님의 탈빈곤을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경제적 형편이 좀 더 나아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2-3. 선생님의 미래 전망(자신과 자녀)은 무엇입니까?
 11-3. 선생님의 요즘 심리상태는 어떠십니까?

XII. 주거환경

12. 선생님께서 생활하시는 주택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 12-1. 선생님의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은 무엇입니까?
- 12-2. 선생님의 주거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전월세, 공공임대 등)은 무엇입니까?
- 12-3. 선생님의 주거비(월 임대료, 월 관리비 등)는 얼마입니까?
- 12-4. 선생님 주택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12-5.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주택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12-5-1. 청결상태는 어떠합니까?

XIII. 건강에 대한 견해

13. 선생님의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 13-1.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건강상태는 어떠십니까?
- 13-2. 선생님은 혹시 앓고 계시는 질병이 있습니까?
- 13-3. 선생님은 혹시 앓고 계시는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 13-4. 선생님의 건강관리 방식(운동 투약 등)은 무엇입니까?
- 13-5. 선생님의 월(혹은 연간) 의료비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XIV. 사회적 자본

14. 선생님의 주변사람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 14-1. 선생님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14-2. 선생님은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14-3. 선생님은 사회에 대한 신뢰(믿을 만 하다고 생각하는지?)이 있습니까?
- 14-4. 선생님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 14-5. 선생님은 투표(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 참여하셨습니까?

XV. 문화적 자본

15. 선생님의 문화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 15-1. 선생님은 일년에 몇 번 정도 여행을 하십니까?
- 15-2. 선생님은 일년에 영화를 몇 번 정도 보십니까?
- 15-3. 선생님은 일년에 책을 몇 권정도 읽으십니까?
- 15-4. 선생님은 미술관이나 음악회 등을 일년에 몇 번 정도 보십니까?

XVI. 직업세계 이해정도**16. 선생님의 직업에 대한 견해를 여쭙보겠습니다.**

- 16-1. 전망이 좋은 직업을 알고 있는게 있다면 어떤 직업입니까?
 - 16-1-1. 왜 그 직업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6-2. 전망 좋은 직업으로 본인이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사항'은 무엇입니까?
- 16-3. '최소 지원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16-4.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ex. 육아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교육. 등)

집필진 **천영민**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금봉 (한국노동경제학회 박사)
박소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근로빈곤층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재흥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 1577-7114
홈페이지 www.keis.or.kr
조판 및 인쇄 전우웅사춘(주)
☎ (02) 426-4415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750-2 (93330)



근로빈곤층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T.1577-7114 www.keis.or.kr

